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86호

2024. 6. 20.(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제2024-1795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4

◈ 고 시

제2024-291호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54

제2024-293호 2024년 벼 병해충 방제계획 고시 ····· 262

제2024-294호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63

제2024-296호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주택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 281

제2024-297호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 283

제2024-298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85

제2024-299호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97

제2024-300호 남부터미널 일대·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 운영지침 변경 고시 ····· 332

제2024-30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355

제2024-302호 천호 · 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성내3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59

제2024-303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379

제2024-304호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82

제2024-305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98

◈ 공 고

제2024-1748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449
제2024-1751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450
제2024-1753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공고 ····· 451
제2024-1755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452
제2024-1756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453
제2024-1758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454
제2024-1764호 DDP패션몰 변상금 등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455
제2024-1765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 ····· 458
제2024-176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462
제2024-177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464
제2024-177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465
제2024-1786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466
제2024-1787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 468
제2024-179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469
제2024-1794호 2024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470
제2024-179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473
제2024-1798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 474
제2024-1799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475
제2024-1800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476
제2024-180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477
제2024-1806호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 478
제2024-1807호 지방세 공시송달 ····· 544
제2024-1808호 지방세 공시송달 ····· 546
제2024-181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취소공고 ····· 548
제2024-1818호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계획 예고 ····· 549
제2024-1819호 도시관리계획(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 556
제2024-1822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557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제108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59
제1085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562

◈ 구 고 시

제2024-61호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랑구) ····· 568
제2024-38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연구시설, 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최초)인가고시(노원구) ····· 570
제2024-119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 572
제2024-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송파구) ····· 574
제2024-103호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강동구) ····· 576

◈ 구 공 고

제2024-88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능말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중랑구) ····· 578
제2024-837호 2019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북구) ····· 586
제2024-100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도봉구) ····· 590
제2024-1012호 도시관리계획(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도봉구) ····· 691
제2024-1186호 도시계획시설[증산문화공원(가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 공고(은평구) ····· 695
제2024-94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열람공고(마포구) ····· 702
제2024-119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 706
제2024-1176호 상도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 707
제2024-1118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안) 열람공고(송파구) ····· 710

◈ 사업소고시

제2024-16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714

◈ 기 타

제2024-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영등포소방서) ····· 715
제2024-225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716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95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이 개정(’ 23.12.)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동 공고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간소화
- 발주부서는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전차용역의 정의 명확화
- 전차용역의 정의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명확히 규정

다. 「건설기술 진흥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 및 행정용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공고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
- 이메일 : cjh8041@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확정된 공고안이 아니므로 중요문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2024. 00. 00.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0000호)

서 울 특 별 시

(기 술 심 사 담 당 관)

목 차

제Ⅰ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절 적용기준(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 2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 평가) 세부기준 ···· 10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 77

제4절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119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절 적용기준(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기술인평가서 평가) ····· 152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 평가) 세부기준 ···· 160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 217

제Ⅰ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Ⅰ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절 적용기준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제1절 적용기준(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서울특별시(산하사업소·자치구·투자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란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입찰안내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방법) ①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용역금액 및 공종에 따라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 평가"라 한다),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서 평가"라 한다),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제안서 평가"라 한다)로 구분되며, 적용범위는 본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4조(수행실적 평가 적용범위) ① 수행실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적용범위) ①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용역비 및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금액기준과 난이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금액 기준

가. 기술인평가서 평가 적용범위

· 기본계획, 기본설계 : 용역비 1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미만까지의 용역

· 실시설계 : 용역비 15억원 이상에서 25억원 미만까지의 용역

※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기준 적용

나.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범위

· 기본계획, 기본설계 : 용역비 15억원 이상에서 25억원 미만까지의 용역

· 실시설계 : 용역비 25억원 이상의 용역

※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실시설계 기준 적용

2. 난이도 기준

가. 공공의 안전 확보,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설계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나. 국내 설계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및 지반조건, 인접시설 등으로 인해 설계 및 시공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다. 신기술·신공법,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평가부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당경쟁 등이 우려되어 평가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평가부서를 달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배점기준) ① 수행실적 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고,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넷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업무 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부서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외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인 투입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수행실적 평가"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고,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기술인평가 평가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업체를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행실적 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시 공시한다.

- 발주부서는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에 첨부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음)

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입찰참가 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잔여업체만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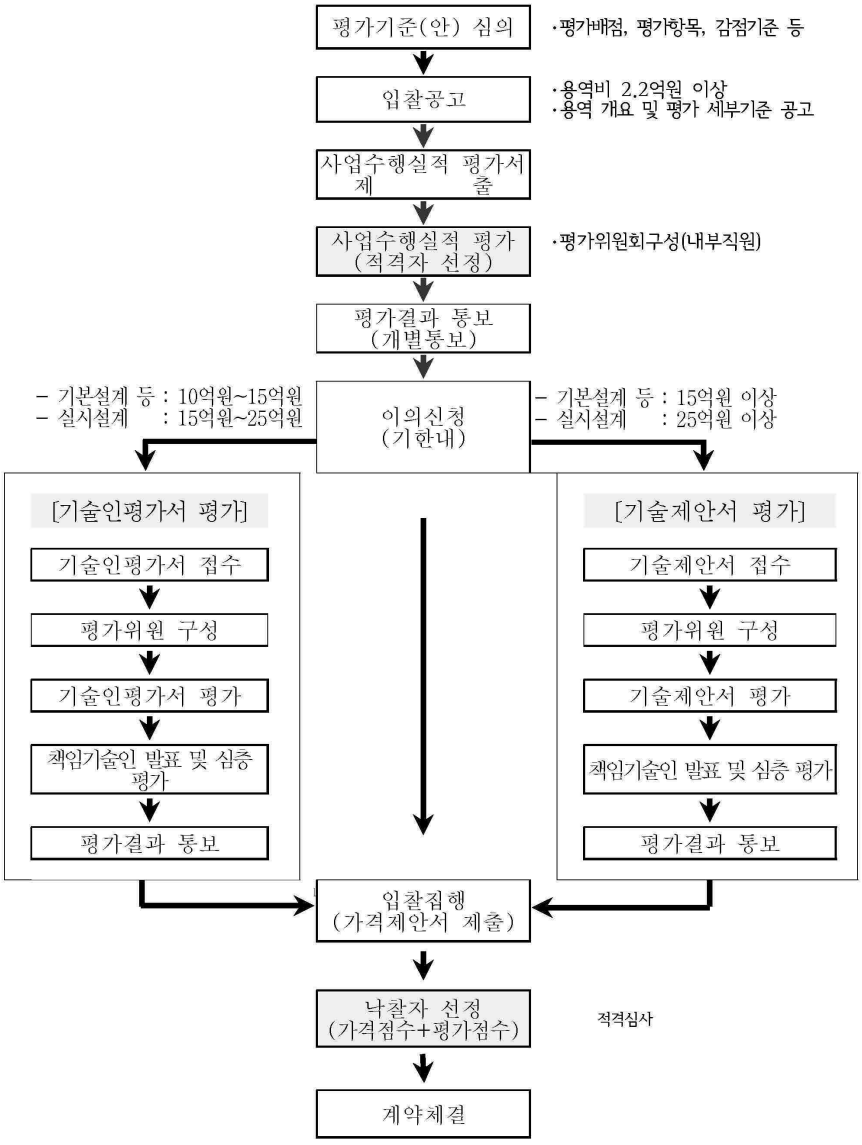
제10조(준용규정)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첨부 :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절차도
2.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용역 선정기준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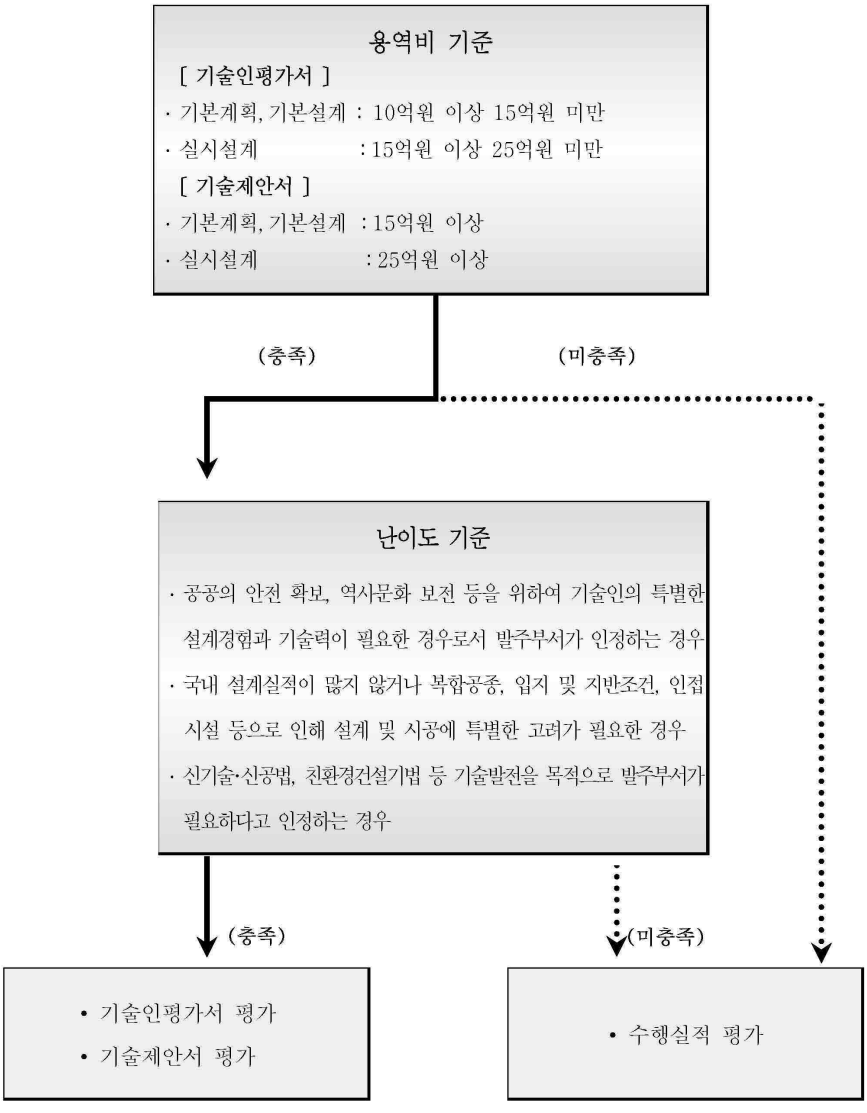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절차도

(용역비 2.2억원 이상)



첨부 2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용역 선정기준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예시)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도 로	①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경간장 100m 이상 특수교량 ② 3km 이상 해저 또는 하저터널 ③ 도시부 장대지하도로(500m 이상) ④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⑤ 출입시설(완전입체교차) 신설, 확장 개량 설계 용역 및 공용 중인 기존교량(경간장 100m 이상)의 전면 개량 설계 용역 ⑥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 환경보호·보전지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으로 지정된 지역 및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수자원	① 댐(총 저수량 1천만톤 이상) ② 배수갑문(2,000㎥/sec 이상)
철 도	① 장대교(연장 400m 이상, 경간장 70m 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② 철도차량기지 ③ 일반터널(3km 이상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④ 도심구간 ⑤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로 지정된 구역, 환경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공 항	①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플랜트	①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②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건 축	①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③ 다중이용건축물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기 타	① 하저터널 ② 첨단교통체계 시설 ③ 설계 예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계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④ 기타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어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공사의 설계용역

제Ⅰ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 평가) 세부기준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추정가격 2.2억원) 이상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업무수행 시 담당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이란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평가방법 및 절차

(1) 발주부서는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 인정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만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6)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정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한 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의 용역수행실적은 2014년 5월 23일 이후부터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 발주부서는 각 사업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추정가격 2.2억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추진 시 "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9) 발주부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10) 발주부서는 제(9)항에서 제시된 의견과 영 제1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평가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하여야 한다

(12)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 공정성 및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수행실적 평가팀" : 절대평가 항목 평가

1) 구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평가방법 : 수행실적 평가기준(평가 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나) "수행실적 평가위원회" : 상대평가 항목 평가(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1) 구 성 : 내부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 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2) 위 원 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4) 평가결과공개 :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3)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제(15)항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부서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15)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16)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8) 해당 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적격자로 평가 및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금액은 준공일 기준의 한국 화폐단위 환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 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한정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

부문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인정한다.(단, 해당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19) 해외설계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 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기관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8)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의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9)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21)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

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2)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아래예시 참조)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 만 명시)



(23)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부서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24) 발주부서는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 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25)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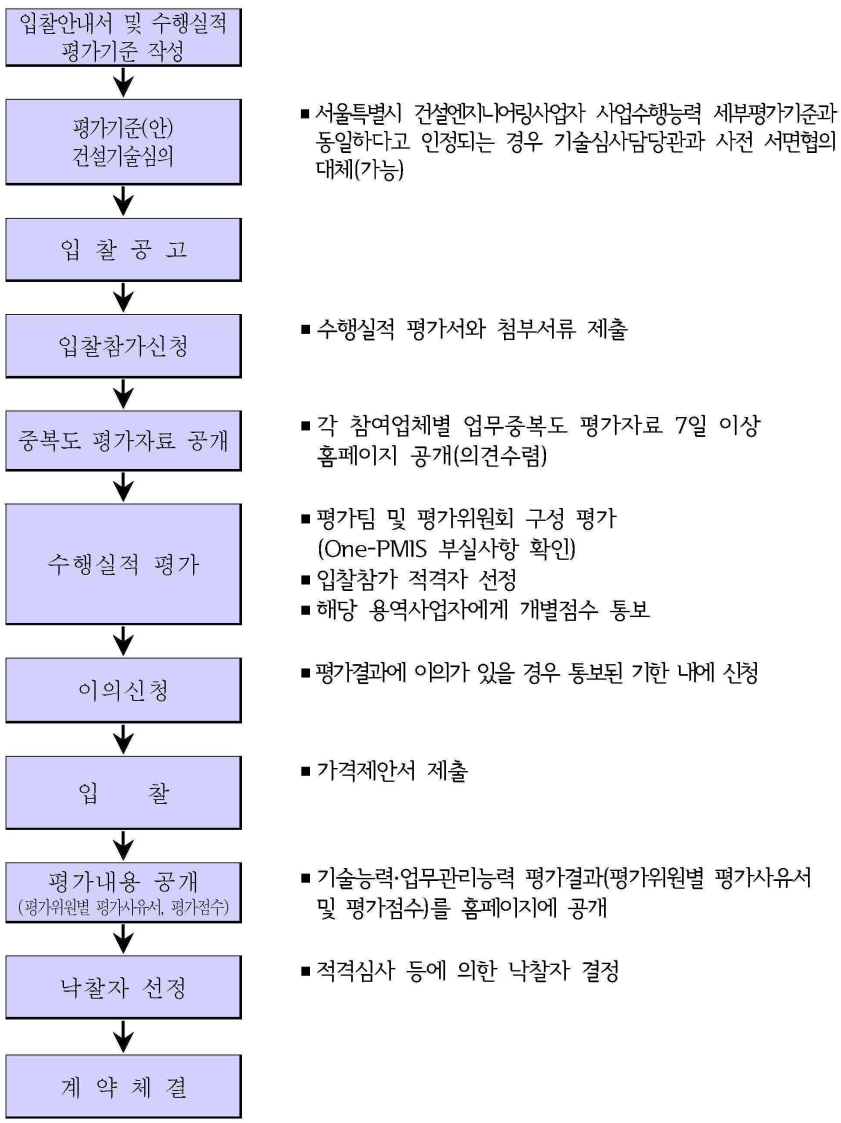
(26)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27)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9) 입찰 참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21)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수행실적 평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절차



(1)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설계용역이 수행실적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해당 설계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해당 설계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작성지침에 따른다.

(4) 발주부서의 장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2. 평가 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급	3	절대평가
		경력	4	
		유사용역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7	
		유사용역 실적	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5	
		유사용역 실적	5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절대평가
		전차용역수행실적	1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	6	절대평가
		유사용역 실적금액	6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7	절대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절대평가
	활용실적		3	
	투자실적		10	
업무 중복도 (10)	사업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합 계			10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감점	비리관련		10	절대평가

비고

1.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table>
<tr><th colspan="3">평 가 항 목</th><th>평가
방법</th><th>배점</th><th colspan="6">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 rowspan="20">참여기술인
(50)</td><td rowspan="5">사업책임기술인
(15)</td><td rowspan="2">등 급</td><td rowspan="2">절대
평가</td><td rowspan="2">3</td><td>특 급</td><td>고 급</td><td>중 급</td><td colspan="2">초 급</td></tr>
<tr><td>3</td><td>2.2</td><td>1.5</td><td colspan="2">0.7</td></tr>
<tr><td rowspan="2">경 력</td><td rowspan="2">절대
평가</td><td rowspan="2">4</td><td>15년 이상</td><td>15년 미만
13년 이상</td><td>13년 미만
11년 이상</td><td>11년 미만
9년 이상</td><td>9년 미만</td></tr>
<tr><td>4</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r><td>유사용역
실 적</td><td>절대
평가</td><td>5</td><td>10건 이상</td><td>10건 미만
~8건 이상</td><td>8건 미만
~6건 이상</td><td>6건 미만
~4건 이상</td><td>4건 미만</td></tr>
<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r><td>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td><td>상대
평가</td><td>3</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r>
<tr><td>3.0</td><td>2.4</td><td>1.8</td><td>1.2</td><td>0.6</td></tr>
<tr><td colspan="6">※ 평가시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 반영
※ 용역비와 상관없이 모든 용역 평가</td></tr>
<tr><td rowspan="5">분야별
책임기술인
(19)</td><td rowspan="2">등 급</td><td rowspan="2">절대
평가</td><td rowspan="2">4</td><td colspan="2">고급 이상</td><td colspan="2">중 급</td><td>초 급</td></tr>
<tr><td colspan="2">4</td><td colspan="2">3</td><td>2</td></tr>
<tr><td rowspan="2">경 력</td><td rowspan="2">절대
평가</td><td rowspan="2">7</td><td>10년 이상</td><td>10년 미만
9년 이상</td><td>9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7년 이상</td><td>7년 미만</td></tr>
<tr><td>7</td><td>6.3</td><td>5.6</td><td>4.9</td><td>4.2</td></tr>
<tr><td>유사용역
실 적</td><td>절대
평가</td><td>8</td><td>7건 이상</td><td>7건 미만
~6건 이상</td><td>6건 미만
~5건 이상</td><td>5건 미만
~4건 이상</td><td>4건 미만</td></tr>
<tr><td>8</td><td>7.2</td><td>6.4</td><td>5.6</td><td>4.8</td></tr>
<tr><td rowspan="5">분야별
참여기술인
(14)</td><td rowspan="2">등 급</td><td rowspan="2">절대
평가</td><td rowspan="2">4</td><td colspan="3">중 급 이상</td><td colspan="2">초 급</td></tr>
<tr><td colspan="3">4</td><td colspan="2">3</td></tr>
<tr><td rowspan="2">경 력</td><td rowspan="2">절대
평가</td><td rowspan="2">5</td><td>5년 이상</td><td>5년 미만
4년 이상</td><td>4년 미만
3년 이상</td><td>3년 미만
2년 이상</td><td>2년 미만</td></tr>
<tr><td>5</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r><td>유사용역
실 적</td><td>절대
평가</td><td>5</td><td>5건 이상</td><td>5건 미만
~4건 이상</td><td>4건 미만
~3건 이상</td><td>3건 미만
~2건 이상</td><td>2건 미만</td></tr>
<tr><td>5</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r><td rowspan="4">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td><td>교육훈련</td><td>절대
평가</td><td>1</td><td colspan="6">-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점</td></tr>
<tr><td rowspan="3">전차용역
수행실적</td><td rowspan="3">절대
평가</td><td rowspan="3">1</td><td>구분</td><td>2년
미만</td><td>2년 이상
3년 미만</td><td>3년 이상
5년 미만</td><td>5년
이상</td></tr>
<tr><td>사업책임
기술인</td><td>0.5</td><td>0.4</td><td>0.3</td><td>0</td></tr>
<tr><td>분야별
책임기술인</td><td>0.5</td><td>0.4</td><td>0.3</td><td>0</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3">평 가 항 목</th><th>평가
방법</th><th>배 점</th><th>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 rowspan="6">용역
수행실적
(15)</td><td rowspan="6">회사실적</td><td>유사용역
실적건수</td><td>절대
평가</td><td>6</td><td>2건 이상 | 2건 미만 ~ 1건 이상 | 1건 미만
6 | 5.4 | 4.8</td></tr>
<tr><td>유사용역
실적금액</td><td>절대
평가</td><td>6</td><td>35억 이상 | 35억 미만~30억 이상 | 30억 미만~20억 이상 | 20억미만
6 | 5.4 | 4.8 | 4.2</td></tr>
<tr><td>전차용역
수행실적</td><td>절대
평가</td><td>1</td><td>용역 후 3년 이내 (해당업체) | 해당업체 외 모든 참여업체
1 | 0.8
※ 공동도급 시 계산 예 : 0.8 + 0.2 × (전차용역 지분율 × 입찰시지분율)</td></tr>
<tr><td>용역수행
성과</td><td>절대
평가</td><td>2</td><td>-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table>
<tr><td>용역평가 결과</td><td>95점 이상</td><td>95점 미만 92점 이상</td><td>92점 미만 89점 이상</td><td>89점 미만 86점 이상</td><td>86점 미만</td></tr>
<tr><td>점수</td><td>2점</td><td>1.8점</td><td>1.6점</td><td>1.4점</td><td>1.2점</td></tr>
</table>
* 용역평가는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td></tr>
<tr><td rowspan="2">신 용 도
(10)</td><td>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td><td>지정기간,
부과벌점</td><td>절대
평가</td><td>7</td><td>- 용역사업자가 영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영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영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td></tr>
<tr><td>재정상태
건실도</td><td>신용평가
등급</td><td>절대
평가</td><td>3</td><td>-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table>
<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
<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
<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
<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td></tr>
</table>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2">평 가 항 목</th><th>평가
방법</th><th>배점</th><th>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 rowspan="2">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td><td>개발실적</td><td>절대
평가</td><td>2</td><td>-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table>
<tr><th>구분</th><th>5년 미만</th><th>5년 이상
10년 미만</th><th>10년 이상
20년 미만</th></tr>
<tr><td>특허</td><td>100%</td><td>80%</td><td>60%</td></tr>
<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
</table>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r>
<tr><td>활용실적</td><td>절대
평가</td><td>3</td><td>-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하며,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 따름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영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가중치</th></tr>
<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
<tr><td>활용건수
(건)</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
<tr><td>활용금액
(억원)</td><td>20 이상</td><td>20 미만
18 이상</td><td>18 미만
16 이상</td><td>16 미만
14 이상</td><td>14 미만</td></tr>
</table>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2">평 가 항 목</th><th>평가방법</th><th>배점</th><th>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td><td>투자실적</td><td>절대평가</td><td>10</td><td>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table>
<tr><td>구분</td><td>1.50% 이상</td><td>1.50% 미만 1.25% 이상</td><td>1.25% 미만 1.00% 이상</td><td>1.00% 미만 0.75% 이상</td><td>0.75% 미만 0.50% 이상</td></tr>
<tr><td>점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able></td></tr>
<tr><td>업 무 중 복 도 (10)</td><td>사업 책임기술인</td><td>절대평가</td><td>3</td><td>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도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250%미만</td><td>250%이상 ~ 350%미만</td><td>350%이상 ~ 450%미만</td><td>450%이상 ~ 550%미만</td><td>55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철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수자원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상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하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국토도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2">평 가 항 목</th><th>평가
방법</th><th>배점</th><th>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td><td>분야별 책임기술인</td><td>절대
평가</td><td>4</td><td>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도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250%미만</td><td>250%이상
~
350%미만</td><td>350%이상
~
450%미만</td><td>450%이상
~
550%미만</td><td>55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 철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 수자원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 상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 하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 국토도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2">평 가 항 목</th><th>평가
방법</th><th>배점</th><th>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td><td>분야별 참여기술인</td><td>절대
평가</td><td>2</td><td>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도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250%미만</td><td>250%이상
~
350%미만</td><td>350%이상
~
450%미만</td><td>450%이상
~
550%미만</td><td>55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 철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 수자원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 상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 하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 국토도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2">평 가 항 목</th><th>평가
방법</th><th>배점</th><th>점 수 계 산 방 법</th></tr>
<tr><td></td><td>실무기술인</td><td>절대
평가</td><td>1</td><td>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 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도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250%미만</td><td>250%이상
~
350%미만</td><td>350%이상
~
450%미만</td><td>450%이상
~
550%미만</td><td>55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 철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 수자원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 상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 하수도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 국토도시분야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table>
<tr><td>중복율</td><td>300%미만</td><td>300%이상
~
400%미만</td><td>400%이상
~
500%미만</td><td>500%이상
~
600%미만</td><td>600%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td></tr>
<tr><td colspan="3">합 계</td><td>100</td><td></td></tr>
</table>

다. 비리관련 감점사항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해당 심의만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라. 가점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 항목</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2">가점</td><td>건설기술인
신규고용</td><td>-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정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td></tr>
<tr><td>젊은 기술인
참여</td><td>-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해당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table>
<tr><th>해당 설계참여 인원비율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해당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th><th>5%
이상</th><th>3%
이상</th><th>1%
이상</th></tr>
<tr><td>가점</td><td>0.2점</td><td>0.15점</td><td>0.1점</td></tr>
</table>
</td></tr>
</table>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 50점

(1)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 등급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영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점 수	3	2.2	1.5	0.7

○ 경력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다만, 용역비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평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배 점 〉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	3.6	3.2	2.8	2.4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부서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다만, 용역비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평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해당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하며, 특히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규모의 0.7배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 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최근 10년동안 해당 용

역과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예”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도로 및 공항분야의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참여실적 인정, 철도, 지하철, 고속철도, 택지개발, 구획정리, 단지조성, 운동장, 도시계획, 상하수도, 하천, 수자원, 항만,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불인정함“ 등으로 구체적 명시)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연장, 면적 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3점)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양식16”를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조건,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추가 제안사항 등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하되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거나,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인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배 점 〉

평 가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4	1.8	1.2	0.6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영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등 급	고 급 이 상	중 급	초 급
점 수	4	3	2

○ 경력평가(7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다만, 용역비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평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계약직전문기술인을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배 점 〉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7	6.3	5.6	4.9	4.2

○ 유사용역 실적평가(8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부서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다만, 용역비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평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해당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하며, 특히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규모의 0.7배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 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최근 10년 동안 해당 용역과 유사한 설계 참여 실적(예 :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도로 및 공항분야의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참여 실적 인정, 철도, 지하철, 고속철도, 택지개발, 구획정리, 단

지조성, 운동장, 도시계획, 상하수도, 하천, 수자원, 항만,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불인정함" 등으로 구체적 명시)으로 참여기간, 실적 건수, 실적 금액, 실적 규모(연장, 면적 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로 절대평가 한 결과를 배분율에 의거 평가 후 합산

- 해당기술인에 대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 평가 시 업무중요도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평가함

· 대상 : 등급, 경력, 유사용역 실적 등

<예 : 분야별 책임기술인 5인의 경우,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 결과 합산 방법>

평가	점 수 배분율(%)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비 고
배점	100	8	7.2	6.4	5.6	4.8	
분야①	40	3.2	2.88	2.56	2.24	1.92	
분야②	20	1.6	1.44	1.28	1.12	0.96	점 수 → 3.2+1.44+1.44+0.64+0.56 = 7.28
분야③	20	1.6	1.44	1.28	1.12	0.96	
분야④	10	0.8	0.72	0.64	0.56	0.48	
분야⑤	10	0.8	0.72	0.64	0.56	0.48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영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중급이상	초 급
점 수	4	3

○ 경력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다만, 용역비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평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경력은 해당기술인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 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배 점 〉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0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부서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다만, 용역비 2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경력평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해당 용역 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하며, 특히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규모의 0.7배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 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최근 10년 동안 해당 용역과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예 :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도로 및 공항분야의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참여 실적 인정, 철도, 지하철, 고속철도, 택지개발, 구획정리, 단지조성, 운동장, 도시계획, 상하수도, 하천, 수자원, 항만,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불인정함” 등으로 구체적 명시)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연장, 면적 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절대평가 한 결과를 배분율에 의거 평가 후 합산
- 해당기술인에 대한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배 점 〉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점수 배분율을 정하여 평가함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 2점

○ 교육훈련(1점)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1점)
  ※ ( )안의 배점은 해당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적용

○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

- 참여 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용역이라 함은 해당 용역의 前단계 용역(법 제46조 및 영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용역으로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말하며 전차용역 준공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수행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전차용역의 실적은 발주부서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기성율 확인자료)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
- 공동도급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각 0.5점 적용함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기술인의 평가는 용역참여 지분율만 산정하여 인정
- 해당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용역완료 후 2년 미만	용역완료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0.5	0.4	0.3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용역완료 후 2년 미만	용역완료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0.5	0.4	0.3	0

※ 예 : ○○공사 실시설계용역 : 6개월 전 준공된 동 공사 60%의 지분율로 기본설계 전차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A와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B, C 기술인이 금회 실시설계용역(분야별 기술인은 B, C 기술인 포함 4인)에 참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0.3점[1.0점×0.6(지분율)×0.5점(사업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0.15점[1.0점×0.6(지분율)×0.5점(분야별 책임기술인)×2/4(인)]=0.45점임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1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해당 용역 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하며, 특히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사업 규모의 0.7배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최근 5년 동안 해당 용역과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예 :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도로, 공항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참여실적인정, 철도, 지하철, 고속철도, 택지개발, 구획정리, 단지조성, 운동장, 도시계획, 상하수도, 하천, 수자원, 항만,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불인정함” 등으로 구체적 명시)으로 실적건수, 실적금액,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절대평가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자료 확인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참여지분율만 인정, 공동도급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직전단계 용역사업을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는 전체용역비에 대한 하도급금액 비율을 적용함
- 해당 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부서는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해당 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
- 해당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

〈 배 점 〉

- 실적건수

실 적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6(7)	5.4(6.3)	4.8(5.6)

※ ( )안의 배점은 해당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어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하는 경우 적용

- 실적금액

실 적	35억 이상	35억 미만~30억 이상	30억 미만~20억 이상	20억 미만
점 수	6(7)	5.4(6.3)	4.8(5.6)	4.2(4.9)

※ ( )안의 배점은 해당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어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을 유

사용역 수행실적 실적 배점에 합산하는 경우 적용

•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역완료 후 3년 미만(해당업체)	해당 업체 외 모든 업체
1.0	0.8

• 용역수행성과(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다. 신 용 도 : 10점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 용역사업자가 영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영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영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예 : 2개 업체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 중 1개 업체가 영업정지 등 제재 1개월 있는 경우 [(0.2점×0.5)+(0점×0.5) = 0.1점 + 0 = 0.1점]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 등급(3점)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예시 : 신용평가 등급 기준 >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1) 개발실적(2점)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합산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

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개발 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인정범위 등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고지할 것

(2) 투자실적(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설립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배 점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3) 활용실적(3점)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영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무중복도 : 10점

- 발주부서에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부서가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해당 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 사업책임기술인(3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

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350%미만	350%이상~450%미만	450%이상~550%미만	5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철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수자원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상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하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국토도시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350%미만	350%이상~450%미만	450%이상~550%미만	5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철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수자원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상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하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국토도시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3)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350%미만	350%이상~450%미만	450%이상~550%미만	5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철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수자원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상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하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국토도시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 실무기술인(1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 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배 점 : 용역의 특성 등에 실무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도로분야

중복율	250%미만	250%이상~350%미만	350%이상~450%미만	450%이상~550%미만	5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철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수자원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상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하수도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국토도시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 기타분야(조경, 기계 등)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400%미만	400%이상~500%미만	500%이상~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4.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1부

(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나) 설계업 등록증(전력)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3)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80g/㎡), 양면인쇄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표지서식 (양식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2)

3)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 협정서

5)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양식3)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4)

7)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양식5)

8)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9) 사업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1)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12) 참여 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6)

13)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7)

14) 관련 협회발행 실적 증명서

15) 기술용역 실적 증명서 (양식8)

16)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양식9)

17) 업무정지 및 제재 현황 확인서
18)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10)
19)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2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1)
2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양식12)
22)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양식13)
23) 전차용역과 관련된 사항 (양식14)
24) 전차용역 실적 증명서
25) 벌점 관련 사항 (양식15)
26)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확인서 사본
27)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16)
28)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17)
29)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18)
30)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19)
31)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양식20)
3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21)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 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양식 1]

접수번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붙임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양식 3]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table>
<tr><th>구분</th><th>업체명</th><th>주소</th><th>대표자</th><th>전화</th><th colspan="2">출자비율</th><th>비고</th></tr>
<tr><td rowspan="3">공동이행</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6">분담이행</td><td rowspan="2">업체명</td><td rowspan="2">주소</td><td rowspan="2">대표자</td><td rowspan="2">전화</td><td colspan="2">분담내용</td><td rowspan="2">비고</td></tr>
<tr><td>업종</td><td>비율</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 colspan="2">100%</td><td></td></tr>
</table>

[양식 4]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번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최종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5]

참여 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년 개월		
분야별 책임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분야별 참여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 실제 경력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6]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용역명	금액 (백만원)	평가대상 실적		사업기간		참여기간	
			공종	규모	계약일	준공일	착수일	종료일
	소 계 건	( )	소계	( )				
	소 계 건	( )	소계	( )				

※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주 공종분야 설계참여 실적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 중 발주부서가 정하는 실적을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7]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업체명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지분율 (%)
				착공	준공	공종	규모	
	소 계 건	( )				소계	( )	

※ 최근 5년 이내에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해당 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 설계수행 실적으로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등 증빙자료 첨부

※ 건축인 경우 참여한 건축사(사업책임 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인)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실적 중 해당 분야(공고에 명시)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임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8]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업체명 (상호)</td><td colspan="3"></td><td>대 표 자</td><td></td></tr>
<tr><td>영업소재지</td><td colspan="3"></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사업자번호</td><td colspan="3"></td><td>제 출 처</td><td>서울시</td></tr>
<tr><td>증명서 용도</td><td colspan="3">적격심사 신청용</td><td></td><td></td></tr>
<tr><td rowspan="4">용역실적 내용</td><td>용 역 명</td><td colspan="2"></td><td>구 분</td><td colspan="2">설계( ) :
건설사업관리( ) :
기타( ) :</td></tr>
<tr><td>용 역 개 요</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계 약 번 호</td><td rowspan="2">계약일자</td><td rowspan="2">계약기간</td><td rowspan="2">계약규모</td><td colspan="2">이행실적</td><td rowspan="2">비 고</td></tr>
<tr><td>공동비율</td><td>실 적</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증명서 발급기관</td><td colspan="6">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td></tr>
<tr><td colspan="6">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6">주 소 : (FAX번호:)</td></tr>
<tr><td colspan="3">발급부서 :</td><td colspan="3">담당자 : (인)</td></tr>
</table>

※ ①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기술용역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9]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양식 10]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ㅇ 신용평가 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 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함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

○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함

첨부 :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2. 활용실적 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 × 참여 지분율	
나										(ⓐ+ⓑ+ⓒ)/3 × 참여지분율	
계										가 + 나	

※ 1. A : 건설기술 개발 투자액, B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첨부 : 3개년 재무제표

[양식 12]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 업무 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부서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소 계 건		( )			
실 무 기술인	○○○						
		소 계 건		( )			

※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경력 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양식 13]

참 여 기 술 인 교 육 실 적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 건설사업관리원 성명	교육 과정명	교육 기간	비 고
점 수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		

첨부 : 지정기관 발행 지정서 또는 그 사본

[양식 14]

전 차 용 역 과 관 련 된 사 항

1. 전차용역 사업자 평가

용 역 명	용역 개요	발주처	용역 기간	준공후 경과기간	전차용역 참여비율	금회용역 참여비율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률)
			~				
			~				

2. 전차용역 참여기술인 평가

용 역 명	성 명	참 여 당시역할	전차설계의 종류	준 공 후 경과기간	금회용역 분야의 수	참여기간(연/월/일)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률)
						시작일	완료일	

※ 전차용역 참여기술인으로서 해당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정함.
(용역기간의 1/2 미만 참여기술인은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 : 발주부서 발행 실적증명서 등 (용역의 종류, 참여 기술인 명단 및 참여 기간 명시)

[양식 15]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 기술인이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누계벌점	벌점점수	비 고
계				

[양식 16]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백상지 80g/㎡)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 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 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17]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table>
<tr><td rowspan="4">신 청 인</td><td colspan="2">업체명 (상호)</td><td></td><td>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영업소재지</td><td colspan="2"></td><td>전화</td><td></td></tr>
<tr><td colspan="2">사업자번호</td><td colspan="2"></td><td>팩스</td><td></td></tr>
<tr><td colspan="2">증명서용도</td><td></td><td>제출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9">연구수행
실적내용</td><td colspan="2">사 업 명</td><td colspan="2"></td><td>과제유형</td><td></td></tr>
<tr><td colspan="2">연구과제명</td><td colspan="2"></td><td>총연구기간</td><td></td></tr>
<tr><td colspan="2">연 구 내 용
(요약)</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7">기업부담금 내역</td><td>구 분</td><td>참여형태</td><td>연구수행(참여)기간</td><td>기업부담금(현금)</td><td colspan="2">비고</td></tr>
<tr><td>1차년도</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2차년도</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3차년도</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4차년도</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5차년도</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합 계</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8">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td></tr>
</table>

[양식 18]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지분율 %)			
5) 신 청 자 (대 표)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9]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5) 실무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2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3쪽 중 제1쪽)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		전문분야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제재처분 내용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 (금액: 백만원)

구분	합계		계획·조사		설계		건설사업관리				공동주택·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기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완료														
진행 중														
교체율(최근 1년간)	%		배치 총원		명		교체 총원		명					

가. 완료된 용역

일련번호	용역종류	용역명	계약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사업규모)	발주청 (인허가기관)	용역비 (백만원)

작성방법

1.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제재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의 교체율, 배치 총원, 교체 총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3. 완료된 용역의 사업개요 중 총공사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4. 진행 중인 용역의 공사개요 중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쪽 중 제2쪽)

○ 관리번호: ○ 회사명:

나. 진행 중인 용역

용역명			용역종류	
발주청 (인허가기관)		계약기간	. . ~ . .	
사업규모			공종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 기간	용역이행비율
	전체		~	%
	기성분		~	
	금차계약분		~	
	향후잔여분		~	

공사개요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 . ~ . .

○ 참여기술인 현황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참여인원									

일련번호	구분	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쪽 중 제3쪽)

○ 관리번호: ○ 회사명:

4. 벌점

일련번호	연도/반기 구분	측정기관	용역명	부실사례	벌점	반기 평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발 급 용 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양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제Ⅰ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인 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업무수행 시 담당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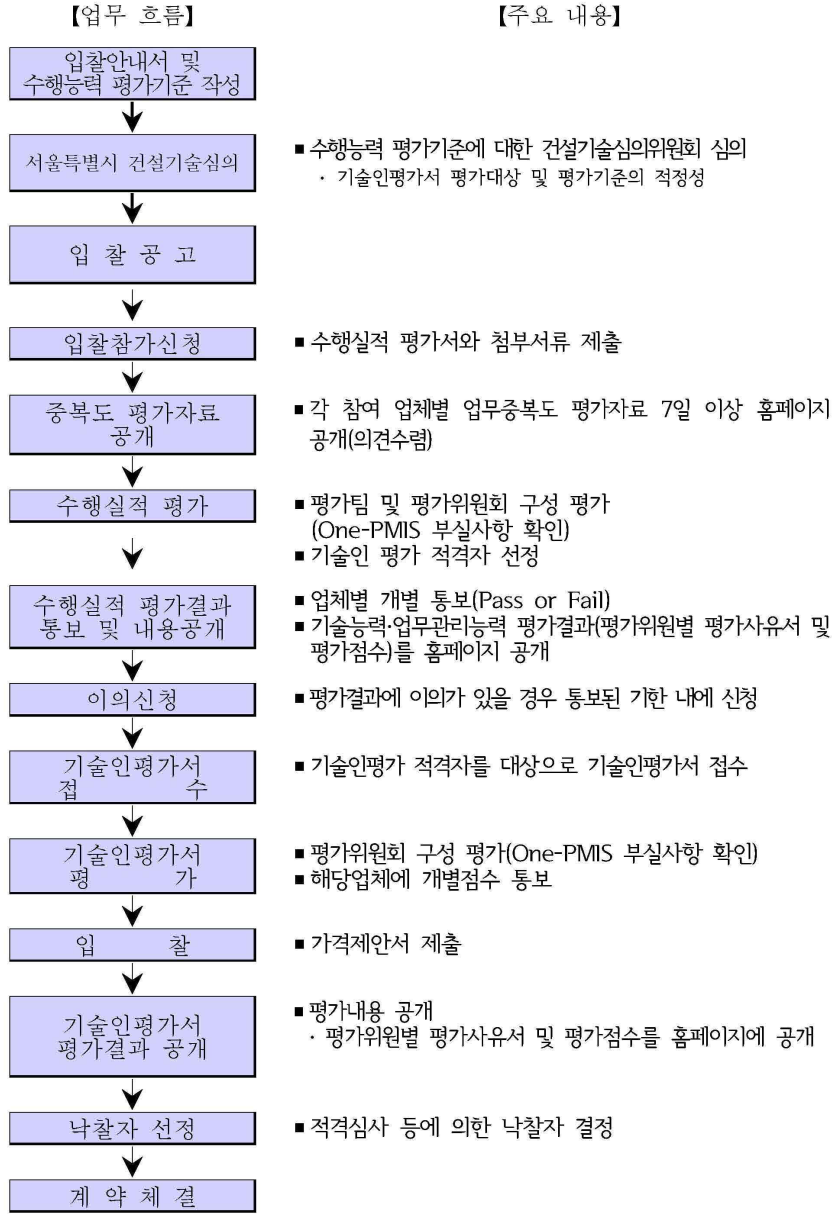
(1) “기술인평가 적격자”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2) “입찰참가 적격자”란 기술인 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인평가서”란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참여기술인,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4)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기술인평가서 평가규정에 따라 해당 발주부서에서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따른 용역사업자 선정절차



(1)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전에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의 적정성 및 입찰 공고문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시 해당 설계용역이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해당 설계용역 입찰 공고문에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발주부서는 해당 설계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본 절 4.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른다.

(5) 수행실적 평가는 제1장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6)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결과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 참여 적격여부를 해당 입찰자에게 통보하며,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 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7)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 중 기술인 평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인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8)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기술인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시한다.

(9)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인평가서가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0) 기술인평가서의 평가는 해당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11) 발주부서의 장은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12)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 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3)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기술인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14)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라. 용역의 공고 및 입찰 등록

(1) 사전준비

(가)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이 기술인평가서 평가용역 선정 금액조건을 충족 하더라도 특별한 설계 경험, 소량의 국내 설계실적, 신기술·신공법 등 기술인평가서 평가가 필요한 용역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이 기술인평가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용역의 목적과 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의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2) 입찰안내서의 작성

(가) 입찰안내서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규모, 조건 등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입찰안내서에는 사전준비 과정에서 결정된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목적과 기술능력, 업무관리 능력의 수준에 따라 수행계획, 수행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임을 명시)

2) 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5) 입찰에 관한 사항

6) 부록(관련 양식 등)

(라) 입찰안내서에 포함될 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가 추가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입찰안내서에 포함될 사항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바) 입찰안내서에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기술인평가서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 ≫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개요,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등)
2.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3. 입찰일정 및 제공자료(발주부서 제공 열람 및 제공자료 목록 제시)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1. PQ심사 개요
2.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
5. 심사결과의 통보

제3장 기술인평가서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 기술인평가서 평가 개요
2. 기술인평가서 제출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실격 및 감점기준 포함)
5. 심사결과의 통보

제4장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3. 기술인평가서 작성 일반사항(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 실적 등)
4. 수행계획 및 방법 작성지침(과업의 이해도, 단계별 작업계획,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 등)

제5장 기술인평가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1. 평가 일반사항
2.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3. 기술인평가서 평가 절차 및 방법
4. 평가세부기준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제6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2. 가격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식
4. 기타 특기사항

부록
1. 관련 양식
2. 참고자료

(3) 입찰공고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전에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의 적정성 및 평가세부기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영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에 입찰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에게 평가 세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를 용역 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마)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한 입찰공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 설계용역 사업명
2) 사업 시행기관
3) 참여 기술인의 경력, 실적 등에 대한 요구조건(구체적)
4) 예정 용역비
5) 입찰일정
6) 수행실적 평가 면제 업체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7)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

(사)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업체 또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아) 제공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의 성격 및 특성에 맞게 발주부서가 제공자료를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입찰안내서(기술인평가서 작성 지침서 및 관련 서식 포함)
2) 위치도
3) 부지 및 토지이용 현황도
4) 관련 계획 등

(4)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가)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한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제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기술인평가서, CD 또는 DVD, 청렴서약서 등이 있으며,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에 맞게 제출도서의 범위와 종류를 선택하여 입찰 시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의 목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

2) 기술인평가서(양식2)

3)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CD 또는 DVD (책임기술인 발표 시 발표내용 포함)

4) 청렴서약서(양식4)

5) 기타 발주부서가 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사전 명시)

(다)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택배나 우편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방법, 도착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70)		- 참여기술인의 경력	30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설계팀의 구성체계	5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수행방법(10), 기타(5) 평가시는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5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10	
수행계획 및 방법 (30점)	수행계획 (15)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 과업단계별 주요업무	3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5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5	
		-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2	
	수행방법 (1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10	
	기타(5)	- 책임기술인의 발표 및 면접	5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상대평가 시 신청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을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별 가중치는 평가항목별(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로 구분 적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설계팀의 구성체계	1.00	0.98	0.96	0.94	0.9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	1.00	0.95	0.90	0.85	0.80
	수행방법					
	기타(면접발표)	1.00	0.90	0.80	0.70	0.60

다. 기본사항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의 세부평가 항목 중 참여기술인의 경력,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환산 점수

→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평가점수(배점 27점) × 30/27

(나)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환산점수

→ "수행실적" 유사용역 실적 평가점수(배점 18점) × 20/18

(2)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설계팀의 구성체계,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과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방법은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 항목별로 상대평가 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3)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4)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5)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발주부서는 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가. 위원회의 구성

(1) 발주부서는 기술안평가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안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분야별 외부 심의위원과 5급 이상 공무원(내부 심의위원)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내부 심의위원은 평가위원의 50% 이내로 구성하며,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본부 산하 기획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도시철도국 등은 각각 실국으로 본다.

(3) 평가위원회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주기관 내부직원(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내부직원으로 선임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위원 중에서 발주부서장이 지명한 평가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5) 발주부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의 선정

(1) 선정절차

후보위원 명부작성(평가전일) → 연락순서 추첨(평가당일 오전) → 연락 및 수락순서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2) 평가위원 후보위원 명부작성

선정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명부를 작성하되 후보위원별 무작위로 정렬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밀봉·보관

(3) 연락순서 추첨

선정 예정인원의 일정 배수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후보자 명부의 번호지를 입찰 참가업체가 직접 추첨(입찰 참가업체 미 참석 시 발주부서 직원이 추첨)

(4) 연락 및 선정

(가) 입찰 참가업체 입회하에 명부 개봉

(나) 추첨순서에 따라 후보위원 참석여부 유선 확인(통화 기록지 작성 보관)

(다) 수락 순으로 위원 선정하고 소요인원이 확정되면 종결

(5) 평가위원 공개

선정된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 발표 시 공개한다. 단, 선정된 위원 중 입찰 참가업체와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사업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3) 감점기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난 후 평가결과 점수를 토대로 위원장 주관하에 합산과정에서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양식3)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술인평가서의 평가는 실명을 전제로 작성된 기술인평가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발주부서는 업체별 발표 및 개별질문이 완료된 후 비공개로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 및 면접 운영

(1) 발주부서는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기술인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책임기술인을 포함한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

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3)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발표 및 면접은 책임기술인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에 별도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를 평가위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수 있다.

(5) 책임기술인 발표 및 면접 시는 해당 당사인만 참석 가능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 직접 조작)

(6) 기술인평가서의 발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평가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는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나)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10분(입찰공고에 명시) 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성내용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기술인평가서와 작성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마. 평가기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따른 방법으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시는 수행능력(수행실적 +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심의내용

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2)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설명내용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등 입찰서류를 기술인평가서 평가 이전에 사전심사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규정 및 지침사항, 감점기준 등의 위배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시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하여야 한다.

(3) 감점기준

(가)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판단하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1) 지정 도서매수 초과 및 누락

2) 칼라 사용 위반

3)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등

(다) 감점기준은 입찰공고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

평가항목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인평가서	- 쪽수초과	쪽당 0.5점	
	-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 칼라 사용 위반	쪽당 0.5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5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쪽당 0.5점	
책임기술인 발표	- 발표시간 초과	0.1점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점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라) 발주부서는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보완토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또는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가) 발주부서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기준상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평가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입찰공고 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발주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에서 지침서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나)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 홈페이지)

(다) 평가사유서는 평가 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되 계량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또는 기술인평가서의 일부)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의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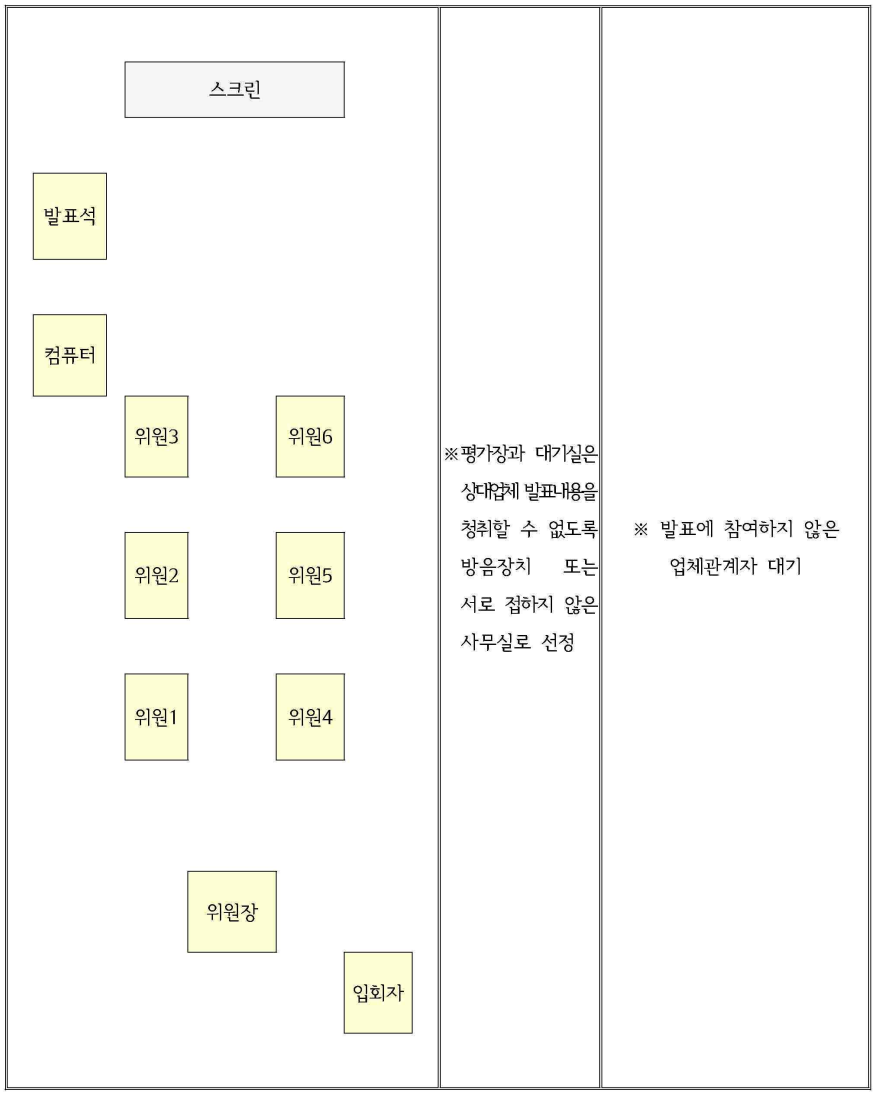
사. 평가결과의 녹음 및 기록관리

평가과정의 모든 절차는 사진촬영, 녹음 등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업체의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술인평가서 평가 진행절차(예시) 〕

【단계】	【진행 절차】	【주요 내용】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 후보 연락순서 및 업체 발표순서 추첨	- 발주부서장 주재, 업체대표가 추첨 - 업체대표 참석
	↓	
	평가위원 후보 연락 및 평가위원 선정	- 발주부서장 주재, 발주부서 직원 전화연락 - 업체대표 참석
	↓	
평가 진행	위원장 인사말씀	- 위원장 주재 - 평가위원, 업체발표자, 입회자 참석
	↓	
	사업개요 설명	담당팀장 → 평가위원 ※ 업체관계자는 퇴장
	↓	
	기술인평가서 요약발표	업체 발표 ※ 타 업체는 퇴장
	↓	
	질의 및 답변	평가위원↔해당업체 발표자
	↓	
	기술인평가서 평가	평가위원
	↓	
	감점사항 제출	발주부서 → 평가위원
	↓	
	입회자 평가서 서명	입회자 서명
	↓	
	평가종료	평가서 발주부서에 제출

〔 평가장 및 업체대기실 배치도(예시) 〕



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사항은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다)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는 실명성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라)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로서의 자격이 실격처리 된다.

(2) 기술인평가서의 포함사항

(가) 기술인평가서의 작성 시 본절 "2.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절 "2.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포함할 사항

1) 설계팀의 구성 체계

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라) 수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2) 과업 단계별 주요업무

3)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4) 관련 계획 및 법령 검토사항과 설계적용 방안

5)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마) 수행방법에 포함할 사항

1)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

2)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4) 전문가 활용계획

5) 기타 의견 및 추가사항

(3) 기술인평가서의 제출 및 반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기술인평가서 제출 시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와 함께 청렴서약서(양식4)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받은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수정·보완 및 관리

(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보완요구 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는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서류보완 등 절차이행 후 봉인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실시 전 입찰참가업체 및 평가위원 입회하에 개봉한다.

(5) 기술인평가서 제출 기한 및 규격 관련

(가) 기술인평가서 작성기간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작성기한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기술인평가서의 작성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의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 제한” 규정에 따라 A4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3)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한다. (예 : 15-1, 15-2 ……, 15-26)

(다)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표지, 요약서, 목차 등을 포함하여 A4 15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편집(맥편집, 스케치) 및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 간지, 비교 노선도, 원본의 제출문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단,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한정하여 원본에만 첨부하는 부록에 표기할 수 있다.

2) 기술인평가서 표지는 양식2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평가서 제출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세부 작성지침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사항

(가) 설계팀의 구성 체계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수행 체계도를 알기 쉽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가 해당 용역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VE, LCC, 경관설계, 내진설계 등) 및 특정 기술인(해당 용역의 특정 설비 등)를 포함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수행 체계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1)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시하는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발주부서가 사전에 요구한 기술인에 한정한다.

4)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 경험(세부내용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1) 참여기술인은 현재 수행 중인 사업과 해당 사업의 주요 업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업무 강도가 과다한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해당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와 업무 강도 감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과업 단계별 주요업무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부서가 제시한 관련 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

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발주부서가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해당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책임기술인은 관련계획 조사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 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라)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용역의 특정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정한다.

3)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및 문서편집

(1) 기술인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표지

(나) 요약(5쪽 이내로 작성)

(다) 목차

(라) 본문

(2) 문서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 ×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 A3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쪽은 A4 규격 2쪽으로 산정

(다) 줄 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색채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진,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바) 쪽 번호는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3) 표지작성

제안서의 표지는 양식2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A4(210mm ×297mm)

2) 재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2. 기술인평가서(서식)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발주부서 ○○명)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 용역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 . . .

신 청 인 : (인)

장 귀하

---------- 절 ------ 취 ------ 선 ----------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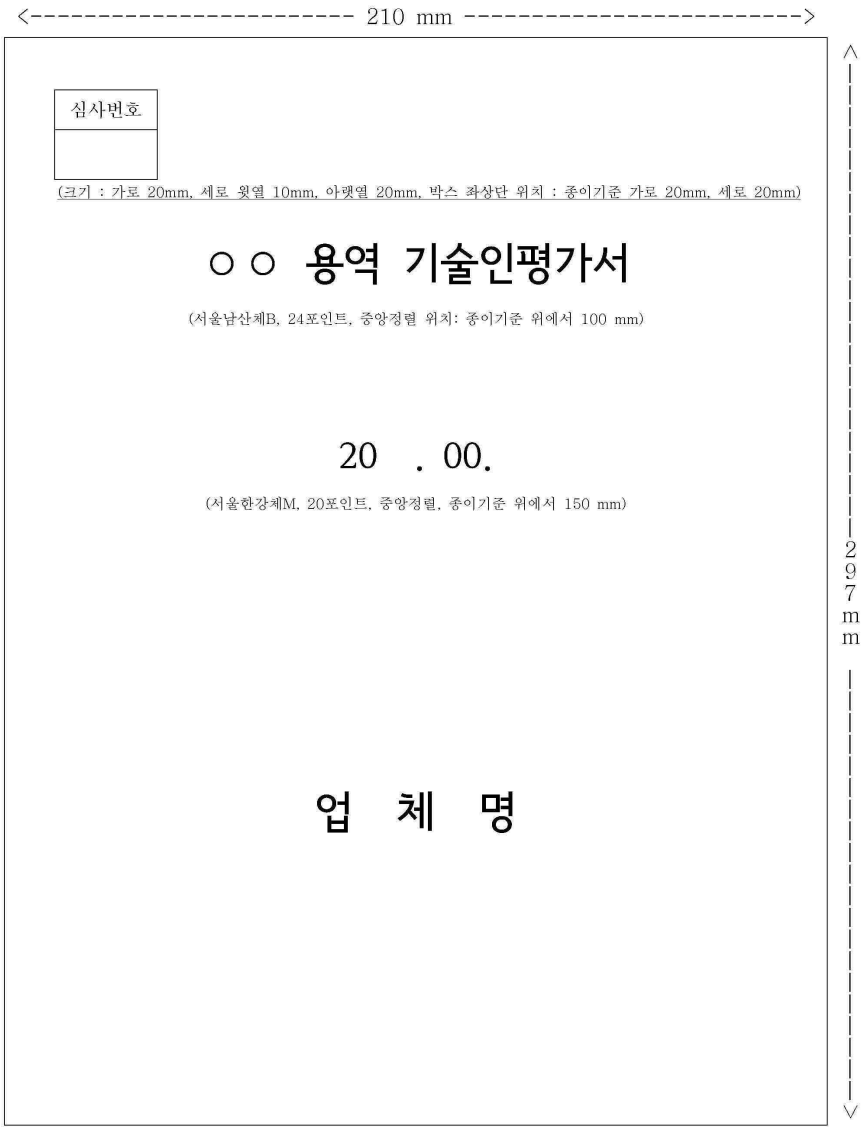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H.P.)	
주 소				

접 수 일 : 20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 기술인평가서

(양식 2)



심사번호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용역 기술인평가서

(서울남산체B,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서울한강체M, 20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 체 명

297mm

210mm×297mm

(백상지(80g/㎡))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요약서 (5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목차

(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1.1 설계팀의 구성체계(제안 팀의 조직도 포함)(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설계팀의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표현한 수행체계 조직도 제시
* 수행실적 평가 시 제출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용역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 특정 기술인 포함(역할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7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1) 사업책임기술인			
a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 사업규모 및 금액, 용역수행상 주안점, 사업 수행성과, 역할 및 참여정도 등을 기술		5) 비고 * 현 회사 수행실적 여부 *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 대상 용역 여부 등 기재
b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c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d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e	1) 사업명(수행기간)	2) 시행청(연락처)	3) 용역 평가점수
	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table>
<tr><td colspan="4">(2) 00분야 책임기술인(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td></tr>
<tr><td rowspan="2">a</td><td>1) 사업명(수행기간)</td><td>2) 시행청(연락처)</td><td>3) 용역 평가점수</td></tr>
<tr><td colspan="2">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td><td>5) 비고</td></tr>
<tr><td rowspan="2">b</td><td>1) 사업명(수행기간)</td><td>2) 시행청(연락처)</td><td>3) 용역 평가점수</td></tr>
<tr><td colspan="2">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td><td>5) 비고</td></tr>
<tr><td colspan="4">(2) 00분야 책임기술인</td></tr>
<tr><td rowspan="2">a</td><td>1) 사업명(수행기간)</td><td>2) 시행청(연락처)</td><td>3) 용역 평가점수</td></tr>
<tr><td colspan="2">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td><td>5) 비고</td></tr>
<tr><td rowspan="2">b</td><td>1) 사업명(수행기간)</td><td>2) 시행청(연락처)</td><td>3) 용역 평가점수</td></tr>
<tr><td colspan="2">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td><td>5) 비고</td></tr>
</table>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 비고에 표기
* 용역 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table>
<tr><td colspan="4">(2) 00분야 책임기술인(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td></tr>
<tr><td rowspan="2">a</td><td>1) 사업명(수행기간)</td><td>2) 시행청(연락처)</td><td>3) 용역 평가점수</td></tr>
<tr><td colspan="2">4) 사업수행실적 및 경험</td><td>5) 비고</td></tr>
<tr><td rowspan="2">b</td><td>1) 사업명(수행기간)</td><td>2) 시행청(연락처)</td><td>3) 용역 평가점수</td></tr>
<tr><td colspan="2">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td><td>5) 비고</td></tr>
<tr><td colspan="4">(2) 00분야 책임기술인</td></tr>
<tr><td rowspan="2">a</td><td>1) 사업명(수행기간)</td><td>2) 시행청(연락처)</td><td>3) 용역 평가점수</td></tr>
<tr><td colspan="2">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td><td>5) 비고</td></tr>
<tr><td rowspan="2">b</td><td>1) 사업명(수행기간)</td><td>2) 시행청(연락처)</td><td>3) 용역 평가점수</td></tr>
<tr><td colspan="2">4)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td><td>5) 비고</td></tr>
</table>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 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 비고에 표기
* 용역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현재 수행 중인 사업	시행청 (연락처)	중복일	주요 역할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도 로				
	구 조				
	토 질				
	시 공				
	:				
업무하중 감소방안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 수행계획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2.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2.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2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해당 설계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사업책임	
도로분야	
토질분야	
구조분야	
시공분야	
: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1.2 과업단계별 주요업무(2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주요업무 및 특이사항
사업책임	
도로분야	
토질분야	
구조분야	
시공분야	
: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1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주요업무		작업계획(월)																							참여자 (투입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조사	1)																									
	2)																									
	3)																									
	4)																									
	:																									
계획	1)																									
	2)																									
	3)																									
	4)																									
	:																									
설계	1)																									
	2)																									
	3)																									
	4)																									
	:																									
성과품 작성	1)																									
	2)																									
	3)																									
	4)																									
	:																									

* 용역수행 일정계획 제시(계획, 조사, 설계, 성과품 작성의 4단계를 기반으로 주요 업무별 일정 제시)

*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3 관련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방안(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과 관련한 관련계획을 나열하고 관련계획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2.4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1Page 이내)(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을 포함한 사업수행과정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 수행방법(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3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3.1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설계오류 및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정함(책임기술인 위주로 기술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험도 추가 가능)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2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나,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설계성과품 품질 향상방안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4 전문가 활용계획(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특수기술인/전문가에 대한 활용계획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3.5 기타 의견 및 추가사항(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 수행관련 기타 의견제시사항,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재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양식 3 - 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임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4 - 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제 I 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제4절.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4절.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업무수행 시 담당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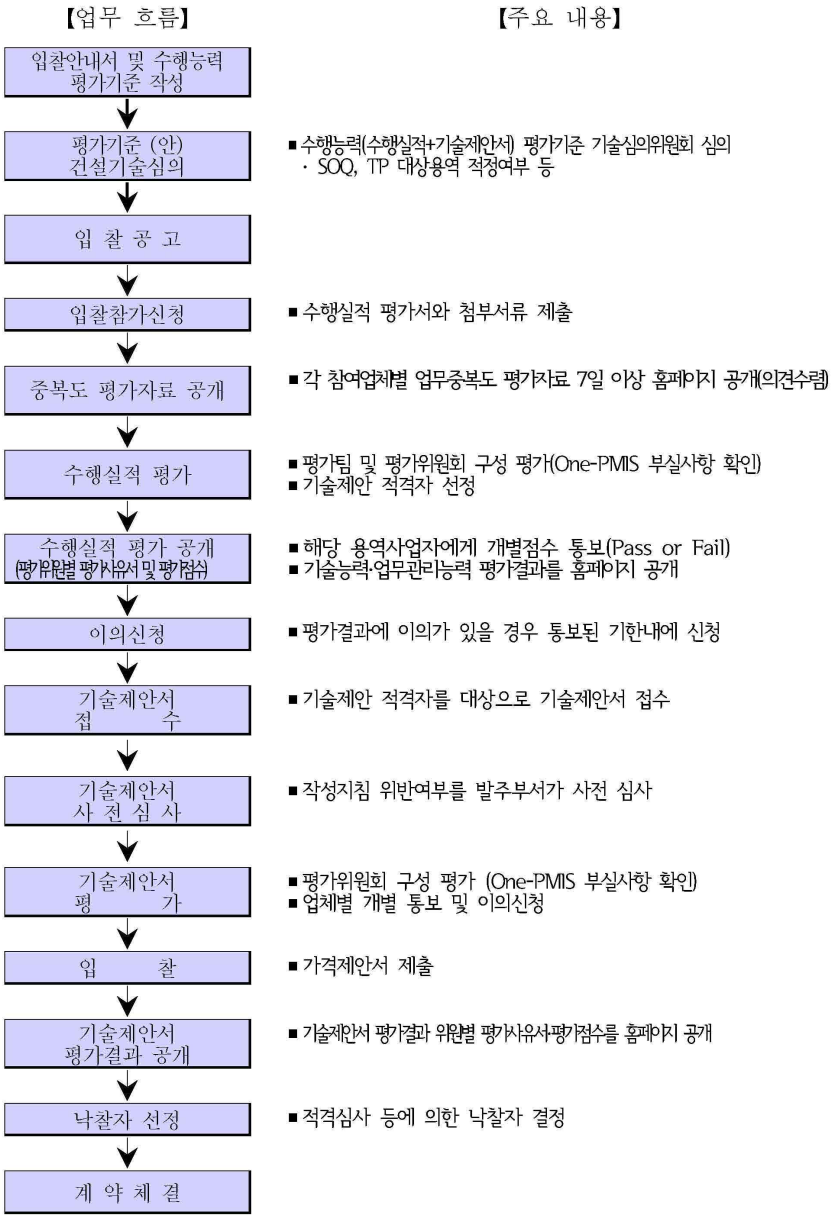
(1) “기술제안 적격자”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2) “입찰참가 적격자”란 기술제안 적격자 중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 친환경 건설기법, 용역 수행계획 및 방법 등 작업계획 및 기법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4)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기술제안서 평가 규정에 따라 해당 발주부서에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기술제안서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절차



(1)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시 해당 설계용역이 제안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해당 설계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해당 설계용역의 입찰 참여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작성지침에 따른다.

(4) 수행실적 평가는 제1장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결과 및 제안서 평가 참여 적격여부를 해당 입찰참여자에게 통보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참여자 중 기술제안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토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시한다.

(8)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9) 제안서 평가는 해당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10)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11)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제안서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1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라. 용역의 공고 및 입찰 등록

(1)사전준비

(가) 발주부서는 해당사업이 기술제안서 평가용역 선정 금액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한 설계 경험 및 기술제안, 소량의 국내 설계실적, 신기술 · 신공법 등 기술제안서 평가가 필요한 용역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술제안서 평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해당사업이 기술제안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용역의 목적과 제안내용의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제안서 평가대상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는 제안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찰공고시 제시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제안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설계용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입찰안내서의 작성

(가) 입찰안내서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규모, 조건 등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입찰안내서에는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는 사항과 사전준비과정에서 결정된 기술제안서 평가의 목적과 제안내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행계획, 수행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기술제안서 평가대상 용역임을 명시)
2) 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5) 입찰에 관한 사항
6) 부록(관련 양식 등)

(라) 입찰안내서에 포함될 내용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가 추가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입찰안내서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입찰안내서에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 ≫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개요, 기술제안서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등)
2.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3. 입찰일정 및 제공자료(발주부서 제공 열람 및 제공자료 목록 제시)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1. PQ심사 개요
2.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
5. 심사결과의 통보

제3장 기술제안서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 기술제안서 평가 개요
2. 기술제안서 제출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심사기준 및 방법(실격 및 감점기준 포함)
5. 심사결과의 통보

제4장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기술제안서의 구성
3. 기술제안서 작성 일반사항(기술제안의 내용 및 범위)
4.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지침(수행계획, 수행방법, 신기술·신공법 등 도입,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기술 향상, 기타 등)

제5장 기술제안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1. 평가 일반사항
2.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3. 기술제안서 평가 절차 및 방법
4. 평가세부기준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제6장 입찰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2. 제안사항의 채택 및 불채택
3. 가격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낙찰자 결정방식
5. 기타 특기사항

부록
1. 관련 양식
2. 참고자료

(3) 입찰공고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전에 기술제안서 대상용역 적정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영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에 입찰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에게 평가 세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마)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입찰공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기술제안의 내용 및 범위
4) 예정 용역비
5) 입찰일정
6) 수행실적 평가 면제 업체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7)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

(사)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관계자 또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아) 발주부서는 입찰안내서와 함께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전(前)단계 조사 또는 용역 설계도서, 보고서, 계산서 등 자료일체를 입찰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가 제공자료를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공의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한 열람, 원본자료의 복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원본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한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제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기술제안서, CD 또는 DVD, 청렴서약서 등이 있으며, 발주자는 용역의 성격에 맞게 제출도서의 범위와 종류를 선택하여 입찰 시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의 목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양식1)

2) 기술제안서(양식2, 검토 노선도 포함)

3) USB, CD 또는 DVD (기술제안서 발표시 발표내용 포함)

4) 청렴서약서(양식4)

5) 기타 발주부서가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사전 명시)

(다)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택배나 우편에 의한 제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방법, 도착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30)		- 참여기술인의 경력	12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7	
		- 설계팀의 구성체계	3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수행방법(35), 기타(5) 평가시는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3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5	
수행계획 및 방법 (70)	수행계획 (20)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0	
	수행방법 (35)	-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 경관설계 등 -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35	
	기술향상 (10)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10	
	기타(5)	-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이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가중치

< 상대평가 시 신청자 수 별 평가등급 배분 >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 수 결정

< 평가등급별 가중치 >

- 평가등급별 가중치는 평가항목별(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로 구분 적용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설계팀의 구성체계	1.00	0.98	0.96	0.94	0.92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	1.00	0.95	0.90	0.85	0.80
	수행방법					
	기술향상					
	기타 (발표 및 면접)	1.0	0.9	0.8	0.7	0.6

다. 기본사항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의 세부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인의 경력,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환산 점수

→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평가점수(배점 27점) × 12/27

나)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환산점수

→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실적 평가점수(배점 18점) × 7/18

(2)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설계팀의 구성체계,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과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방법은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평가 항목별로 상대평가하여 평가 등급을 결정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3) 발주부서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4) 발주부서는 기술제안서의 평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5)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발주부서는 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가. 위원회의 구성

(1) 발주부서는 기술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분야별 외부 심의위원과 5급 이상 공무원(내부 심의위원)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내부 심의위원은 평가위원의 50% 이내로 구성하며,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본부 산하 기획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도시철도국 등은 각각 실국으로 본다.

(3) 평가위원회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주기관(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 공무원) 내부직원 중 4급 공무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내부직원으로 선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중 발주부서장이 지명한 평가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5) 발주부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의 선정

(1) 선정절차

후보위원 명부작성(평가전일) → 연락순서 추첨(평가당일 오전) → 연락 및 수락순서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2) 평가위원 후보위원 명부작성

선정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명부를 작성하되 후보위원별 무작위로 정렬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밀봉·보관

(3) 연락순서 추첨

선정예정인원의 일정배수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후보자 명부의 번호지를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추첨 (입찰참가업체 미참석 시 발주부서 직원이 추첨)

(4) 연락 및 선정

(가) 입찰참가업체 입회하에 명부 개봉

(나) 추첨순서에 따라 후보위원 참석여부 유선 확인(통화 기록지 작성 보관)

(다) 수락순으로 위원 선정하고 소요인원이 확정되면 종결

(5) 평가위원 공개

선정된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 발표시 공개한다. 단, 선정된 위원 중 입찰참가업체와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1) 발주부서는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사업개요·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2) 감점기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난 이후, 평가결과 점수를 토대로 위원장 주관하에 합산과정에서 별도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양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술제안서 평가는 실명을 전제로 작성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부서는 업체별 발표 및 개별질문이 완료된 후 비공개로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 및 면접 운영

(1) 발주부서는 수행계획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서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책임기술인을 포함한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기타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3)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발표 및 면접은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술제안서 평가 시에 별도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를 평가위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수 있다.

(5) 책임기술인 발표 및 면접시는 해당 당사자만 참석가능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 직접 조작)

(6) 기술제안서의 발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가) 기술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는 타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나)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10분(입찰공고에 명시) 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성내용은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기술제안서와 작성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마. 평가기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1) 발주부서는 기술제안서 평가에 따른 방법으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시는 수행능력(수행실적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심의내용

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2) 평가세부기준 작성의 적정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설명내용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기술제안서 평가 이전에 사전심사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규정 및 지침사항, 감점기준 등의 위배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사전심사시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하여야 한다.

(3) 감점기준

(가)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판단하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1) 지정 도서매수 초과 및 누락

2) 칼라 사용 위반

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등

(다) 감점기준 및 총 감점 한도는 입찰공고 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

평가항목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제안서평가서	- 쪽수초과	쪽당 0.5점	
	-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 칼라 사용 위반	쪽당 0.5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5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쪽당 0.5점	
책임기술인 발표	- 발표시간 초과	0.1점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점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라) 발주부서는 필요시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보완토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심각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기술제안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가) 발주부서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기준상의 세부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평가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분명한 허위기재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발주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위반여부 등 결정

(나) 발주부서는 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사유서는 평가 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의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사. 평가결과의 녹음 등 기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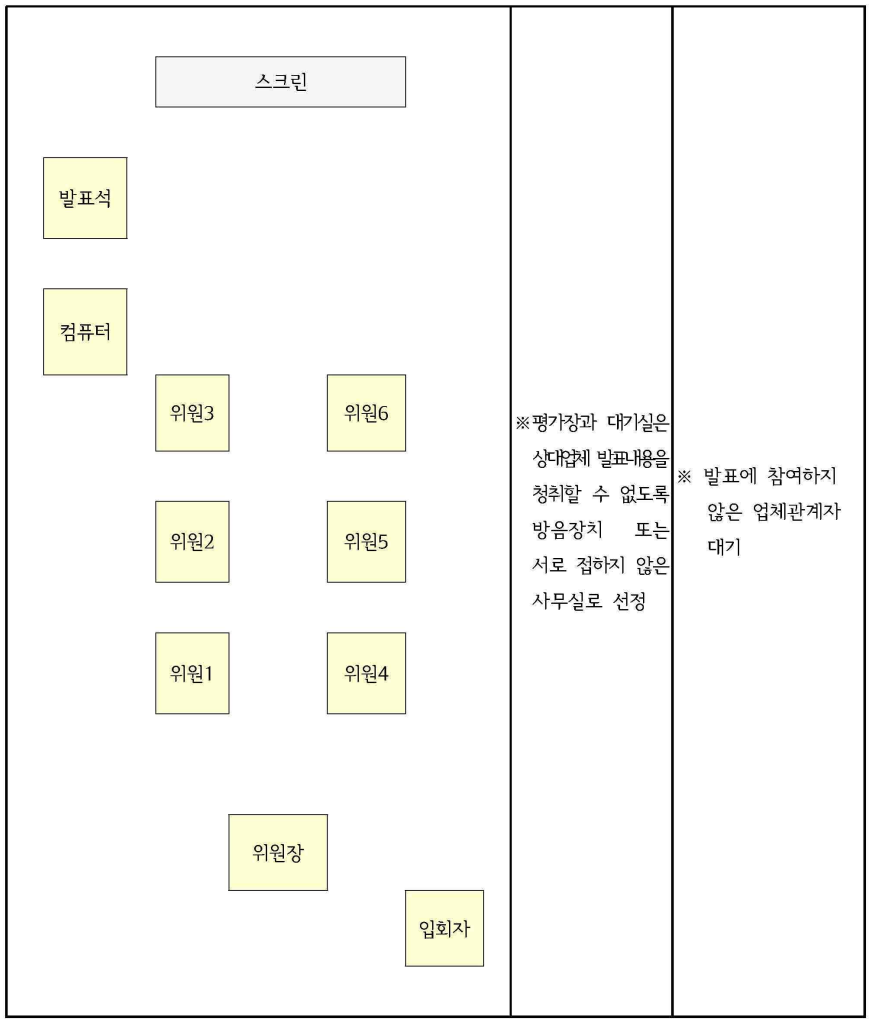
평가과정의 모든 절차는 사진촬영, 녹음 등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업체의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술제안서 평가 진행절차(예시) 〕

【단계】	【진행 절차】	【주요 내용】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 후보 연락순서 및 업체 발표순서 추첨	- 발주부서장 주재, 업체대표가 추첨 - 업체대표 참석
	↓	
	평가위원 후보 연락 및 평가위원 선정	- 발주부서장 주재, 발주부서 직원 전화연락 - 업체대표 참석
	↓	
평가 진행	위원장 인사말씀	- 위원장 주재 - 평가위원, 업체발표자, 입회자 참석
	↓	
	사업개요 설명	담당팀장 → 평가위원 ※ 업체관계자는 퇴장
	↓	
	기술제안서 요약발표	업체 발표 ※ 타 업체는 퇴장
	↓	
	질의 및 답변	평가위원↔해당업체 발표자
	↓	
	기술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	
	감점사항 제출	발주부서 → 평가위원
	↓	
	입회자 평가서 서명	입회자 서명
	↓	
	평가종료	평가서 발주부서에 제출

〔 평가장 및 업체대기실 배치도(예시) 〕

【평가장】 【업체 대기실】



4.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기술제안서 작성의 기본원칙

(가) 기술제안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기술제안의 목적과 제안수준에 부합하도록 제공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기술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 제출되는 기술제안서는 실명성을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라)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로서의 자격이 실격처리 된다.

(2) 기술제안서의 포함사항

(가) 기술제안서의 작성은 본절 "2.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절 "2.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포함할 사항

1) 설계팀의 구성 체계

2)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라) 수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4)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5) 현장조사, 관련계획 조사 및 관련 계획 간의 연계의 적정성

6)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마) 수행방법에 포함할 사항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2)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3)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4)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하는 특정업무, 공종에 대한 수행방법

5) 경관설계 등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바) 기술향상에 포함할 사항

1)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2) 3차원 시뮬레이션, 경관 디자인 설계, 3차원 설계기법 도입 등 설계 개선방안

3)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3) 기술제안서의 제출 및 반환

(가) 기술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제출 시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양식 1)와 함께 청렴서약서(양식 4)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받은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라) 기술제안서에 포함되는 신기술(건설신기술 등)에 대한 사용결과와 특허권, 실용실안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재료, 공법의 사용결과는 기술제안을 한 입찰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기술제안서의 수정 및 보완

(가)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보완 요구기한까지 기술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는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서류보완 등 절차이행 후 봉인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실시 전 입찰참가업체 및 평가위원 입회하에 개봉한다.

(5) 기술제안서 제출 기한 및 규격 관련

(가) 기술제안서 작성기간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개별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작성기한을 연장, 또는 감축할 수 있다.

(나) 기술제안서의 작성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비교 노선도에 한정하여 3쪽의 범위 안에서 칼라표기를 인정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비교 노선도는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A4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 제한” 규정에 따라 A4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 적용하여야 한다. (예: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3)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한다.(예 : 30-1, 30-2 ……, 30-30)

(다) 제안서의 분량은 표지, 요약서, 목차 등을 포함하여 A4 25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및 바탕면 · 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 간지, 비교 노선도, 원본의 제출문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단, 각종 산출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본에만 첨부하는 부록에 표기할 수 있다.

2) 기술제안서 표지는 양식 2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술제안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서 제출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세부 작성지침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에 관한 사항

(가) 설계팀의 구성체계

1) 기술제안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제시한 참여기술인의 구성체계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수행체계도를 알기쉽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가 해당 용역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VE, LCC, 경관설계, 내진설계, 등) 및 특정 기술인(해당 용역의 특정설비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수행 체계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설계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경험

1)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시하는 실적에 포함되는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 및 성과를 사업명 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계량화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제시하는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발주부서가 사전에 요구한 기술인에 한정한다.

4)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 경험(세부내용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1) 참여기술인는 현재 수행 중인 사업과 해당 사업의 주요 업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업무 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는 업무 하중이 해당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와 업무 하중의 감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 기술제안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제시된 기술제안 내용 및 범위 등을 반영하여 제안자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제안자가 검토한 후, 기술제안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 복합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제안자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도로사업의 경우 과업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는 검토 노선도를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1) 기술제안서 작성자는 해당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부서가 제시한 관련 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자는 발주부서가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해당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도 포함시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라) 문제점 분석 및 처리대책

1) 제안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4) 제안자는 해당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관련계획 조사 및 관련 계획 간의 연계의 적정성

1) 제안자는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관련계획조사 및 관련계획 간의 연계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제안자는 현장조사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의 주요 항목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1) 제안자는 수행계획에서 제시된 제안을 토대로 발주부서가 제시한 사업목표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반드시 발주부서 및 제안자가 제시하는 충족 요건을 병기하여야 한다.

(3)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가)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1) 제안자는 수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업 단계별로 조사할 항목과 조사를 위한 작업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작업방법에는 조사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명기하고, 조사를 위한 팀 구성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나)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

1) 작성자는 교통·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영향평가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명시하고, 평가결과의 산출시점을 일정상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관련 법령에 의해 발주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용역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상, 기술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법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공사기간,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5) 친환경 건설기법 중 건설폐자재 활용에 대해서는 건설폐자재의 발생 정도를 예측하여 타당하게 제시하고 설계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경관 설계 등

1) 지구단위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경관 관련 계획, 해당 사업의 입지 특성과 주변 자연·인문환경을 고려하여 경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경관설계 핵심 주제 1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관설계(예시 포함)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구체적인 경관설계(예시 포함)가 제시된 경우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관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 단계별 경관전문가 참여 계획 또는 관련 경관 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의 적용성

1) 책임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용역의 특정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한다.

(마)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하는 특정 업무, 공종에 대한 수행방법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1) 제안자는 수행방법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추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핵심사항과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자는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대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4)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가)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1)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에 관련된 제안에서는 대상 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 적용 대상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제안자는 신기술·신공법 적용에 따른 활용규모를 제시하고, 실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적용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적용에 따른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자는 제안한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관련 기술자료를 첨부로 별도 제시할 수 있으나, 적용 기술당 1페이지를 넘을 수 없다.

4) 제안자는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 등의 발생 등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3차원 시뮬레이션, 경관 디자인 설계, 3차원 설계기법 도입 등 설계 개선방안

1) 제안자는 해당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다양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자료와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에 이를 기술자료 활용사항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하며, 제안자는 그 기술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1) 제안자가 생애주기 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법과 비교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경제성 측면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소요비용은 시공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수선비용, 교체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안자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 고려 대상 시설물의 부위 및 공종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설계기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구체적인 산출자료는 부록에 첨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자료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기술제안서의 구성 및 문서편집

(1) 기술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표지

(나) 요약(5쪽 이내로 작성) - 기술인평가서 양식 사용

(다) 목차 - 기술인평가서 양식 사용

(라) 본문 - 기술인평가서 양식 준용

(2) 번호체계

(가) 평가항목(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수행방법, 기술향상)

서울한강체M(진하게), 15포인트, 가운데정렬, 문단여백 없음

(나) 세부평가항목(설계팀의 구성체계,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문단여백 없음

(다) 세부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문단여백 없음

(라)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 가) / (1) / (가)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왼쪽 각 단계별 두 글자씩 여백 증가

(3) 문서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 ×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규격 1쪽은 A4규격 2쪽으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색채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진,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바) 쪽 번호는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4) 표지작성

(가) 제안서의 표지는 양식2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A4(210mm ×297mm)

2) 재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양식 1.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2. 기술제안서(서식)

(양식 1)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발주부서 ○○명)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용역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 . . .

신 청 인 : (인)

장 귀하

절 취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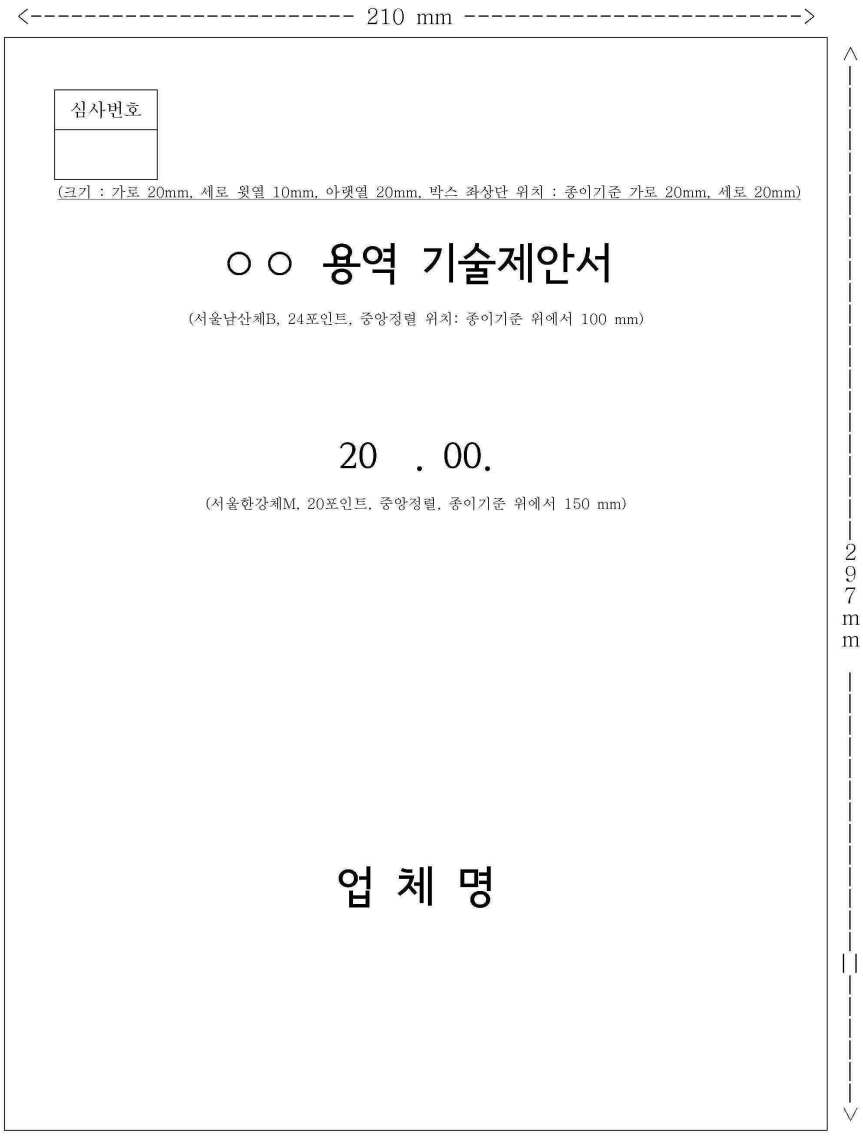
기술제안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양식 2)



심사번호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용역 기술제안서

(서울남산체B,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서울한강체M, 20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 체 명

297mm

210mm×297mm
(백상지 80g/㎡)

(양식 3 - 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임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4 - 기술제안서 제출업체용)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절 적용기준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기술인평가서 평가)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절 적용기준(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기술인평가서 평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산하 사업소, 자치구, 투자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란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입찰안내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방법)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용역금액 및 공종에 따라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 평가"라 한다),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서 평가"라 한다)로 구분되며 적용범위는 본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4조(수행실적 평가 적용범위) 수행실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인평가서 평가 적용범위) ① 기술인평가서 평가는 용역비 및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의 요구정도,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국가유산인 경우 등)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기술인평가서 평가 적용범위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비 20억원 이상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호의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특수교량, 댐,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 시설의 공사

나. 건축공사 : 대경간 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공사, 환승·복합 역사공사

다. 플랜트공사 :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 설비공사, 고도처리방식에 따른 정수장 공사, 하수폐수 처리공사, 폐기물소각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 열병합·발전설비 공사

②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평가부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다경쟁 등이 우려되어 평가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평가부서를 달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배점기준) ① 수행실적 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있어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네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실적 평가"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고,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기술인평가 평가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를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행실적 평가,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 시 공시한다.

- 발주부서는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입찰참가 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시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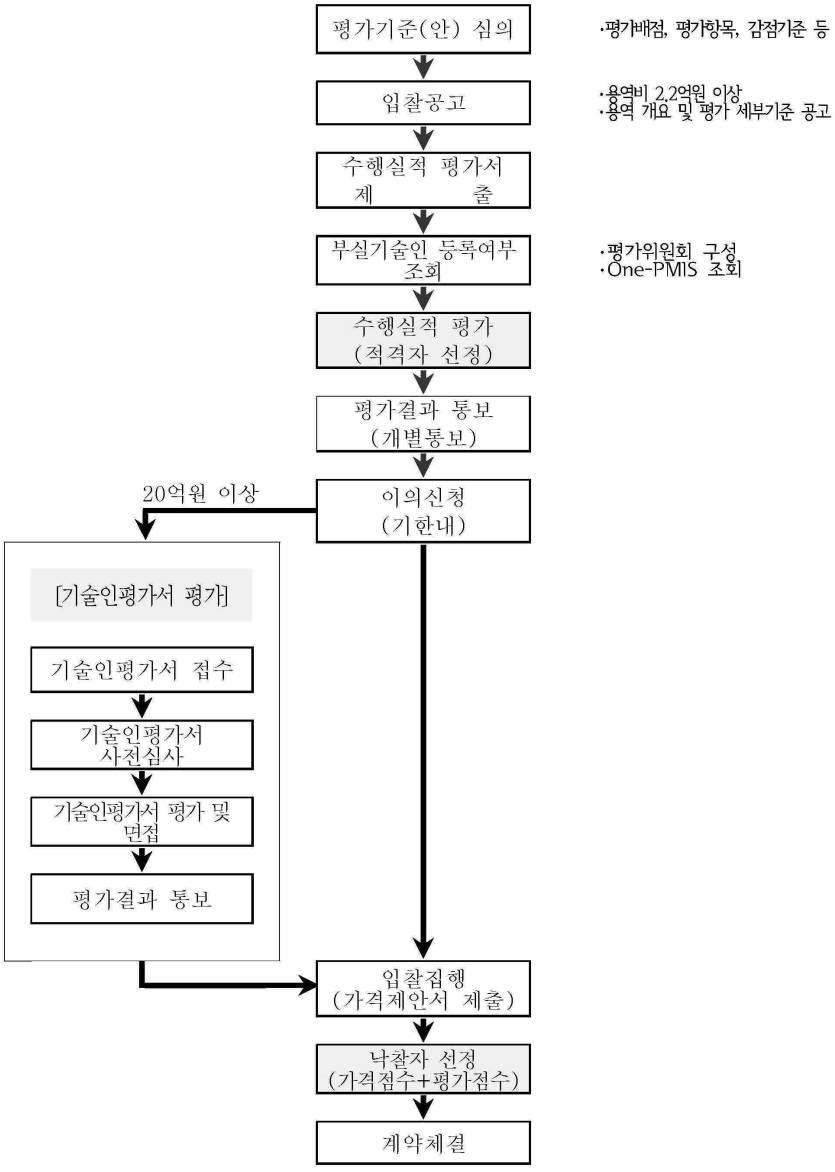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절차도

2.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용역 선정기준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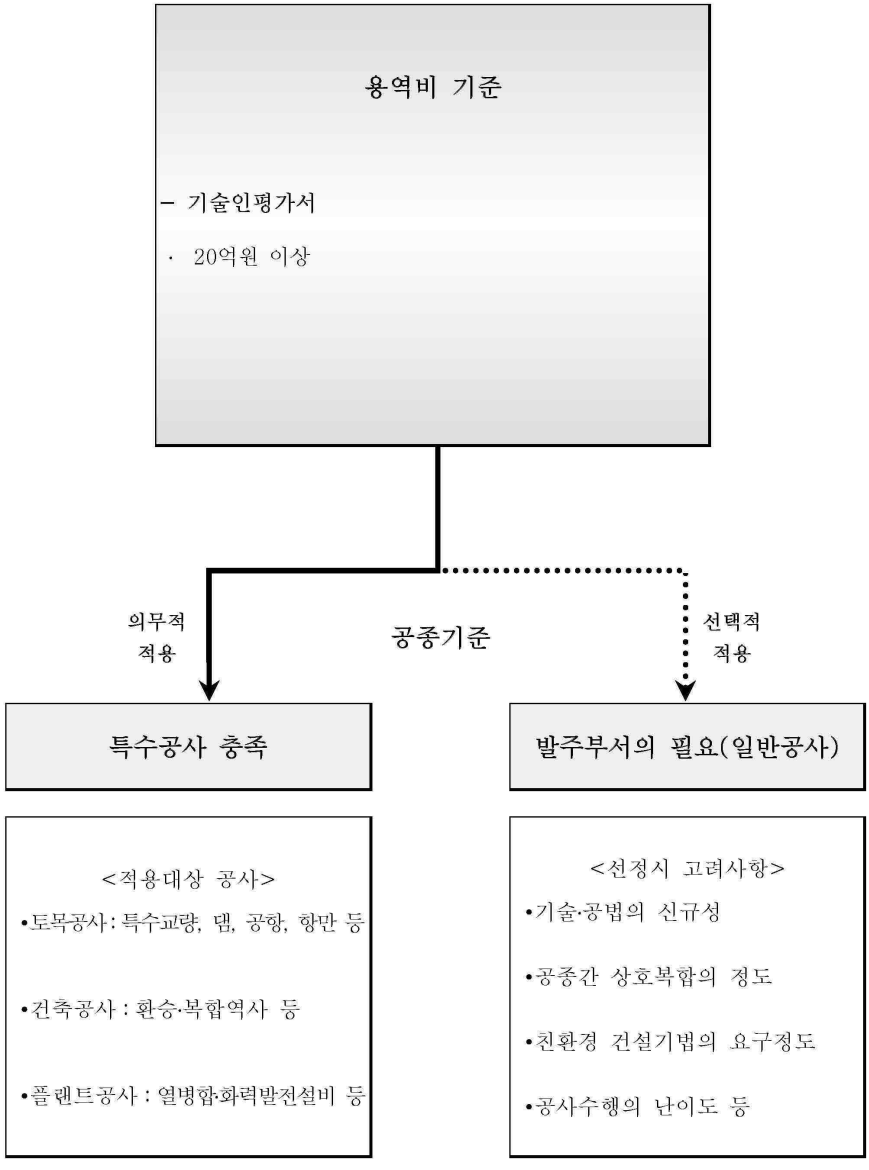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절차도

(용역비 2.2억원 이상)



첨부 2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용역 선정기준



기술인평가서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예시)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도 로	①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경간장 100m 이상 특수교량 ② 3km 이상 해저 또는 하저터널 ③ 도시부 장대지하도로(500m 이상) ④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⑤ 출입시설(완전입체교차) 신설, 확장 개량 설계 용역 및 공용 중인 기존교량(경간장 100m 이상)의 전면 개량 설계 용역 ⑥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 환경보호·보전지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으로 지정된 지역 및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수자원	① 댐(총 저수량 1천만톤 이상) ② 배수갑문(2,000㎥/sec 이상)
철 도	① 장대교(연장 400m 이상, 경간장 70m 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 ② 철도차량기지 ③ 일반터널(3km 이상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④ 도심구간 ⑤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로 지정된 구역, 환경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분야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공 항	①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플랜트	①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②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건 축	①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③ 다중이용건축물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기 타	① 하저터널 ② 첨단교통체계 시설 ③ 설계 예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계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④ 기타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어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공사의 설계용역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수행실적 평가) 세부기준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 평가) 세부기준

1. 일반 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추정가격 2.2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수행실적 평가)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시 담당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중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업체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이란 입찰공고문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평가방법 및 절차

(1)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수행실적 평가(PQ)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중에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제외사유를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나머지 다른 건설사

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발주부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업무 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부서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외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인 투입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발주부서는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발주부서는 참여기술인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수행실적 평가(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나) 수행실적 평가(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발주부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양식 3)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발주부서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

로 총 7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부서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부서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2)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입찰참가자로 선정하고,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용역사업자에 대해서만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3) 발주부서는 각 사업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추정가격 2.2억원) 이상의 용역 추진시 "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이하 “건설기술심의”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 없이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14)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수행실적 평가팀 : 절대평가 항목 평가

1) 구 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2) 평가방법 : 수행실적 평가기준(평가 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나) 수행실적 평가위원회 : 상대평가 항목 평가

1) 구 성 : 내부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 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2) 위 원 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의 5급 이상 공

무원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4) 평가결과 공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발표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5)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영 제4조 별표 1의 제2호에 의하여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자에 의한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16)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부서는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소 2인 이상을 평가하여야 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는 전원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조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미평가자는 기술인의 등급을 명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17) 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1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행실적 평가(PQ)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20) 주된 공종 결정은 해당 공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터널, 교

량, 지하철, 고가차도 등)하되, 시공단계 수행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경력자) 1인 또는 2인의 기술인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 기술지원기술인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대상의 모든 분야에 배치하되, 안전관리분야를 포함 최소 5개 분야 이상 되도록 기술지원기술인 투입계획을 수립한다

(2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점), 우(90점), 미(80점), 양(70점), 가(60점)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15)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부서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2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시공단계 상주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영 별표 3 제2호나목2)나)(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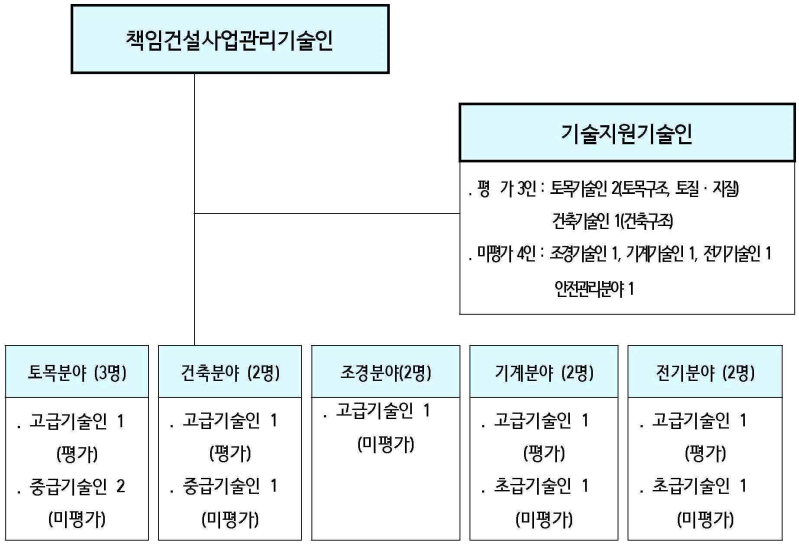
(24)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면접발표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업무 담당자를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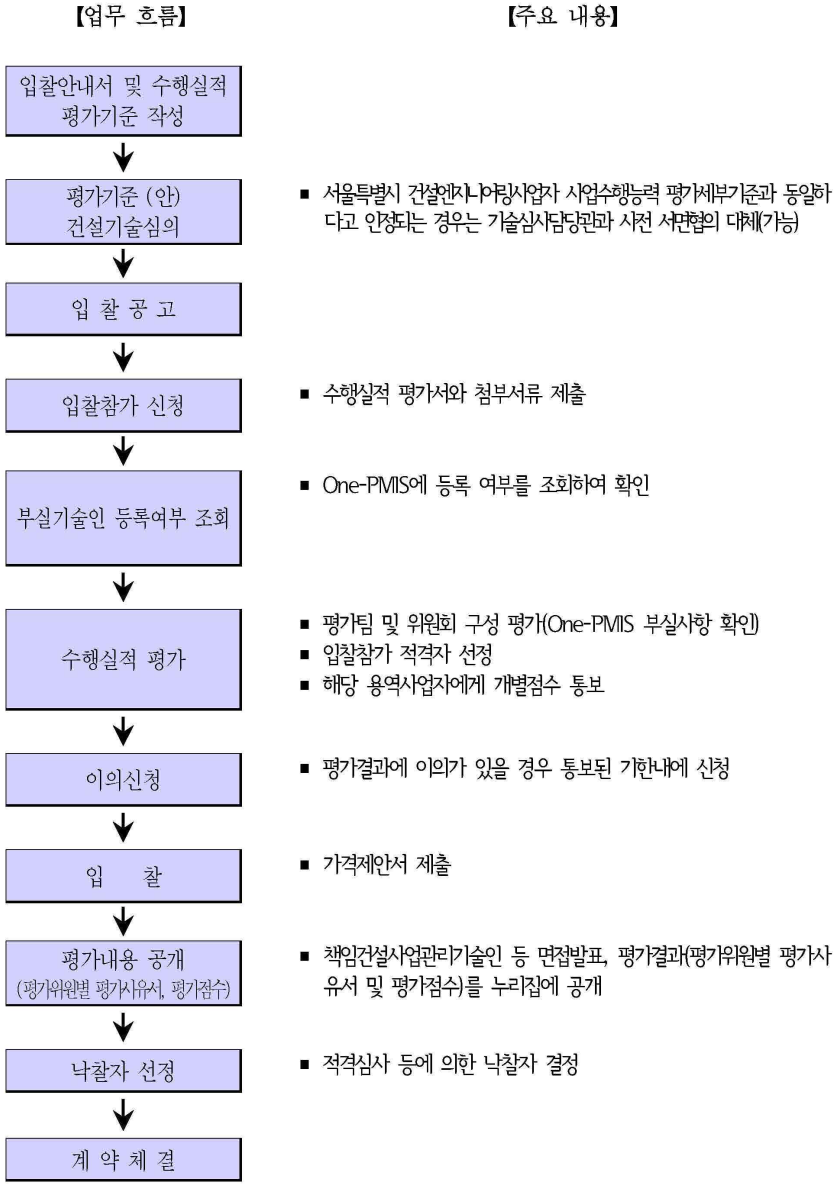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5)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 만 명시)



(26)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7)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수행실적 평가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절차



(1)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수행실적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작성지침에 따른다.

(4)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행실적 평가서 접수 시 불법하도급 감독소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One-PMIS(최근 5년이내)에 조회하고 해당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 발표 시 최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발표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위반사항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하여야 하고, 입찰공고 시 공고하여야 한다.

〈 비리감점 규정 〉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해당 심의만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6) 발주부서의 장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7)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기술인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2. 평가 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6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20)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경 력	15(10)	
		실 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23)	등 급		절대평가
		경 력	15(13)	
		실 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6	
		교육훈련	1	
	면접발표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5)	상대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회사실적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신 용 도 (15)	업무정지	지정기간	7	절대평가
	벌점	부과기간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3	절대평가
	투자실적		7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2	
합 계			100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10	절대평가

비고

1. 참여기술인의 ( )의 배점은 사업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적용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이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시 면접발표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 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 가
요 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
참
여
기
술
인
(60)</td><td>(1) 책임
건설사
업관리
기술인</td><td>25
(20)</td><td>○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함</td></tr>
<tr><td></td><td>(가)해당
분야
경력</td><td>15
(10)</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td></tr>
<tr><td>1,000억원 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8이상</td><td>8미만
7이상</td><td>7미만</td></tr>
<tr><td>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6이상</td><td>6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td><td>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td><td>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td></tr>
<tr><td>점수</td><td>15
(10)</td><td>13.5
(9)</td><td>12
(8)</td><td>10.5
(7)</td><td>9
(6)</td></tr>
</table>
※( )의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td></tr>
<tr><td></td><td>(나) 직무
분야
실적</td><td>9</td><td>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6점)
<table>
<tr><td>등 급</td><td colspan="5">점 수 (단위 : 년)</td></tr>
<tr><td>특급기술인</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고급기술인</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점수</td><td>6</td><td>5.7</td><td>5.4</td><td>5.1</td><td>4.8</td></tr>
</table></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 가
요 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
참
여
기
술
인</td><td></td><td></td><td>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3점)
<table>
<tr><td>등 급</td><td colspan="5">점 수(단위: 년)</td></tr>
<tr><td>특급기술인</td><td>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고급기술인</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점수</td><td>3</td><td>2.8</td><td>2.6</td><td>2.4</td><td>2.2</td></tr>
</table></td></tr>
<tr><td></td><td>(다) 교육
훈련</td><td>1</td><td>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table>
<tr><td>구분</td><td>2주 이상</td><td>1주 이상 2주 미만</td></tr>
<tr><td>점수</td><td>0.5</td><td>0.3</td></tr>
</table>
2) 기술자격
<table>
<tr><td>구분</td><td>기술사·건축사</td><td>기사</td><td>산업기사</td></tr>
<tr><td>점수</td><td>0.5</td><td>0.3</td><td>0.1</td></tr>
</table></td></tr>
<tr><td></td><td>(2)분야별
건설사
업관리
기술인

(가)해당
분야
경력</td><td>15
(13)</td><td>ㅇ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기술인의 인원수 및 기술인 등급을 결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공고 시 제시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월)</td></tr>
<tr><td>300억원 이상</td><td>34이상</td><td>34미만
30이상</td><td>30미만
26이상</td><td>26미만
22이상</td><td>22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td>26이상</td><td>26미만
21이상</td><td>21미만
16이상</td><td>16미만
10이상</td><td>10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td><td>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10이상</td><td>10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점 수</td><td>15
(13.0)</td><td>13.5
(11.7)</td><td>12.0
(10.4)</td><td>10.5
(9.1)</td><td>9.0
(7.8)</td></tr>
</table></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
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11">가.
참
여
기
술
인</td><td rowspan="5">(나)직무분야실적</td><td rowspan="5">9</td><td>○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 사업관리(5점)
<table>
<tr><th>등 급</th><th colspan="5">점 수(단위 : 년)</th></tr>
<tr><td>특급기술인</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6이상</td><td>6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고급기술인</td><td>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중급기술인</td><td>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점 수</td><td>5.0</td><td>4.5</td><td>4.0</td><td>3.5</td><td>3</td></tr>
</table>
○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 사업관리(4점)
<table>
<tr><th>등 급</th><th colspan="5">점 수(단위 : 년)</th></tr>
<tr><td rowspan="2">특급기술인</td><td>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td></tr>
<tr><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r><td rowspan="2">고급기술인</td><td colspan="2">3이상</td><td colspan="2">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d>1미만</td></tr>
<tr><td colspan="2">4.0</td><td colspan="2">3.6</td><td>3.2</td><td>2.8</td></tr>
<tr><td rowspan="2">중급기술인</td><td colspan="3">2이상</td><td colspan="3">2미만</td></tr>
<tr><td colspan="3">4.0</td><td colspan="3">3.6</td></tr>
</table></td></tr>
<tr><td>(다)교육훈련</td><td>1</td><td>○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table>
<tr><td>구분</td><td>2주 이상</td><td>1주 이상 2주 미만</td></tr>
<tr><td>점수</td><td>1</td><td>0.5</td></tr>
</table>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td></tr>
<tr><td rowspan="4">(3)기술지원기술인
(가)등급</td><td rowspan="4">(10)
3</td><td rowspan="4">○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 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table>
<tr><td>해당 공사규모</td><td colspan="2">등 급(점수)</td></tr>
<tr><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이상</td><td>특급기술인</td><td>고급기술인 이하</td></tr>
<tr><td>3</td><td>2</td></tr>
<tr><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미만</td><td>고급기술인 이상</td><td>중급기술인</td></tr>
<tr><td>3</td><td>2</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 가
요 소</th><th>배 점</th><th colspan="6">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7">가.
참
여
기
술
인</td><td rowspan="6">(나) 해당
분야
경력</td><td rowspan="6">6</td><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경력 (단위 : 년)</td></tr>
<tr><td>1,000억원 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
<tr><td>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점수</td><td>6</td><td>5.7</td><td>5.4</td><td>5.1</td><td>4.8</td></tr>
<tr><td>(다) 교육
훈련</td><td>1</td><td colspan="5">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table><tr><td>구분</td><td>2주 이상</td><td>1주 이상 2주 미만</td></tr><tr><td>점수</td><td>0.5</td><td>0.3</td></tr></table>
2) 기술자격
<table><tr><td>구분</td><td>기술사·건축사</td><td>기사</td><td>산업기사</td></tr><tr><td>점수</td><td>0.5</td><td>0.3</td><td>0.1</td></tr></table>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정하여 적용</td></tr>
<tr><td>(4)면접
(발표)</td><td>(7)</td><td colspan="5">ㅇ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업무수행능력 : 3점(1)
-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 〕
<table><tr><td>구 분</td><td>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td><td>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td></tr><tr><td>점 수</td><td>5</td><td>2</td></tr></table>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자료는 양식16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면접평가는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평가시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품질 및 안전사고 등 부실사항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활용)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은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11.30.) 이행 관련)</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 가
요 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td><td>(1)유사용
역 수
행실적</td><td>8</td><td>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2)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8)
<table>
<tr><th>해당 공사규모</th><th colspan="5">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th></tr>
<tr><td>3,000억원 이상</td><td>80이상</td><td>80미만
70이상</td><td>70미만
60이상</td><td>60미만
50이상</td><td>50미만</td></tr>
<tr><td>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td><td>60이상</td><td>60미만
55이상</td><td>55미만
50이상</td><td>50미만
45이상</td><td>45미만</td></tr>
<tr><td>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td><td>50이상</td><td>50미만
45이상</td><td>45미만
40이상</td><td>40미만
35이상</td><td>35미만</td></tr>
<tr><td>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td><td>40이상</td><td>40미만
35이상</td><td>35미만
30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td></tr>
<tr><td>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td><td>30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td>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10이상</td><td>10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td><td>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
<tr><td>점수</td><td>8</td><td>7.8</td><td>7.6</td><td>7.4</td><td>7.2</td></tr>
</table>
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8)
<table>
<tr><th>해당 공사규모</th><th colspan="5">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th></tr>
<tr><td>1,000억원 이상</td><td>30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
<tr><td>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td><td>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10이상</td><td>10미만</td></tr>
<tr><td>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td><td>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10이상</td><td>10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1이상</td><td>11미만
7이상</td><td>7미만
4이상</td><td>4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td><td>10이상</td><td>10미만
7이상</td><td>7미만
4이상</td><td>4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점수</td><td>8</td><td>7.8</td><td>7.6</td><td>7.4</td><td>7.2</td></tr>
</table>
4)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 공사이거나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위 2)와 3)을 참고하여 용역수행실적을 작성(8)</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2)용역수행성과</td><td>2</td><td>1)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table><tr><th>용역평가 결과</th><th>95점 이상</th><th>95점 미만 92점 이상</th><th>92점 미만 89점 이상</th><th>89점 미만 86점 이상</th><th>86점 미만</th></tr><tr><td>점수</td><td>2점</td><td>1.8점</td><td>1.6점</td><td>1.4점</td><td>1.2점</td></tr></table>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발주부서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기준 제시)</td></tr>
<tr><td>다. 신용도 (15)</td><td>(1)영업(업무)정지</td><td>7</td><td>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td></tr>
<tr><td></td><td>(2)벌점</td><td>5</td><td>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영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 영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td></tr>
<tr><td></td><td>(3)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한다
<table><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td></tr></table>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 가
요 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td><td>(1)개발·
활용
실적</td><td>3</td><td>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점수</th></tr>
<tr><td>개발실적</td><td>건설신기술</td><td>2.0점/건당</td></tr>
<tr><td rowspan="2">활용실적</td><td>건설신기술</td><td>0.5점/건당</td></tr>
<tr><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td>0.3점/건당</td></tr>
</table>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가 중 치</th></tr>
<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
<tr><td>실적건수
(건)</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실적금액
(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td></tr>
</table>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table>
<tr><th>구 분</th><th>5년미만</th><th>5년이상
10년미만</th><th>10년이상
20년미만</th></tr>
<tr><td>인정률</td><td>100%</td><td>80%</td><td>60%</td></tr>
</table>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 가
요 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2)투자
실적</td><td>7</td><td>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table>
<tr><td>구분</td><td>1.5%이상</td><td>1.50%미만
1.25%이상</td><td>1.25%미만
1.00%이상</td><td>1.00%미만
0.75%이상</td><td>0.75%미만
0.50%이상</td><td>0.5%미만</td></tr>
<tr><td>점수</td><td>7</td><td>6.8</td><td>6.6</td><td>6.4</td><td>6.2</td><td>6.0</td></tr>
</table>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td></tr>
<tr><td>마.
교
체
빈
도
(5)</td><td>(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td><td>3</td><td>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table>
<tr><td>교체빈도율
(%)</td><td>5%미만</td><td>5%이상
10%미만</td><td>10%이상
15%미만</td><td>15%이상
20%미만</td><td>20%이상</td></tr>
<tr><td>점 수</td><td>3</td><td>2.5</td><td>2</td><td>1</td><td>0</td></tr>
</table></td></tr>
<tr><td></td><td>(2) 참여기술인</td><td>2</td><td>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td></tr>
</table>

다.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점</td><td>(1)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점)</td><td>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부서(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부서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table>
<tr><td>가중치</td><td>1.0</td><td>0.8</td><td>0.5</td></tr>
<tr><td>절감금액</td><td>10억원 이상</td><td>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td>5억원 미만
1억원 이상</td></tr>
<tr><td>절감비율</td><td>1.0% 이상</td><td>1.0% 미만
0.5% 이상</td><td>0.5% 미만
0.1% 이상</td></tr>
</table></td></tr>
</table>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정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 14)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부서,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부서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정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1) 부패행위 관련자 (10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해당 발주부서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부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방법

〈 해당 분야 경력 〉

- 해당 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부서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참여기술인 1인 또는 2인 범위에서 해당 분야 경력을 구체화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실적 등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또는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 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해당 분야 이외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업무 실적은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비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외의 경력 업무실적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직무분야 실적 〉

-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의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예시)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교통 등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 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5점(20점)

(가) 해당 분야 경력(15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평가 하는 경우 10점)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8이상	8미만 7이상	7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0억원 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15 (10)	13.5 (9)	12 (8)	10.5 (7)	9 (6)

※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참여기술인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해당 분야 경력을 구체화하여 해당 분야 경력 평가

(나) 직무분야 실적(9점)

〈 배 점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6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7	5.4	5.1	4.8

-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3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년미만
점수	3	2.8	2.6	2.4	2.2

(다) 교육훈련(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 기술자격 〉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5점(23점)

(가) 해당 분야 경력(15점, 면접평가 하는 경우 13점)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경력(단위 : 월)				
300억원 이상	34이상	34미만 30이상	30미만 26이상	26미만 22이상	22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6이상	26미만 21이상	21미만 16이상	16미만 10이상	10미만
100억원 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15 (13)	13.5 (11.7)	12 (10.4)	10.5 (9.1)	9 (7.8)

※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구간 중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 포함된 공사는 참여기술인 1인 또는 2인 범위내에서 해당 분야 경력을 구체화하여 해당 분야 경력 평가

(나) 직무분야 실적(9점)

〈 배 점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5점)

등 급	점 수 (단위:년)				
특급기술인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고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급기술인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5	4.5	4.0	3.5	3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4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4	3.6	3.2	2.8	2.4
고급기술인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4	3.6	3.2	2.8	
중급기술인	2이상		2미만		
	4		3.6		

(다) 교육훈련(1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배 점 〉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1	0.5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 : 10점

- 기술지원기술인는 가능한 건설사업관리대상의 모든 분야에 배치하되, 안전관리분야를 포함하여 5개 분야 이상이 되도록 기술지원기술인 투입계획을 수립할 것

- 기술지원기술인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이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

하여는 발주부서에서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등급평가(3점)

- 영 제4조 별표 1의 제2호 (전기분야의 기술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 규모별 절대평가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3	2

(나) 해당 분야 경력(6점)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경력(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 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0	5.7	5.4	5.1	4.8

(다) 교육훈련(1점)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배 점(교육훈련) 〉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 배 점(기술자격) 〉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정하여 적용

(4) 면접·발표(7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 실시 : 면접 또는 발표시 해당 당사자 외에 컴퓨터조작 보조자 등의 참석은 불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자료는 양식16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면접 또는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의 기기를 직접 조작

- 점수산정방법 : 각 항목별 점수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합계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점〕

※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 3점(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점)

구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점수	5	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발표시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기술인(부실기술인)인지를 One-PMIS(최근 5년 이내)에 조회한 후 해당될 경우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 11. 30.) 이행 관련〕

※ 면접평가는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건설사업관리용역 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및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 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조정

·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 10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함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 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관리 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이거나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아래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을 작성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실적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비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외의 경력 업무실적 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또는 해당 발주부서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의 실적증명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수행 중인 용역의 기성실적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에 신고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만 인정함
-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의 70% 인정)×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70% 인정)×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배 점 〉

(1) 기술용역실적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8점)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단위 : 억원)				
3,000억원 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 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8	7.8	7.6	7.4	7.2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8점)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1,0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1이상	11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8	7.8	7.6	7.4	7.2

예시) 발주부서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 한 경우 유사용역 실적평가는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 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 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 8점(공동도급시 해당 점수임)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3.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2) 용역수행성과(2점)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다. 신용도 평가방법 : 15점

(1) 영업(업무)정지 (7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벌점 (5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영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영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신용평가도 등급(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가능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 : 10점

(1) 개발·활용실적 (3점)

-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투자 실적 (7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마. 교체빈도 평가방법 : 5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 배 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 기술인 (2점)

-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평가방법 : 0.2점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

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 14)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부서,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4.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1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나)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전력)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라) 소방공사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양식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2)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동의서 (양식3)

4)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5) 공동수급 협정서

6)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 (양식4)
7)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5)
8)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9) 상주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경력확인서
10) 상주 분야별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경력확인서
11)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확인서
12) 참여 기술인 경력·실적사항 (양식6)
13)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7)
14)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15)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양식8)
16) 제재현황 및 벌점 확인서
17)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양식9)
1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10)
19) 재무제표 확인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20)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2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22) 투자실적관련 사실증명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2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4)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25)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양식11)
2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교체빈도(양식12)
27) 벌점 관련 사항 (양식13)
28)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관련 사항 (양식14)
29) 감점 및 가점 사항(양식15)
3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양식16)
3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17)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실시하는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등 면접·발표시는 해당당사자 외에 컴퓨터조작 보조자 등의 참석은 불가(면접 또는 발표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를 직접 조작)

(다)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라)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양식 1〕

접수번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붙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양식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동의서

□ **용 역 명 :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귀 00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분야 (책임 / 분야별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술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상기인의 용역 참여를 확인합니다.

확 인 자 회 사 명 :
대표 이사 : (인)

000000 귀하

[양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table>
<tr><th>구 분</th><th>업체명</th><th>주소</th><th>대표자</th><th>전화</th><th colspan="2">출자비율</th><th>비고</th></tr>
<tr><td rowspan="3">공동이행</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6">분담이행</td><td rowspan="2">업체명</td><td rowspan="2">주소</td><td rowspan="2">대표자</td><td rowspan="2">전화</td><td colspan="2">분담내용</td><td rowspan="2">비고</td></tr>
<tr><td>업종</td><td>비율</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 colspan="2">100%</td><td></td></tr>
</table>

[양식 5]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주민등록번호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수료일자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6]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사항

□ 해당 분야 경력현황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 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부서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 직무분야 실적현황

구 분	성 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부서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양식 7]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구 분		발 주 처	사 업 명	용역기간	용역비 (천 원)	기간비율	적용금액 (천원)	용역개요	분 야
완료	전체 단계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설계 단계								
		소 계							
	시공 단계								
		소 계							
	건축·주택 감리								
		소 계							
	설계 용역								
		소 계							
	계								
진행	전체 단계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설계 단계								
		소 계							
	시공 단계								
		소 계							
	건축·주택								
		소 계							
	설계 용역								
		소 계							
	계								
합계									

※ 1. 유사용역 사업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종합, 건축, 토목, 설비, 전기 분야로 구분)

2.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위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만 인정

3.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 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양식 8]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양식 9]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ㅇ 신용평가 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 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 실적

구분	배점/건	업체명	건 명	출원자	출원일 (경과기간)	보호기간 (존속만료일)	평가점수	비고
건설 신기술	2.0점	A사						
		B사						

○ 활용 실적

구분	업체명	건 명	출원자	출원 일자	보호기간 (존속만료일)	경과 기간	활용 건수	실적금액 (천원)
건설신기술	A사							
	B사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A사							
	B사							

구분	배점/건	경과년수	업체명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참여지분율 *사용실적	합계	가중치	평가점수
건설신기술	0.5점	보호기간 확 인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	5년 미만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10년 미만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20년 미만	A사	건/ 억원	건/ 억원	건/ 억원		
			B사	건/ 억원	건/ 억원			
합계 점수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 1. 신기술지정증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사본
2. 특허증 사본,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 사본

○ 투자실적

업체명	구 분	1년차 (백만원)	2년차 (백만원)	3년차 (백만원)	1+2+3년차합계 (백만원)	비율(%)	평가점수	참여 지분율	최종점수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 점수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 · 분석 · 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양식 1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		점 수	비 고
		현 장 명	배 치 기 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				
	○○○				
	○○○				
	○○○				
	계				
기술지원 기술인	○○○				
	○○○				
	○○○				
	○○○				
	계				
총 계					

[양식 1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교체빈도

현장명	현장배치 기술인 수	교체건수		교체빈도(%)	비고
		상주기술인	비상주 기술인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 고
참 여 기술인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기술지원 기술인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계				

[양식 13]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벌점	벌점점수	비고
계				

[양식 14]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 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여부	절감기여율(%)	절감금액(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기 관 장 직인

[양식 15]

가 점 및 감 점 확 인 서(건설사업관리)

○ 공사비 절감 기여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명	공사비 절감 사업명	총공사부기 계약금액(천원)	절감금액 (천원)	총절감금액 (억원)	절감 비율	가중치	평가점수
합계 점수							

▷ 실적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0%	80%	50%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1%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 해당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금액과 총공사 부기금액 대비 절감금액 비율을 포함하여 공사비 절감에 기여한 상주 참여기술인을 증명하는 확인서[양식 14]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구 분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명)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A 사					
	B 사					
합계 점수						

▷ 신규고용율에 따른 가점

구 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신규 고용율	0.1 점	0.2점	0.3점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증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정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부패 행위 관련자

구 분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일	총공사부기 계약금액(천원)	피해금액(억원)	감점
참여기술인	(성명)				
	(성명)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A 사				
	B 사				
합계 점수					감점 : 점

▷ 참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감점 적용 점수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총공사 부기 계약금액 기준)	감점	비고
3% 초과하거나 10억 초과	5점	
1%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 초과하거나 10억 이하	3점	
1% 이하이거나 3억 이하	1점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참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감점

[양식 1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1. 인적사항

소 속(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1. 주요경력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공사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공사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시공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해당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자유롭게 기술)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식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인평가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 시 담당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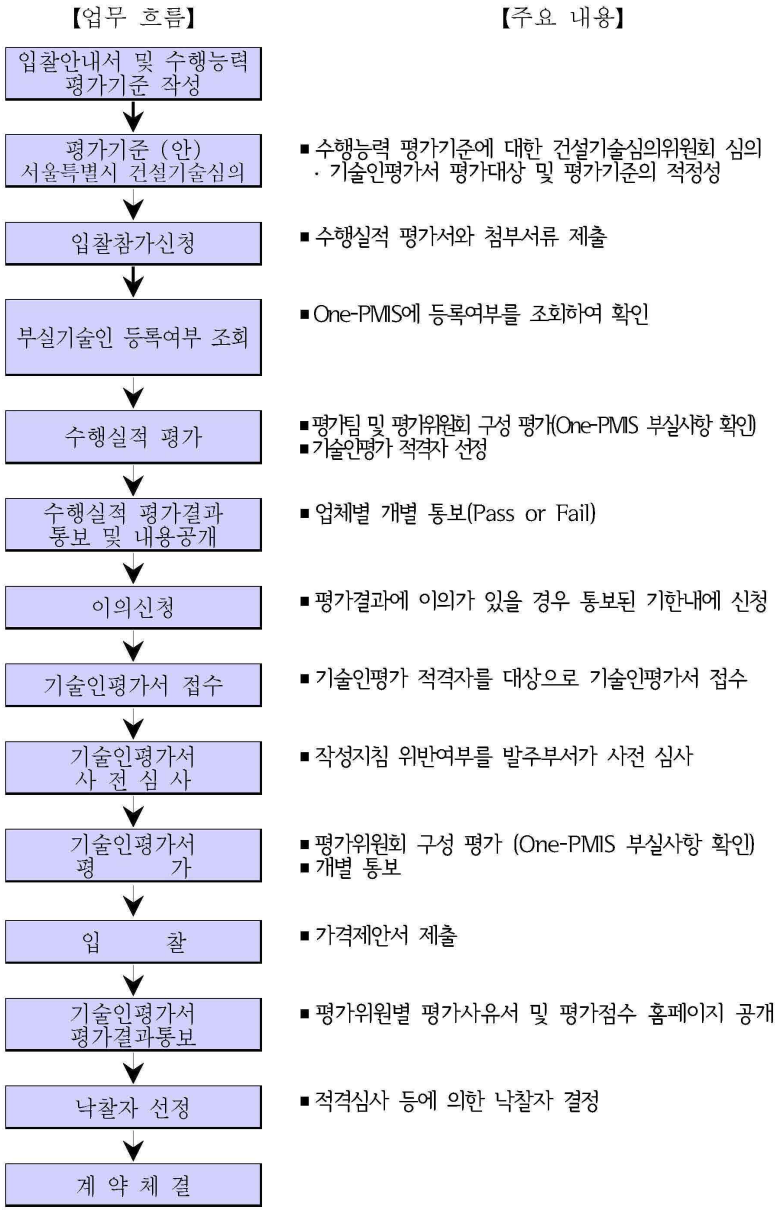
(1) “기술인평가 적격자”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인평가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2) “입찰참가 적격자”란 기술인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인평가서”란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참여기술인,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4)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기술인평가서 평가 규정에 따라 해당 발주부서에서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절차



(1)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문에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본절 "4.기술인평가서 평가방법"에 따른다.

(4) 수행실적 평가는 제2장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행실적 평가서 접수시 불법하도급 감독 소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One-PMIS(최근 5년이내)에 조회하고 해당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발표 및 면접 시 최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6)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 결과 및 기술인평가서 평가참여 적격여부를 해당 입찰자에게 통보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발표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7)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 중 기술인평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인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8)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기술인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시한다.

(9) 발주부서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인평가서가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0) 기술인평가서의 평가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11) 발주부서의 장은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통보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12)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3)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기술인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14)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발표 및 면접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라. 용역의 공고 및 입찰 등록

(1) 사전준비

(가)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 복합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해당사업이 기술인평가서 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용역의 목적과 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의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2) 입찰안내서의 작성

(가) 입찰안내서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규모, 조건 등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입찰안내서에는 사전준비과정에서 결정된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목적과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의 수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안내서의 일반적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임을 명시)

2) 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5) 입찰에 관한 사항

6) 부록(관련 양식 등)

(라)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가 추가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입찰안내서에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입찰공고

(가) 발주부서는 영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에 입찰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에게 평가 세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입찰희망자가 기술인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한 입찰공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 설계용역 사업명

2) 사업 시행기관

3)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 등에 대한 요구조건(구체적)

4) 예정 용역비

5) 입찰 일정

6) 기타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

(바) 제공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의 성격 및 특성에 맞게 발주부서가 제공자료를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입찰안내서(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및 관련서식 포함)

2) 공사관련 계획 및 설계도서 등

(4)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가)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한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제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기술인평가서, CD 또는 DVD, 청렴서약서 등이 있으며,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에 맞게 제출도서의 범위와 종류를 선택하여 입찰시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의 목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

2) 기술인평가서(양식2)

3) USB, CD 또는 DVD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발표시 발표내용 포함)

4) 청렴서약서(양식4)

5) 기타 발주부서가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사전 명시)

(다)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택배나 우편 등에 의한 제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방법, 도착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소계	70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수행실적 평가" 점수를 환산 하여 적용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5	1)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소계	30		
	1) 수행계획서	15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시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2) 수행방법	5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3)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 부실 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 입찰에 참여시 수행방법,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의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

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나.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상대평가 시 신청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 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 가 항 목		수	우	미	양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서	1.00	0.95	0.90	0.85	0.80
	수행방법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0	0.90	0.80	0.70	0.60

다. 기본사항

(1)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행실적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 환산점수 : "수행실적" 참여기술인 평가점수(배점60) ×45/60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환산점수 :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점수(배점10) × 10/10

(다) 신용도 환산점수 : "수행실적" 신용도 평가점수(배점15) × 15/15

(2)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 평가방법은 기술인평가서 평가 대상자를 기준으로 세부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세부평가 항목의 배점별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3)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4)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5)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가. 위원회의 구성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분야별 외부 심의위원과 5급 이상 공무원(내부 심의위원)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내부 심의위원은 평가위원의 50% 이내로 구성하며,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본부 산하 기획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도시철도국 등은 각각 실·국으로 본다.

(3) 평가위원회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주기관(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내부직원으로 위원장 선임이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중에서 발주부서장이 지명한 평가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5) 발주부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의 선정

(1) 선정절차

후보위원 명부작성(평가전일) → 연락순서 추첨(평가당일 오전) → 연락 및 수락순서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2) 평가위원 후보위원 명부작성

선정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명부 작성하되 후보위원별 무작위로 정렬된 고유번호 부여하여 밀봉·보관

(3) 연락순서 추첨

선정 예정인원의 일정 배수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후보자 명부의 번호지를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추첨(입찰참가업체 미참석 시 발주부서 직원이 추첨)

(4) 연락 및 선정

(가) 입찰참가업체 입회하에 명부 개봉

(나) 추첨순서에 따라 후보위원 참석여부 유선 확인(통화 기록지 작성 보관)

(다) 수락 순으로 위원 선정하고 소요인원이 확정되면 종결

(5) 평가위원 공개

선정된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결과 발표 시 공개한다. 단, 선정된 위원 중 입찰참가업체와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사업개요·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3) 감점기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난 후 평가결과 점수를 토대로 위원장 주관하에 합산과정에서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양식3)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술인평가서 평가는 실명을 전제로 작성된 기술인평가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발주부서는 업체별 발표 및 개별질문이 완료된 후 비공개로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 운영

(1) 발주부서는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 1인) 등의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 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수행방법,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의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 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용역발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3)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발표 시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기술인(부실기술인)인지를 One-PMIS(최근 5년이내)에 조회한 후 해당될 경우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 10. 30.) 이행 관련)

(5)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에 별도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를 평가위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수 있다.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발표 및 면접 시는 해당 당사자만 참석가능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 직접 조작)

(7) 기술인평가서의 발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평가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발표자는 타 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나)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10분(입찰공고에 명시) 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작성내용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기술인평가서와 작성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의사항 중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질문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질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마. 평가기준 심의위원회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1)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용역사업자 선정시는 수행능력(수행실적 + 기술인평가세)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심의내용

1) 평가 진행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설명내용

(가) 발주부서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등 입찰서류를 기술인평가서 평가 이전에 사전 심사하여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제 규정 및 지침사항, 감점기준 등의 위배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로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시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제하여야 한다.

(3) 감점기준

(가) 감점기준은 해당 기술용역 관련 규정(입찰유의서 등)과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사항을 대

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판단하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1) 지정 도서매수 초과 및 누락

2) 칼라 사용 위반

3)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등

(다) 감점기준 및 총 감점 한도는 입찰공고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

평가항목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인평가서	- 쪽수초과	쪽당 0.5점	
	-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 칼라 사용 위반	쪽당 0.5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5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 사용시	쪽당 0.5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발표	- 발표시간 초과	0.1점	
비리감점	-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점	
	-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라) 발주부서는 필요시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보완토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또는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기준

(가) 발주부서는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 기준상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평가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류의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 위반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발주부서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경우로서 평가위원회에서 지침서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나) 발주부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별 평가결과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평가사유서는 평가 항목별로 요구조건의 부합 정도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작성하되 계량적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발주부서는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또는 기술인평가서의 일부)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의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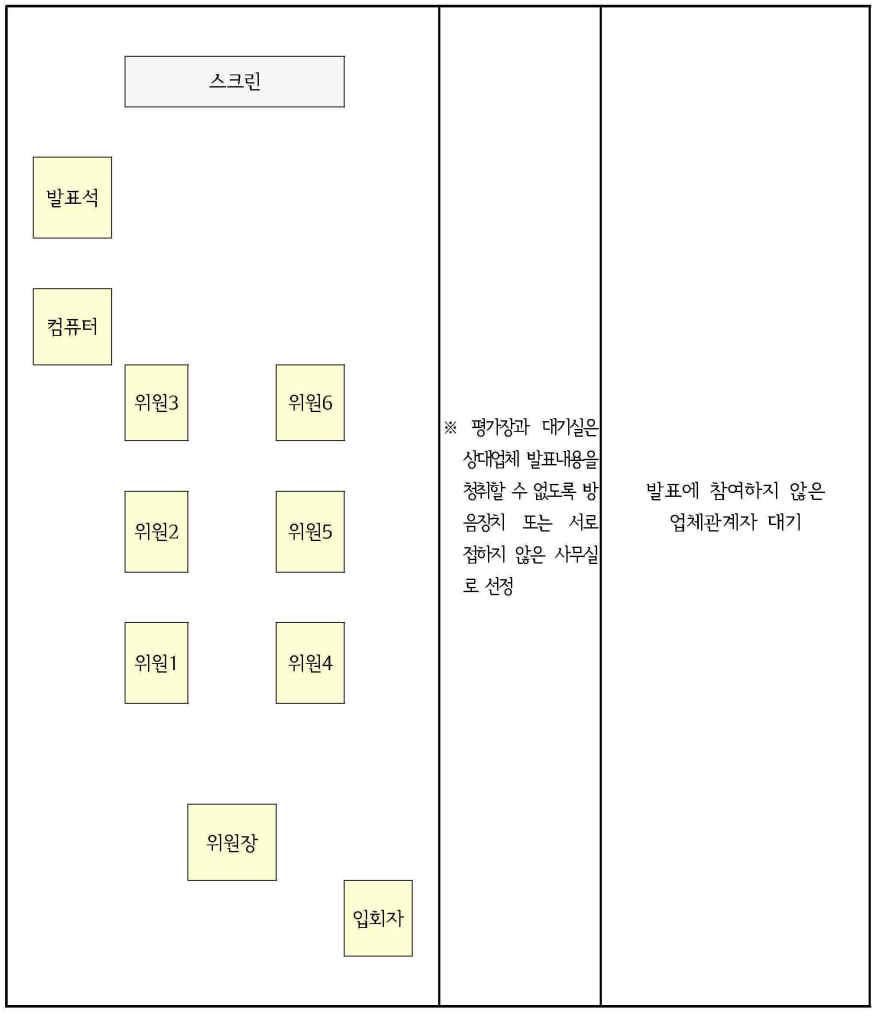
사. 평가결과의 녹음 및 기록관리

평가과정의 모든 절차는 사진촬영 및 녹음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업체의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술인평가서 평가 진행절차(예시) 〕

【단계】	【진행 절차】	【주요 내용】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 후보 연락순서 및 업체 발표순서 추첨	- 발주부서장 주재, 업체대표가 추첨 - 업체대표 참석
	↓	
	평가위원 후보연락 및 평가위원 선정	- 발주부서장 주재, 발주부서 직원 전화연락 - 업체대표 참석
	↓	
평가 진행	위원장 인사말씀	- 위원장 주재 - 평가위원, 업체발표자, 입회자 참석
	↓	
	사업개요 설명	담당팀장 → 평가위원 ※ 업체관계자는 퇴장
	↓	
	기술인평가서 요약발표	업체 발표 ※ 타 업체는 퇴장
	↓	
	질의 및 답변	평가위원↔해당 업체 발표자
	↓	
	기술인평가서 평가	평가위원
	↓	
	감점사항 제출	발주부서 → 평가위원
	↓	
	입회자 평가서 서명	입회자 서명
	↓	
	평가 종료	평가서 발주부서에 제출

〔 평가장 및 업체대기실 배치도(예시) 〕



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본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을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사항은 해당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다)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는 실명성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인평가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2) 기술인평가서의 포함사항

(가) 기술인평가서의 작성은 본절 "2. 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용역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절 "2.평가기준"에 있는 평가항목의 세부사항과 평가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에 포함할 사항

※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하므로 자료작성 불필요

(라)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에 포함 할 사항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3) 기술인평가서의 제출 및 반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기술인평가서 제출 시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양식1)와 함께 청렴서약서(양식4)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 받은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반환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다)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수정·보완 및 관리

(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인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보완 요구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한다.

(라)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는 발주부서의 사전심사 및 서류보완 등 절차이행 후 봉인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실시 전 입찰참가업체 및 평가위원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5) 기술인평가서 제출 기한 및 규격 관련

(가) 기술인평가서 작성기간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작성 기한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기술인평가서의 작성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의 규격은 A4 종으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쪽수제한” 규정에 따라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3)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한다.(예 : 13-1, 13-2 …, 13-13)

(다)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표지, 요약서, 목차 등을 포함하여 A4 13쪽 이내로 제한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및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 간지, 비교 노선도, 원본의 제출문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 표지는 첨부 2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한된 분량 안에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 사항이 부록이나 첨부로 제시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의 ‘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인평가서 제출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세부 작성지침

(1) 참여기술인의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는 발주부서가 교부한 제공도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 복합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

1)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라)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등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기술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평가서의 구성 및 문서편집

(1) 기술인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표지

(나) 요약(5쪽 이내로 작성)

(다) 목차

(라) 본문

(2) 문서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 ×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쪽은 A4 규격 2쪽으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색채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진, 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바) 쪽 번호는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3) 표지작성

(가) 제안서의 표지는 양식2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A4(210mm ×297mm)

2) 재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검퓨터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 신청서

2. 기술인평가서(서식)

(양식 1)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발주청 ○○명)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용역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 . . .

신 청 인 : (인)

장 귀하

- - - - - - - - - 절 - - - - - - - 취 - - - - - - - 선 - - - - - - - - - -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H.P.)	
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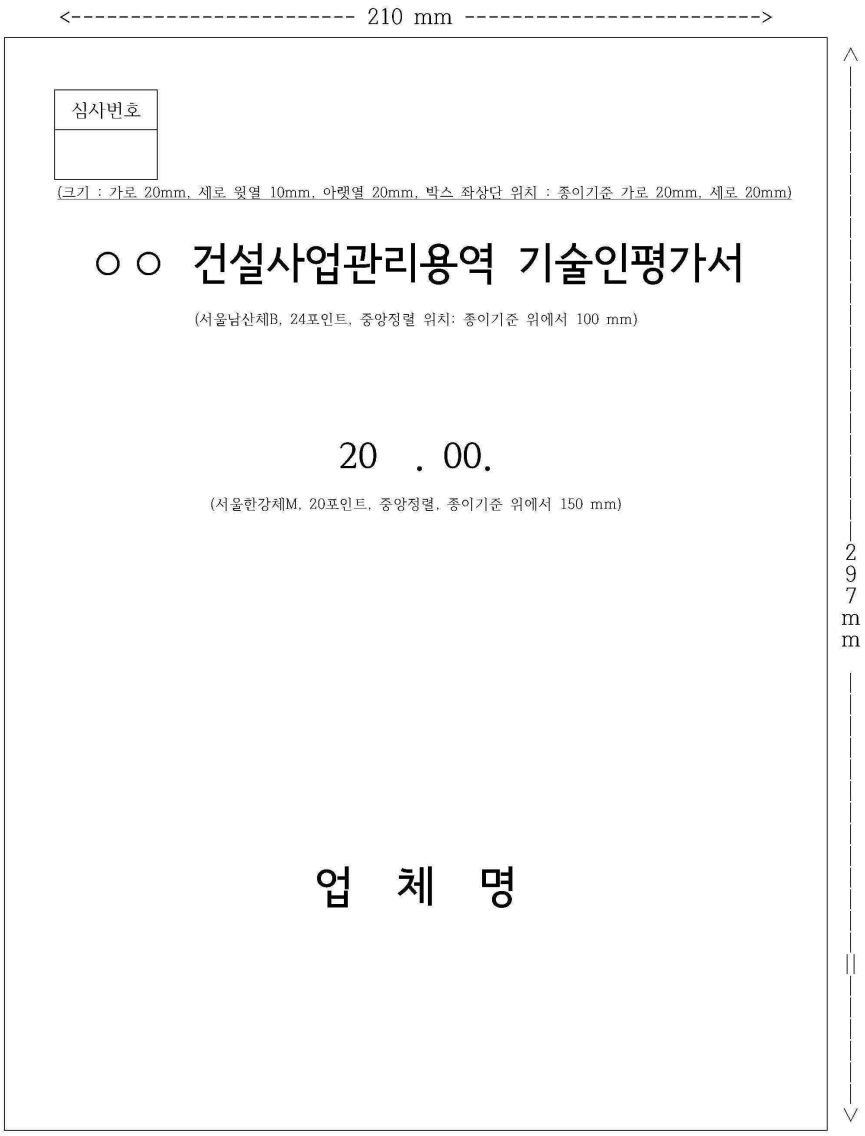
접 수 일 : 20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 기술인평가서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식 2)



210mm×297mm
(백상지 80g/㎡)

요약서 (5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목차

(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2포인트, 양쪽정렬, 160%)

1.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서울한강체M, 15포인트, 중앙정렬, 160%)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2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분 야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2 공사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주요업무		작업계획(월)																								참여자 (투입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																									
	1)																									
	2)																									
	3)																									
	4)																									
	:																									
	1)																									
	2)																									
	3)																									
	4)																									
	:																									
	1)																									
	2)																									
	3)																									
	4)																									
	:																									

*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구성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목적물의 품질 향상방안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해당 용역을 포함한 사업수행과정 예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5 해당 용역 관련 특정경험(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은 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설계오류 및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정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위주로 기술하며 분야별건설사업관리술인의 경험도 추가 가능)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1.6 해당 용역과 관련 특정경험에 대한 적용사항(1page 이내)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좌측정렬, 160%)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나,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서울한강체M, 13포인트, 양쪽정렬, 160%)

(양식 3 - 평가위원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임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양식 4 - 기술인평가서 제출업체용)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발 행 인 :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편 집 인 : 기 술 심 사 담 당 관 김 창 환
발 행 일 : 20 년 월 일
발행부서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2133-8570)
제 작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관리팀장 권 혁 정
담 당 조 장 희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91호

강남구 도곡동 954-17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21호(2021.12.30.)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83호(2022.02.24.)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고시된 강남구 도곡동 954-17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9)와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건축과(02-3423-61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수용인구 : 267인
 2) 주택건설계획 : 209세대

[기정]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2TYPE	39	18.66	39	14.61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 공급
	24TYPE	10	4.78	10	3.75	
	42TYPE	6	2.87	16	5.99	
	47TYPE	2	0.96	5	1.87	
	55TYPE	8	3.83	21	7.87	
	소 계	65	31.10	91	34.08	
공공임대주택 (SH공사선매입)	22TYPE	11	5.26	11	4.12	
	소계	11	5.26	11	4.12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2TYPE	78	37.32	78	29.21	
	24TYPE	36	17.22	36	13.48	
	42TYPE	6	2.87	16	5.99	
	47TYPE	9	4.31	24	8.99	
	55TYPE	4	1.91	11	4.12	
	소 계	133	63.64	165	61.80	
합 계		209	100	267	100	

[변경]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2TYPE	40	19.14	40	14.98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24TYPE	10	4.78	10	3.75	
	42TYPE	6	2.87	16	5.99	
	46TYPE	2	0.96	5	1.87	
	51TYPE	8	3.83	21	7.87	
	소 계	66	31.58	92	34.46	
공공임대주택 (SH공사선매입)	22TYPE	11	5.26	11	4.12	
	소계	11	5.26	11	4.12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2TYPE	77	36.84	77	28.84	
	24TYPE	25	11.96	25	9.36	
	24ATYPE	11	5.26	11	4.12	
	42TYPE	6	2.87	16	5.99	
	46TYPE	9	4.31	24	8.99	
	51TYPE	4	1.91	11	4.12	
	소 계	132	63.16	164	61.42	
합 계		209	100.00	267	100.00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 세대 타입 변경 : 47TYPE → 46TYPE : 55TYPE → 51TYPE : 24ATYPE 추가 · 세대수 변경 : 공공임대주택(65세대 → 66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33세대 → 132세대)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건축설계 변경	–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 7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9호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755.88%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이하] – 완화용적률의 50% 범위 공공임대주택 제공
최고높이	• 48m 이하	–

–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 7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9호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755%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이하] – 완화용적률의 50% 범위 공공임대주택 제공
최고높이	• 48m 이하	–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 상한용적률 : 0.88%감소 (755.88% 이하 → 755% 이하)	· 측량결과에 따른 건축설계 변경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변경

– 기정

구분		내용		계획사항		완화 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공공임대주택	•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5% 이상 □ – 1,010.9㎡ X 25% = 252.73㎡ 이상	• 기본공공기여 : 254.70㎡(대지지분 25.20%) – 53세대	총 209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65세대 공공기여	기본 용적률 680% 상한 용적률 755.88%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완화용적률(75.88%)의 50% 공공임대주택 제공	• 추가공공기여 : 38.14%(대지지분 5.05%)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385.52㎡(38.14%) [완화용적률 75.88%의 50% : 37.94%] – 12세대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8.46% : 11.54%(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18㎡ ~ 60㎡ 내외 – 1인 세대 : 전용 18㎡ 이상 – 2인이상 세대 : 전용 36㎡ 이상		• 1인세대 : 전용 18.02㎡, 18.33㎡ (174세대) • 2인세대 : 전용 36.06㎡, 36.74㎡, 40.38㎡ (35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 100호 이상 ~ 300호 미만 : 150㎡ 이상		• 지상14층 239.07㎡ 계획 (209세대)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변경

구분		내용		계획사항		완화 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공공임대주택	•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5% 이상 □ – 1,010.9㎡ X 25% = 252.73㎡ 이상	• 기본공공기여 : 254.14㎡(25.14%) – 54세대	총 209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66세대 공공기여	기본 용적률 680%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계획사항	완화 내용	비 고
		• 완화용적률(75.0%)의 50% 공공임대주택 제공	• 추가공공기여 : 38.18%(대지지분 5.06%)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385.98㎡(38.18%) [완화용적률 75.0%의 50% : 37.5%] - 12세대	상한 용적률 755% 부여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8.65% : 11.35%(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18㎡ ~ 60㎡ 내외 - 1인 세대 : 전용 18㎡ 이상 - 2인이상 세대 : 전용 36㎡ 이상	• 1인세대 : 전용 18.33㎡, 18.34㎡, 18.38㎡(174세대) • 2인세대 : 전용 36.05㎡, 36.17㎡, 36.74㎡(35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 100호 이상 ~ 300호 미만 : 150㎡ 이상	• 지상14층 236.18㎡ 계획 (209세대)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3)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공공기여 계획(변경)

- 기정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계획	비고
공공 임대 주택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680% 이하	부지면적의 25% 이상 (부지면적 252.73㎡ 이상)	• 부지면적 기준 254.70㎡ (대지지분 25.20%) - 공공임대 전용면적 : 1,246.26㎡(53세대)	총 209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65세대 계획
	상한용적률 (연면적)	755.88% 이하	완화용적률의 1/2이상 (755.88%-680%)/2 = 37.94%이상 (연면적 383.54㎡ 이상)	•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385.52㎡ (12세대, 대지지분 5.05%)	

– 변경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680% 이하	부지면적의 25% 이상 (부지면적 252.73㎡ 이상)	• 부지면적 기준 254.14㎡ (대지지분 25.14%) – 공공임대 전용면적 : 1,250.44㎡(54세대)	총 209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66세대 계획
	상한용적률 (연면적)	755% 이하	완화용적률의 1/20이상 (755%–680%)/2 = 37.5%이상 (연면적 379.09㎡ 이상)	•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385.98㎡ (12세대, 대지지분 5.06%)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 기본용적률 공공기여(부지면적 기준) : 254.70㎡(53세대) → 254.14㎡(54세대) • 상한용적률 공공기여(연면적 기준) : 385.52㎡(12세대) → 385.98㎡(12세대)	·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건축설계 변경	–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방재계획(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관계도면 : [붙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93호

2024년 벼 병해충 방제계획 고시

식물방역법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2024년도 벼 병해충 방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 본 방 향

○ 방제대상 병해충에 대한 정밀 예찰로 적기방제 추진
○ 벼 집단 재배지에 대한 효율적 방제효과를 위해 공동(항공)방제 실시

2. 방제대상 지역 및 일시
◯ 벼 재배지역에 대해 2024. 7월 ~ 9월 중 지역실정에 맞는 방제 실시

3.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 병 :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 해충 : 벼멸구류, 벼물바구미, 이화명나방, 혹명나방, 멸강나방, 벼잎벌레 등

4. 방제계획 면적: 259ha

5. 방제요령
◯ 지역별, 시기별 병해충 발생상황에 따라 공동(항공) 및 개별방제 등으로 실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

6. 공동(항공)방제 계획
◯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벼 집단재배 농지 259ha에 대한 공동(항공)방제 실시 지원
◯ 강서구청 주관「항공방제 협의회」운영으로 방제시기 및 농약 선정 시행
◯ 관련 기관: 서울시, 강서구청, 농업기술센터, 강서농협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94호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338호(2023.08.10.)로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53,120.5㎡	전체 : 238동 노후·불량 : 172동(72.3%)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55,385.0	-	55,385.0	선지정고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55,385.0	감) 2,264.5	53,120.5	필지선기준 구역계 변경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명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53,120.5㎡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5,385.0	100.0	
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38,728.8	70.1	
		A1	사업추진구역1(가로주택정비사업)	10,495.5	19.0	
		A2	사업추진구역2(가로주택정비사업)	3,758.2	6.8	
		A3	사업추진구역3(가로주택정비사업)	8,505.4 (9,343.7)	15.4	(주차장 포함 연번부여 기준)
		A4	사업추진구역4(가로주택정비사업)	6,799.8	12.3	
		A5	사업추진구역5(가로주택정비사업)	9,169.9	16.6	
	정비기반시설	도로		7,389.0	13.2	
		주차장		838.3	1.5	
시행구역 외		B1 ~ B2	주택용지 등	8,428.9	15.2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3,120.5	100.0	
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43,052.6	81.0	
		A1	사업추진구역1(가로주택정비사업)	9,906.8	18.6	
		A2	사업추진구역2(가로주택정비사업)	9,402.6	17.7	
		A3 1	사업추진구역3(가로주택정비사업)	8,038.5	15.1	
		A3 2	사업추진구역4(가로주택정비사업)	6,526.8	12.3	
		A4	사업추진구역5(가로주택정비사업)	9,177.9	17.3	
	정비기반시설	도로		6,663.4	12.5	※ 모아주택 구역내 포함
		공원		843.5	1.6	※ 모아주택 구역내 포함
시행구역 외		소계		2,561.0	4.8	
		대지	자율주택 정비사업	1,447.0	2.7	※ ' 23.3. 완료
			도시형생활주택	1,114.0	2.1	※ 공사중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도로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조성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60 (139)	면목동 359	면목동 107-1	일반	서울시고시 제467호(' 78.9.12.)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10 (126)	면목동 324	면목동 1186	일반	서울시고시 제467호(' 78.9.12.)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조성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60 (236)	면목동 359-34	면목동 483-8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467호 ('78.9.12.)	-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124	면목동 359-34	면목동 1324-3	일반도로	-	노선분리
변경	소로	2	6	10	국지도로	236	면목동 1324-3	면목동 483-8	일반도로	-	확폭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10 (125)	면목동 108-72	면목동 483-14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467호 ('78.9.12.)	-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75	면목동 1175-1	면목동 483-14	일반도로	-	노선분리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118	면목동 108-72	면목동 1145-3	일반도로	-	선형조정
기정	중로	3	A	12	국지도로	241	면목동 70-70	면목동 69-46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24.1.11.)	-
변경	중로	3	A	15	국지도로	241	면목동 70-70	면목동 69-46	일반도로	-	신설
신설	중로	3	1	12	국지도로	22	면목동 69-46	면목동 483-10	일반도로	-	신설
신설	중로	3	2	12	집산도로	219	면목동 483-10	면목동 483-15	일반도로	-	신설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46	면목동 483-15	면목동 483-20	일반도로	-	신설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94	면목동 483-14	면목동 483-14	일반도로	-	신설
신설	소로	2	7	6	국지도로	38	면목동 1181	면목동 1324-3	일반도로	-	신설

※ ( )는 구역계에 포함되는 도로 연장임

■ 공원

○ 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면목동 1142	-	증) 843.5	843.5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주차장

○ 기정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은행나무 공영주차장	면목동 107-5	838.3	-	838.3	중랑구고시 제2004-14호 ('04.2.16.)	-

○ 변경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은행나무 공영주차장	면목동 107-5	838.3	감) 838.3	-	중랑구고시 제2004-14호 ('04.2.16.)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공동이용시설

구분	세대수	기준면적	비고
A1(사업추진구역1)	313 세대	1,078.1㎡ 이상	구역내
A2(사업추진구역2)	302 세대	1,043.8㎡ 이상	구역내
A3-1(사업추진구역3)	259 세대	909.4㎡ 이상	구역내
A3-2(사업추진구역4)	209 세대	753.1㎡ 이상	구역내
A4(사업추진구역5)	298 세대	1,031.3㎡ 이상	구역내

※ 설치기준 :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 서울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수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라. 교통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곳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겸재로50길, 겸재로54길, 겸재로48길, 면목로72가길, 면목로64길
차량진출입 구간	진출입 불허구간 외 출입구 설치 가능	불허구간 제외
도로 확폭	인근 재개발구역 및 공간구조 고려하여 도로 폭원 확대	- 겸재로44길(6→8m) - 겸재로54길(12→15m) - 면목로66길(6→12m) - 면목로72길(8→10m) - 면목로72가길(6→8m)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2~3m로 적용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	- 2m : 겸재로54길, 겸재로50길, 면목로66길, 면목로72길(A2) - 3m : 그 외 이면부지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기정

도면 표시	사업구역	위 치	면적(㎡)	사업계획					비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39,567.1	653	-	-	-	-	
A1	면목본동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149-1번지 일대	10,495.5	140	-	조합(예정)	동의서 징구	-	-
A2	면목본동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06-5번지 일대	3,758.2	49	-	조합	조합설립	-	-
A3	면목본동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07-33번지 일대	9,343.7	218	-	조합(예정)	동의서 징구	-	주차장 포함
A4	면목본동 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317-1번지 일대	6,799.8	74	-	조합(예정)	동의서 징구	-	-
A5	면목본동 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09-18번지 일대	9,169.9	172	-	조합	조합설립	-	-

○ 변경

도면 표시		사업구역	위 치	면적(㎡)	사업계획					비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45,903.1	764	-	-	-	-	
A1		면목본동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149-1번지일대	10,495.5	141	-	조합(예정)	동의서 징구	-	-
A2		면목본동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06-5번지 일대	10,094.2	161	-	조합	구역확대	-	-
A3	1	면목본동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07-33번지일대	9,343.7	218	-	조합	조합설립인가	-	주차장 포함
	2	면목본동 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317-1번지 일대	6,799.8	72	-	조합(예정)	동의서 징구	-	-
A4		면목본동 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09-18번지 일대	9,169.9	172	-	조합	조합설립인가	-	-

※ 개별 사업구역 면적은 연번부여 및 조합설립인가 현황 기준임

바. 모아주택 통합계획(안)

○ 신설

도면표시	사업구역	위 치	면적(㎡)	특례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합 계			43,052.6			
A1	면목본동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149-1번지일대	9,906.8	•공통사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공통사항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 설치	
A2	면목본동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06-5번지 일대	9,402.6			
A3-1	면목본동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07-33번지일대	8,038.5			통합 시행 권장
A3-2	면목본동 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317-1번지 일대	6,526.8			
A4	면목본동 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09-18번지 일대	9,177.9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기정

구분	내용		비고
시행구역 내	건폐율	60% 이하	A1 ~ A5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상한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시행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B1 ~ B2
		50% 이하	B1
	용적률	기준 200% 이하	B1 ~ B2

구분	내용		비고
		기준 250% 이하	B1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B1 ~ B2

○ 변경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시행구역 내	건폐율	50% 이하	A1~A4
	용적률	기준 250% 이하 / 법적 상한 3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시행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공동주택용지 등
	용적률	기준 200% 이하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건축물의 용도

○ 변경

적용지역	구분		계획내용	비고
A1~A4	유형		• 공동주택 용지	-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 이용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변경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A1~A4	• 건축한계선 2~3m 적용* • 가로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A1~A4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 가로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서울시 모아타운 심의방향 준용(보차분리도로 2m, 그 외 3m 적용)
– 건축한계선(2m) : 겸재로50길(A2), 겸재로54길(A2,A3-1,A3-2,A4), 면목로72길(A2), 면목로66길(A1, A3-2, A4) 변
– 건축한계선(3m) : 겸재로44길(A2), 겸재로48길(A1, A2, A3-1, A3-2), 면목로72길(A1, A3-1), 면목로72가길(A1, A4), 면목로64길(A4) 변

자.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변경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표시		사업구역					
합계			–	1,381	360	–	임대주택 26.1%
A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149-1번지 일대	313	8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26.2%
A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06-5번지 일대	302	76		임대주택 25.2%
A3	1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07-33번지 일대	259	69		임대주택 26.6%
	2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317-1번지 일대	209	55		임대주택 26.3%
A4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109-18번지 일대	298	78		임대주택 26.2%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할 것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추진구역별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할 것(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함)

차.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신설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120.5	-	53,120.5	100.0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0,870.5	감) 47,466.0	3,404.5	6.4	존치구역 및 공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2,250.0	증) 47,466.0	49,716.0	93.6	-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신설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특별건축구역	A1~A4	-	증) 51,493.9	51,493.9	-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적용배제 또는 완화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군축물의 높이제한(61조) 등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9) 및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02-2094-6923)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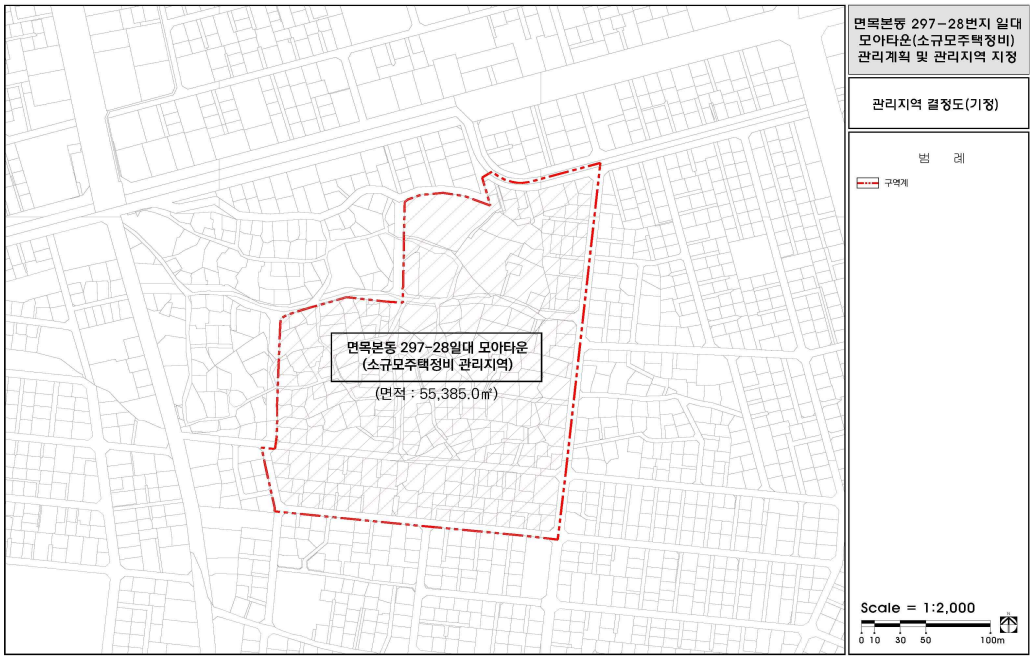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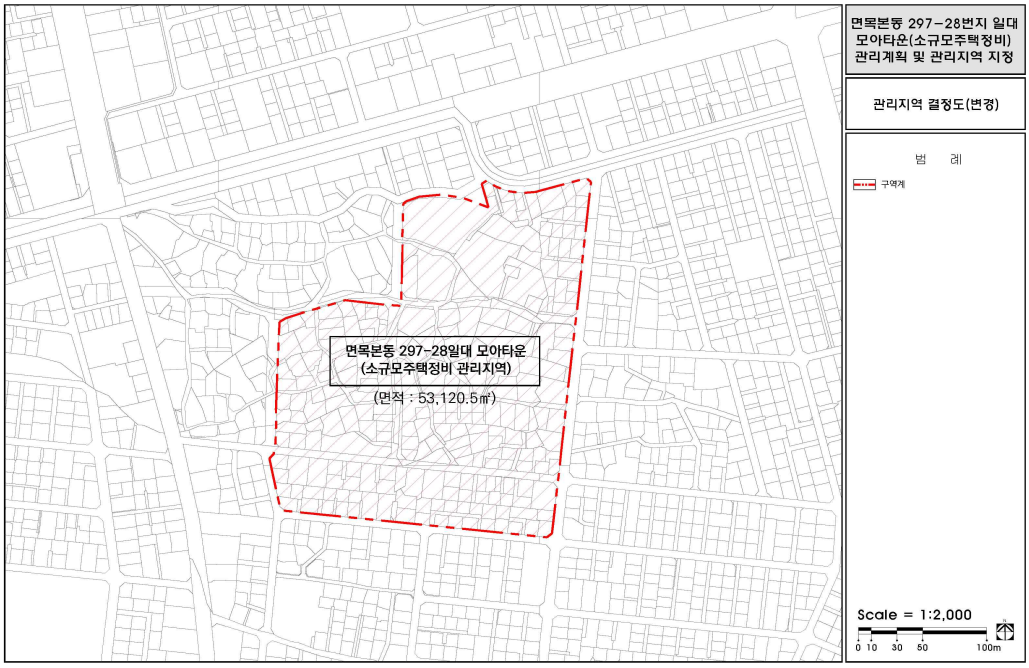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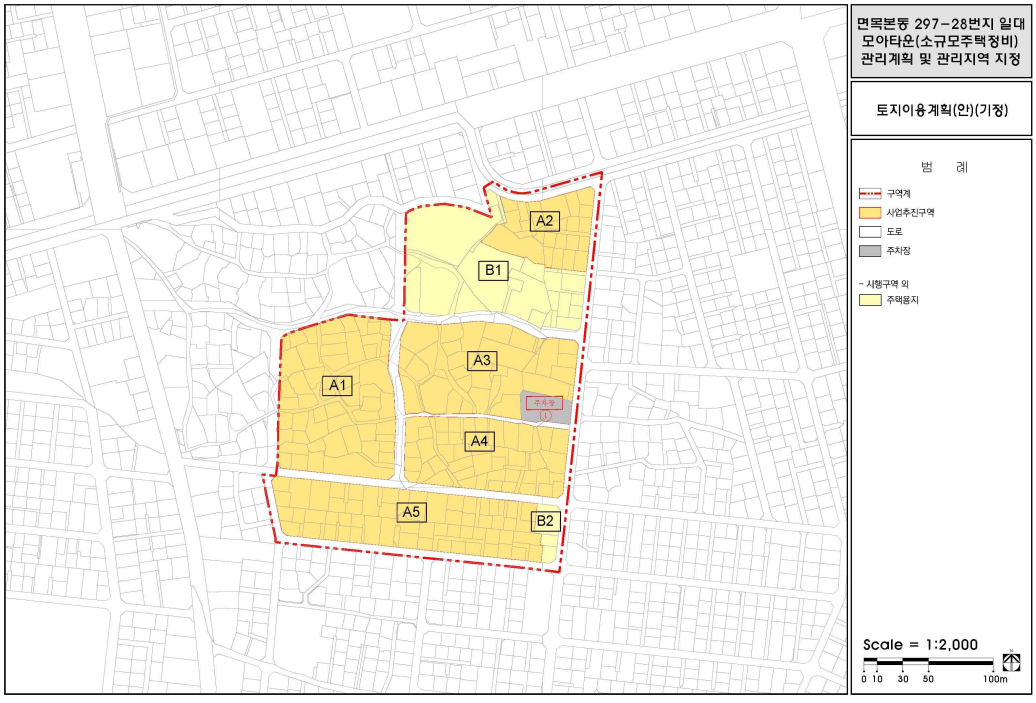
관리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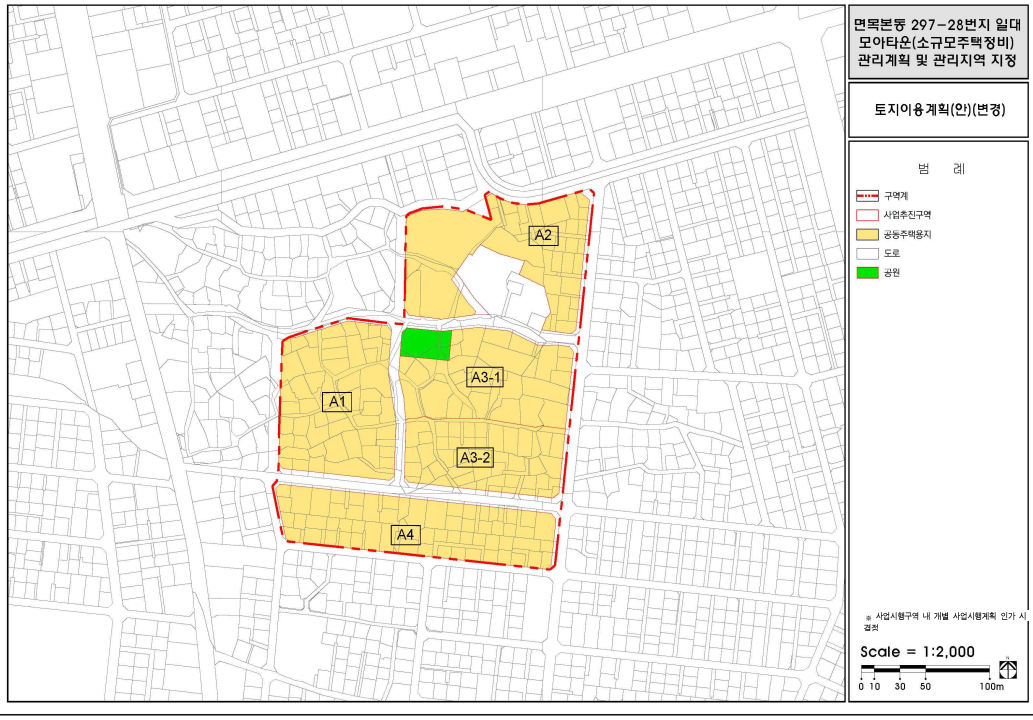
관리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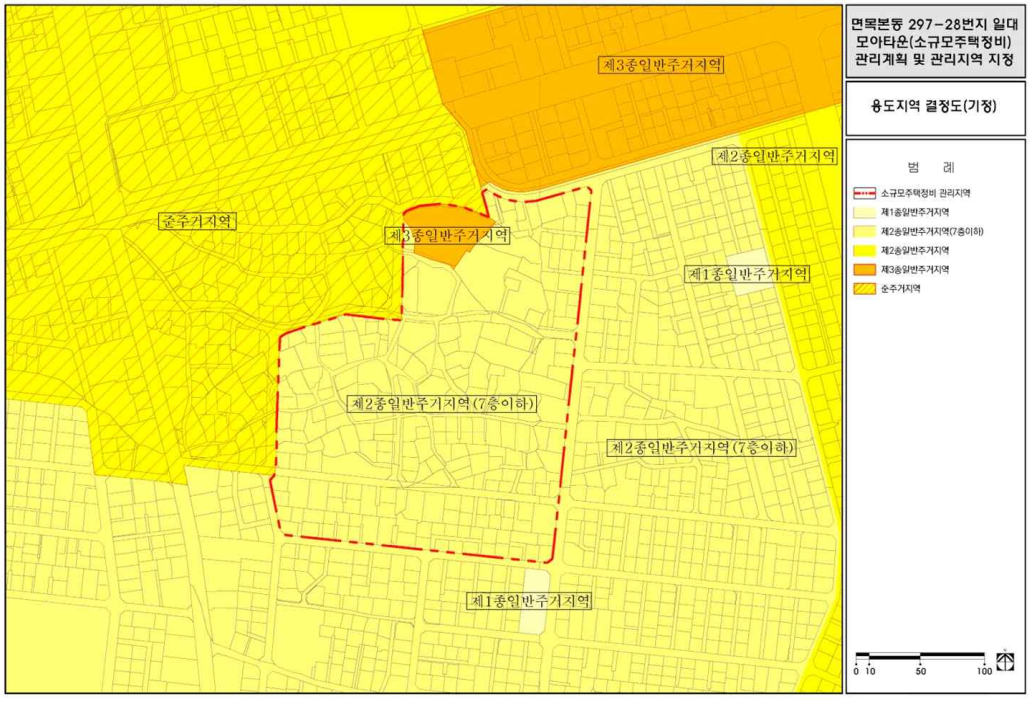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안)(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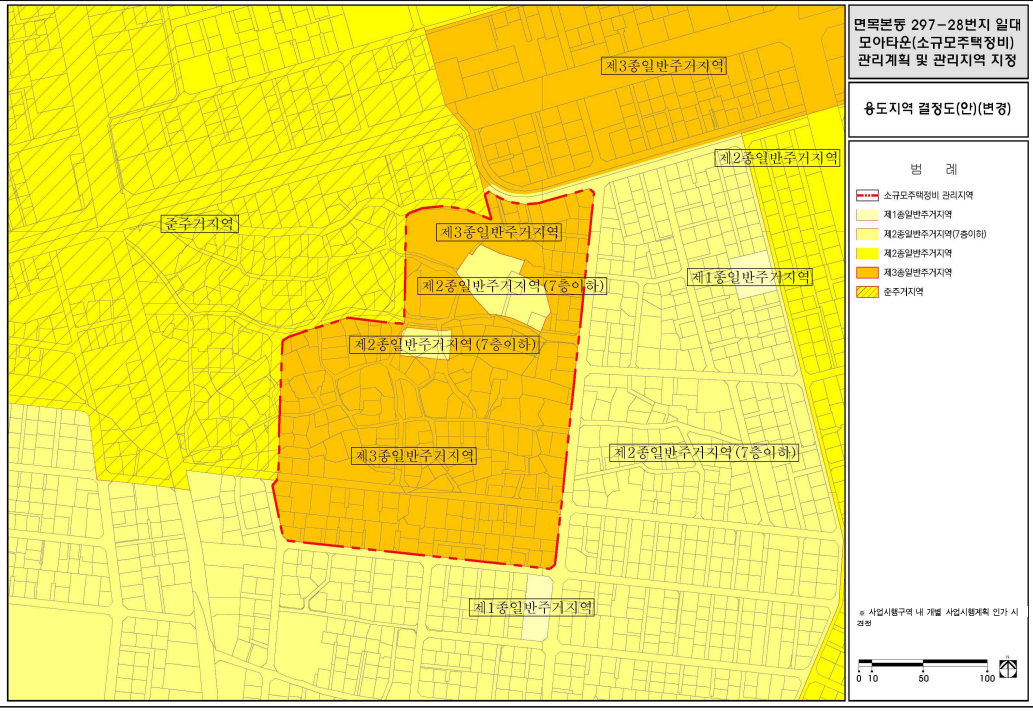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안)(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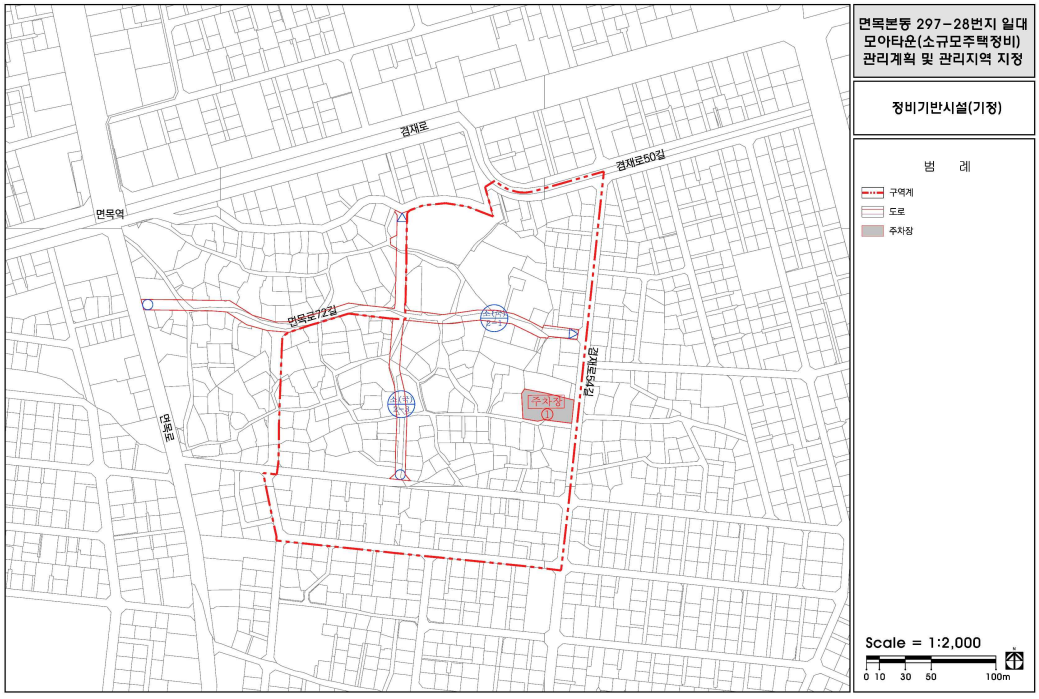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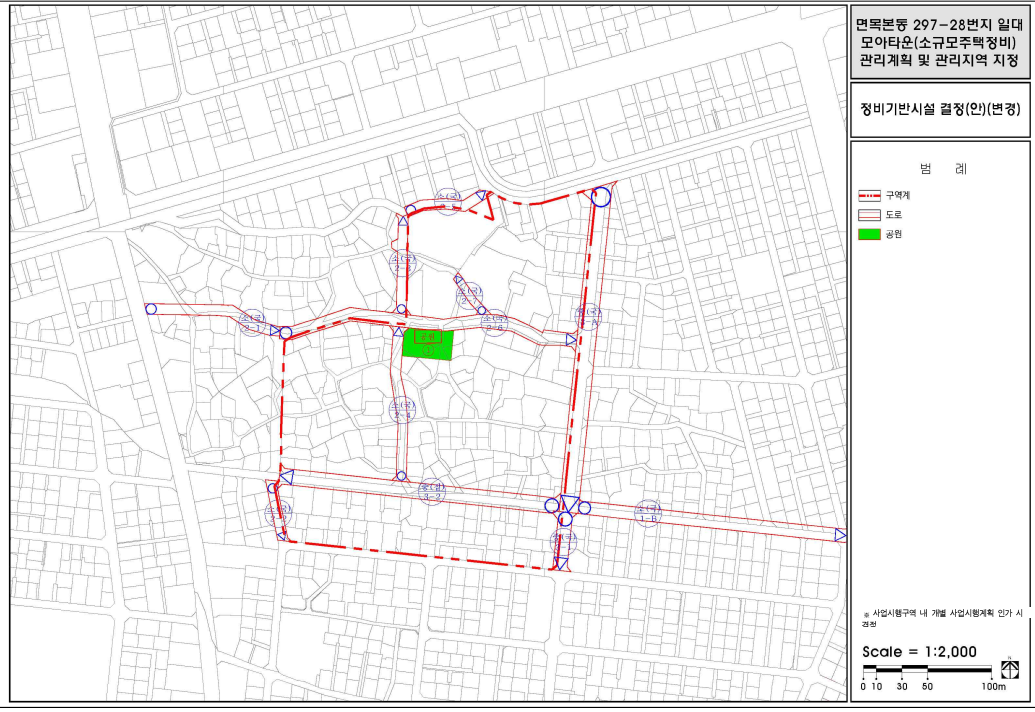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안)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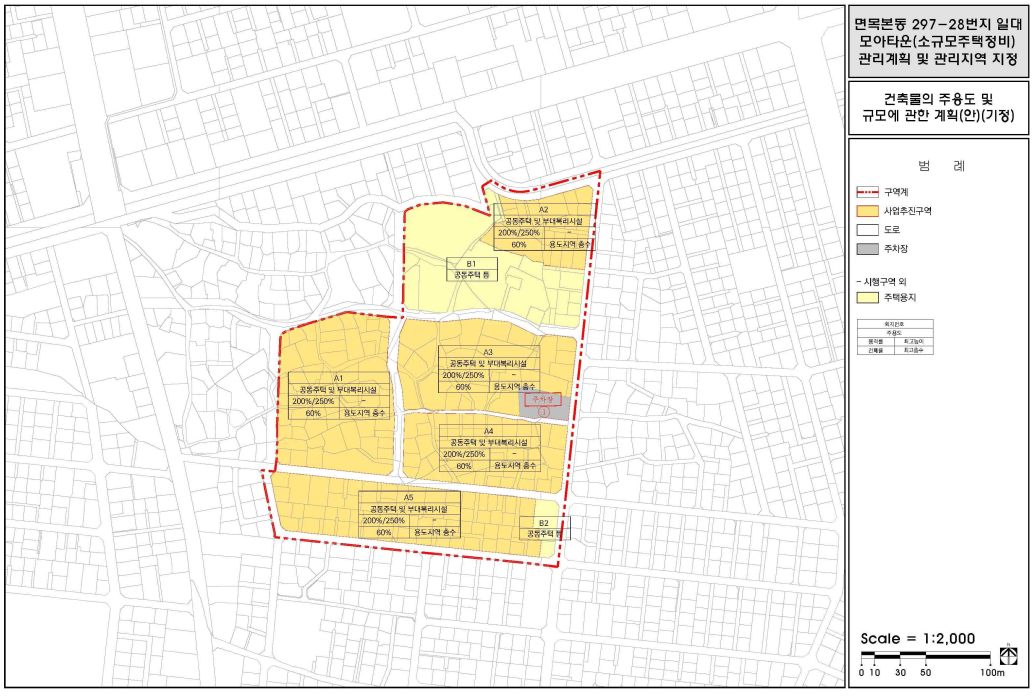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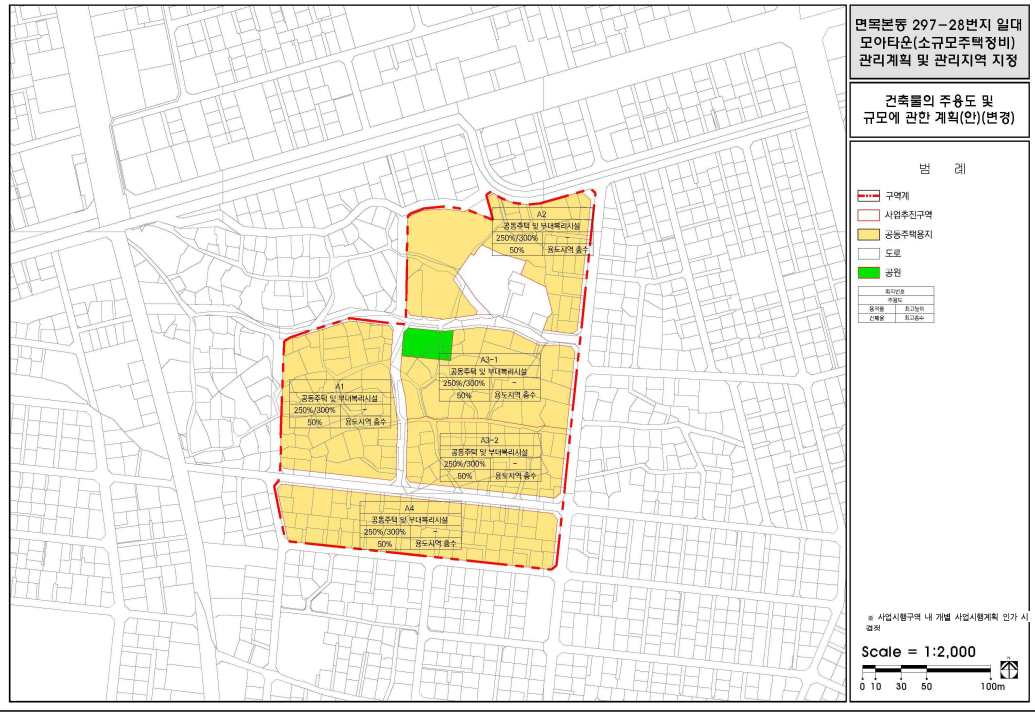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 결정(안)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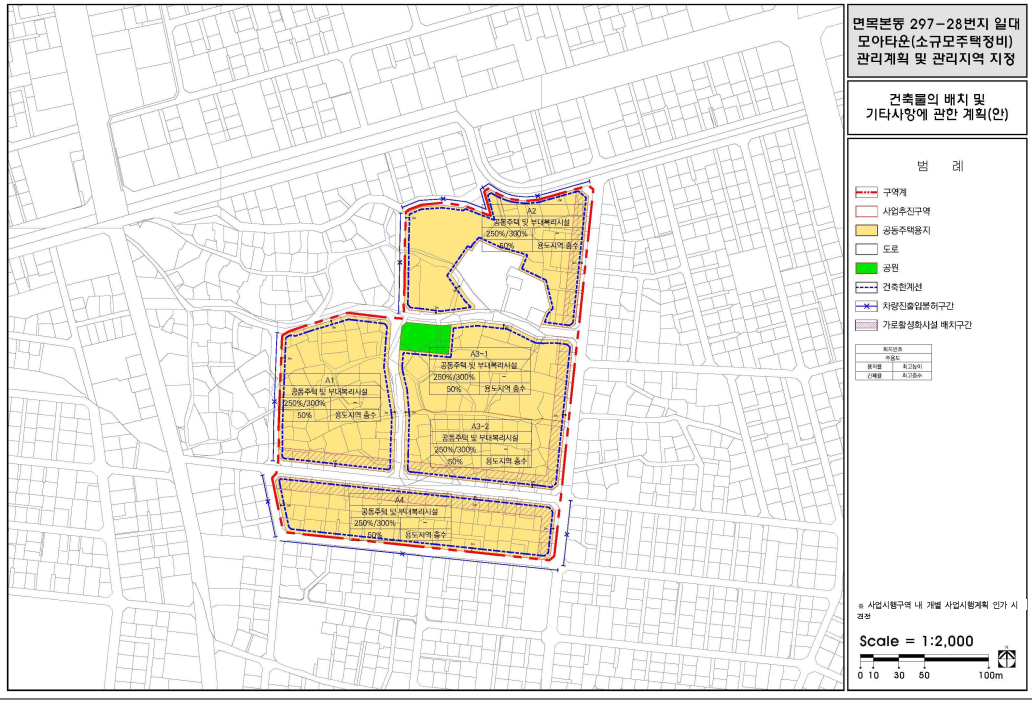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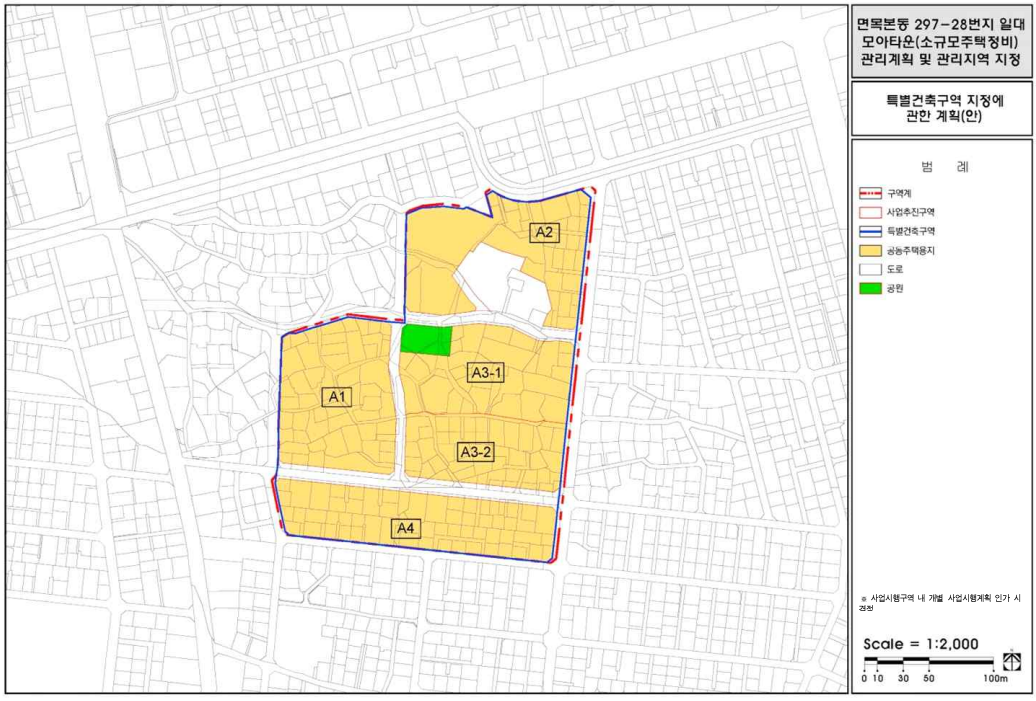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변경)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96호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주택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87호(2022.12.15.)로 서초구 양재동 1-2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된 서초구 양재동 1-2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초구 양재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 명 칭 : 디에스네트웍스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회사제1호
○ 대표자 성명 :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12층
○ 법인등록번호 : 110111-8330170

- 변경

○ 명 칭 : 아이앤케이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회사제1호
○ 대표자 성명 : 아이앤케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730호(여의도동, 원아이에프씨)
○ 법인등록번호 : 110111-8330170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7)와 서초구 8층 주거개선과(02-2155-7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 기정

○ 명 칭 : 디에스네트웍스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회사제1호

○ 대표자 성명 :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12층

○ 법인등록번호 : 110111-8330170

- 변경

○ 명 칭 : 아이앤케이청년주택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회사제1호

○ 대표자 성명 : 아이앤케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730호(여의도동, 원아이에프씨)

○ 법인등록번호 : 110111-8330170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97호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86호(2022.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2호(2023.04.27.)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처리하고,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주택안심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변경)

구 분	명 칭	대 표 자	주 소
기정	디에스네트웍스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회사 제1호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12층
변경	아이앤케이청년주택 일반사모부동산개발투자회사 제1호	아이앤케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730호(여의도동, 원아이에프씨)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 2026년
5.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나. 대지면적 : 2,446.7㎡
 다. 건폐율 : 52.99%(건축면적 : 1,296.39㎡)
 라. 용적률 : 874.64%(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21,399.89㎡)
 마.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89세대/선매입82세대/민간임대171세대), 근린생활시설
 바. 규 모 : 1개동, 지하7층/지상22층, 연면적 32,667.40㎡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상수도공급신청, 배수설비설치신고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 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98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호(2010.01.21.)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89호(2020.12.24.)로 재정비된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4.4.30)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483호(2024.5.16)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송현동 부지 공적 활용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양한 공론화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구)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 부지를 열린 문화공원으로 환원하고, (가칭)이건희기증관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북촌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북촌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	1,128,372.7	-	1,128,372.7	2008.6.12. (서울시 고시 제2008-200호)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78	40~46	보조간선도로	300	중학동	안국동광장	일반도로	-	1952-03-25 (내부무고시 제23호)	율곡로 서측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광로	3	78	40~49	보조간선도로	356	중학동	안국동광장	일반도로	-	1952-03-25 (내부무고시 제23호)	율곡로 서측

※ 서고 제2010-11호(2010.1.21.) 및 서고 제2020-589호(2020.12.24.) 결정시, 오기된 사항 (광로 3-78 시종점 및 선형) 정정 (해당구간 도면표기)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78	광로 3-78	• 일부구간 폭원 변경 - 40~46m→40~49m (증3m)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송현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진입부 일부구간 폭원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 설	주차장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	증)22,571.7	22,571.7	-	중복결정 - 지상 : 공원(⑦) - 지하 : 주차장(⑤)

- 주차장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22,571.7㎡	• 서울 도심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북촌 지역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변경)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안국동광장	교통광장	안국동	6,277 (4,006)	증)43.2	6,320.2 (4,049.2)	1952-03-25 (내부부고시제23호)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광장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안국동 광장	• 교통광장 확장 - 면적 : 6,277㎡ →6,320.2㎡ (증)43.2㎡)	• 역사문화관광축 활성화 및 보행이 편리한 매력도육성을 위해 교통광장 확장 ※시-국유지 토지교환사항 반영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송현 문화공원	문화공원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	증)25,973.3	25,973.3	-	중복결정 - 지상 : 공원(⑦) - 지하 : 주차장(⑤)

※ 도시계획시설 공원 내에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하, 최고높이 8m이하(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로 설치 : 〈건축물 높이 계획〉 참고

– 공원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송현 문화공원	•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25,973.3㎡	•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문화공원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문화시설	박물관	종로구 송현동 48-24 일대	-	증)10,090.8	10,090.8	-	-

–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문화시설	60%이하	150%이하	16m이하	-

– 문화시설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칭) 이건희기증관	• 문화시설 신설 – 면적 : 10,090.8㎡	•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기증을 계기로 송현문화공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문화시설 신설

3.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2) 획지계획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역	동명	지번	필지	획지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9	1	-	송현동	48-3 외2필지	(2,568.0)	2,568.0	획지선 지정	획지선 해제	• 구)미대사관직원숙소특별계획구역 폐지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문화 시설) 신설에 따라 획지선 해제
9	2		송현동 사간동 중학동	34-3 외31필지	(33,472.5)	33,472.5	획지선 지정	획지선 해제	

※ 지적 합필에 따른 지번 변경사항 반영

- 획지계획 변경 사유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대상지번	변경내용	변경사유
9	1	• 송현동 48-3, 48-21, 48-22	획지선 해제	• 구)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 폐지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문화시설) 신설에 따라 획지선 해제
9	2	• 중학동 5-3, 9-1, 24, 25-1, 송현동 48-3, 48-9, 48-23, 48-24, 49-19, 49-26, 49-27, 49-29, 52-2, 57, 58-2, 58-3, 58-4, 60-8, 60-9, 사간동 96, 97-2, 97-12, 97-13, 97-14, 99, 100, 101, 102, 122-3, 122-4	획지선 해제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방향성 및 배치 : 변경없음

(2) 건축선 지정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폐지에 따라 해당부분 도면표기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구간 건축한계선 지정 (그 외 변경 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변경	건축 한계선	율곡로3길 (일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후퇴 • 건축한계선으로 후퇴한 공간의 조성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행공간조성	• 해당부분 도면표기 • 후퇴한 부분의 조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및 본 지침 제22조 준수

– 건축선지정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한계선 고층부 벽면한계선	지침적용 제외	• 구)미대사관직원숙소특별계획구역 폐지에 따라 해당 지침 적용 제외 (결정도 참고)
건축한계선	율곡로3길(일부구간) 신설	• 가로경관 연속성 및 인근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1m) 신설 (결정도 참고)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폐지에 따라 해당부분 도면표기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구간 대지내공지 지정 (그 외 변경 없음)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기정	전면공지	가회로변 율곡로변 삼청동길변	• 건축한계선으로 후퇴한 공간을 보행공간 또는 휴게공간으로 조성 – 전면도로의 보도와 통합하여 보행공간 조성 – 차면시설, 설비시설, 적치물 금지 – 조경 및 보행자 휴식공간 조성 – 차량 출입금지 및 가로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대지경계선에 저층 식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준수 • 본 지침 제22조와 연계 • 단, 가회로변, 삼청동길변 한옥 건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건축한계선 적용 제외)
변경	전면공지	가회로변 율곡로변 삼청동길변 율곡로3길 (일부)	• 건축한계선으로 후퇴한 공간을 보행공간 또는 휴게공간으로 조성 – 전면도로의 보도와 통합하여 보행공간 조성 – 차면시설, 설비시설, 적치물 금지 – 조경 및 보행자 휴식공간 조성 – 차량 출입금지 및 가로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대지경계선에 저층 식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준수 • 본 지침 제22조와 연계 • 단, 가회로변, 삼청동길변 한옥 건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건축한계선 적용 제외)

– 대지내 공지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면공지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	지침적용 제외	• 구)미대사관직원숙소특별계획구역 폐지 및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따라 해당 지침 적용 제외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율곡로3길 (일부구간) 신설	• 가로경관 연속성 및 인근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을 신설함에 따라 후퇴한 공간 전면공지 지정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따라 일부구간 차량진입금지구간 및 제한적차량진출입구 지정 (그 외 변경 없음)

구분		적용구간	계획내용	비고
기정	차량진입 금지구간	• 간선가로변 (삼청동길, 가회로, 율곡로, 북촌길) • 주요 보행자 통행 가로변 (계동길 남측, 화개길, 서울공예박물관에 접한 감고당길 · 윤보선길)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대지로 차량진입을 불허함 • 서울공예박물관에 접한 감고당길 및 윤보선길 차량금지구간 적용 (화물, 장애인, 긴급차량에 대한 이동동선 확보를 위하여 제한적 차량진 · 출입구 설정)	• 해당구간 도면표기
변경	차량진입 금지구간	• 간선가로변 (삼청동길, 가회로, 율곡로, 북촌길) • 주요 보행자 통행 가로변 (계동길 남측, 화개길, 서울공예박물관 및 (가칭)이건희기증관 일대에 접한 감고당길변, 서울공예박물관에 접한 윤보선길)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대지로 차량진입을 불허함 ※ 공영주차장 원활한 진출입을 고려하여 율곡로변 일부 차량출입허용 • 서울공예박물관 및 (가칭)이건희기증관일대에 접한 감고당길 및 윤보선길 차량금지구간 적용(화물, 장애인, 긴급차량에 대한 이동동선 확보를 위하여 제한적 차량진 · 출입구 설정)	• 해당구간 도면표기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차량진입 금지구간	• (가칭)이건희기증관 일대 인접 감고당길변 적용	• 감고당길은 북촌과 인사동을 잇는 역사문화관광축을 대표하는 보행가로변으로서 보행관광 활성화 및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진입금지구간지정
	• 제한적차량진 · 출입구 지정	• (가칭)이건희기증관의 장애인, 긴급차량 등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제한적 차량 진 · 출입구 위치 지정 (해당구간 도면표시)

–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따라 일부구역 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 지정 (그 외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적용구역	완화근거	완화조건	완화내용 (당해 건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비고
기정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②	삼청동길변 가회로변 율곡로변 북촌길변 계동길남측 화개길	차량진입 금지구간 지정	④ 가로지장물을 부지 내 수용시	100% 완화	• 변압기 · 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로서 관계부서에서 부지 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⑤ 공공에게 공간제공 시	100% 완화	• 5년이상 무상임대조건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와 공간 협약체결을 한 경우에 한함 • 지하1층 또는 지상층에 연면적 100㎡이상의 공간을 공공에게 제공 시
변경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②	삼청동길변 가회로변 율곡로변 북촌길변 계동길남측 화개길	차량진입 금지구간 지정	④ 가로지장물을 부지 내 수용시	100% 완화	• 변압기 · 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로서 관계부서에서 부지 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⑤ 공공에게 공간제공 시	100% 완화	• 5년이상 무상임대조건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와 공간 협약체결을 한 경우에 한함 • 지하1층 또는 지상층에 연면적 100㎡이상의 공간을 공공에게 제공 시
		(가칭)이건희기증관 건립부지	차량진입 금지구간 지정	⑥ 차량진입금지 구간지정	100% 완화	• 보행관광 활성화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장애인, 긴급차량에 대한 최소주차확보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주차 3%적용 ※ 장애인 주차는 완화전 법정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②	• (가칭)이건희기증관건립부지 지정	•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장애인 주차 3%적용)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구)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	송현동 49-1번지 일대	37,141.6	감)37,141.6	-	2010-0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호)	-

– 특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구)미대사관 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폐지 – 면적 : 37,141.6㎡	• 송현동의 장소성을 회복하고 주변 자원과 연계하여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관광문화명소로 조성코자 특별계획구역 폐지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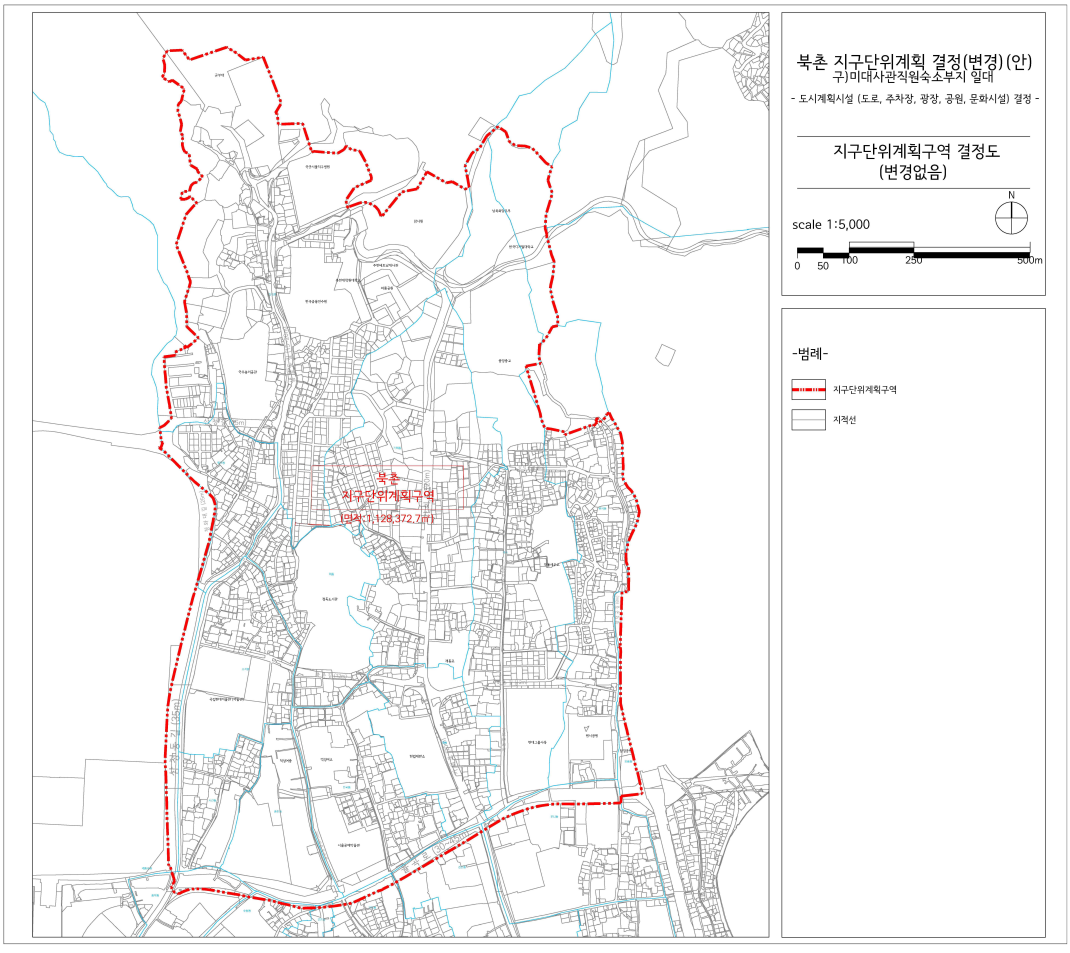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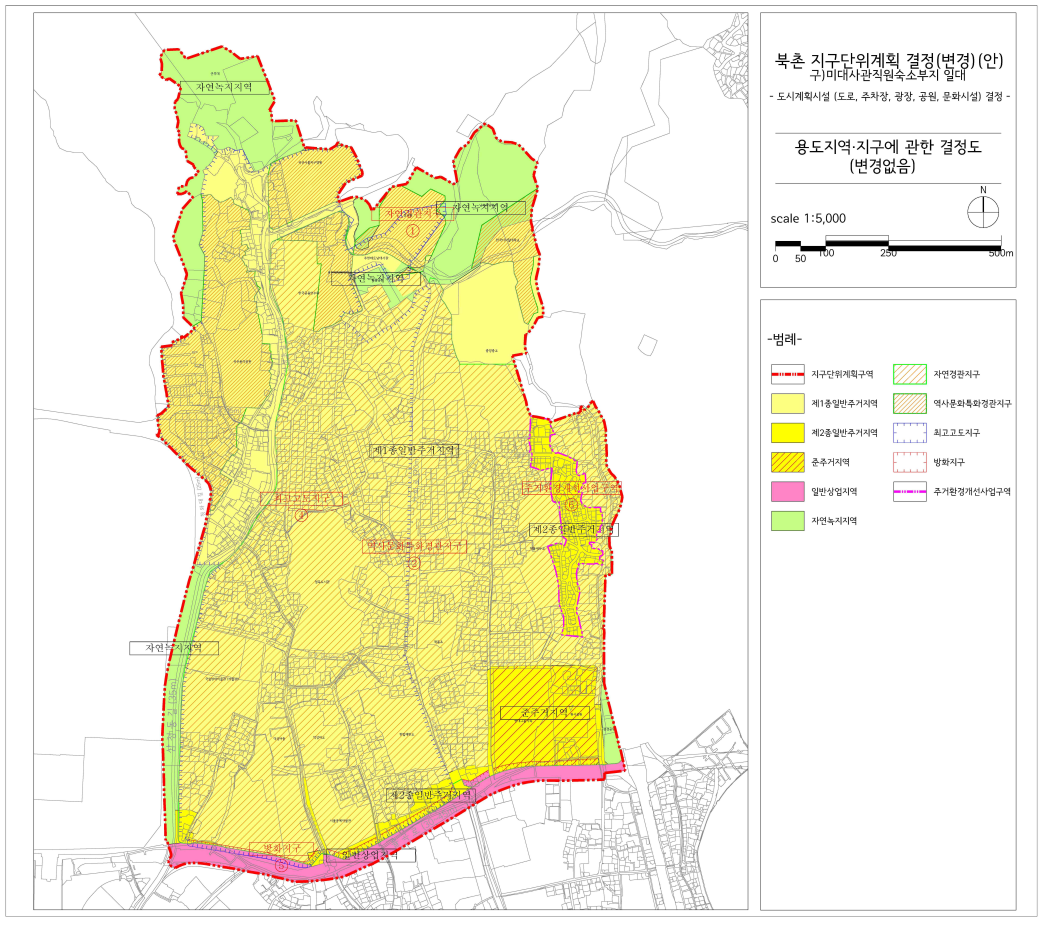
Ⅳ. 열람장소 :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02-2133-8367)에 관계도서를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 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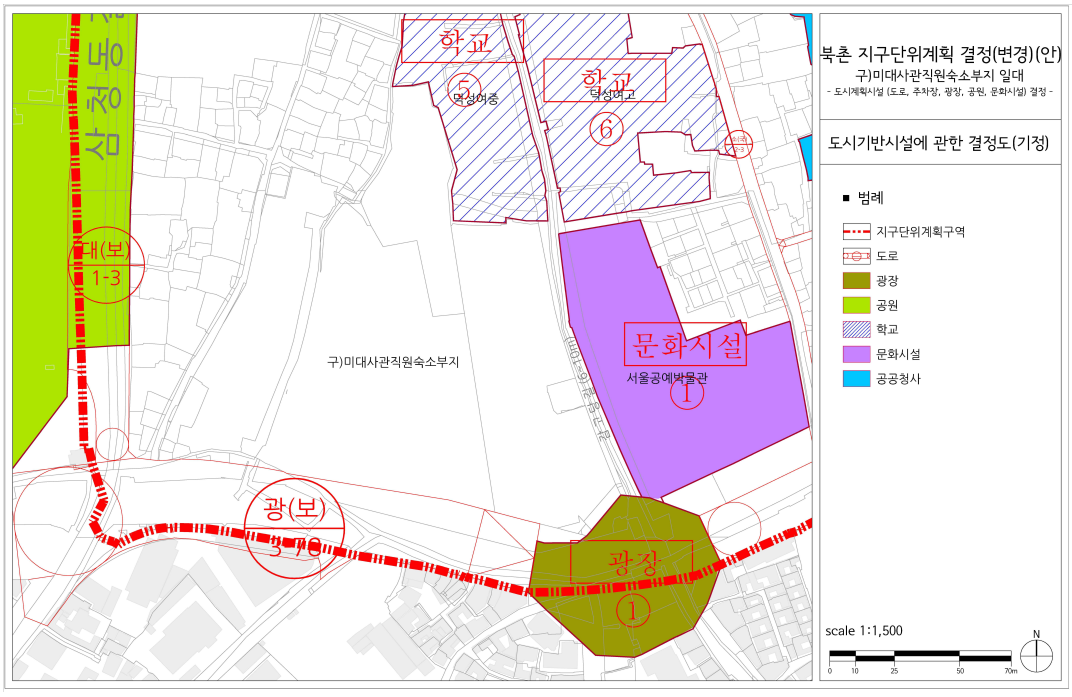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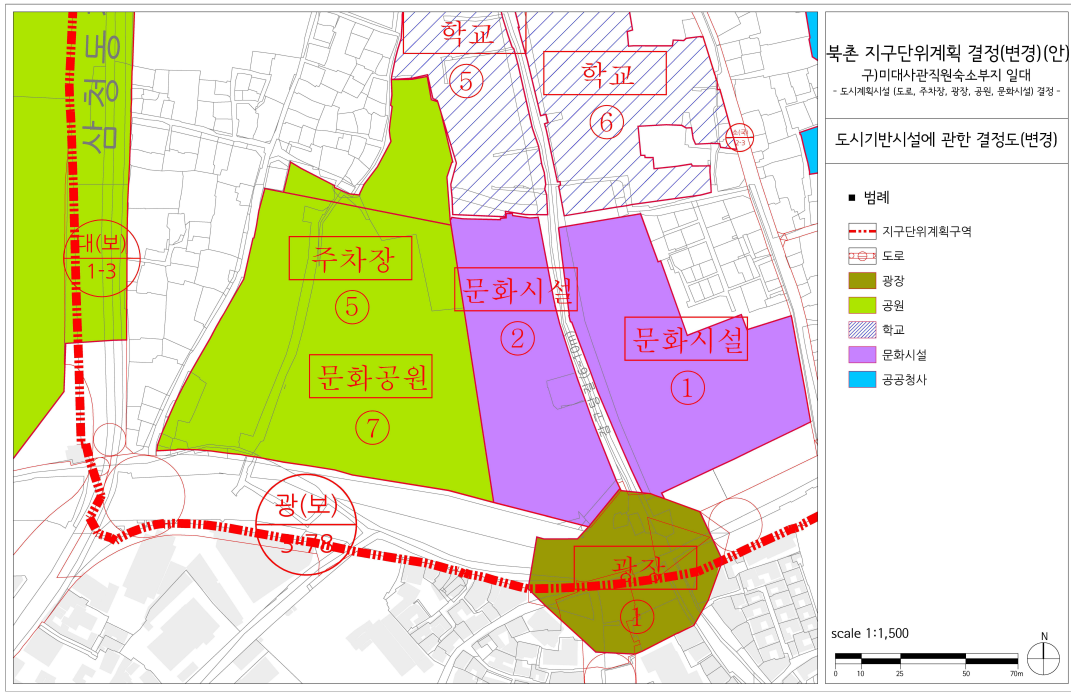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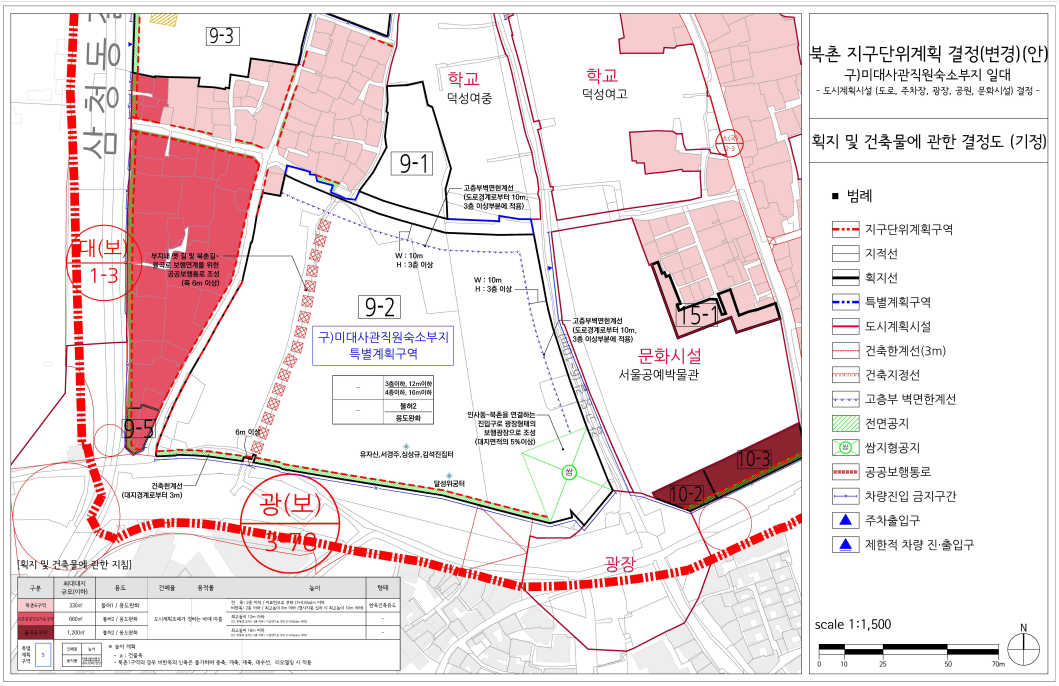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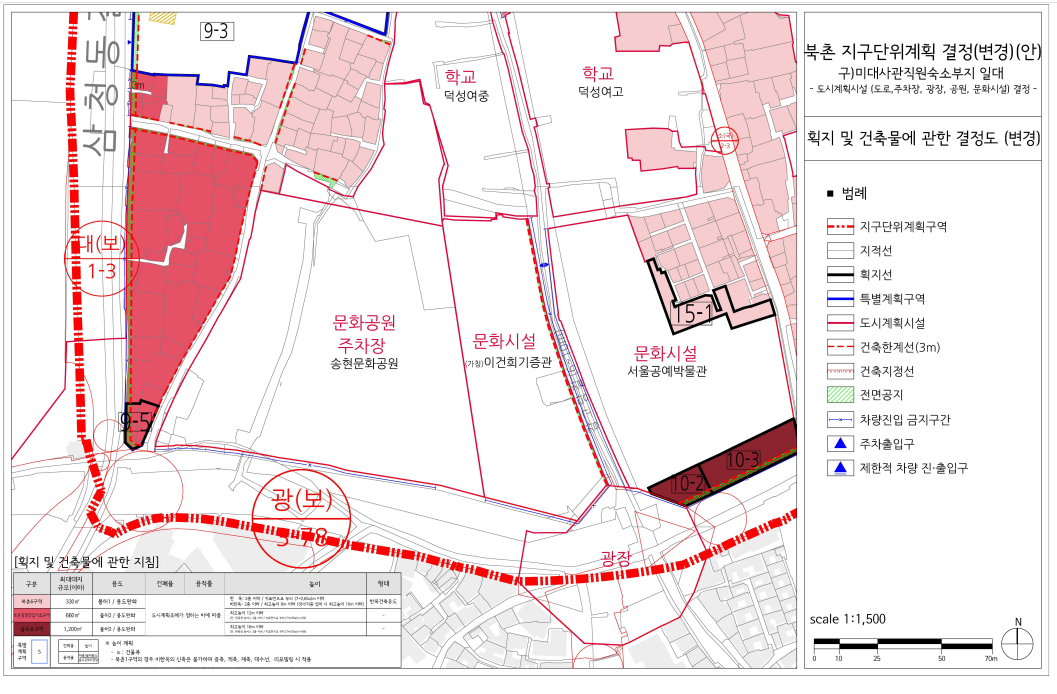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99호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2호(2014.5.29.)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95호(2020.6.24.)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된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2.7.)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변경)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 고
기정	6	북가좌동	372-1	10.5	190%	60% 이하	평균 10층 이하	2	단독	-
변경	6	북가좌동	372-1	10.5	190%	60% 이하	34층 이하주)	2	단독	-

주) 층수와 관련된 기준(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서울시 스카이라인 원칙 등)이 변경될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을 따르도록 함

2.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북가좌 제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104,656.0	-	104,656.0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추정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 방식 : (총수입-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0.22% [(18,142억원 - 10,440억원) / 7,686억원 X 100 = 100.22%]</td><td>-</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감정평가 추정을 통한 종전자산총액 산출</td><td>-</td></tr>
<tr><td>추정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단위 : 천원)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전용 49㎡</td><td>659,900</td><td rowspan="7">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0.22%)</td><td rowspan="7">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부담 / -:환급)</td></tr>
<tr><td>전용 59㎡</td><td>783,272</td></tr>
<tr><td>전용 74㎡</td><td>942,938</td></tr>
<tr><td>전용 84㎡</td><td>994,363</td></tr>
<tr><td>전용 99㎡</td><td>1,151,800</td></tr>
<tr><td>전용 114㎡</td><td>1,257,576</td></tr>
<tr><td>전용 126㎡</td><td>1,550,878</td></tr>
</table></td><td>-</td></tr>
</table>

※ 상기 분담금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4,656.0	-	104,656.0	100.0	-
정비 기반시설	소 계	26,193.9	감) 8,385.9	17,808.0	17.0	-
	공 원	17,876.3	감) 11,876.3	6,000.0	5.7	주차장 중복결정 (연면적:8,000㎡)
	공공공지	-	증) 4,700.0	4,700.0	4.5	-
	도 로	8,317.6	감) 1,209.6	7,108.0	6.8	-
획 지	소 계	78,462.1	증) 8,385.9	86,848.0	83.0	-
	획 지 1	77,592.1	증) 7,873.9	85,466.0	81.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2	870.0	-	870.0	0.8	종교시설
	획 지 3	-	증) 512.0	512.0	0.5	근린생활시설

※ 변경사유 : 합리적인 공공시설 계획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5.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4,656.0	-	104,656.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20,396.0	감) 5,475.0	14,921.0	14.3	-
제2종일반주거지역	84,260.0	증) 5,475.0	89,735.0	85.7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북가좌동 367-1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4,921.0 [감) 5,475.0]	-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북가좌동 380-14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89,735.0 [증) 5,475.0]	-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	35	보조 간선도로	4,000 (55)	남가좌동 102-4	수색동 293-25	일반 도로	-	서공고 제268호 (1972.11.26.)	-
변경	대로	1	1	35	보조 간선도로	4,000	남가좌동 102-4	수색동 293-25	일반 도로	-	서공고 제268호 (1972.11.26.)	완화차로 폐지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4,100 (58)	북가좌동 385-35	녹번동 153-1	일반 도로	-	서공고 제277호 (1978.6.29.)	-
변경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4,100	북가좌동 385-35	녹번동 153-1	일반 도로	-	서공고 제277호 (1978.6.29.)	완화차로 폐지
기정	중로	2	1	18	집산도로	280	북가좌동 383-9	북가좌동 350-4	일반 도로	-	토지구획정리 (1980.2.23.)	-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280	북가좌동 383-9	북가좌동 350-4	일반 도로	-	-	폭원축소
기정	중로	2	2	20	집산도로	180	북가좌동 316-14	북가좌동 347-27	일반 도로	-	토지구획정리 (1980.2.23.)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65	북가좌동 384-19	북가좌동 186-113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14-202호 (2014.5.29.)	-
변경	소로	1	1	10~14	국지도로	135	북가좌동 156-37	북가좌동 186-113	일반 도로	-	-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345	18~21	보조 간선도로	496	북가좌동 371-15	북가좌동 352-10 (증산3교)	일반 도로	-	서고시 제1992-70호 (1992.3.13.)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2	345	18~21	보조 간선도로	496	북가좌동 408-1	북가좌동 352-9 (증산3교)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선형변경

※ ( )은 정비구역내 연장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	대로 1-1	• 완화차로 폐지	• 합리적인 도로망계획 수립을 위해 완화차로 폐지
대로 3-1	대로 3-1	• 완화차로 폐지	• 합리적인 도로망계획 수립을 위해 완화차로 폐지
중로 2-1	중로 2-1	• 폭원축소 - 기정 : 18m - 변경 : 15m	• 합리적인 도로망계획 수립을 위해 도로폭원 축소
소로 1-1	소로 1-1	• 선형변경 - 기정 : 10m (연장 165m) - 변경 : 10m ~ 14m (연장 135m)	• 이면지역 맹지해소 및 도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선형 변경
중로 2-345	중로 2-345	•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기점·종점 변경 - 기점 : 북가좌동 371-15 → 북가좌동 408-1 - 종점 : 북가좌동 352-10 → 북가좌동 352-9 - 폭원 : 18~21m (변경없음) - 연장 : 496m (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 당시 [서고시 제2014-202호 (2014.5.29.)] 획지와 도로 중복구간 발생에 따른 도로선형 조정 • 토지 합병에 따른 기점 및 종점 변경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북가좌동 366-4 일대	-	증) 6,000.0	6,000.0	-	문화공원 중복결정 (서대문구)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 치 : 북가좌동 366-4 일대 - 연 면 적 : 8,000㎡ - 주차면수 : 180대	•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공원과 중복결정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반영)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376-35 일대	5,226.1	감) 5,226.1	-	서고시 제2014-202호 (2014.5.29.)	-
변경	공원	문화공원	북가좌동 366-4 일대	-	증) 6,000.0	6,000.0		주차장 중복결정 (서대문구)
폐지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375-9 일대	11,175.0	감) 11,175.0	-	서고시 제2014-202호 (2014.5.29.)	-
폐지	공원	소공원	북가좌동 186-38 일대	1,475.2	감) 1,475.2	-	서고시 제2014-202호 (2014.5.29.)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공원	• 시설의 종류 변경 - 어린이공원 → 문화공원 • 면적 변경 - 기정) 5,226.1 ㎡ - 변경) 6,000.0㎡ (증 773.9㎡)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공원시설 및 면적 변경 • 지역주민의 여가·휴식의 증진을 위한 문화공원으로 시설의 종류 변경 (어린이공원 → 문화공원)
-	근린공원	• 폐지 - 기정) 11,175.0㎡ - 변경) 0㎡ (감 11,175.0㎡)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근린공원 폐지
-	소공원	• 폐지 - 기정) 1,475.2㎡ - 변경) 0㎡ (감 1,475.2㎡)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소공원 폐지

라.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	북가좌동 367-13 일대	-	증) 4,700.0	4,700.0	-	(서울시)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신설 - 면적 : 4,700.0㎡	•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가용부지 비축 및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사무소		획지1	300.0	증) 63.43	363.43	-
경비실		획지1	90.0	증) 10.00	100.00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획지1	2,100.0	감) 179.07	1,920.93	-
	주민운동시설	획지1	1,400.0	감) 604.51	795.49	공공개방
	경로당	획지1	540.0	증) 190.00	730.00	-
	어린이집	획지1	730.0	증) 20.00	750.00	공공개방
	작은도서관	획지1	395.0	감) 62.04	332.96	-
	다함께돌봄센터	획지1	-	증) 300.00	300.00	공공개방
	주민휴게시설	획지1	800.00	감) 800.00	-	-
	기 타	획지1	-	증) 10,533.61	10,533.61	-
	소 계	-	5,965.0	증) 9,397.99	15,362.99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8.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북가좌 제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4,656	획지1	77,592.1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 일대	401	-	-	401	-	
			획지2	870.0							
변경	북가좌 제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4,656	획지1	85,466.0							
			획지2	870.0							
			획지3	512.0							

9.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 이(m) 최고층수	비고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북가좌 제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4,656	획지1	77,592.1	북가좌동 369-21 일대	공동주택	35% 이하	214.97% 이하	249.88% 이하	75m 이하/ 24층 이하 (평균 18층)	-
			획지2	870.0	북가좌동 348-15 일대	종교시설	건축허가 시 관련법규에 따름				
변경	북가좌 제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4,656	획지1	85,466.0	북가좌동 369-21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5% 이하	216.81% 이하	249.88% 이하	105m 이하/ 3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획지2	870.0	북가좌동 348-15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획지3	512.0	북가좌동 186-37 일대	근린생활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12m 이하/ 3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구 분	주택건립 규모		비율(%)	비 고
	세대수	(소형)		
계	1,903	(162)	100.0	-
60㎡ 이하	1,152	(162)	60.0	소형주택 162세대 포함
60~85㎡ 이하	569	-	28.8	-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 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 칭</th><th>면 적(㎡)</th><th>명 칭</th><th>면 적(㎡)</th><th>정비계획</th><th>법적상한</th></tr>
<tr><td rowspan="4">변경</td><td colspan="11">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주택건립 규모</th><th rowspan="2">비율(%)</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세대수</th><th>(소형)</th></tr>
<tr><td>85㎡ 초과</td><td>182</td><td>-</td><td>11.2</td><td>-</td></tr>
</table>
- 60㎡ 이하 : 20% 이상
- 85㎡ 이하 : 60% 이상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
</td></tr>
<tr><td>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11">◦ 용도지역 변경 : 1단계 상향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63,878.4㎡)
◦ 도정법 제30조의3에 따른 용적률 상한 : 250%</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1">◦ 3m : 가로변 경관개선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1">◦ 주택공급계획 : 1,984 세대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4">주택건립 규모</th><th rowspan="3">비율(%)</th><th rowspan="3">비 고</th></tr>
<tr><th rowspan="2">조합 및
분양</th><th colspan="3">공공주택</th><th rowspan="2">합계</th></tr>
<tr><th>공공기여</th><th>법적상한</th><th>소계</th></tr>
<tr><td>계</td><td>1,733</td><td>80</td><td>171</td><td>251</td><td>1,984</td><td>100.0</td><td>-</td></tr>
<tr><td>60㎡ 이하</td><td>449</td><td>68</td><td>153</td><td>221</td><td>670</td><td>33.8</td><td>-</td></tr>
<tr><td>60~85㎡ 이하</td><td>893</td><td>12</td><td>18</td><td>30</td><td>923</td><td>46.5</td><td>-</td></tr>
<tr><td>85㎡ 초과</td><td>391</td><td>-</td><td>-</td><td>-</td><td>391</td><td>19.7</td><td>-</td></tr>
</table>
- 85㎡ 이하(국민주택규모) :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td></tr>
<tr><td>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11">◦ 허용용적률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14% → 10% 적용)
-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 (2%) 주1)
- 공공보행통로 조성 (※ 지역권 설정) (3%) [※ 지역권 설정권자 : 서대문구]
- 지능형 건축물 3등급 (9%) 주2)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 249.88% 이하
◦ 높이 및 층수 완화
- 75m이하(최고 24층이하/평균 18층이하) → 105m이하(최고 34층이하/평균층수 삭제)</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1">◦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가로변 경관개선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도면참조)</td></tr>
<tr><td>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1">◦ 공공보행통로 (2개소, 폭원 6m) [※ 정비계획 결정도 참고]
- 불광천길(18m)에서 북가좌초등학교 후문 연계 (1개소)
- 응암로(25m)에서 문화공원 연계 (1개소)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td></tr>
</table>

주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주거사업과-4568, 2019.4.25) 반영.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산정하고,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규모가 확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계획 등 재조정

주2) 지능형건축물 3등급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9%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산정하고, 건축심의 단계에서 인센티브 적용항목 확정 이후 용적률 계획 등 재조정

■ 용적률 계획(변경)

〈기정〉

구분	산정 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04,656.0㎡	78,462.1㎡	26,193.9㎡	5,681.7㎡	12,573.2㎡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면적 : 새로설치하는 기반시설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6,193.9㎡ - 5,681.7㎡ - 12,573.2㎡ = 7,939.0㎡ (구역대비 7.6%) ◦ 기반시설부담 계획(순부담) 7,939.00㎡ (7.6%) > 기준 6,387.84㎡ (6.1%) ▶ 기준 : 용도지역 1단계 완화 (63,878.4㎡의 10%)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계획(기준)용적률 190%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1.3α) = 190% X (1+1.3X0.1011) = 214.97%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7,939.0㎡ / 78,462.1㎡ = 0.1011 ◦ 정비계획용적률 214.97% 적용				
법적 상한용적률	◦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249.88% 이하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변경〉

구분		산정 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공공시설(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토지	환산부지			대지지분	환산부지
		104,656.0㎡	86,848.0㎡	17,808.0㎡	2,886.4㎡	4,184.3㎡	14,002.2㎡	2,720.00㎡	2,009.2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공공시설(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17,808.0㎡ + 2,886.4㎡ - 4,184.3㎡ - 14,002.2㎡) + 4,729.28㎡ = 7,237.18㎡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등 면적 : 도로(7,108㎡), 공원(6,000㎡), 공공공지(4,700㎡), 주차장 환산부지(2,886.4㎡)							
공공시설 환산면적	공공주택	※ 공공주택 환산면적 : 환산부지(2,009.28㎡) + 대지지분(2,720.00㎡) = 4,729.28㎡ (공공주택 : 80세대) ◦ 환산부지 = 표준건축비(원/㎡) X 공공주택 연면적(㎡) ÷ 부지가액(원/㎡) = 공공주택 설치비용(원/㎡) ÷ 부지가액(원/㎡) = 2,009.28㎡							

공공주택 — 설치비용 — 13,552,866,036 (원/㎡)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표준건축비 ÷ 1.1)

전용면적	표준건축비 (원/㎡)	면세적용 (원/㎡)
50㎡초과 ~ 60㎡이하	1,139,200	1,035,636.36
60㎡초과	1,138,400	1,034,909.09

공공주택 — 연면적 — 13,088.32 (㎡)

· 공공주택 세대수 및 규모

구분	세대수	공급면적(㎡)	계약면적(㎡)
계	80	6,841.48	13,088.32
전용59	68	81.14	154.58
전용84	12	110.33	214.74

구분	산정 내용
	부지가액 | 6,745,106 (원/㎡) | ·구역내 토지 평균공시지가 (3,372,553원/㎡, 2023년 기준) X 2 ◦ 대지지분 = (공공주택 계약면적(㎡) ÷ 전체 연면적(㎡)) X 대지면적 (㎡) = (13,088.32(㎡) ÷ 411,252.14(㎡)) X 85,466.0(㎡) = 2,720.0㎡

구분		산정 내용	
공공시설 환산면적	주차장	◦ 환산부지 = 설치비용(원/㎡) X 주차장 연면적(㎡) ÷ 부지가액(원/㎡) = 2,886.40㎡	
		주차장 / 설치비용 / 19,469,088,000 (원/㎡)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2022,서울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공사비 ÷ 1.1) 규모(연면적) | 신축 (원/㎡) | 면세적용 (원/㎡) 5,000㎡초과 | 2,677,000 | 2,433,636
		주차장 / 연면적 / 8,000.0 (㎡)	·공원 하부에 조성 (지하주차장 3층)
		부지가액 / 6,745,106 (원/㎡)	·구역내 토지 평균공시지가 (3,372,553원/㎡, 2023년 기준) X 2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10%) = 190% + 10% = 200% ◦ 인센티브 = 10%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 (2%)주1), 공공보행통로 개설(※ 지역권 설정) (3%), 지능형 건축물 3등급 (9%)주2) = 14%] (※10% 적용)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α토지 + 0.7×α건축물) = 200% × (1 + 1.3×0.02783 + 1.0×0.02388 + 0.7×0.03430) = 216.81% ◦ 상한용적률 : 216.81% 이하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7,808.0㎡ - 4,184.3㎡ - 14,002.2㎡ + 2,720.00㎡) / (104,656.0 - 17,808.0 - 2,720.0)㎡ = 0.02783 α공공주택 = 공공주택(공공주택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009.28㎡ / (104,656.0 - 17,808.0 - 2,720.0)㎡ = 0.02388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886.40㎡ / (104,656.0 - 17,808.0 - 2,720.0)㎡ = 0.03430
법적 상한용적률		◦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249.88% 이하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주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주거사업과-4568, 2019.4.25) 반영.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산정하고,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규모가 확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계획 등 재조정

주2) 지능형건축물 3등급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9%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산정하고, 건축심의 단계에서 인센티브 적용항목 확정 이후 용적률 계획 등 재조정

① 기준용적률	항 목		인센티브	적용 여부	③ 허용용적률 (①+②)
190%	공공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설정)	10% 이하	적용	200%
	세입자 손실보상	· 세입자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 (최대 10%)	5% 이하	적용	
	우수디자인		15% 이하	-	
	장수명주택	· 우수등급 이상	10% 이하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 1+, 녹색 최우수	9% 이하	-	
		· 에너지 1+, 녹색 우수	6% 이하	-	
		· 에너지 1, 녹색 최우수	6% 이하	-	
		· 에너지 1, 녹색 우수	3% 이하	-	
	제로에너지빌딩	· 제로에너지빌딩 1등급	15% 이하	-	
		· 제로에너지빌딩 2등급	14% 이하	-	
		· 제로에너지빌딩 3등급	13% 이하	-	
		· 제로에너지빌딩 4등급	12% 이하		
		· 제로에너지빌딩 5등급	11% 이하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에너지자립률 20% 미만	10% 이하		
	지능형건축물	· 1등급	15% 이하	-	
		· 2등급	12% 이하	-	
		· 3등급	9% 이하	적용	
		· 4등급	6% 이하	-	
	역사문화보전	·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복원 등 등 (위원회 인정)	5% 이하	-	
② 인센티브 적용 계			10% 적용		최대 10% 이내

■ 공공주택(공공기여/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가)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분	내용	비고
소형주택 공급기준 및 법적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 건설(전용 60㎡ 이하)	도정법 제30조의 3
	• 정비계획 용적률 : 214.97% 이하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49.88% 이하 적용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49.88% - 214.97%) × 50% = 34.91% × 50% = 17.46% 이상 • 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17.46% = 77,592.1㎡ × 17.46% = 13,547.58㎡ 이상 ※ 법적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 후 최종결정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 1-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선택
소형주택 확보계획	• 세대수 : 162세대 (전용 59.99㎡) • 소형주택 건설 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162세대 × 83.82㎡ = 13,578.84㎡ ≧ 13,547.58㎡	보금자리주택 및 장기전세 주택 활용 * 조례 제30조 제1항

<변경>

구분		내용				
계획기준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 249.88%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결정				
상한용적률		• 216.81%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 33.07% (= 249.88% - 216.81%)				
	증가된 용적률의 50%	• 16.535% (= 33.07% × 0.5)				
	의무 연면적	• 14,131.80㎡ 이상 (획지1 x 16.535% = 85,466.0㎡ x 16.535% = 14,131.80㎡)				
	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세대규모		세대수(세대)	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171	14,207.94㎡	〉 14,131.80㎡ (의무)
		59.33㎡	81.14㎡	153	12,414.42㎡	획지1
		74.80㎡	99.64㎡	18	1,793.52㎡	
공공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구분	세대규모		세대수(세대)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총계	-	-	251	
		공공주택 (공공기여)	소계		80	정비계획용적률 완화 (공공기여)에 따른 공공주택
			59.33㎡	81.14㎡	68	
			84.35㎡	110.33㎡	12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소계		171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59.33㎡	81.14㎡	153	
			74.80㎡	99.64㎡	18	

※ 공공주택 규모·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 고려, 지형변화 최소화 • 기존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의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확장	-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재난방지	화재	•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수몰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교통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물순환,수리·수문	건축유형 및 용도지역별 기준 적용	○	• 생태면적율은 45% 이상으로 계획	•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을 적용	-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확보	○	• 대상지 내부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조경수목이 일부 식재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녹지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상지 지상부에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
3)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획지(공동주택,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 공공공지)로 계획	-
4)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본 대상지내 건축물은 저층 주거시설로 비교적 평탄한 지형임 •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
5)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대부분 5등급으로 조사됨	• 대지면적내 조경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임에 따라 새로운 녹지공간을 형성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6)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대상지 주변으로 주거지와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관련법령에 의거 건물높이, 배치 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
7) 바람	바람길 확보	○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
8)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열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등으로 대상지 주변지역에 열섬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	
9) 대기질 · 미세먼지,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유입인구의 증가로 온실가스 증가	•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	-
10)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일시적인 토사유출 발생	• 공사중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	-
11)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수립	○	• 에너지사용량 증가	• 청정연료 사용 •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	-
12) 경관	Skyline보전	○	• 대상지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며,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시각적 개방 확보 및 경관조화를 통한 시가지 환경의 질 향상 • 사업대상지와 개발계획을 고려할 때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	-
	조망권 확보	○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녹지 공간 확보를 비롯한 녹색경관창출을 도모함	-
13) 휴식 및 여가 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 대상지 북서측에는 불광천 위치하고 있음	• 조경공간 내 자연 · 인공지반 등 녹지공간 최대확보 • 옥상녹화 등을 통한 휴식공간 제공 • 북가좌초등학교와 인접 및 주변과의 연계를 고려한 공원 조성	-
14) 보행친화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	• 대상지 남서측으로는 경의중앙, 공항철도, 지하철6호선의 환승역인 DMC역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뛰어남 • 대상지 남서측으로 수색로, 북서측으로 불광천길이 지나가고 있음	• 원활한 주출입구를 이면도로에 개설하여 간선도로변의 원활한 차량소통 유도 • 보행동선 계획을 통한 보행접근환경 적극 개선	-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수립	X	• 주변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 공동주택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15)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 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
16) 친환경적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등 발생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 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감	
기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한 공급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7년 이내	북가좌 제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1,611세대	1,903세대	증) 292세대	-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1,984세대	증) 373세대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기정	대상지 인접	북가좌 초등학교(북측)	•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상에 서대문구 6번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학교확보필요권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상지 북측에 북가좌초등학교가 접하여 있고, 대상지 동측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신설되어 건립예정 되어 있어 대상지의 학교확보필요권역을 해지 하고자 하며, • 대상지 인접 북가좌초등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200m 이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봤을 때, 대상지는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금지행위 등의 검토가 필요 • 따라서, 대상지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시 학교보건법에 의거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정비구역지정되고 조합설립된 후 설치 및 운영하여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위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상지 내 입지	해맑은 유치원		
변경	대상지 인접	북가좌 초등학교(북측) / 가재울 중고등학교(동측)	•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상에 서대문구 6번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학교확보필요권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상지 북측에 북가좌초등학교가 접하여 있고, 대상지 동측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신설되어 대상지의 학교확보필요권역을 해지 하고자 하며, • 대상지는 북가좌초등학교 경계 200m 이내에 해당하는 상대보호구역 및 가재울중고등학교 (2013.03 개교) 상대보호구역에 일부 포함되므로,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금지행위 등의 검토가 필요 • 따라서, 대상지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업시행인가 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임	-
	대상지 내 입지	해맑은 유치원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계획내용			비고
	추진위/조합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추진 중인 상태로 대상지 내 주민들 거주중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법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 (자연감시 고려)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북가좌 제6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 일대	-	증) 104,656.0	104,656.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해당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4,656.0	-	104,656.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20,396.0	감) 5,475.0	14,921.0	14.3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84,260.0	증) 5,475.0	89,735.0	85.7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	35	보조 간선도로	4,000 (55)	남가좌동 102-4	수색동 293-25	일반 도로	-	서공고 제268호 (1972.11.26.)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대로	1	1	35	보조 간선도로	4,000	남가좌동 102-4	수색동 293-25	일반 도로	-	서공고 제268호 (1972.11.26.)	완화차로 폐지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4,100 (58)	북가좌동 385-35	녹번동 153-1	일반 도로	-	서공고 제277호 (1978.6.29.)	-
변경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4,100	북가좌동 385-35	녹번동 153-1	일반 도로	-	서공고 제277호 (1978.6.29.)	완화차로 폐지
기정	중로	2	1	18	집산도로	280	북가좌동 383-9	북가좌동 350-4	일반 도로	-	토지구획정리 (1980.2.23.)	-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280	북가좌동 383-9	북가좌동 350-4	일반 도로	-	-	폭원축소
기정	중로	2	2	20	집산도로	180	북가좌동 316-14	북가좌동 347-27	일반 도로	-	토지구획정리 (1980.2.23.)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65	북가좌동 384-19	북가좌동 186-113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14-202호 (2014.5.29.)	-
변경	소로	1	1	10~14	국지도로	135	북가좌동 156-37	북가좌동 186-113	일반 도로	-	-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345	18~21	보조 간선도로	496	북가좌동 371-15	북가좌동 352-10 (증산3교)	일반 도로	-	서고시 제1992-70호 (1992.3.13.)	-
변경	중로	2	345	18~21	보조 간선도로	496	북가좌동 408-1	북가좌동 352-9 (증산3교)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선형변경

※ ( )은 정비구역내 연장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	대로 1-1	• 완화차로 폐지	• 합리적인 도로망계획 수립을 위해 완화차로 폐지
대로 3-1	대로 3-1	• 완화차로 폐지	• 합리적인 도로망계획 수립을 위해 완화차로 폐지
중로 2-1	중로 2-1	• 폭원축소 - 기정 : 18m - 변경 : 15m	• 합리적인 도로망계획 수립을 위해 도로폭원 축소
소로 1-1	소로 1-1	• 선형변경 - 기정 : 10m (연장 165m) - 변경 : 10m ~ 14m (연장 135m)	• 이면지역 맹지해소 및 도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선형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345	중로 2-345	•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기점·종점 변경 - 기점 : 북가좌동 371-15 → 북가좌동 408-1 - 종점 : 북가좌동 352-10 → 북가좌동 352-9 - 폭원 : 18~21m (변경없음) - 연장 : 496m (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 당시 [서고시 제2014-202호 (2014.5.29.)] 획지와 도로 중복구간 발생에 따른 도로선형 조정 • 토지 합병에 따른 기점 및 종점 변경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북가좌동 366-4 일대	-	증) 6,000.0	6,000.0	-	문화공원 중복결정 (서대문구)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 치 : 북가좌동 366-4 일대 - 연 면 적 : 8,000㎡ - 주차면수 : 180대	•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공원과 중복결정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반영)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376-35 일대	5,226.1	감) 5,226.1	-	서고시 제2014-202호 (2014.5.29.)	-
변경	공원	문화공원	북가좌동 366-4 일대	-	증) 6,000.0	6,000.0		주차장 중복결정 (서대문구)
폐지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375-9 일대	11,175.0	감) 11,175.0	-	서고시 제2014-202호 (2014.5.29.)	
폐지	공원	소공원	북가좌동 186-38 일대	1,475.2	감) 1,475.2	-	서고시 제2014-202호 (2014.5.2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공원	• 시설의 종류 변경 - 어린이공원 → 문화공원 • 면적 변경 - 기정) 5,226.1 ㎡ - 변경) 6,000.0㎡ (증 773.9㎡)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공원시설 및 면적 변경 • 지역주민의 여가·휴식의 증진을 위한 문화공원으로 시설의 종류 변경 (어린이공원 → 문화공원)
-	근린공원	• 폐지 - 기정) 11,175.0㎡ - 변경) 0㎡ (감 11,175.0㎡)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근린공원 폐지
-	소공원	• 폐지 - 기정) 1,475.2㎡ - 변경) 0㎡ (감 1,475.2㎡)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소공원 폐지

4)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	북가좌동 367-13 일대	-	증) 4,700.0	4,700.0	-	(서울시)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신설 - 면적 : 4,700.0㎡	•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가용부지 비축 및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획지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소계	78,462.1	증) 8,385.9	86,848.0	100.0	-
	획지1	77,592.1	증) 7,873.9	85,466.0	98.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870.0	-	870.0	1.0	종교시설
	획지3	-	증) 512.0	512.0	0.6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구분		획지	용도	비고
신설	허용용도(A)	획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신설	허용용도(B)	획지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종교집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신설	허용용도(C)	획지3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허용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8장에 적합한 범위에서 허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음. 또한, 거주환경, 거주유형, 개발사업 방식 등을 고려하여 불허용도의 형태로 수정 · 보완하여 활용 가능

※ 허용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6호에 의한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건축연면적(지하층은 포함, 부설주차장, 기계실, 계단 등의 공용면적은 제외)의 50% 이상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변경)

구분	획지	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35%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계법령에 따름	종교시설
변경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35%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관계법령에 따름	종교시설
	획지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관계법령에 따름	근린생활시설

나)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획지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획지1	190% 이하	-	214.97% 이하	249.88% 이하	정비계획	기준용적률 : 190.00% 상한용적률 : 214.97% 법적상한용적률 : 249.88%이하
	획지2	관계법령에 따름				-	
변경	획지1	190% 이하	200% 이하	216.81% 이하	249.88% 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 200.00% 상한용적률 : 216.81% 법적상한용적률 : 249.88%이하
	획지2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3	관계법령에 따름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획지	인센티브				비고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주1)	공공보행통로 조성 (※ 지역권 설정)	지능형 건축물 3등급주2)	합계	
신설	획지1	2%	3%	9%	14%	10% 적용

주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주거사업과-4568, 2019.4.25) 반영.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산정하고,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규모가 확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계획 등 재조정

주2) 지능형건축물 3등급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9%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산정하고, 건축심의 단계에서 인센티브 적용항목 확정 이후 용적률 계획 등 재조정

■ 상한(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사항(변경)

구분	획지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주택 건설 (공공기여)		공공주택 건설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합계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기정	획지1	24.97%	-	-	-	34.91%	59.88%	법적상한용적률 : 249.88% 이하 (기준용적률 190% + 완화량 59.88%)
		24.97%		-				
변경	획지1	-	4.80%	7.23%	4.78%	33.07%	49.88%	법적상한용적률 : 249.88% 이하 (허용용적률 200% + 완화량 49.88%)
		4.80%		12.01%				

다) 높이 계획(변경)

구분	획지	지역	높이(층수)기준	비고
기정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75m 이하 / 24층 이하 (평균 18층)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준수
	획지2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계법령에 따름	-
변경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m 이하 / 34층 이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준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획지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2m 이하 / 3층 이하	-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획지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결정도면 참조

라.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 ·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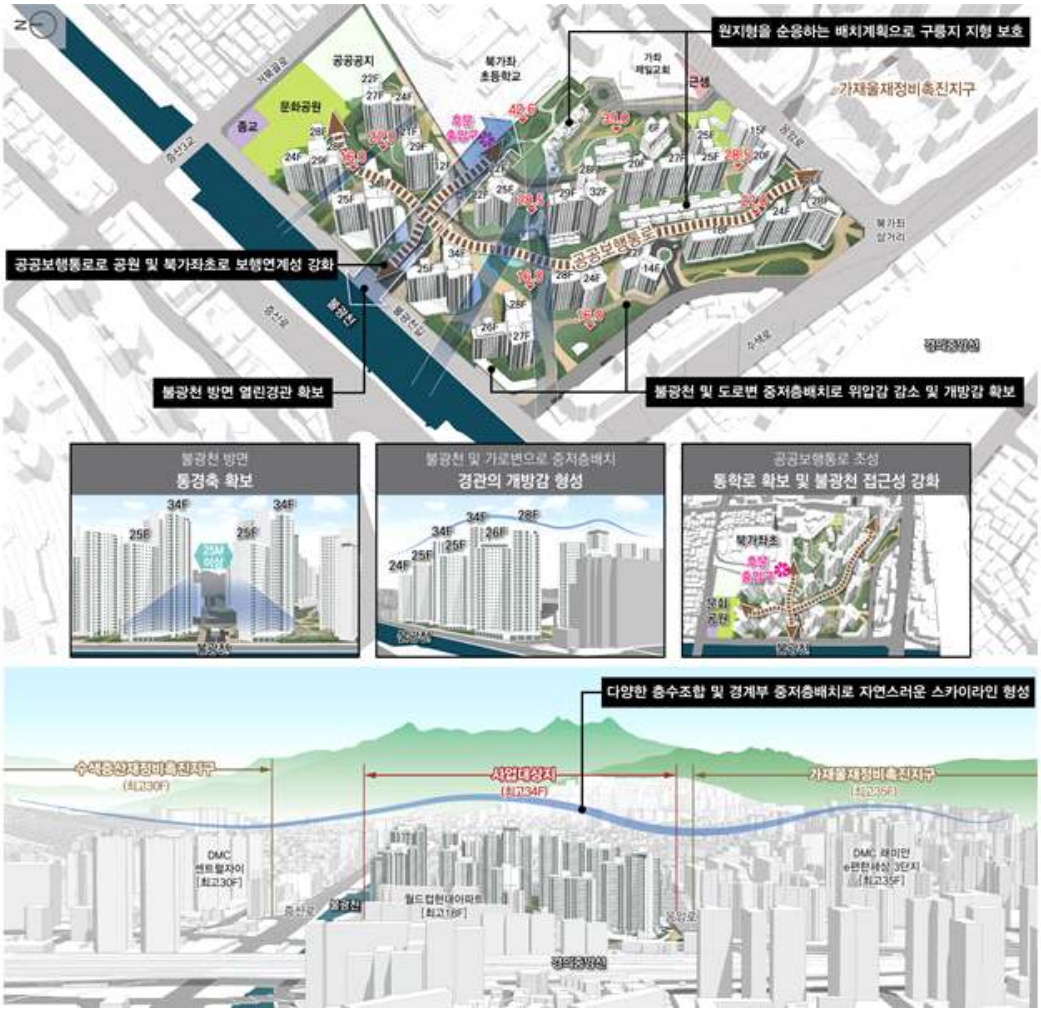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경관구조계획	공동주택	• 주변 재개발 단지 및 불광천과 조화로운 공동주택 경관 조성 • 개방감을 고려한 단지배치, 입면형태계획으로 열린 수변경관 형성	-
녹지계획	공동주택 및 문화공원	• 불광천 쉼의 축을 연계하는 문화공원과 단지녹지계획 • 단지 내 개방된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하고, 식재를 심어 기존 자연경관과 연계	-
옹벽계획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불광천에서 북가좌초로 높아지는 지형의 특성을 고려해, 높이차가 발생하는 구간은 부대시설, 테라스하우스 등을 배치해 극복 • 자연경사처리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진입부	공동주택	•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최대한 지양 • 불광천, 문화공원, 북가좌초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접근성 및 편의성 확보	-
건축물 외부형태	공동주택	• 주동 패턴디자인으로 경관의 단조로움을 완화하고 변화감 부여 • 필로티 계획으로 공간의 개방감 형성 및 보행의 접근성 향상	-
재료 및 색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주변 환경 및 맥락에 부합하는 색상, 명도, 채도 설정 • 저층부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적용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2)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개방감	공동주택	• 불광천 방면 통경축 확보	-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 불광천 및 가로변 중저층배치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

◆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경관계획(안)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획지1	• 도면에 표기	• 공공보행통로 (2개소, 폭원 6m)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 불광천길(18m)에서 북가좌초등학교 후문 연계 (1개소) - 응암로(25m)에서 문화공원 연계 (1개소)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결정도면 참조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물순환,수리 · 수문	건축유형 및 용도지역별 기준 적용	○	• 생태면적율은 45% 이상으로 계획	•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을 적용	-
2) 생태 네트워크	녹지 · 수생태 연결성확보	○	• 대상지 내부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조경수목이 일부 식재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녹지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상지 지상부에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
3)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획지(공동주택,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 공공공지)로 계획	-
4) 지형 · 지질	지형 · 지질 변동 최소화	○	• 본 대상지내 건축물은 저층 주거시설로 비교적 평탄한 지형임 •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
5)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대부분 5등급으로 조사됨	• 대지면적내 조경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임에 따라 새로운 녹지공간을 형성	-
6)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대상지 주변으로 주거지와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관련법령에 의거 건물높이, 배치 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
7) 바람	바람길 확보	○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
8)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열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등으로 대상지 주변지역에 열섬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9) 대기질 · 미세먼지,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유입인구의 증가로 온실가스 증가	•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	-
10)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일시적인 토사유출 발생	• 공사중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	-
11)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수립	○	• 에너지사용량 증가	• 청정연료 사용 •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	-
12) 경관	Skyline보전	○	• 대상지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며,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시각적 개방 확보 및 경관조화를 통한 시가지 환경의 질 향상 • 사업대상지와 개발계획을 고려할 때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	-
	조망권 확보	○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녹지 공간 확보를 비롯한 녹색경관창출을 도모함	-
13) 휴식 및 여가 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 대상지 북서측에는 불광천 위치하고 있음	• 조경공간 내 자연 · 인공지반 등 녹지공간 최대확보 • 옥상녹화 등을 통한 휴식공간 제공 • 북가좌초등학교와 인접 및 주변과의 연계를 고려한 공원 조성	-
14) 보행친화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	• 대상지 남서측으로는 경의중앙, 공항철도, 지하철6호선의 환승역인 DMC역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뛰어남 • 대상지 남서측으로 수색로, 북서측으로 불광천길이 지나가고 있음	• 원활한 주출입구를 이면도로에 개설하여 간선도로변의 원활한 차량소통 유도 • 보행동선 계획을 통한 보행접근환경 적극 개선	-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수립	x	• 주변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 공동주택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15)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 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
16) 친환경적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등 발생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 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

4) 공공주택(공공기여/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계	공공기여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 비율	공공주택 중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합 계	1,984	100.0	251	80	171	12.6	100.0	68.1
40㎡ 이하	-	-	-	-	-	-	-	-
40㎡ 초과 ~ 50㎡ 이하	64	3.2	-	-	-	-	-	-
50㎡ 초과 ~ 60㎡ 이하	606	30.6	221	68	153	11.1	88.0	60.9
60㎡ 초과 ~ 85㎡ 이하	923	46.5	30	12	18	1.5	12.0	7.2
85㎡ 초과	391	19.7	-	-	-	-	-	-

□ 2024년 제2차(‘24.2.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제2차 도시계획 위원회	• 공공공지 신설계획(4,700㎡)은 주관부서에서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가용부지 비축 및 유보지 성격으로 제시한 바, 수용하되, 향후 세부 용도 특정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 ※ 공공공지계획 관련 주관부서에서 기부채납 부지의 세부 용도 확정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할 것.	• 공공공지 신설계획(4,700㎡) 관련 - 조합의견 : 공공공지 위치 및 제공면적 동의함. • 공공공지계획 관련하여 세부용도 특정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확정하겠음. • 추후 기부채납 부지의 세부용도 확정시 법적인 사항 검토 하겠음.	반영
	• 문화공원의 위치는 불광천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접한 종교시설과 협의하여 위치 조정을 강력 권고.	• 가좌동 성결교회는 현재 불광천변 인근에 입지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2014년) 당시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협의하여 관련절차 이행(공람공고,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등)을 진행하여 가각부 획지2(종교시설) 위치로 조정되었음. • 문화공원과 불광천의 연계성을 강화를 위해 불광천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보행연결통로 개설을 계획하였음. ※ 불광천변 연결 보행통로 신설 공사비 : 약 3억원 예상 • 또한,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문화공원에 연접한 불광천길에 활주로형 고원식횡단보도 및 차량의 속도를 저감 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과속단속카메라 및 지그재그차로)을 설치 계획하였음. • 다만, 2024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24.02.07)에 따라 종교시설용지 위치 조정에 대해 가좌동 성결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위치 조정에 대해 불가의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어, 가각부에 결정된 획지2(종교시설용지) 위치 조정 협의진행 어려움.	부분 반영
	• 공공보행통로계획은 구역 내부 지형단차가 상당하고, 대상지 일대 주요 지점(불광천 진입로 등)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바, 북가좌초 학생 통학로 등 이용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선형을 조정할 것.	• 공공보행통로계획은 공공공지 위치 조정에 따라 주요 지점 (불광천 진입로 및 문화공원)과의 연계성 강화 및 북가좌초등학교 학생 통학로의 이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선형 조정 및 일부구간을 추가 계획 하였으며, 구역 내부 지형단차를 극복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검토 하였음.	반영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다음 사항 적정성을 검토할 것.] • 불광천변 주동의 건축배치계획은 불광천변에 상당히 연접하여 계획된 바,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조정 검토 필요.	• 불광천변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광천변에 위치한 주동의 높이 일부를 하향 조정하였음. - 심 의 안 : 34층 이하 - 사전검토의견 조치안 : 29층 이하 - 조 치 안 : 25층 이하 • 건축계획 관련 사항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확정토록 하겠음.	반영
	• 불광천변 주동의 높이는 위압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향 조정하고, 텐트형 스카이라인으로 조정 검토할 것.	• 불광천변 주동의 높이 일부를 하향 조정(34층→25층)하여, 위압감 최소화 및 텐트형 스카이라인 검토하였음. • 건축계획 관련 사항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확정토록 하겠음.	반영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1. 기본계획 결정도(기정/변경)
2. 정비구역 결정도
3. 용도지역 · 용도지구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 (☎02-2133-7213) 및 서대문구 신통개발과 (☎02-330-153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 기본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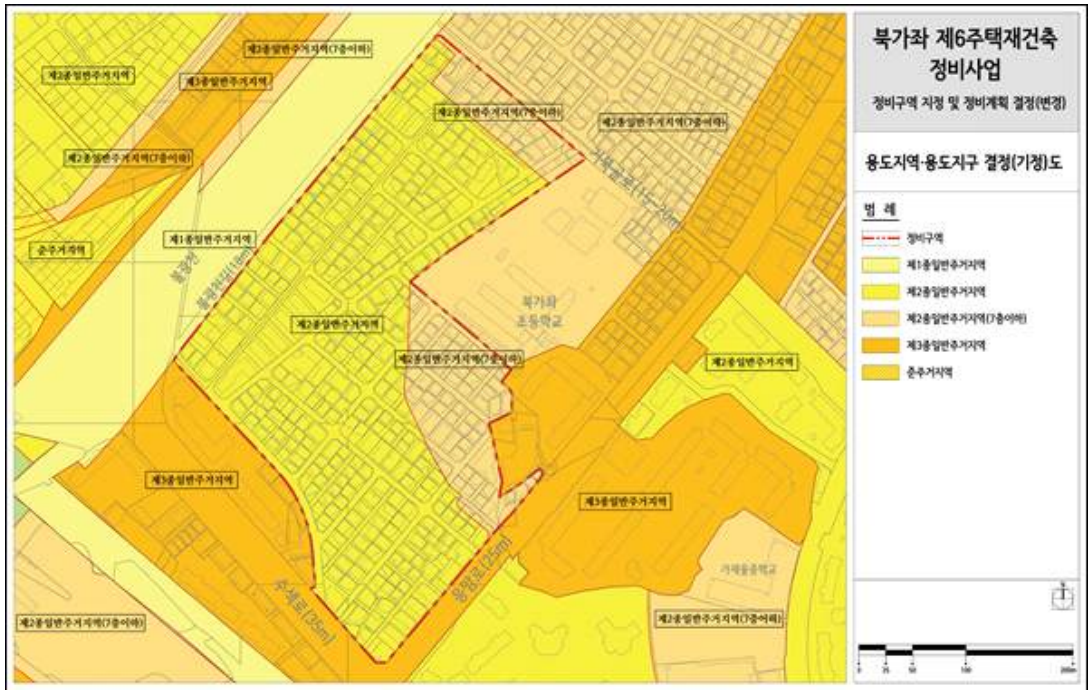
□ 기본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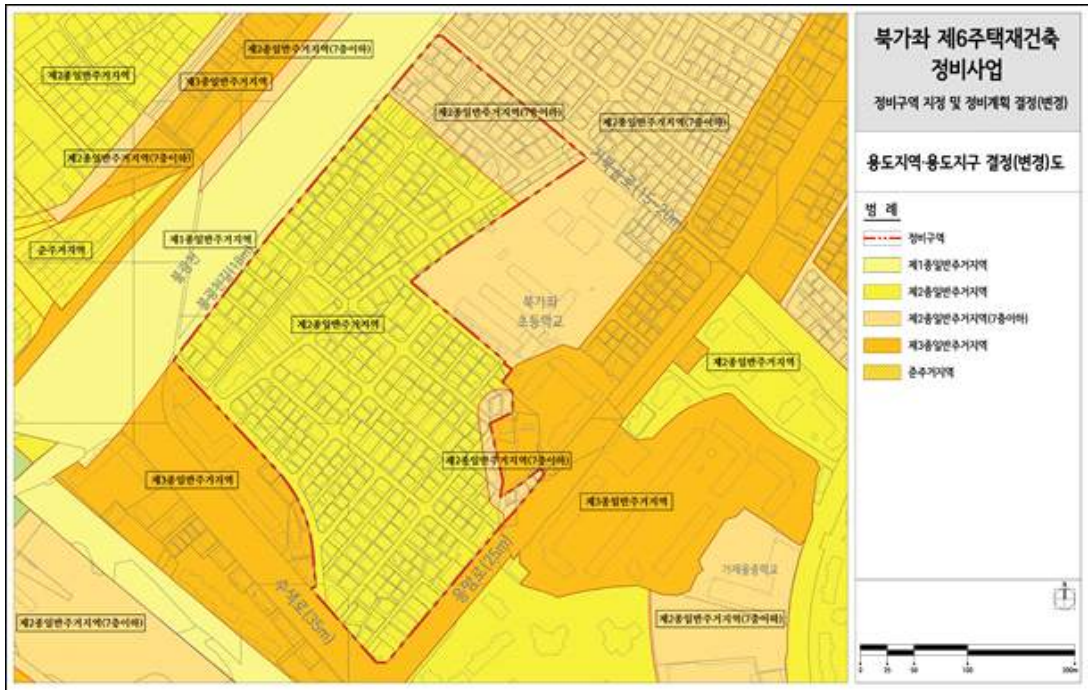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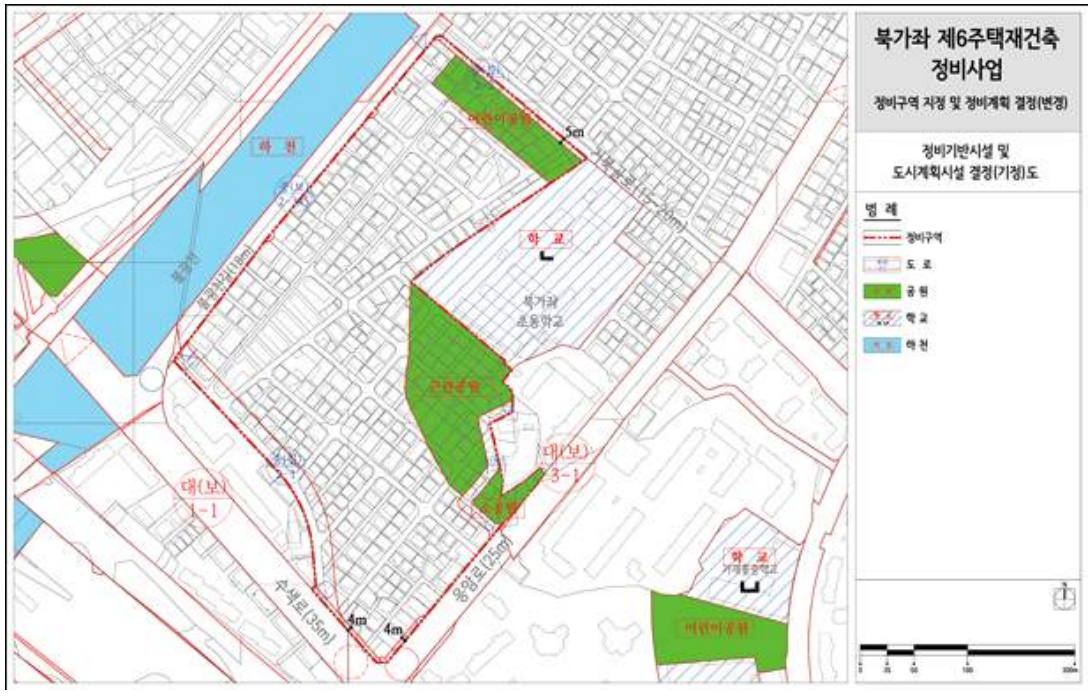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용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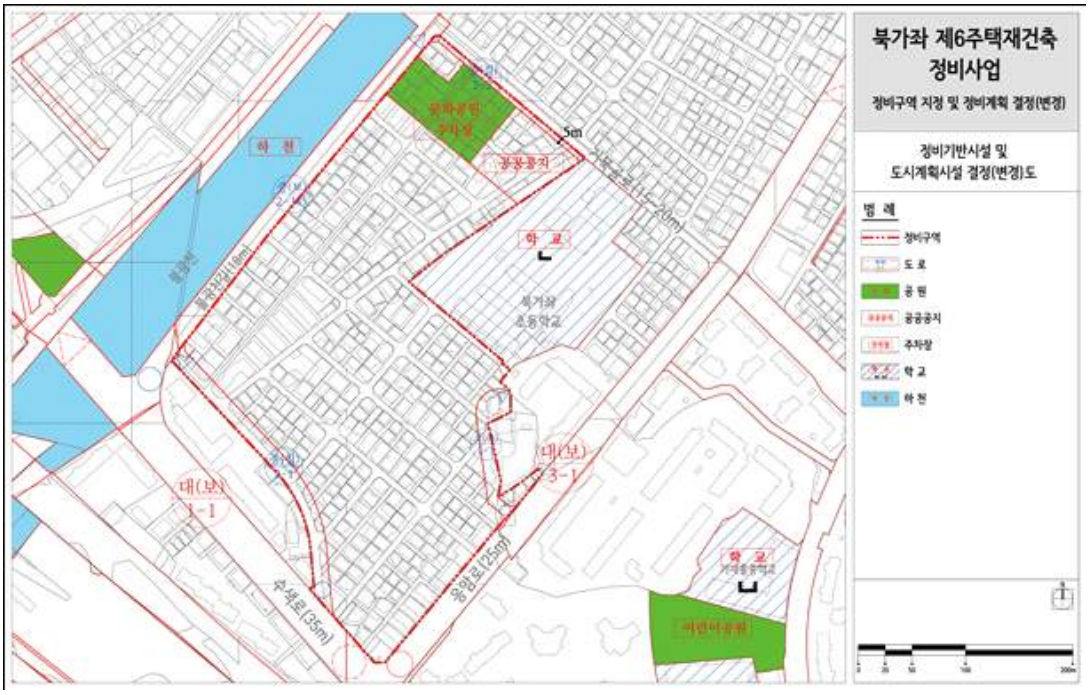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용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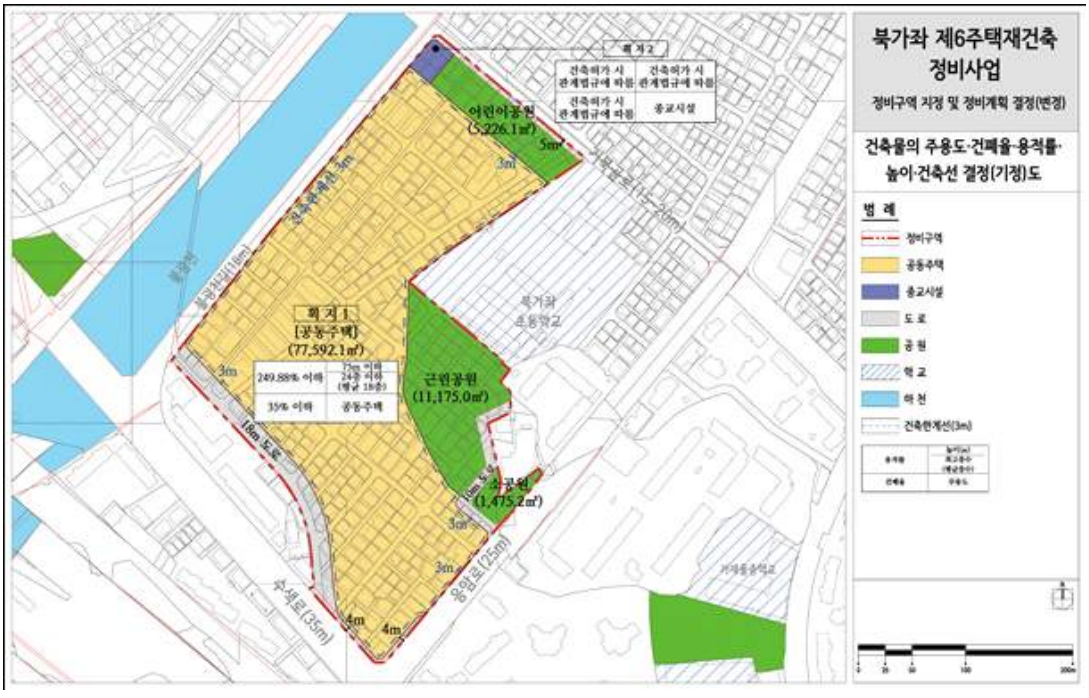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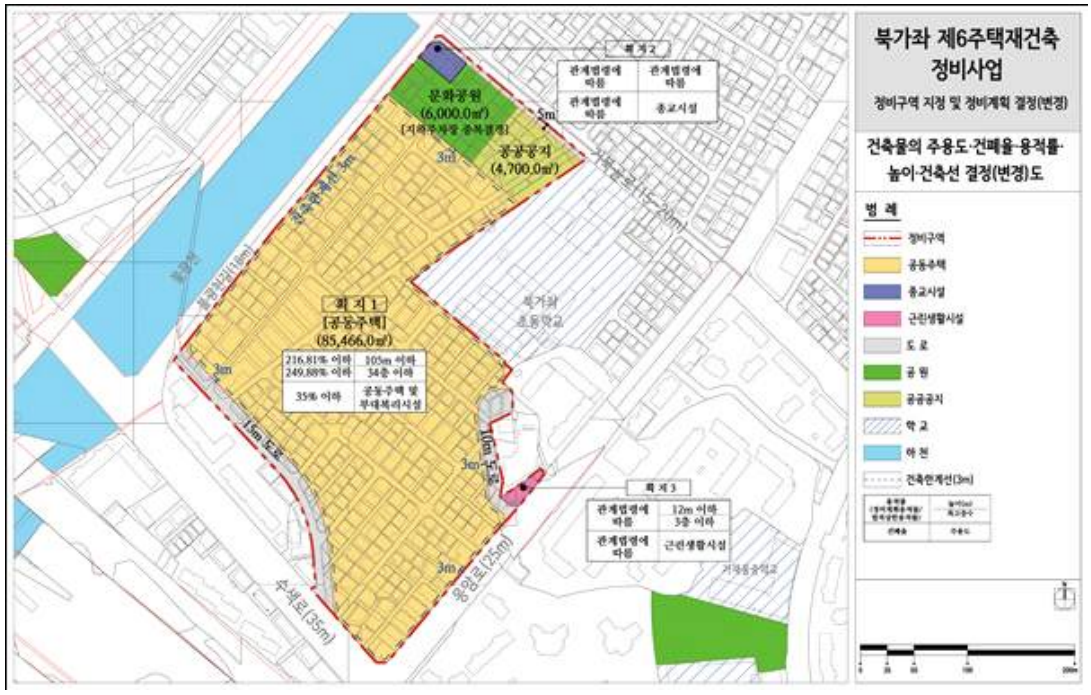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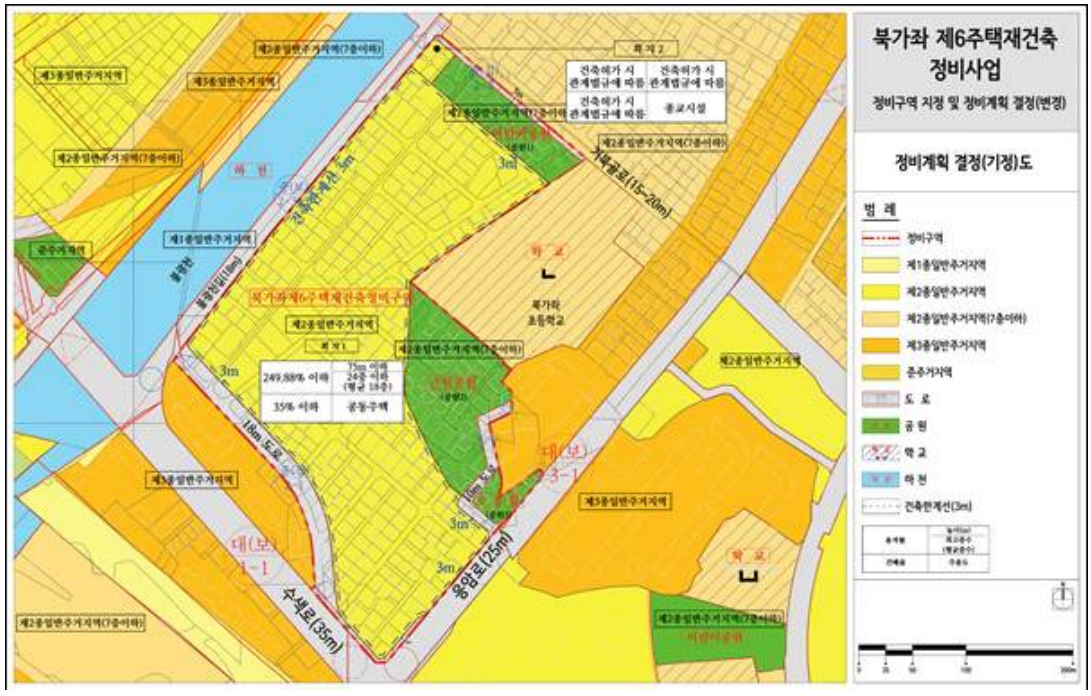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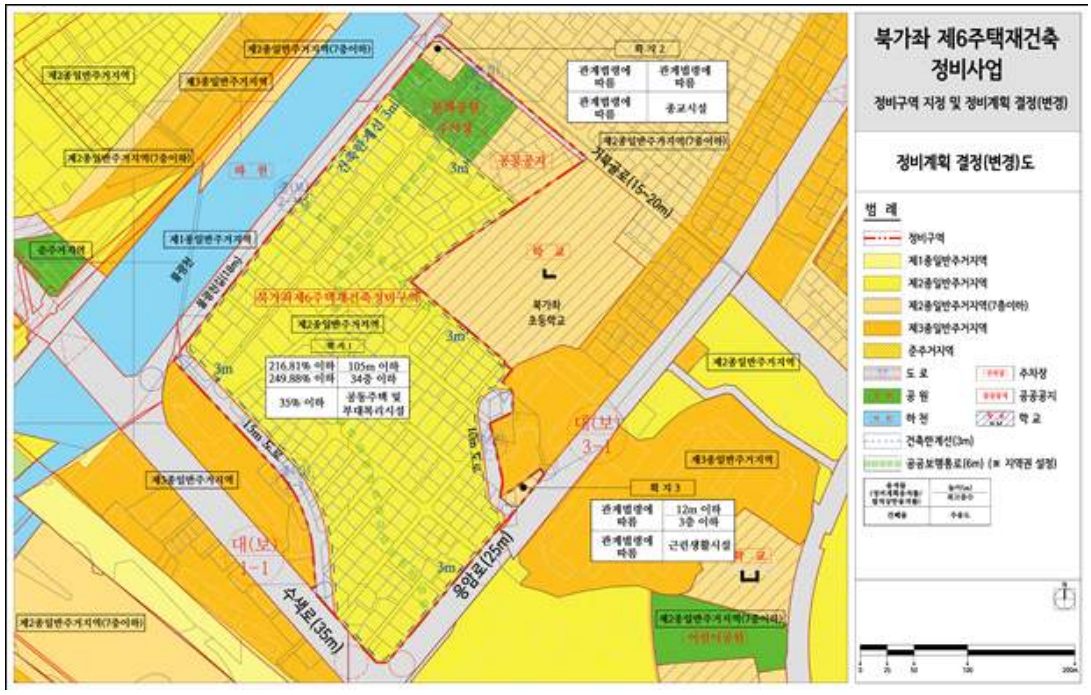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건축선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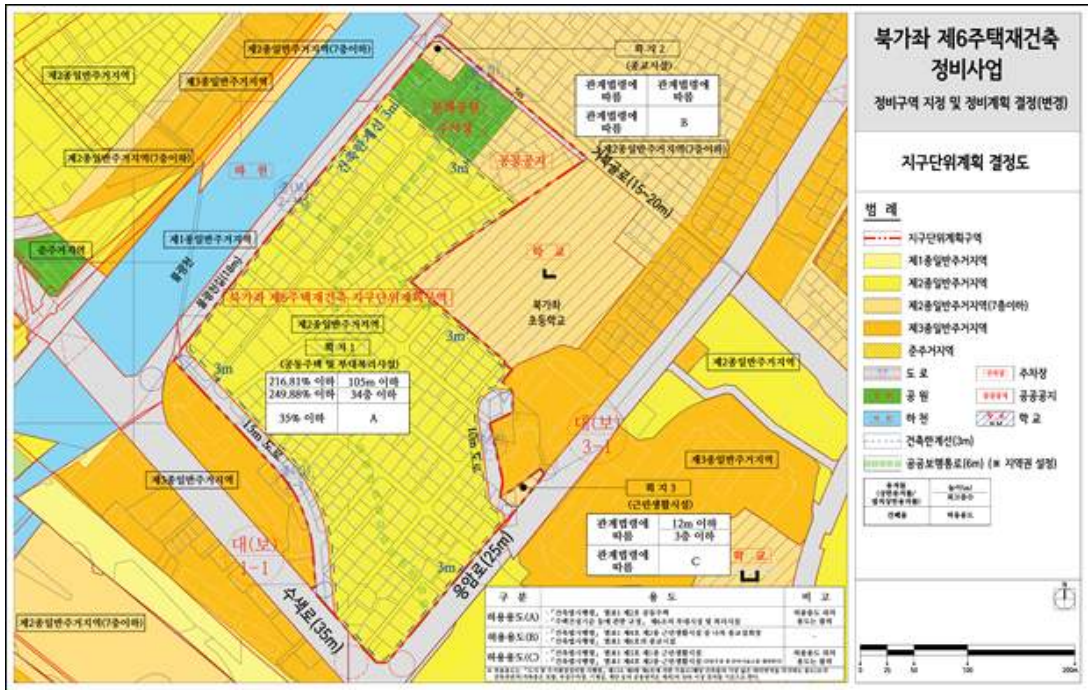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0호

남부터미널 일대·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 운영지침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864호(2000.12. 5.), 제2001-185호(2001. 3.10.), 제2004-233호(2004. 3. 5.), 제2005-467호(2005. 4. 7.), 제2006-54호(2006. 3.16.), 제2007-163호(2007. 1. 5.), 제2011-163호(2011. 6.23.), 제2019-1호(2019. 1. 3.), 제2020-174호(2020. 5. 1.),제2022-252호(2022. 6. 9.)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호(2019. 1. 3.)로 지정·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하여 「건축법」 제 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2조 2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33조 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및 지침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남부터미널 일대·장한로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 기 운영 중인 45개 가로구역 시행지침 및 산정구역 운영지침 변경

Ⅱ. 주요 변경사항

○ 남부터미널 일대, 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신규 지정

- 기존 전면도로 너비에 따라 산정식으로 운영한 산정구역에 해당하는 남부터미널 일대, 장한로에 대한 기준높이/최고높이 지정

연번	구역명	기정(㎡)	변경(㎡)	변경후(㎡)
1	남부터미널 일대	-	증) 193,612	193,612
2	장한로 일대	-	증) 202,404	202,404

○ 45개 지정구역 및 높이 산정구역(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 시행지침 및 운영지침 변경

- 45개 지정구역 높이계획 시행지침 통일(용어, 완화 기준 등)
- 높이 산정구역(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운영지침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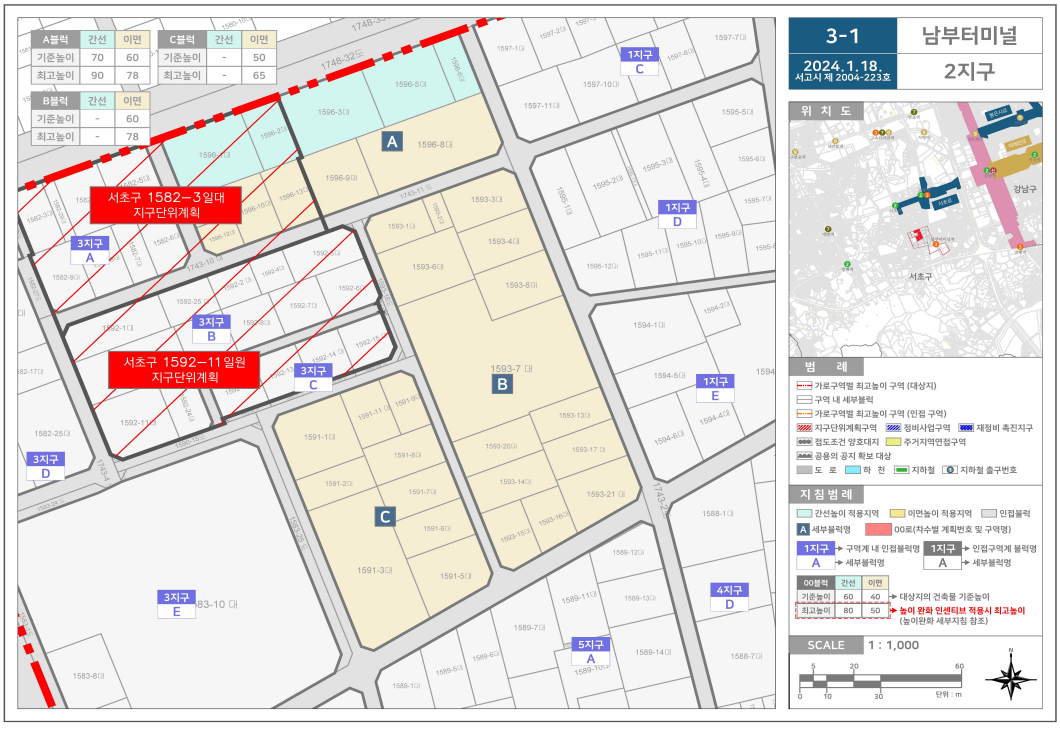
※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민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면은 우리시 홈페이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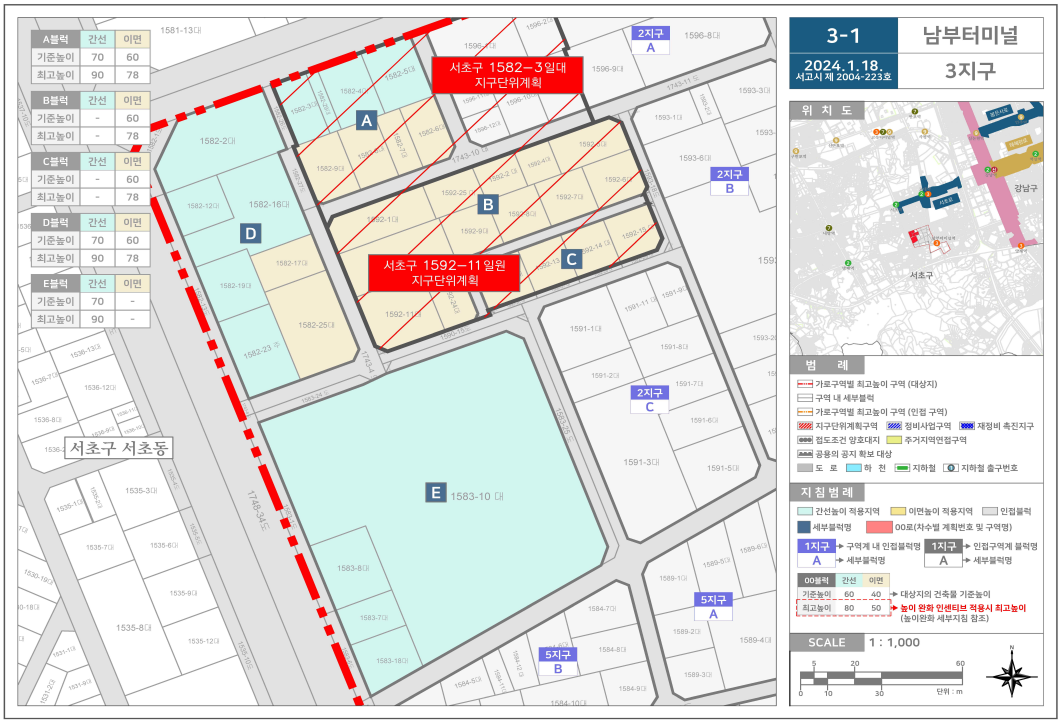
○ (신설) 남부터미널(1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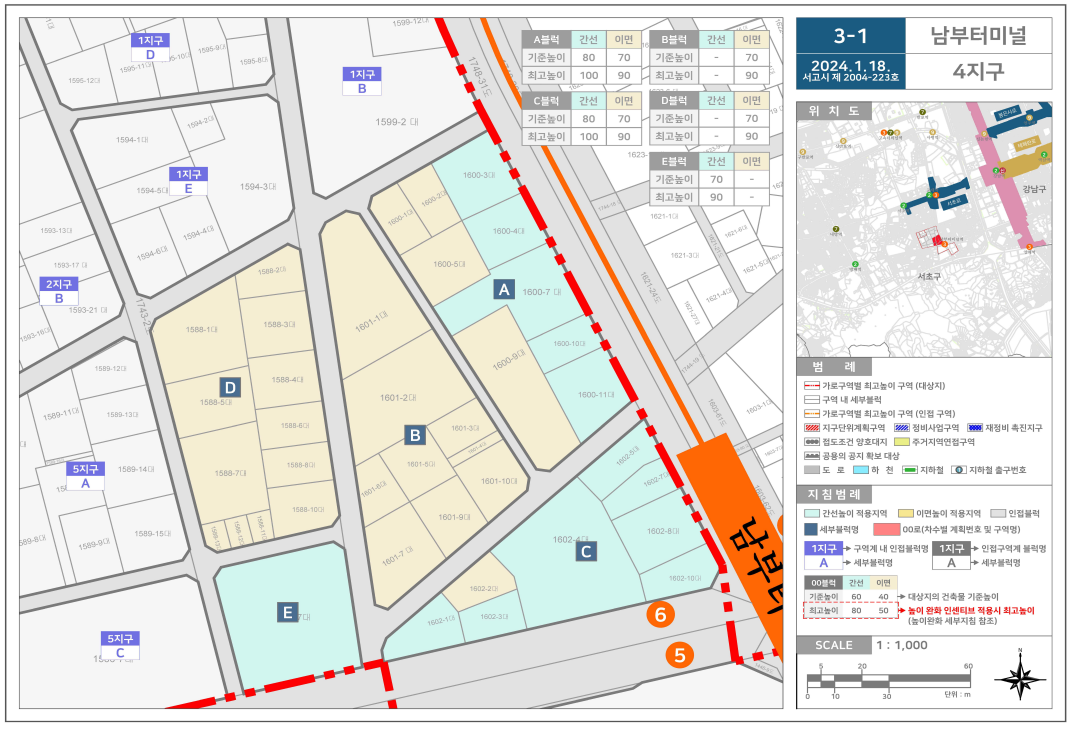
○ (신설) 남부터미널(2지구)



○ (신설) 남부터미널(3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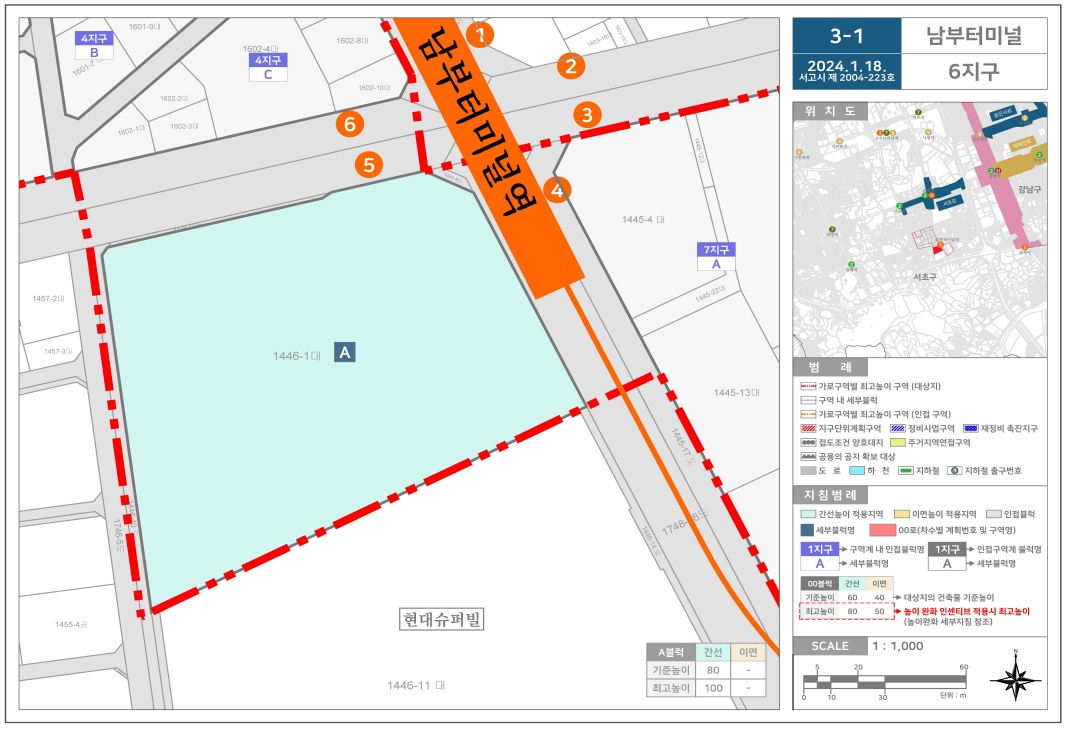
○ (신설) 남부터미널(4지구)



○ (신설) 남부터미널(5지구)



○ (신설) 남부터미널(6지구)



○ (신설) 남부터미널(7지구)


남부터미널역
1
2
3
4
1748-39도
1445-3대
1445-4 대
1445-13대
1445-15 대
1445-14 대
A
6지구
A
현대슈퍼빌
A블록 간선 이면
기준높이 80 -
최고높이 100 -
3-1
남부터미널
2024.1.18.
서고시 제 2004-223호
7지구
위 치 도
강남구
서초구
범 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구역 (대상지)
구역 내 세부블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구역 (인접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접도조건 양호대지
주거지역인접구역
공용의 공지 확보 대상
도 로
하 천
지하철
지하철 출구번호
지 침 범 례
간선높이 적용지역
이면높이 적용지역
인접블럭
세부블럭명
00로(차수별 계획번호 및 구역명)
1지구 구역계 내 인접블럭명
A 세부블럭명
1지구 인접구역계 블럭명
A 세부블럭명
00블럭 간선 이면
기준높이 60 40
최고높이 80 50
대상지의 건축을 기준높이
높이 완화 인센티브 적용시 최고높이
(높이완화 세부지침 참조)
SCALE 1 : 1,000
5 20 60
0 10 30
단위 : m
N

○ (신설) 장한로(1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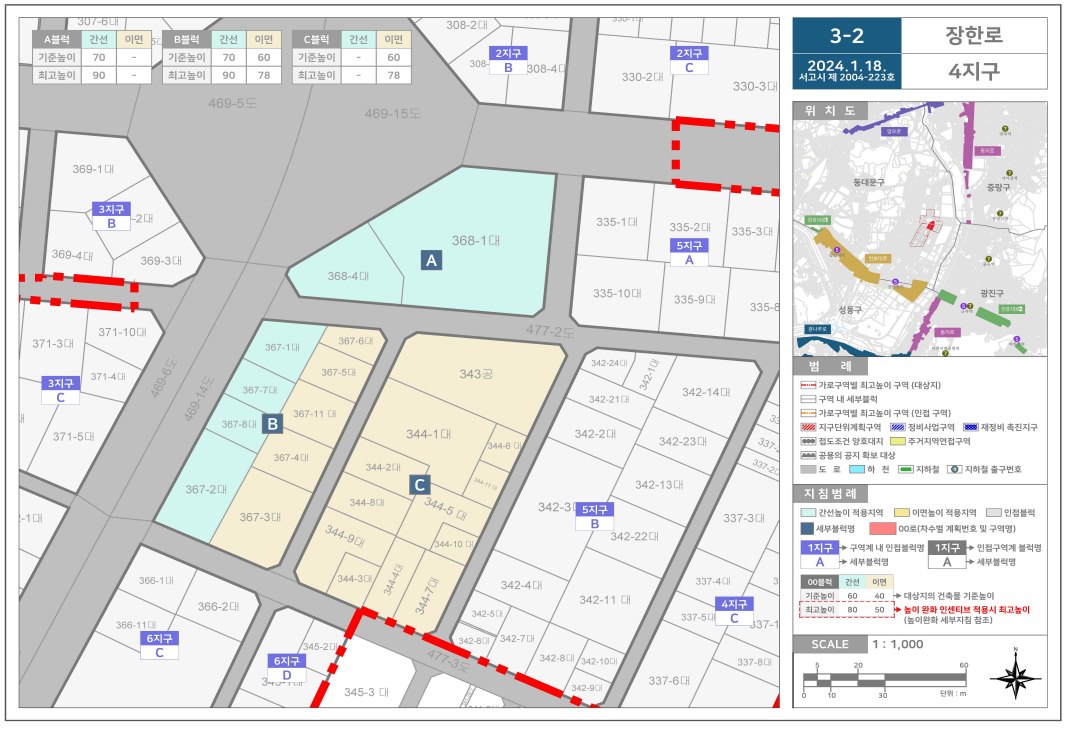
○ (신설) 장한로(2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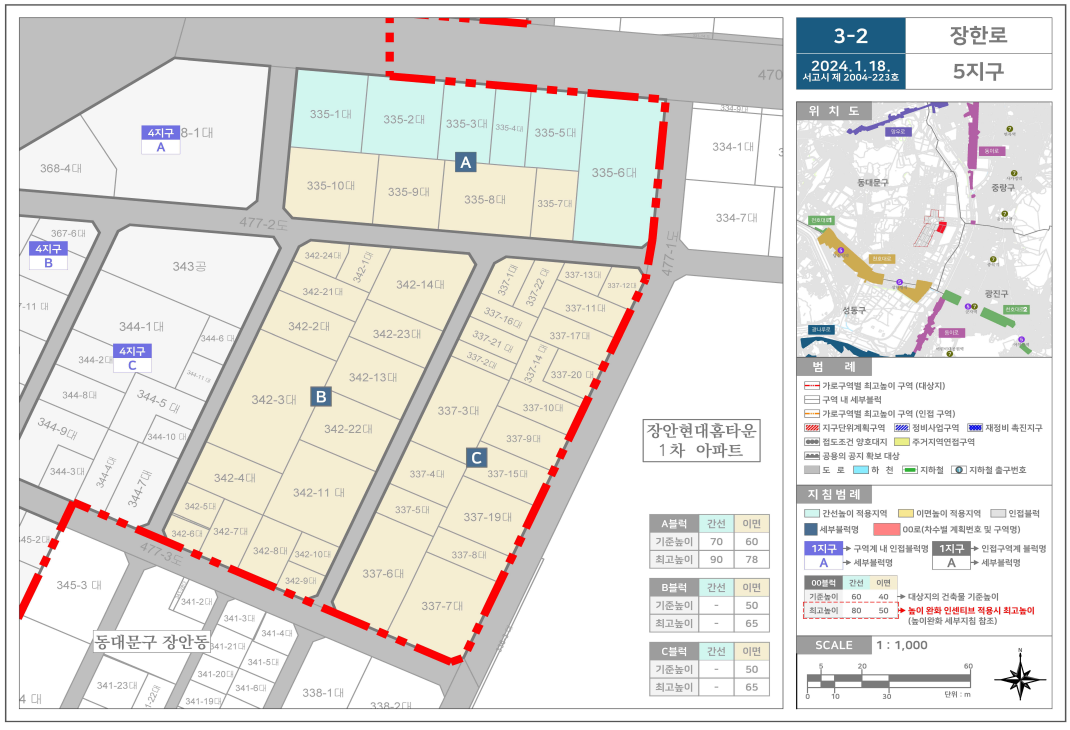
○ (신설) 장한로(3지구)



○ (신설) 장한로(4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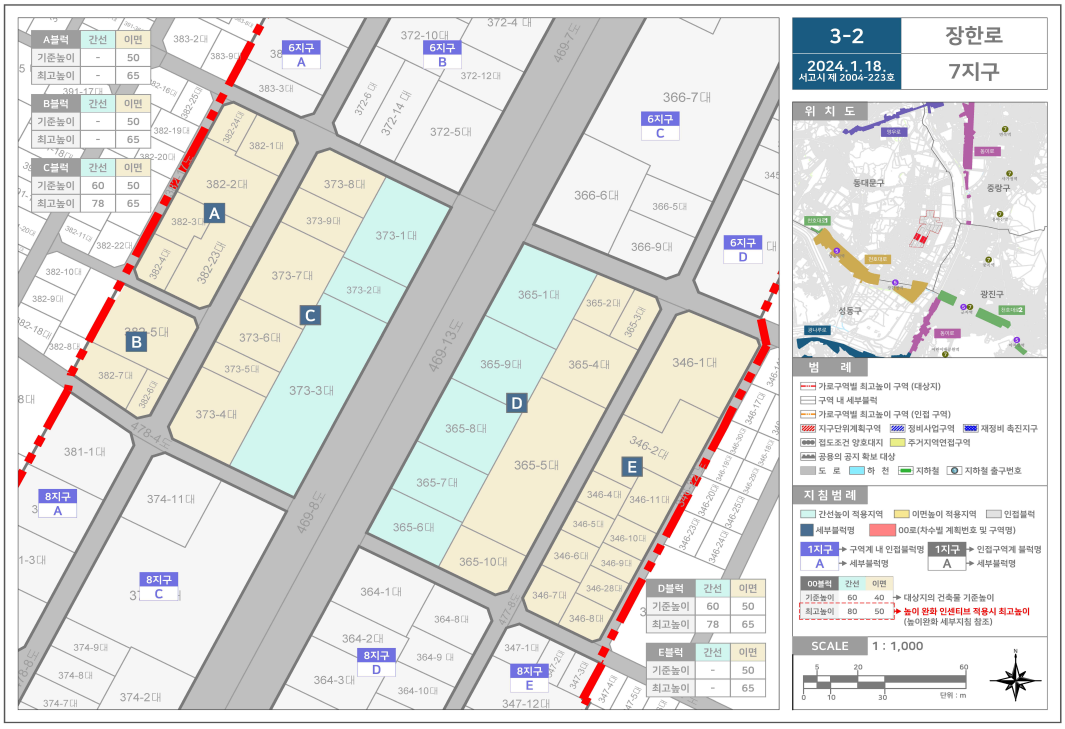
○ (신설) 장한로(5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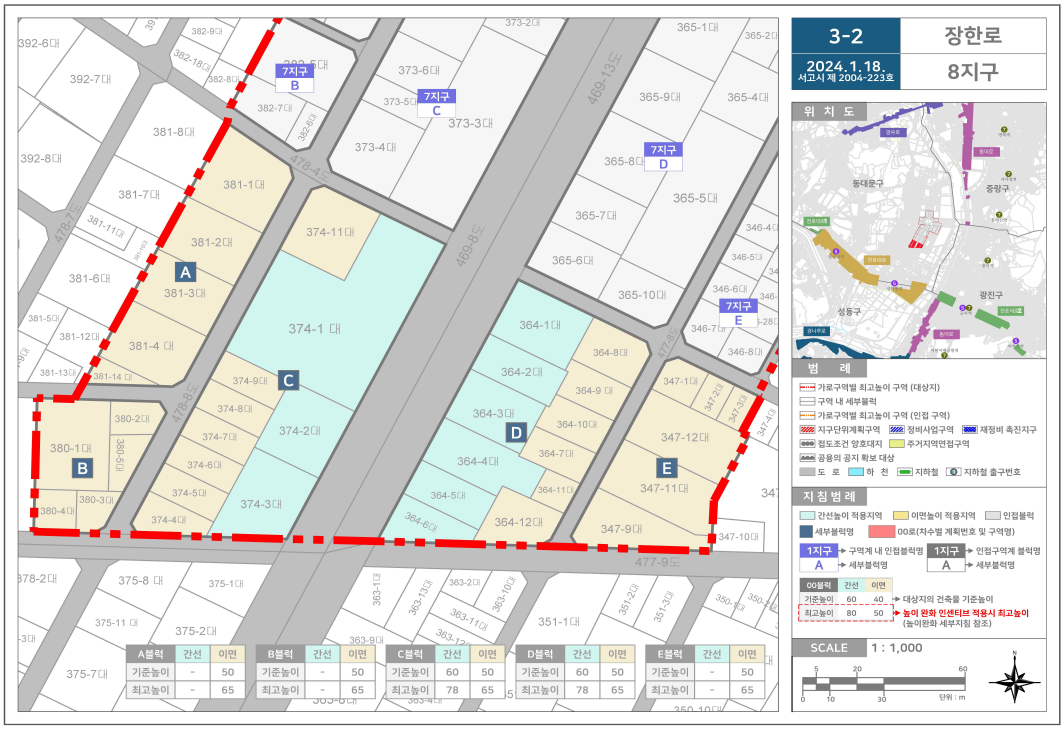
○ (신설) 장한로(6지구)



○ (신설) 장한로(7지구)



○ (신설) 장한로(8지구)



Ⅵ. 45개 지정구역 및 높이 산정구역(준주거 · 상업 · 준공업지역) 시행 · 운영지침 변경

○ 지정구역 시행지침 변경

기존	변경
제3조 [높이기준 적용의 기본원칙] ③ 「서울시 건축조례」 제33조 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이 경우 본 계획에서 제시된 높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제3조 [높이기준 적용의 기본원칙]** ③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구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및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높이는 본 계획에서 제시된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계획과 심의 기준에서 정하는 높이를 적용한다.
–	⑤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60조 1항 단서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33조 5호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5조1항 및 시행령 제6조 1항 9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제4조 [용어의 정의] –	**제4조 [용어의 정의]** 8. “공동건축”이라 함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높이 4. 「허용높이」라 함은 「기준높이」와 각각의 「기준완화높이」를 합하여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높이를 말한다.	② 건축물의 높이 4. “적용높이”라 함은 “기준높이”와 각각의 “기준완화높이”를 합하여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높이를 말한다.
5. 「최고높이」라 함은 「허용높이」가 초과할 수 없는 상한높이를 말한다. 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5. “최고높이”라 함은 “적용높이”가 초과할 수 없는 상한높이를 말한다. 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6. 「특별높이운영구역」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	6. “특별높이운영구역”이라 함은 역세권 및 “간

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중심지 체계상 도심·광역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간선가로의 교차로 및 역세권 지역 등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지침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지정된 일단의 가로구역을 말한다.	선구역" 에 입지한 대지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도" 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지정된 일단의 "가로구역" 또는 민간의 제안으로 최고높이 완화를 적용하는 일단의 가로구역을 말한다.
제7조 [공동건축 등의 경우 높이적용 기준]	**제7조 [공동건축 등의 경우 높이적용]**
	③ 역세권 250m반경 이내 또는 "간선구역" 에 입지한 대지에서, "공동건축" 을 통해 적정 대지규모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 제4조 1항 6호에 따른 "특별높이운영구역" 지정을 통해 "최고높이" 를 완화할 수 있다.
–	가. 적정 대지규모는 높이 완화에 대한 건축주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대지면적 8,000㎡를 기준으로 8,000㎡이상, 5,000㎡이상 ~ 8,000㎡미만, 3,000㎡이상~5,000㎡미만, 1,500㎡이상~3,000㎡미만에서 각각 최고높이를 차등하여 설정한다. 나. 해당 블록 간선변 평균 대지규모의 3배가 1,500㎡ 미만일 경우의 적정 대지규모는 1,500㎡로 간주한다.
제8조 [기준 완화높이의 적용]	**제8조 [완화높이의 적용]**
① 결정·고시된 「기준높이」를 완화 받아 허용높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별표1] 기준높이 완화기준' 을 참고하여 최고높이 이내에서 허가권자에 의해 완화받을 수 있다.	① 결정·고시된 "기준높이" 를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별표1] 기준높이 완화기준' 을 참고하여 최고높이 이내에서 허가권자에 의해 추가하여 완화받을 수 있다.
② 단, 제①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 제10조 제2항 '공용의 공지 확보 대상인 대지' 와 '주거지 연접구역을 적용받는 대지' 에 대해서는 기준높이 완화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 대지의 형상 등으로 인해 기준(적용)높이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등 '[별표1] 기준높이 완화기준' 외에 추가로 적용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 를 거쳐 "최고높이" 이내에서 "적용높이"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별표1] 기준높이완화기준을 적용하여 높이를 완화받은 경우, 완화 항목과 기준을 해당 건축물대장 '기타기재사항' 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최고높이의 완화]	**제9조 [최고높이의 완화]**
① 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규정 및 서울특별시 건	① 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규정 및 「서울시 건축

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지의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조례」 제3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의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의 완화적용대상과 완화범위 및 완화조건 등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의 완화적용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③ 당해 대지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화받고자 하는 높이의 범위 2.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3. 완화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4. 계획대지 주변 건축물 현황(높이,용도,규모,배치 등)	③ 당해 대지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시 건축조례」 별지 제1호서식(적용의 완화 요청서) 2. 완화 받고자 하는 높이의 범위 3.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4. 완화 적용 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5. 계획대지와 연접한 블록의 건축물 현황(높이, 용도, 규모, 배치 등) 6.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계획(해당하는 경우) 7. “특별높이운영구역” 적용 제안 시 : 적용의 필요성 및 개발규모, 보행 활성화 계획 등
–	④ 제3항에 따라 최고높이 완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 1.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시 : 최고높이×(제공면적/대지면적)×1.3 2. 공익시설 설치시 : 최고높이×(제공면적/지상층 바닥면적의 합)×1.5 가. 건축물내 공익시설 : 소규모 기업의 활동공간(개방형 라운지 등 지상층 설치 권장) 나. 특정층(최상층)개방 : 최상층에 공공공간(전망공간 등) 조성시 다. 저층부 개방공간 : 지상 개방형녹지와 직접 연결되는 저층부 특정 시간대 완전개방 3.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높이운영구역의 최고높이표]

대지규모 \ 전면도로 폭원	45m 이상	35m 이상	30m 이상	25m 이상
8,000㎡이상	250m 이하	200m 이하	175m 이하	150m 이하
5,000~8,000㎡미만	200m 이하	175m 이하	150m 이하	120m 이하
3,000~5,000㎡미만	175m 이하	150m 이하	120m 이하	100m 이하
1,500~3,000㎡미만	150m 이하	120m 이하	100m 이하	80m 이하

※ 전면도로 폭원 및 대지규모에 따라 높이 위계를 설정

가. “지침도”상 “특별높이운영구역” 외, 간선별 과소필지의 공동건축 유도로 차량 출입공간 최소화, 연속적 보도 조성을 통해 보행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민간제안을 통해 추가 적용가능토록 운용한다.

나. 역세권 250m반경 이내 또는 “간선구역”에 입지한 대지에서, “공동건축”을 통해 적정 대지규모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면구역 필지와의 “공동건축”시에도 적용 가능)

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특별높이운영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인정한다.

라 인접 대지와 조화되는 저층부 건축선 지정 및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디자인 특화 적용할 경우, 최고높이표의 최대 1.2배 이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로 추가 완화 높이를 정할 수 있다.

*가로활성화용도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용도 중 가로변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

⑤ 상기 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높이를 완화받은 경우, 완화 항목과 기준을 해당 건축물대장 ‘기타기재사항’ 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높이의 삭감]

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면하는 대지의 일부분을 「공용의

제10조 [공용의 공지 지정 및 높이 삭감]

① ‘공용의 공지’라 함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지의 일부를 도로와의 단

공지」로 지정할 수 있다.	차가 장애물 없이 도로를 따라 일정한 너비로 조성한 공지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도에 일정 폭의 「공용의 공지」가 지정된 대지에서는 지정된 폭 이상으로 「공용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확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준높이」에서 (지정된 「공용의 공지」 폭x5m의 높이를 삭감하여 적용한다.	②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면하는 대지의 일부분을 “공용의 공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당해 대지에 접하는 2개 이상의 도로변에 「공용의 공지」가 지정된 대지에서는 가장 좁은 도로(동일한 도로폭일 경우 어느 한 도로)에 면하는 「공용의 공지」만 확보할 경우 제②항의 「높이삭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 제①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도에 일정 폭의 “공용의 공지”가 지정된 대지에서는 지정된 폭 이상으로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건축선 후퇴공간을 활용하여 “공용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지침의 ‘[별표1]기준높이완화기준’을 참고하여 최고높이 이내에서 기준높이를 완화 적용한다.
–	④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용의 공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준높이”에서 지정된 “공용의 공지” 폭원×5m의 높이를 삭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당해 대지에 접하는 2개 이상의 도로변에 “공용의 공지”가 지정된 대지에서는 가장 좁은 도로(동일한 도로폭일 경우 어느 한 도로)에 면하는 “공용의 공지”만 확보할 경우 “높이삭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접도조건 양호대지의 높이보정] ‘접도조건 양호대지’란 블록을 구성하는 평균도로너비의 1.5배 이상 및 대지면적 500㎡를 뜻하며, 대상지가 아래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 기본적으	**제11조 [접도조건 양호대지의 높이보정]** “접도조건 양호대지”란 전면도로가 블록을 구성하는 평균 도로너비의 1.5배 이상 및 면적 500㎡이상인 대지(지침도에 미표기된 대지 포함)를 뜻하며,

로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①. 「이면구역」의 대지 1. "특별높이운영구역"에 접하지 아니한 "가로구역"안의 대지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높이」에 5m를 가산한다. 가. 「간선가로」에 접하지 아니하고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으로서 지침도에 표시되고 대지면적 500㎡ 이상인 대지	대상지가 아래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①. "이면구역" 의 대지 1. "특별높이운영구역" 에 접하지 아니한 "가로구역" 안의 대지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높이" 에 5m를 가산한다. 가. "간선가로"에 접하지 아니한 "접도조건 양호대지"
②. 「특별높이운영구역」의 대지 1. "특별높이운영구역" 에 접하지 아니한 "가로구역" 안의 대지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높이」에 10m를 가산한다. 가. 「간선가로」에 접하지 아니하고 전면도로폭원이 「평균도로폭원」의 1.5배 이상으로서 지침도에 표시되고 대지면적 500㎡ 이상인 대지	②. "특별높이운영구역" 으로 지정된 대지 1. "간선가로" 에 접하지 아니한 "접도조건 양호대지" 는 "기준높이" 에 10m를 가산한다.
-	**제12조 [최소 대지면적]** ① 가로구역별 높이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로구역별 높이 적용 대지의 규모를 '이면구역' 에서는 150㎡이상으로 정한다. ② 대지의 규모가 제①항에서 규정한 최소 규모에 미달되는 경우 대지의 합필 또는 공동건축을 통하여 대지면적이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며,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필지의 경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면구역" 에서 150㎡ 미만 필지들 간의 "공동건축" 을 통해 세장비 1:3 이하 및 대지면적 300㎡ 이상으로 개발하고 "공용의 공지" 를 확보할 경우에는 확보한 "공용의 공지" 폭원 ×2m를 기준높이에 가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고 및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건축 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지침에 의한다. 다만, 종전지침을 적용함이 불리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다. ② 이 지침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인 경우 건축허가 또는 변경시점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지침을 적용함이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전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다만, 종전 지침을 적용함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 (기정) 기준높이 완화기준 총괄표

구분	산출식	적용대상	
		간선 구역	이면 구역
공개공지	[완화값 산출식] $\frac{\text{공개공지면적}}{\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	◎
공공보행통로	[완화값 산출식] $\frac{\text{공공보행통로}}{\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	◎
지하철 또는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통로	[완화값 산출식] $\frac{\text{지하공간연결통로면적} \times 1.5}{\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	
저층 · 고층부 건폐율	[건폐율 완화값 산출식] 기준높이 × 0.1	◎	
교통완화차선의 조성	[완화값 산출식] 기준높이 × 0.1	◎	
기부채납 **(지구단위계획 외)**	[완화값 산출식] $\frac{\text{기부채납면적} \times 1.5}{\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	
접도조건 양호대지	[정량화된 높이값 적용] ●●● 접도조건 양호대지 기준완화높이 3m		◎
대지조건 양호대지	[정량화된 높이값 적용] 기준완화높이 3m		
건축선	[완화값 산출식] $\frac{\text{확보된면적}}{\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500㎡미만 : 전면 건축한계선 2m이상 확보 500~1500㎡미만 : 전면 건축한계선 3m이상 확보 1500㎡이상 : 전면 건축한계선 5m이상 확보	◎	◎
조경면적	[완화값 산출식] $\frac{\text{확보된면적}}{\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도로 전면부 조성 : 최소폭 3m이상 조성 시 도로 전면부 밀집조성 : 한면의 최소폭 2m, 면적30㎡ 이상	◎	◎

– (변경) 기준높이 완화기준 총괄표

항 목	기준완화높이 산출식	적용대상	
		간선 구역	이면 구역
저층·고층부 건폐율	= 기준높이 × 0.15 ▸5층 및 20m 이하 부분 : 건폐율 40% 이하로 조성 시	◎	
건축 지정선	= 기준높이 × 0.15	◎	
공공보행통로	$= \frac{\text{공공보행통로의 면적} \times 1.5}{\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대지안의 공지 및 지하철/지하공간 연결통로 포함 ▸인정기준 부합시	◎	◎
조경면적	$= \frac{\text{추가확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한 면의 최소폭 2m 이상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설치의무면적을 제외한 추가확보면적만 인정	◎	◎
공개공지	$= \frac{(\text{공개공지 의무면적} + \text{추가확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건축법 제43조, 시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	◎
건축선 후퇴공간	$= \frac{\text{확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 인접 대지의 공개공지 또는 공공보행통로 등과 밀집, 연계 조성시	◎	◎

※ 기준높이완화 산출을 위한 면적 계산시 동일 부분에 대한 중복완화 불가

○ 산정구역 운영지침 변경

기존	변경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적용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중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용적률 기준에 따라 고밀개발이 예상되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인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적용한다.
제3조 [높이기준 적용의 기본원칙] ③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별도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양도성 역사도심(서울특별시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에서 별도 고시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구역(본 공고일 기준 45개 구역)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해당 계획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 [높이기준 적용의 기본원칙]** ③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별도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양도성 역사도심(「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시장정비구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및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서울시에서 별도 고시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구역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본 계획에 제시된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60조1항 단서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33조 5호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5조1항 및 시행령 제6조 1항9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높이 3. 기준완화높이라 함은 기준높이 이외에 공개공지 확보 등 공공성 확보 시 추가로 부가되는 높이를 말하며 기준높이의 최대 0.2배 이내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높이 3. "기준완화높이"라 함은 기준높이 이외에 추가로 부가되는 높이를 말한다.

제5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 전면도로 산정 기준	**제5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2. 전면도로 산정 기준 라. “대지둘레 길이”는 해당 대지의 둘레 길이를 합한 길이로 하며 「건축법」제46조1항에 따라 후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후퇴(가각전제)한 부분으로 둘레길이를 산정한다 마.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다른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막다른 도로 폭에 해당하는 가상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성 확보 시 기준높이에 기준높이의 최대 0.2배 범위(기준완화높이)를 가산한 높이(적용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가. 공개공지 : $\frac{\text{공개공지}}{\text{대지면적}} \times$ 기준높이 나. 지하공간 연결통로 : $\frac{\text{지하공간연결통로면적} \times 1.5}{\text{대지면적}} \times$ 기준높이 다. 기부채납 : $\frac{\text{기부채납면적} \times 1.5}{\text{기부채납후대지면적}} \times$ 기준높이 라. 건축한계선 : $\frac{\text{건축한계선확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기준높이 – 대지규모 500㎡미만 : 전면 건축한계선 2m이상 확보 – 대지규모 500~1,500㎡미만 ; 전면 건축한계선 3m이상 확보 – 대지규모 1,500㎡이상 : 전면 건축한계선 5m이상 확보 마. 조경면적 : $\frac{\text{조경시설설치면적}}{\text{대지면적}} \times$ 기준높이 – 도로전면부 조성 : 최소폭 3m이상 조성시 – 도로 전면 밀집조성 : 최소면적 30㎡이상 조성시	② “기준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별표1]기준높이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완화높이를 가산한 높이(적용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기준완화높이는 기준높이의 0.2배를 최대로 한다. 2. [별표1] 기준높이완화기준을 적용하여 높이를 완화받은 경우, 완화 항목과 기준을 해당 건축물대장 ‘기타기재사항’ 란에 기재 · 관리하여야 한다.

3. 적용높이 완화(개별 대지에 적용) · 대지의 형상 등으로 인하여 현격히 기준(적용)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또는 기준높이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개별 대지의 적용높이의 완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지의 형상, 전면도로 위치 등으로 인하여 '[별표1]기준높이완화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또는 기준높이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주변 지역 개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건축물의 "적용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개별 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주민·자치구 제안에 의한 높이 완화(가로구역 단위 이상에서 적용) · 본 지침의 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주민 또는 자치구의 제안 요청에 의해 해당 가로구역에 대한 높이를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완화) 본 지침의 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주민 또는 자치구의 제안 요청에 의해 해당 가로구역에 대한 높이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내 전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제3항 관련) 나. 관련 서류 : 적용의 완화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기존 건축물 현황, 완화 필요성 및 사유, 높이기준 변경(안) 등
2. 도시 경관 확보에 관한 사항 –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돌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 현황자료(반경 100m 이내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등 현황)를 작성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시 제출할 것	2. 도시 경관 확보에 관한 사항 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돌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 현황자료(연접한 블록의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등 현황)를 작성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시 제출할 것
제6조 [지침·완화기준의 변경] 이 지침은 관계 법령 등의 개정, 기타 제반여건 변화 등이 있거나 관련 계획에 의한 높이기준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변경 등 운영과정에서 합리적인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지침·완화기준의 변경]** 이 지침 및 '높이완화기준'은 관계 법령 등의 개정, 기타 제반여건 변화 등이 있거나 관련 계획에 의한 높이 기준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변경 등 운영과정에서 합리적인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시행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이후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지침 시행 전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④ 종전 규정을 적용함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및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사업시행인가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다. ⑤ 이 지침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 중 높이계획의 변경인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다만, 종전 지침을 적용함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 산정구역 기준높이 완화 총괄표 (신설)

항 목	기준완화높이 산출식	적용대상	
		간선 구역	이면 구역
저층·고층부 건폐율	= 기준높이 × 0.15 ▸5층 및 20m 이하 부분 : 건폐율 40% 이하로 조성 시	◎	
건축 지정선	= 기준높이 × 0.15	◎	
공공보행통로	$= \frac{\text{공공보행통로의 면적} \times 1.5}{\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대지안의 공지 및 지하철/지하공간 연결통로 포함 ▸인정기준 부합시	◎	◎
조경면적	$= \frac{\text{추가확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한 면의 최소폭 2m 이상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설치의무면적을 제외한 추가확보면적만 인정	◎	◎
공개공지	$= \frac{(\text{공개공지 의무면적} + \text{추가확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건축법 제43조, 시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	◎
건축선 후퇴공간	$= \frac{\text{확보면적}}{\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높이}$ ▸ 인접 대지의 공개공지 또는 공공보행통로 등과 밀집, 연계 조성시	◎	◎

※ 기준높이완화 산출을 위한 면적 계산시 동일 부분에 대한 중복완화 불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	총 80,429.67		
			74,447.00	`22. 10. 27.	
			5,982.67	`24. 06. 20.	인접 도로 편입에 따른 구역확대
2	금천구	시흥3동 950번지 일대	총 99,715.35		
			97,042.23	1차 `22. 10. 27. 2차 `23. 07. 20.	
			2,673.12	`24. 06. 20.	인접 도로 인접 도로 편입에 따른 구역확대

2. 권리산정기준일 : 2024. 6. 20. (도로 편입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리계획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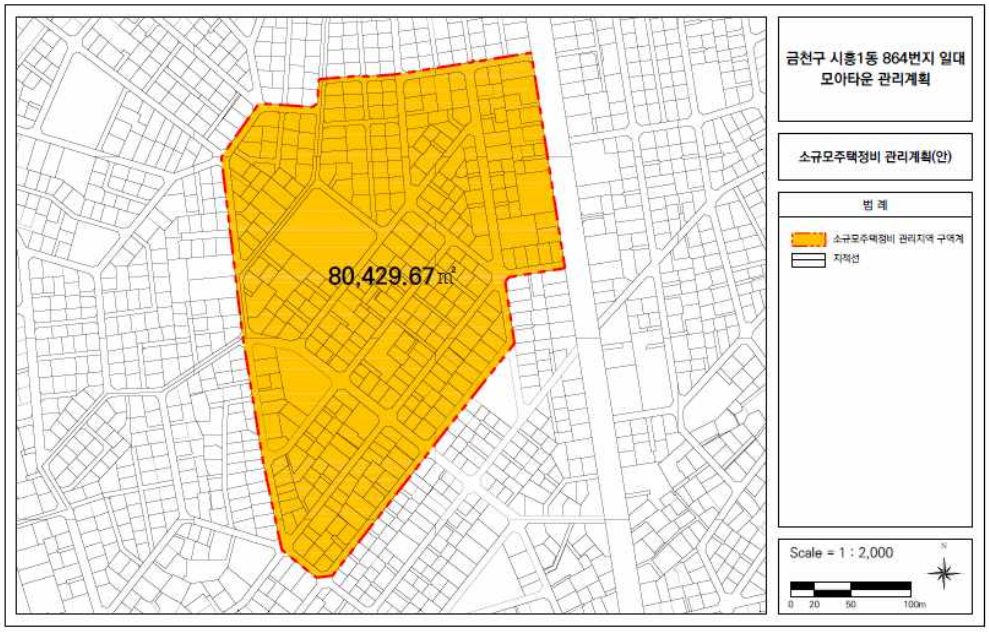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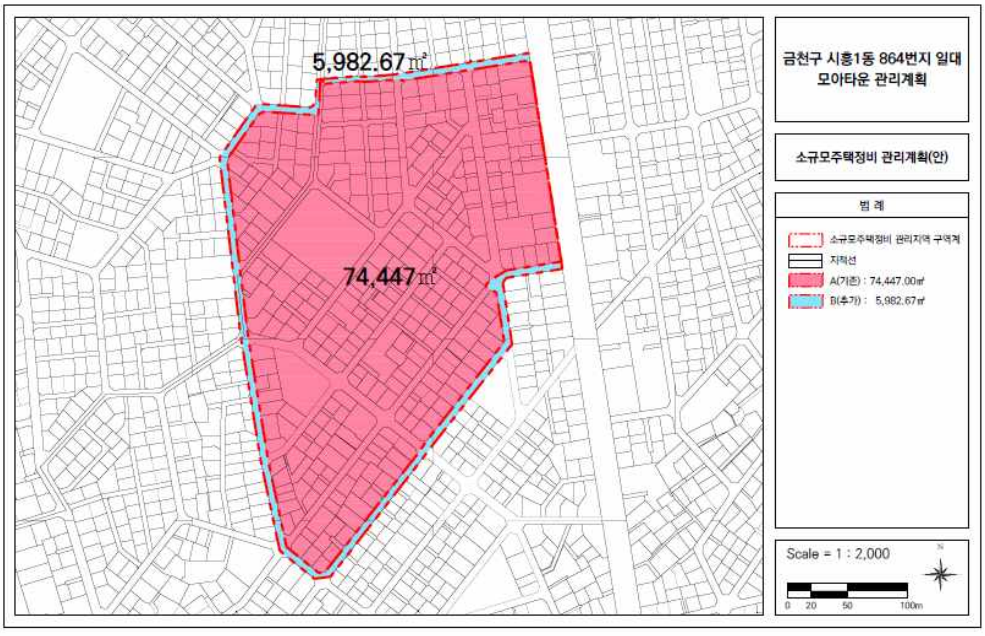
■ 관계도면

1. 시흥1동 864번지 일대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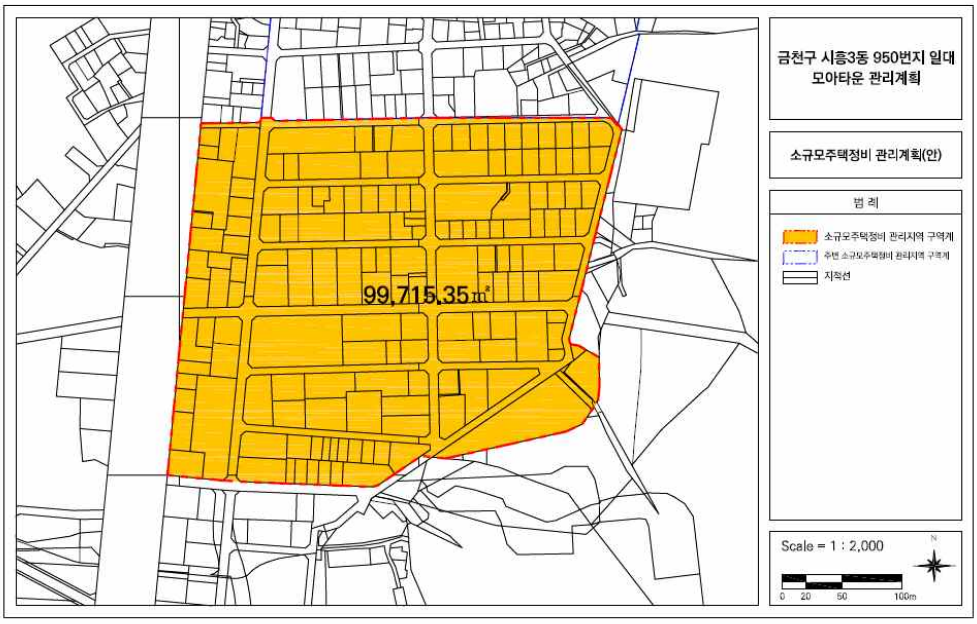


추가구역 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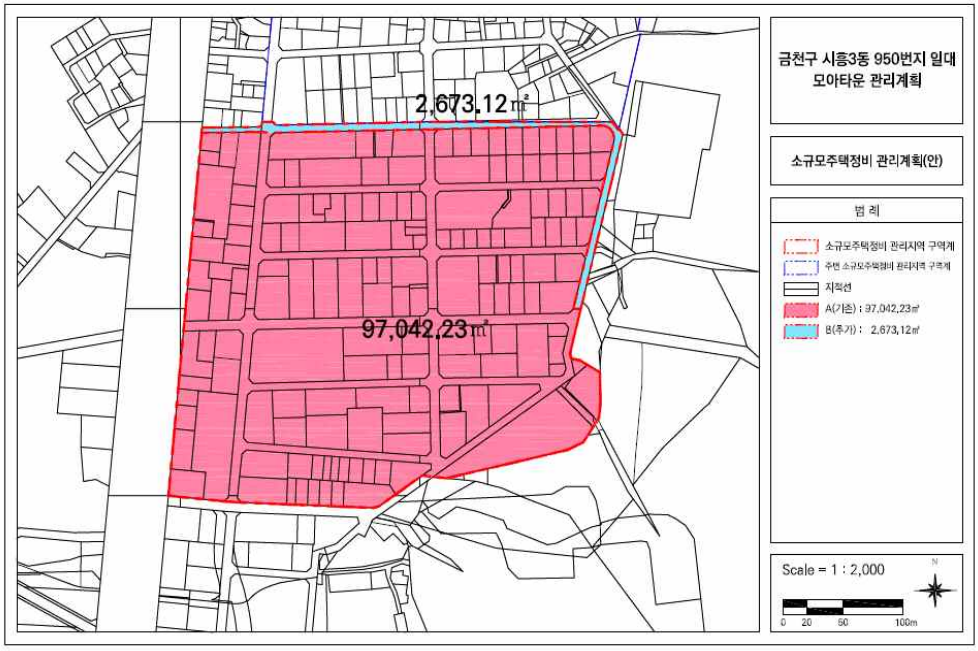


2. 시흥3동 950번지 일대

변경후



추가 구역 구분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2호

천호 · 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성내3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천호 · 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2008. 12. 26.)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8호(2009. 11.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5호(2011. 2.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2호(2011. 4. 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9호(2012. 5. 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0호(2013. 10.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0호(2015. 12.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7호(2016. 8.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호(2017. 2.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8호(2017.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4호(2017. 8. 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0호(2018. 12.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4호(2020. 3.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9호(2020. 12.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62호(2021. 8.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1호(2021. 11. 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5호(2022. 11. 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호(2023. 1. 5.)로 변경 결정된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변경)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변경 결정 및 고시합니다.

2. 또한, 천호 · 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지 정 목 적
			기 정	증 감	변 경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	275,407.5	증) 22.2	275,429.7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 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 · 업무 · 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 – 275,407.5㎡→275,429.7㎡(증 22.2㎡)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27년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75,407.5	증) 22.2	275,429.7	100.0	-
업무	소 계	45,532.8	감) 3.0	45,529.8	16.5	-
	일반업무	17,335.1	-	17,335.1	6.3	-
	업무복합	28,197.7	감) 3.0	28,194.7	10.2	-
상업	소 계	130,362.5	-	130,362.5	47.4	-
	판 매	15,451.1	-	15,451.1	5.6	-
	일반상업	50,636.9	-	50,636.9	18.4	-
	근린상업	24,136.1	-	24,136.1	8.8	-
	주상복합	40,138.4	-	40,138.4	14.6	-
주 거		36,923.1	-	36,923.1	13.4	-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62,589.1	증) 25.2	62,614.3	22.7	-
	공 원	2,302.0	증) 31.1	2,333.1	0.8	-
	공공공지	416.4	-	416.4	0.2	-
	도 로	59,390.4	감) 5.9	59,384.5	21.5	-
	경 로 당	171.3	-	171.3	0.1	-
	사회복지시설	309.0	-	309.0	0.1	-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 업무복합 : 28,197.7㎡→28,194.7㎡(감 3.0㎡) - 기반시설 : 62,589.1㎡→62,614.3㎡(증 25.2㎡)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2. 인구 · 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6,020.3	증) 25.2	66,045.5	-
도 로		59,390.4	감) 5.9	59,384.5	-
공원·광장·공공공지·녹지		2,718.4	증) 31.1	2,749.5	-
공공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582.4	-	1,582.4	(대지지분+건축물)기부채납
	공공청사	1,447.0	-	1,447.0	(대지지분+건축물)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882.1	-	882.1	대지지분: 기부채납 건물: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 공공시설(공공청사) 연면적 5,661.5㎡ 설치 · 조성(기부채납)
※ 공공시설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22.)」,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2021.7.5.)」 기준 적용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도로 : 59,390.4㎡→59,384.5㎡(감 5.9㎡) - 공원 등 : 2,718.4㎡→2,749.5㎡(증 31.1㎡)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

가) 공원 · 녹지계획(변경)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합 계	개소수(개)	10	-	10	-
	면 적(㎡)	2,718.4	증) 31.1	2,749.5	-
공 원	개소수(개)	5	-	5	-
	면 적(㎡)	2,302.0	증) 31.1	2,333.1	-
공공공지	개소수(개)	5	-	5	-
	면 적(㎡)	416.4	-	416.4	-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공원 · 녹지계획 변경 - 공원 : 2,302.0㎡→2,333.1㎡(증 31.1㎡)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나) 환경보존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가) 정비예정구역(변경)

지구명	구역명	구 분	위 치	면적(㎡)	정비수법	비 고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천호1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55-8번지 일대	10,505.8	전면개발	-
	천호4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10-100번지 일대	17,394.2	전면개발	-
	천호8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166-4번지 일대	7,613.0	전면개발	-
	성내3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18.0	전면개발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40.2	전면개발	
	성내5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15번지 일대	7,049.2	전면개발	-

나) 구역별 계획(변경)

구역명		위 치	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m)	사업방식
						기준	최대		
천호1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55-8번지 일대	10,505.8	판매	60%이하	714	810	14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천호4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10-100번지 일대	17,394.2	주거,근린생활	60%이하	591	793	120	
천호8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166-4번지 일대	7,613.0	주거,사회복지,근린생활	60%이하	520	800	140	
성내3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18.0	업무,판매,주거,근린생활	60%이하	610	800	140	
	변경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40.2	업무,판매,주거,근린생활	60%이하	610	800	140	
성내5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15번지 일대	7,049.2	주거,공공업무,근린생활	60%이하	500	650	140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면적 변경 - 6,718.0㎡→6,740.2㎡(증 22.2㎡)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역명		사업구역면적(㎡)	용도지역	필지수	건물수	비 고
계	기정	49,280.2	-	143	77	-
	변경	49,302.4	-	143	77	-
천호1촉진구역	기정	10,505.8	일반상업	30	8	-
천호4촉진구역	기정	17,394.2	일반상업	23	10	-
천호8촉진구역	기정	7,613.0	일반상업	41	25	-
성내3촉진구역	기정	6,718.0	준주거, 일반상업	45	29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6,740.2	준주거, 일반상업	45	29	
성내5촉진구역	기정	7,049.2	근린상업	4	5	-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면적 변경 - 6,718.0㎡→6,740.2㎡(증 22.2㎡)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나) 존치구역(변경없음)

9.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75,407.5	증) 22.2	275,429.7	100.0
주거지역	소 계	87,612.0	-	87,612.0	31.8
	제3종일반주거지역	60,877.0	-	60,877.0	22.1
	준주거지역	26,735.0	-	26,735.0	9.7
상업지역	소 계	187,795.5	증) 22.2	187,817.7	68.2
	일반상업지역	172,882.3	증) 22.2	172,904.5	62.8
	근린상업지역	14,913.2	-	14,913.2	5.4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변경 – 172,882.3㎡→172,904.5㎡(증 22.2㎡)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10.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산정(변경)

구분			면적(㎡)	획지 면적(㎡)	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순 부담률(%)
					계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녹지	공공시설 (대지지분+건축물)	공공 임대 주택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민간부문	천호1 촉진	기정	10,505.8	8,978.9	1,526.9	1,201.5	325.4	–	–	–	363.0	1,163.9	11.1
	천호4 촉진	기정	17,394.9	13,756.7	3,637.5	2,503.5	1,134.0	–	–	19.3	–	3,618.2	20.8
	천호8 촉진	기정	7,613.0	6,305.0	3,463.5	1,308.0	–	1,273.4	882.1	355.0	447.0	2,661.5	35.0
	성내3 촉진	기정	6,718.0	5,056.0	1,662.0	629.0	1,033.0	–	–	128.0	255.0	1,279.0	19.0
		변경	6,740.2	5,053.0	1,687.2	623.1	1,064.1	–	–	128.0	234.0	1,325.2	19.7
민간부문	성내5 촉진	기정	7,049.2	6,411.5	2,084.7	637.7	–	1,447.0	–	–	–	2,084.7	29.6
	계	기정	49,280.9	40,508.1	12,374.6	6,279.7	2,492.4	2,720.4	882.1	502.3	1,065.0	10,807.3	21.9
		변경	49,303.1	40,505.1	12,399.8	6,273.8	2,523.5	2,720.4	882.1	502.3	1,044.0	10,853.5	22.0
공공부문	천호1 관리	기정	68,280.1	66,773.1	1,507.0	1,507.0	–	–	–	–	–	–	–
	천호2 관리	기정	48,870.6	48,442.6	428.0	428.0	–	–	–	–	–	–	–
	천호3 관리	기정	5,227.0	4,686.5	540.5	540.5	–	–	–	–	–	–	–
	성내1 관리	기정	28,598.5	27,721.5	877.0	877.0	–	–	–	–	–	–	–
	성내 1-1관리	기정	6,299.0	5,952.0	347.0	347.0	–	–	–	–	–	–	–
	성내2 관리	기정	22,538.5	22,228.5	310.0	310.0	–	–	–	–	–	–	–
	구역 외	기정	2,843.0	–	2,843.0	2,843.0	–	–	–	–	–	–	–

구분			면적(㎡)	획지 면적(㎡)	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순 부담률(%)
					계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녹지	공공시설 (대지지분+건축물)	공공 임대 주택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계	기정	182,386.7	175,534.2	6,852.5	6,852.5	-	-	-	-	-	-	-

※ 공공시설(공공청사) 연면적 5,661.5㎡(지하주차장 포함) 설치 · 조성(기부채납)
- 공공시설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2022.)」,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2021.7.5.)」 기준 적용

※ 공공부문 기반시설면적은 존치지역 내 기반시설 중 확보가 필요한 면적(사유지)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률 및 순부담 면적 변경 - 순부담면적 : 1,279.0㎡→1,325.2㎡(증 46.2㎡) - 순부담률 : 19.0%→19.7%(증 0.7%)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유상매입한 21.0㎡ 기존 기반시설 내 국 · 공유지에서 제외

나)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천호1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천호4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다) 천호8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라) 성내3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 조서

재정비촉진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18.0	증) 22.2	6,740.2	-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면적 변경 - 6,718.0㎡→6,740.2㎡(증 22.2㎡)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718.0	증) 22.2	6,740.2	100.0	-
택 지 (획 지)	소 계	5,056.0	감) 3.0	5,053.0	75.0	-
	획 지	5,056.0	감) 3.0	5,053.0	75.0	-
정비 기반시설등	소 계	1,662.0	증) 25.2	1,687.2	25.0	-
	도 로	629.0	감) 5.9	623.1	9.2	-
	공 원	1,033.0	증) 31.1	1,064.1	15.8	중복결정 (지하보행로② 8.7㎡)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 택지(획지) : 5,056.0㎡→5,053.0㎡(감 3.0㎡) - 기반시설등 : 1,662.0㎡→1,687.2㎡(증 25.2㎡)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718.0	증) 22.2	6,740.2	100.0	-
일반상업지역	6,715.0	증) 22.2	6,737.2	99.9	-
준주거지역	3.0	-	3.0	0.1	-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변경 - 6,715.0㎡→6,737.2㎡(증 22.2㎡)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 용도지구(해당없음)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하공공보도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②	소공원	성내동 57-12 일대	261.0	감) 0.7	260.3	-
변경	③	문화공원	성내동 50-19일대	772.0	증) 31.8	803.8	중복결정 (지하보행로② 8.7㎡)

- 변경사유서

시설명	도면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공원	②	•면적 감소 - 261.0㎡→260.3㎡(감 0.7㎡)	•성내3 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문화공원	③	•면적 증가 - 772.0㎡→803.8㎡(증 31.8㎡)	

5)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성내3 촉진구역	6,718.0	-	5,056.0	성내동 48-6번지 일대	26	-	-	26	-	-
변경		6,740.2	-	5,053.0	성내동 48-6번지 일대	26	-	-	26	-	-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성내3 촉진구역	6,718.0	-	5,056.0	성내동 48-6번지 일대	업무, 판매, 주거,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800 이하	140 이하
변경		6,740.2	-	5,053.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일반분양) : 160세대 • 건설비율(세대수) - 일반분양 : 100%이하 • 건립예정세대수 : 160세대						

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사항 없음)

12) 생태면적률(관련규정에 따름)

마) 성내5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17.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9. 방재계획(변경없음)

20. 정보화계획(변경없음)

21. 에너지 순환계획(변경없음)

22. 특성화계획(변경없음)

2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증감	변경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	275,407.5	증) 22.2	275,429.7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 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 – 275,407.5㎡→275,429.7㎡(증 22.2㎡)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75,407.5	증) 22.2	275,429.7	100.0
주거지역	소 계	87,612.0	–	87,612.0	31.8
	제3종일반주거지역	60,877.0	–	60,877.0	22.1
	준주거지역	26,735.0	–	26,735.0	9.7
상업지역	소 계	187,795.5	증) 22.2	187,817.7	68.2
	일반상업지역	172,882.3	증) 22.2	172,904.5	62.8
	근린상업지역	14,913.2	–	14,913.2	5.4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변경 – 172,882.3㎡→172,904.5㎡(증 22.2㎡)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변경없음)

2) 지하공공보도시설(변경없음)

3) 공원(변경)

구 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②	–	소공원	성내동 57-12 일대	261.0	감) 0.7	260.3	–
변경	③	–	문화공원	성내동 50-19 일대	772.0	증) 31.8	803.8	중복결정 (지하보행로② 8.7㎡)

구 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④	-	소공원	천호동 410-100 일대	1,134.0	-	1,134.0	-
기정	⑥	-	소공원	천호동 566-9 일대	67.9	-	67.9	-
기정	⑦	-	소공원	천호동 566-10 일대	67.1	-	67.1	-

- 변경사유서

시설명	도면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공원	②	•면적 감소 - 261.0㎡→260.3㎡(감 0.7㎡)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의 확정측량 결과 반영(선형변경 없음)
문화공원	③	•면적 증가 - 772.0㎡→803.8㎡(증 31.8㎡)	

4) 공공공지(변경없음)
5)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6) 공공청사(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천호8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성내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18.0	증) 22.2	6,740.2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718.0	증) 22.2	6,740.2	100.0	-
일반상업지역	6,715.0	증) 22.2	6,737.2	99.9	-
준주거지역	3.0	-	3.0	0.1	-

○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없음)

(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 점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91	성내동 48-27	성내동 48-14	-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67	성내동 57-12	성내동 48-27	서고 제482호 (`08.12.26.)	-

○ 지하공공보도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모				비 고
				폭 (m)	연장 (m)	해수면 기준높이 (m)	면적 (㎡)	
기정	②	지하공공 보도시설 (지하보행로)	천호지하보도~ 문화공원 지하1층	7.5	4.05	12.88~16.88 (지하구조물 깊이 4.0m) ※ 해수면기준높이 19.5m	30.375	문화공원- 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 8.7㎡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폭, 연장, 높이, 면적은 구적 값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결정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보행로)은 성내3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일괄 공사 시행하고 관리청(강동구)에 무상귀속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②	소공원	성내동 57-12 일대	261.0	감) 0.7	260.3	-
변경	③	문화공원	성내동 50-19일대	772.0	증) 31.8	803.8	중복결정(지하보행로② 8.7㎡)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	6,718.0	-	성내동 48-6번지 일대	5,056.0	-
변경	-	6,740.2	-	성내동 48-6번지 일대	5,053.0	-

○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허용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 건폐율 계획

구 분	건 폐 율	비 고
공동주택 등	60%이하	계획 59.96%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공동주택 등	610%이하	-	800%이하	계획 799.87%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 적 률 완 화		비 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공동주택 등	19.7%	-	도로+공원(지하공공보도 중복결정 8.7㎡) 기부채납

– 높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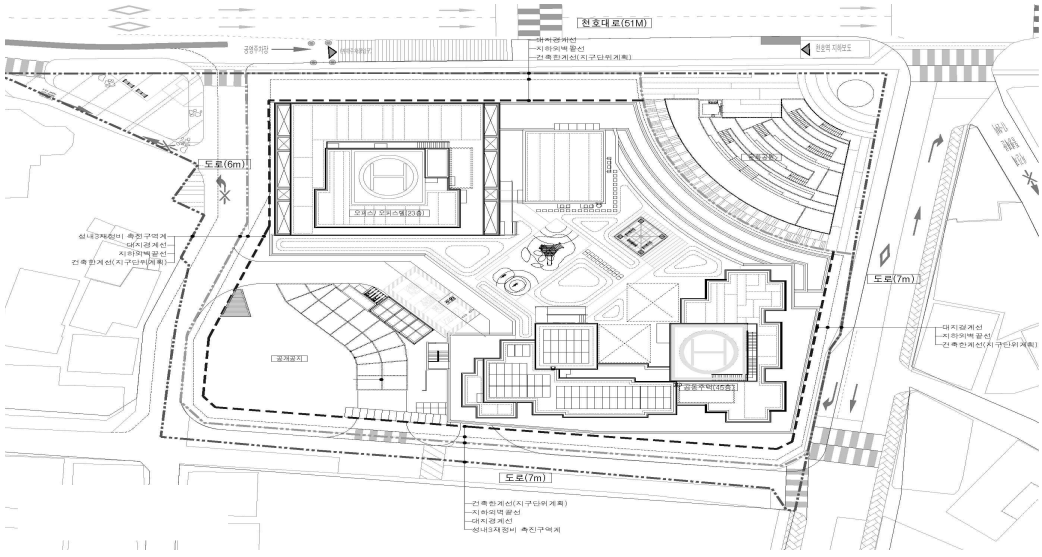
구 분	높 이	비 고
공동주택 등	140m이하	계획 139.7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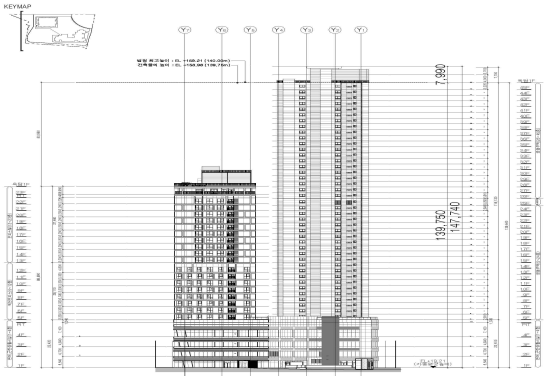
– 건축선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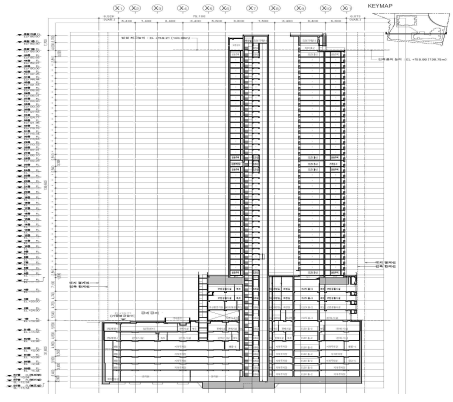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광로2-5(천호대로)	•5m 후퇴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중로2-성내2(천호옛길)	•3m 후퇴	
	•소로2-8(천호옛17길)	•3m 후퇴	
	•소로3-7	•3m 후퇴	

(마) 경관계획

◆ 건축도면 :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광로2-5(천호대로)	•5m(보도형 열린공간)	-
	•중로2-성내2(천호옛길)	•3m(보도형)	-
	•소로2-8(천호옛17길)	•3m(보도형)	-
	•소로3-7	•3m(보도형)	-
공개공지	-	•대지면적의 7%이상(353.71㎡)	계획 375.54㎡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광로2-5(천호대로)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중로2-성내2(천호옛길)	
	•소로2-8(천호옛17길)	•도로모퉁이 일부구간 차량통행 금지
통행체계	•광로2-5(천호대로) •중로2-성내2(천호옛길) •소로2-8(천호옛17길)	•양방통행
	•소로3-7	•일방통행(천호대로→천호옛17길)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없음)

(사)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지정한 선을 말한다. - 광로2-5 : 5m 후퇴 - 중로2-성내2 : 3m 후퇴 - 소로2-8 : 3m 후퇴 - 소로3-7 : 3m 후퇴	-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보도형전면공지	• '전면공지' 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대지내 공지 중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로 연접도로와 연계하여 보도 등으로 조성 - 광로2-5 : 5m(보도형 열린공간) - 소로2-8 : 3m(보도형) - 중로2-성내2 : 3m(보도형) - 소로3-7 : 3m(보도형)	-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 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 의 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

3) 성내5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4) 천호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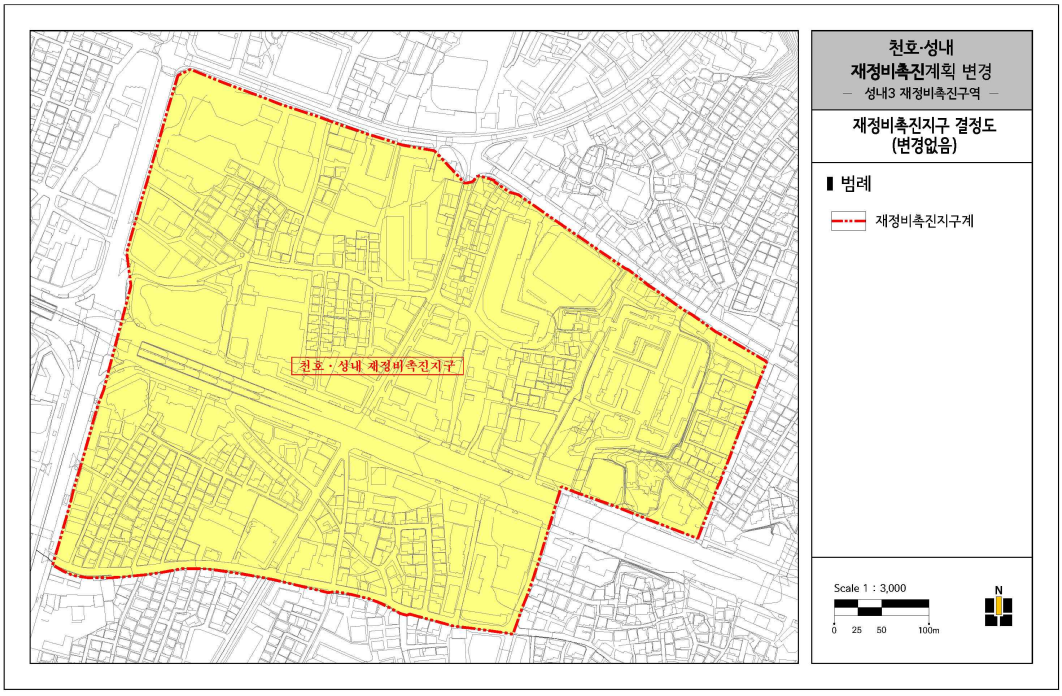
5) 성내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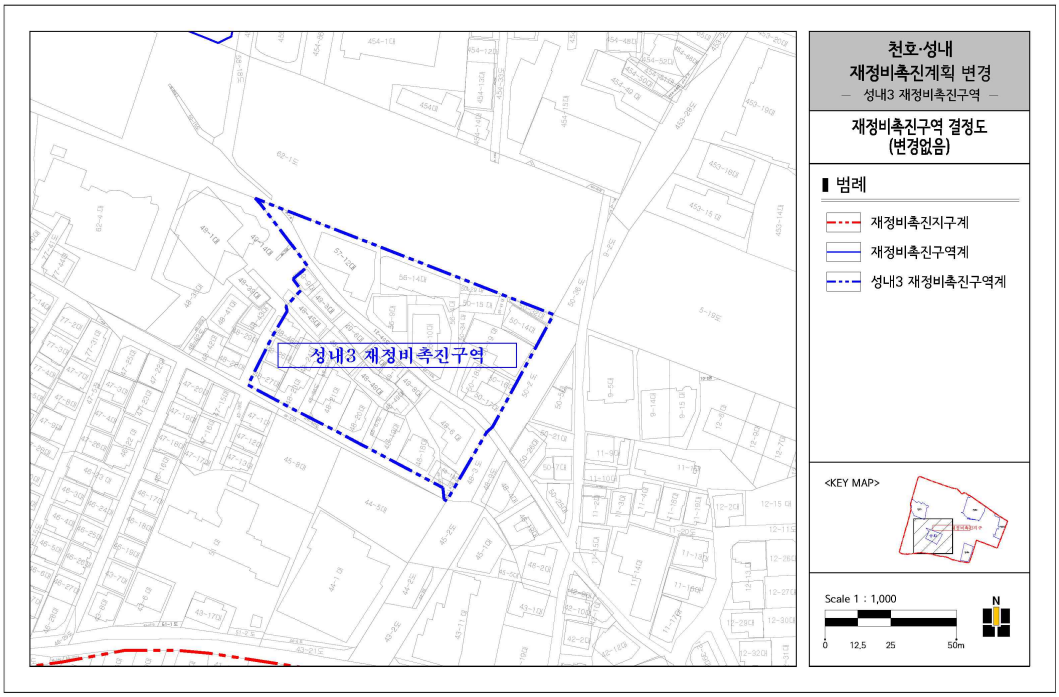
마.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8)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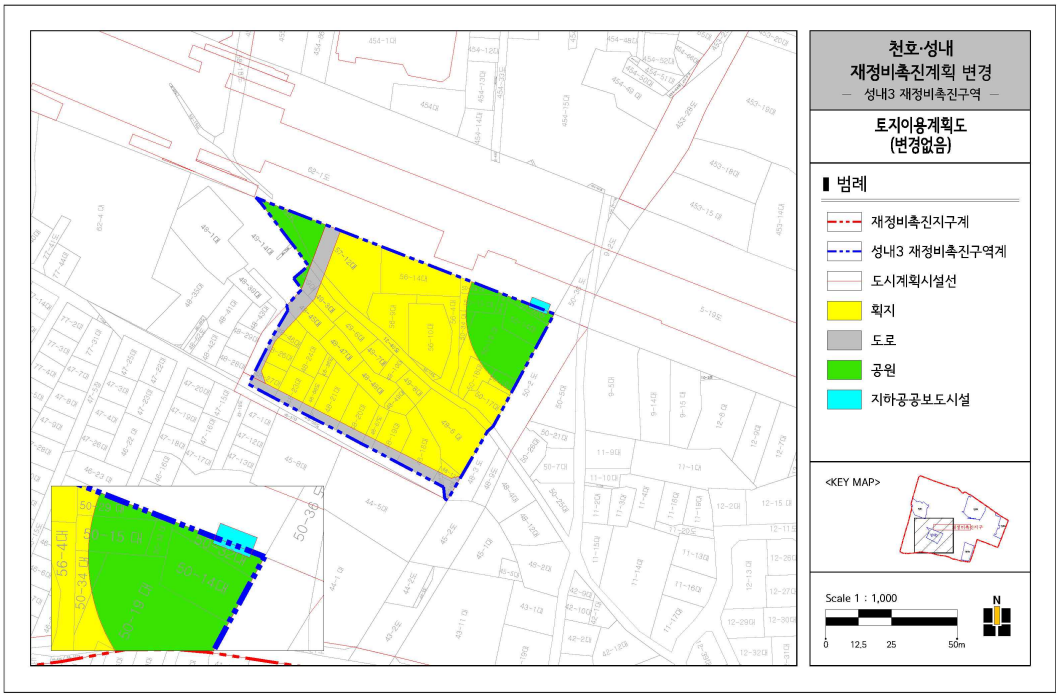
■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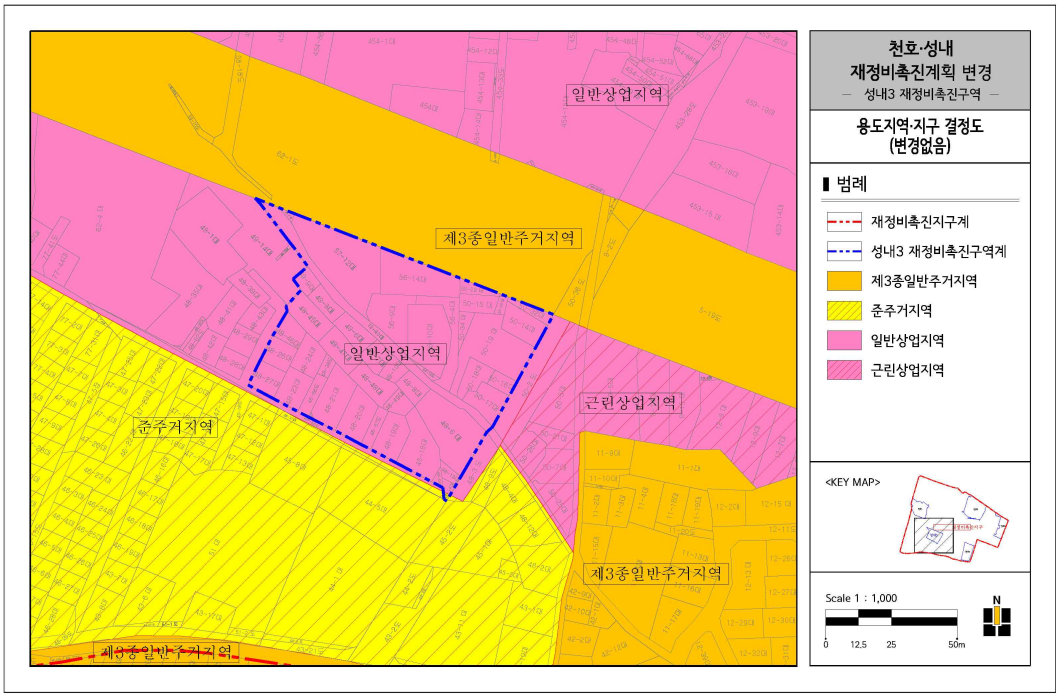
■ 성내3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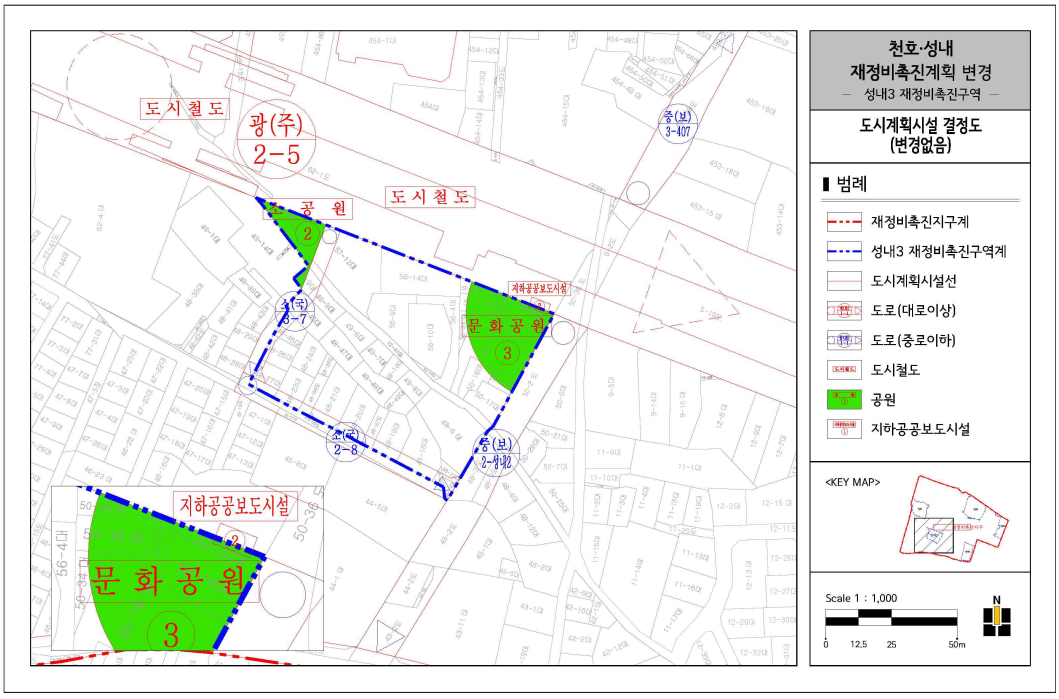
■ 성내3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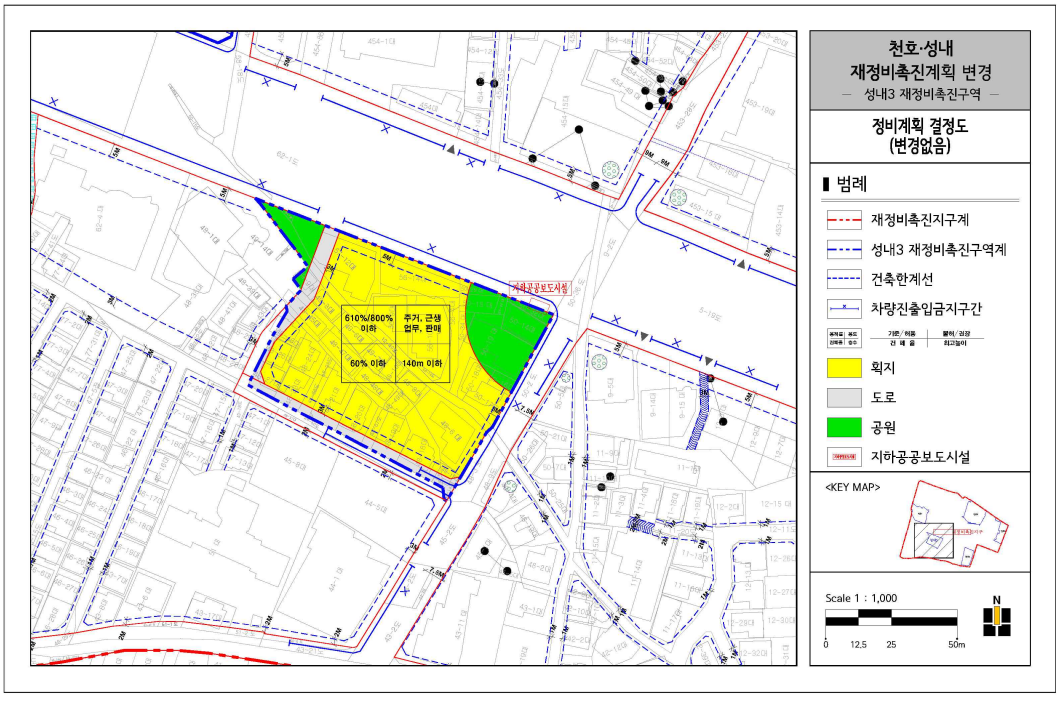
■ 성내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성내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성내3 정비계획 결정도(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동일)(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3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금호동1가 129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성동구	금호동1가 129번지 일대	합계	13,724.00		오차면적 수정
			기존	17,743.00	2022. 10. 27.	구역 변경 ※ '24년 제7차 전문가 사전자문 ('24. 6. 13. 의견: 적정)
			제외	3,835.99	2022. 10. 27.(실효)	
			추가	835.25	2024. 6. 20.	

2. 권리산정기준일: 2024. 6. 20.(구역 확대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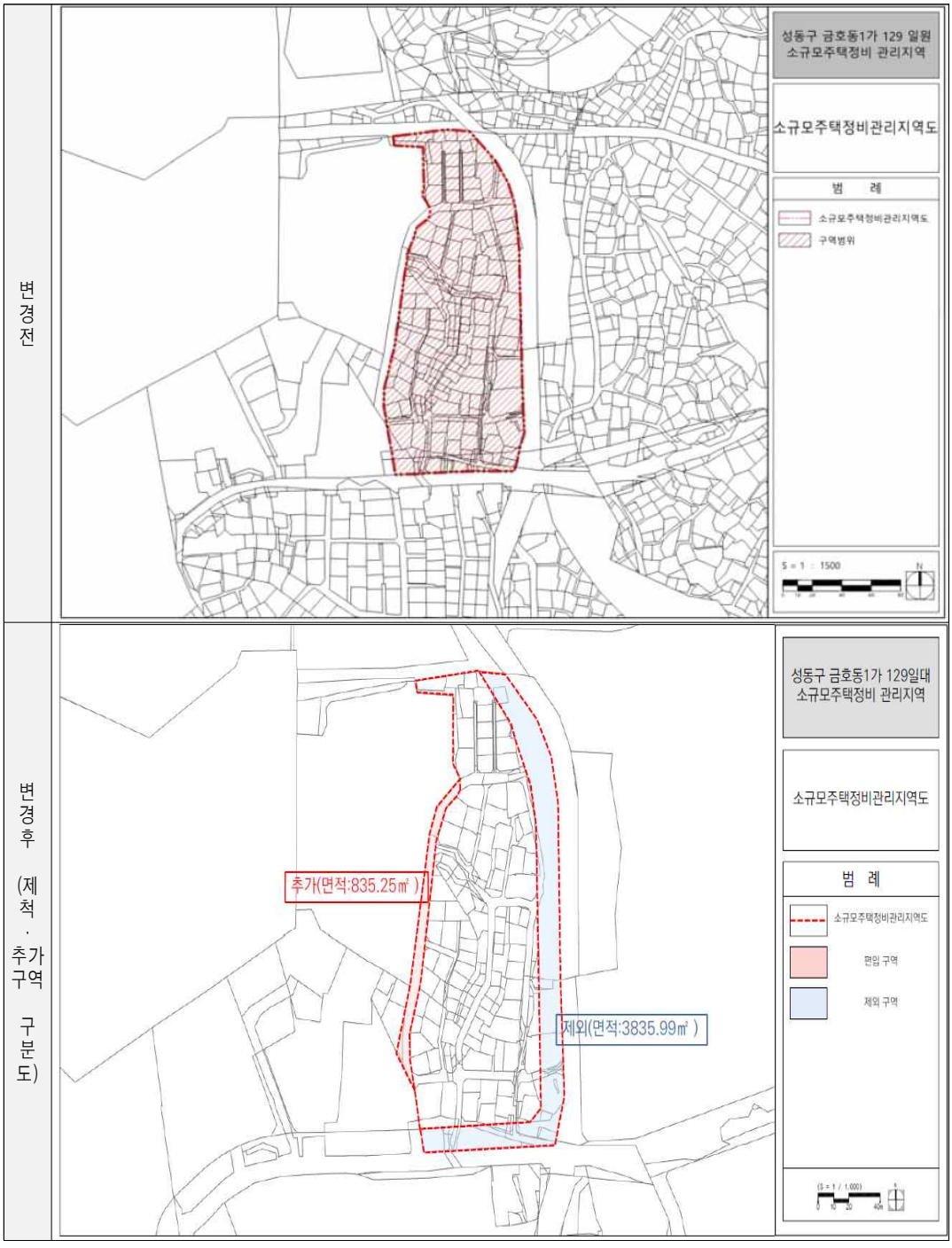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1. 성동구 금호동1가 129번지 일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4호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호(2010.8.2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97호(2021.12.1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3-30호(2023.04.2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4.3.) 심의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입정동 237 일대	12,316.6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2,316.6	100.0	
획 지		10,336.1	83.9	
소 계		1,980.5	16.1	
정비기반시설	도 로	345.9	2.8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		1,634.6	13.3	

※ 추가 기반시설 부담(환산부지면적 1,201.5㎡)은 건축물 공사비로 기부채납하며, 토지이용계획 면적산정에서 제외

나. 용도지역 · 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2,316.6	100.0	
일반상업지역	12,316.6	100.0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 지구	종로구 종로2가 및 3가, 관철동, 관수동, 중구 남대문로 1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입정동, 을지로2가 및3가 각 일부지역	320,000 (12,316.6)	`73.8.1. (건고제317호)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면적임

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구 분		종전 토지등의추산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B)	비용부담액(C)	분담금추산액 (A+B+C)	분담율 (%)
		금액(A)	비율(%)				
합 계		256,961,769,930	100	477,418,230,070	599,602,000,000	1,333,982,000,000	100
토지등 소유자	입정동237 외 107필지	248,742,767,840	96.8	462,147,859,572	-	710,890,627,412	53.29
	입정동230-1 외 22필지	8,219,002,090	3.20	15,270,370,498	-	23,489,372,588	1.76
사업시행자		-	-	-	599,602,000,000	599,602,000,000	44.95

※ 상기 권리가액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확정 예정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구 분		권리가액	분양예정가(원/㎡)		분담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토지등 소유자	입정동237 외 107필지	710,890,627,412	13,000,000	10,000,000	분담금 = 토지등 소유자별 권리가액-(시설별 분양예정가 X 분양받는 면적)
	입정동230-1 외 22필지	23,489,372,588			
사업시행자		599,602,000,000			

※ 상기 추산액은 향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 시 확정 예정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구 분	금액(A)	비 고
총 금 액	1,333,982,000,000	대지비 + 공사비 + 대지조성비
대 지 비	797,517,000,000	추정 토지매입비
공 사 비	536,465,000,000	52,518평 X 평당 약 1,021만원
대지조성비	63,137,000,000	대지조성공사비. 철거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명도보상비, 지질조사,측량비, 개발부담금등
분양예정대지평가액	860,654,000,000	대지비 + 대지조성비
종전 토지등의 추산액(A)	256,961,769,930	2021년4월 구청선정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분양예정대지평가차액(B)	477,418,230,070	분양예정대지평가액-대지조성비-종전토지등의 추산액
비용부담액(C)	599,602,,000,000	공사비 + 대지조성비
분담금 추산액	1,333,982,000,000	A+B+C

※ 상기비용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 시 확정 예정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	22~2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870 (-)	종로구 와룡동 5-14	중구 필동1가 40	-	서울시공고 제2001-646호 (2001.8.6)	충무로
기정	중로	3	1	12~27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390 (-)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	서울시고시 제2003-130호 (2003.5.28)	청계천로
기정	소로	2	1	9	집산 도로	일반 도로	42	을지로3가 104-2	을지로3가 104-13	-	서울시고시 제2005-255호 (2005.8.25)	충무로9길
기정	중로	3	3	9.5~13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77 (87)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	서울시고시 제2010-306호 (2010.8.26)	을지로11길
기정	소로	3	1	7~7.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6	을지로3가 104-13	을지로3가 96-2	-	서울시고시 제2010-306호 (2010.8.26)	충무로11길 을지로13길

※ ( )는 수표구역 내의 연장임

2) 철도 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378.4	서울시고시 제46호 (1982.2.9)	수표구역 내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374.4	서울시고시 제46호 (1982.2.9)	

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고
				구분	규모	
기정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면적 (㎡)	378.4	• 입체적 결정범위(출입구 일부) - 지상1층 : A=112.3㎡ H=24.4m(해수면기준) - 지하1층 : A=315.4㎡ H=24.4m~17.6m(해수면기준) - 지하2층 : A=139.5㎡ H=17.6m~13.7m(해수면기준)
				높이 (m)	13.7~24.4	
				층수	지하2층~ 지상1층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면적 (㎡)	374.4	• 입체적 결정범위(출입구 일부) - 지상1층 : A=122.7㎡ H=24.2m(해수면기준) - 지하1층 : A=305.7㎡ H=24.2m~17.2m(해수면기준) - 지하2층 : A=300.1㎡ H=17.2m~14.5m(해수면기준)
				높이 (m)	14.5~24.2	
				층수	지하2층~ 지상1층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사유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 입체적 결정 면적 변경 - 변경전 면적 : 378.4㎡ - 변경후 면적 : 374.4㎡ • 입체적 결정 높이 변경 - 변경전 높이 : 13.7~24.4m - 변경후 높이 : 14.5~24.2m	• 지하철출입구 이설 및 겸용연결통로 설치에 대하여 관련부서(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입체적 결정규모(면적,높이)를 변경

마. 공공임대산업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구분	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공공임대 산업시설	중구 입정동 262 일대	1,634.6㎡	층	지하3층 ~ 지상8층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7호 (2021.12.16.)	
			연면적	8,928.65㎡		

바.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 및 설치에 관한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 계획

구분	구역면적(㎡)	대지면적(㎡)	기존 정비기반 시설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순부담률(%)
				계	도로	공공임대 산업시설 부지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축물	
기정	12,316.6	10,336.1	510.8	2,753.7	345.9	1,634.6	773.2	17.83
변경	12,316.6	10,336.1	510.8	3,182.0	345.9	1,634.6	1,201.5	20.54
증감	-	-	-	증) 428.3	-	-	증) 428.3	증) 2.71

※ 순부담률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기존 정비기반시설면적) / (시행면적 - 기존 정비기반시설면적)
= (3,182.0㎡ - 510.8㎡) / (13,518.1㎡ - 510.8㎡) = 20.54%
※ '공공임대산업시설 건축물' 은 공사비 원가검증 결과를 반영한 토지 환산면적

2) 정비기반시설 등 확보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753.7	증) 428.3	3,182.0	100.0	
토지	소계	1,980.5	-	1,980.5	62.2	
	도로	345.9	-	345.9	10.8	
	공공임대산업시설	1,634.6	-	1,634.6	51.4	
공공임대산업시설(건축물)		773.2	증) 428.3	1,201.5	37.8	환산부지면적

3) 정비기반시설(국 · 공유지) 무상양도(변경없음)

구분	위 치	시설의 종류	기존 정비기반시설면적(㎡)			비고
			계	대지 내 용도폐지	계획기반시설 내	
합 계			510.8	471.9	38.9	-
1	을지로3가 335-1	도로	57.3	48.4	8.9	국토교통부
2	입정동 29-3	현황도로	12.6	12.6	-	서울특별시
3	입정동 175-6	현황도로	99.2	71.8	27.4	서울특별시
4	입정동 231-3	현황도로	2.6	2.6	-	서울특별시
5	입정동 254-2	현황도로	291.5	291.5	-	서울특별시
6	을지로3가 209-1	현황도로	9.9	9.9	-	중구
7	입정동 29-20	현황도로	7.9	7.9	-	중구
8	입정동 230-3	현황도로	1.7	1.7	-	중구
9	입정동 260-1	현황도로	5.6	5.6	-	중구
10	입정동 262-1	현황도로	22.5	19.9	2.6	중구

사.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수표구역	12,316.6	획지	10,336.1	중구 입정동 237 일대	94	-	-	-	94	-

※ 건축물 현황은 사업부지 철거 이전일(' 23년 9월) 기준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316.6	획지	10,336.1	중구 입정동 237 일대	업무	55이하	기준 : 450이하 허용 : 600이하 상한 : 742이하	103.8 이하
			공공임대 산업시설부지	1,634.6	중구 입정동 262 일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름			
변경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316.6	획지	10,336.1	중구 입정동 237 일대	업무	50이하	기준 : 600이하 허용 : 800이하 상한 : 1,178이하	148.8 이하
			공공임대 산업시설부지	1,634.6	중구 입정동 262 일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름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용적률계획 : ① + ② + ③ : 1,178%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800% (200% 적용)

구분	인센티브 완화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문화인프라	전시장,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정률부여 (보상계수 0.3, 최대50%)	30%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정량부여 (최대30%)	30%
	전기차충전소 설치	정량부여 (최대20%)	20%
녹지생태공간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정률부여 (보상계수 2, 최대100%)	70%
보행가로활성화	무장애도시 조성	정량부여 (최대 30%)	30%
안전 · 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량부여 (최대 20%)	20%
소계		-	200%

③ 상한용적률 : 1,178% 이하 (378% 적용)

구분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기여	도로, 공공임대 산업시설부지	허용용적률×(1+1.3×α)	800%×(1+1.3×0.1422) [α=(1,980.5 - 510.8)÷10,336.1]	147.9%
	공공임대 산업시설건축물	허용용적률×(1+1.2×α)	800%×(1+1.2×0.1162) [α=1,201.5÷10,336.1]	111.6%
공개공지 초과조성		허용용적률×(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대지면적)	800% × [(2,565 - 1,033.6) ÷ 10,336.1)]	118.5%
소계			-	378%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최고높이계획 : ① + ② + ③ : 148.8m 이하 적용

① 기준높이 : 70m

② 개방형녹지 : 73.6m = [건폐율(50%) × {기준높이(70m)+20m}] ÷ {80% - 개방형녹지율(48.7%)}

③ 공개공지 초과 : 5.2m = {기준높이(70m) × 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1,531.4㎡) ÷ 2}÷ 대지면적(10,336.1㎡)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지정용도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근린생활시설, 전시시설 등)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획지 : 청계천로변 10m. 충무로 · 을지로11길 · 충무로11길변 3m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 : 북측 인접대지경계선 1m, 그 외 도로변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개방형녹지	구역 서측 · 동측 공개공지 및 구역 주변 인접보도와 연계한 녹지 · 보행·휴게공간 조성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 ('24년.1월) 준수할 것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	간선가로변 : 청계천로 · 충무로 결절부 공개공지 1개소 이면가로변 : 충무로11길 · 을지로11길 결절부 공개공지 1개소							
	주차계획	업무시설 주차장 내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위한 주차장 일부 확보 ※ 운영부서 협의 및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도시 경관	• 사업시행시 상업업무지역의 도시적 이미지 조화를 위하여 Open Space개념과 도시적 디자인을 도입하여 기존의 노후화된 경관성을 개선하며, 사업대상지 주변의 고층빌딩군과 통일된 경관이미지를 연출하고 동시에 스카이라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환경 보전	•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시, 환경부 고시 제99-117호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에 의거한 재활용 목표율에 맞추어 최대한 재활용할 계획이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중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토록할 계획임
재난 방지	•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 기본계획 및 설계확정 후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하여 재검진 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및 기존 구조물 보강 후 사업시행 예정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차.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없음

카.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입정동 237 일대	12,316.6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2,316.6	100.0	
일반상업지역	12,316.6	100.0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 지구	종로구 종로2가 및 3가, 관철동, 관수동, 중구 남대문로 1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입정동, 을지로2가 및3가 각 일부지역	320,000 (12,316.6)	`73.8.1. (건고제317호)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면적임

다. 기반시설 등 결정 조서

1)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	22~2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870 (-)	종로구 와룡동 5-14	중구 필동1가 40	-	서울시공고 제2001-646호 (2001.8.6)	충무로
기정	중로	3	1	12~27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390 (-)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	서울시고시 제2003-130호 (2003.5.28)	청계천로
기정	소로	2	1	9	집산 도로	일반 도로	42	을지로3가 104-2	을지로3가 104-13	-	서울시고시 제2005-255호 (2005.8.25)	충무로9길
기정	중로	3	3	9.5~13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77 (87)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	서울시고시 제2010-306호 (2010.8.26)	을지로11길
기정	소로	3	1	7~7.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6	을지로3가 104-13	을지로3가 96-2	-	서울시고시 제2010-306호 (2010.8.26)	충무로11길 을지로13길

※ ( )는 수표구역 내의 연장임

2) 철도 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378.4	서울시고시 제46호 (1982.2.9)	수표구역 내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374.4	서울시고시 제46호 (1982.2.9)	

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고
				구분	규모	
기정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면적 (㎡)	378.4	• 입체적 결정범위(출입구 일부) - 지상1층 : A=112.3㎡ H=24.4m(해수면기준) - 지하1층 : A=315.4㎡ H=24.4m~17.6m(해수면기준) - 지하2층 : A=139.5㎡ H=17.6m~13.7m(해수면기준)
				높이 (m)	13.7~24.4	
				층수	지하2층~ 지상1층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면적 (㎡)	374.4	• 입체적 결정범위(출입구 일부) - 지상1층 : A=122.7㎡ H=24.2m(해수면기준) - 지하1층 : A=305.7㎡ H=24.2m~17.2m(해수면기준) - 지하2층 : A=300.1㎡ H=17.2m~14.5m(해수면기준)
				높이 (m)	14.5~24.2	
				층수	지하2층~ 지상1층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사유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 입체적 결정 면적 변경 - 변경전 면적 : 378.4㎡ - 변경후 면적 : 374.4㎡ • 입체적 결정 높이 변경 - 변경전 높이 : 13.7~24.4m - 변경후 높이 : 14.5~24.2m	• 지하철출입구 이설 및 겸용연결통로 설치에 대하여 관련부서(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입체적 결정규모(면적,높이)를 변경

3. 공공임대산업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구분	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공공임대 산업시설	중구 입정동 262 일대	1,634.6㎡	층	지하3층 ~ 지상9층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7호 (2021.12.16.)	
			연면적	8,928.65㎡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입정동 237 일대	12,316.6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신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신설	수표구역	50% 이하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신설	수표구역	600% / 800% / 1,178% 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계획내용	완화량	비 고
신설	문화인프라	• 전시장,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30%	200%
	친환경개발	•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30%	
		• 전기차충전소 설치	20%	
	녹지생태공간	•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70%	
	보행가로활성화	• 무장애도시 조성	30%	
	안전 · 방재	• 방재 관련시설	20%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계획내용	완화량	비 고
신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 토지(도로,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 :1,980.5㎡	147.9%	378%
		• 건축물(공공임대산업시설) : 1,201.5㎡	111.6%	
	공개공지 초과조성	• 법정 공개공지 : 1,033.6㎡ • 초과 공개공지 : 1,531.4㎡	118.5%	

다) 높이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신설	수표구역	148.8m 이하	개방형녹지에 따른 높이 : 143.6m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높이 : 5.2m

다.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신설	건축한계선	획 지	• 북측 중로3-1호선(청계천로) : 10m • 동측 중로1-1호선(충무로) : 3m • 서측 중로3-3호선(을지로11길) : 3m • 남측 소로3-1호선(충무로11길) : 3m	
		공공임대 산업시설부지	• 북측 인접대지(획지)경계선 : 1m • 동측 중로1-1호선(충무로) : 3m • 서측 소로3-1호선(을지로13길) : 3m • 남측 소로2-1호선(충무로9길) : 3m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신설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획 지	• 북측 중로3-1호선(청계천로) : 10m • 동측 중로1-1호선(충무로) : 3m • 서측 중로3-3호선(을지로11길) : 3m • 남측 소로3-1호선(충무로11길) : 3m	서측,남측 보도부분 지상권 설정 (중구청장)
		공공임대 산업시설 부지	• 북측 인접대지(획지)경계선 : 1m • 동측 중로1-1호선(충무로) : 3m • 서측 소로3-1호선(을지로13길) : 3m • 남측 소로2-1호선(충무로9길) : 3m	
	공개공지	이면가로변	• 충무로11길 · 을지로11길 결절부 공개공지 1개소	
		간선가로변	• 청계천로 · 충무로 결절부 공개공지 1개소	

2)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개방형 녹지	청계천로변, 충무로변, 을지로11길변	5,030	• 조성계획 : 구역 서측 · 동측 공개공지 및 구역 주변 인접보도와 연계한 녹지 · 보행·휴게공간 조성	
				•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24년.1월) 준수할 것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녹지(공개공지) 형상 등은 조정 가능

3)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신설	주차계획	• 업무시설 주차장 내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위한 주차장 일부 확보 ※ 운영부서 협의 및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	

Ⅲ. 2024년 제4차(2024.04.0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심의결과	조건사항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수정 가결	• 향후 교통영향평가시 차량진출입구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관련 다음사항 조치계획 적정성 면밀 검토 - 대상지는 서울도심부 내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인 바, 주차계획(688대 계획)은 최소화할 것 - 차량진출입구계획(위치, 개소수), 기계식주차계획 등은 교통 부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및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의 주차공간연계' 등 방안을 통해 조정할 것 • 1층 실내공간(홀) 내 수목 식재계획은 유지관리 및 실현성을 고려하여 교목식재는 가급적 지양하고, 수종은 다양하게 검토할 것

Ⅳ. 관계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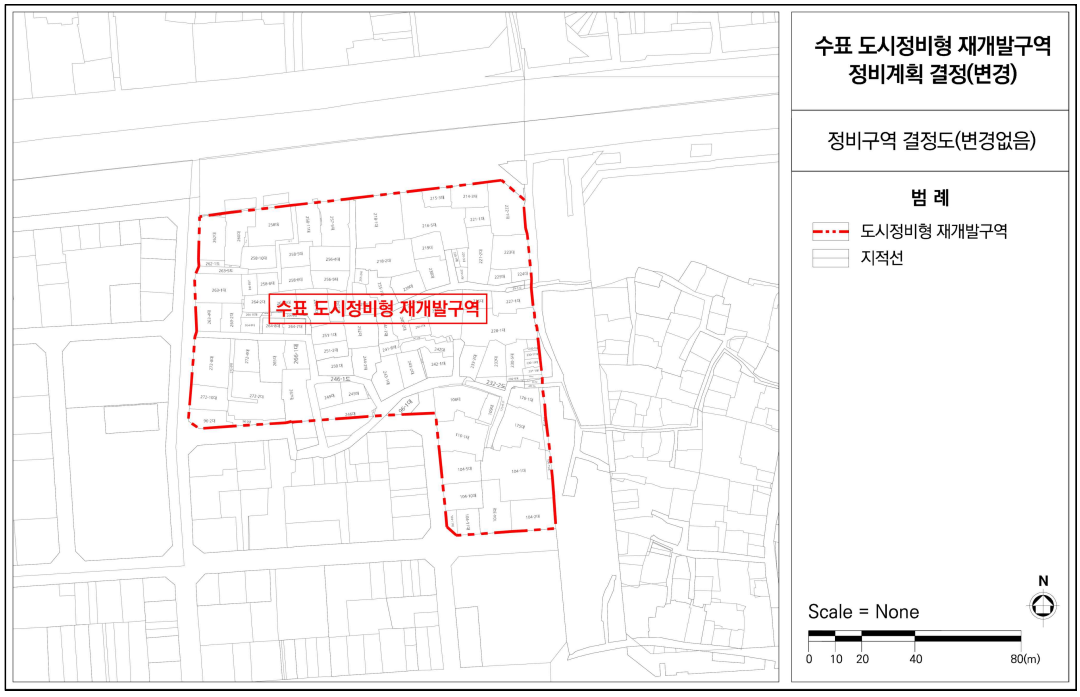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Ⅴ.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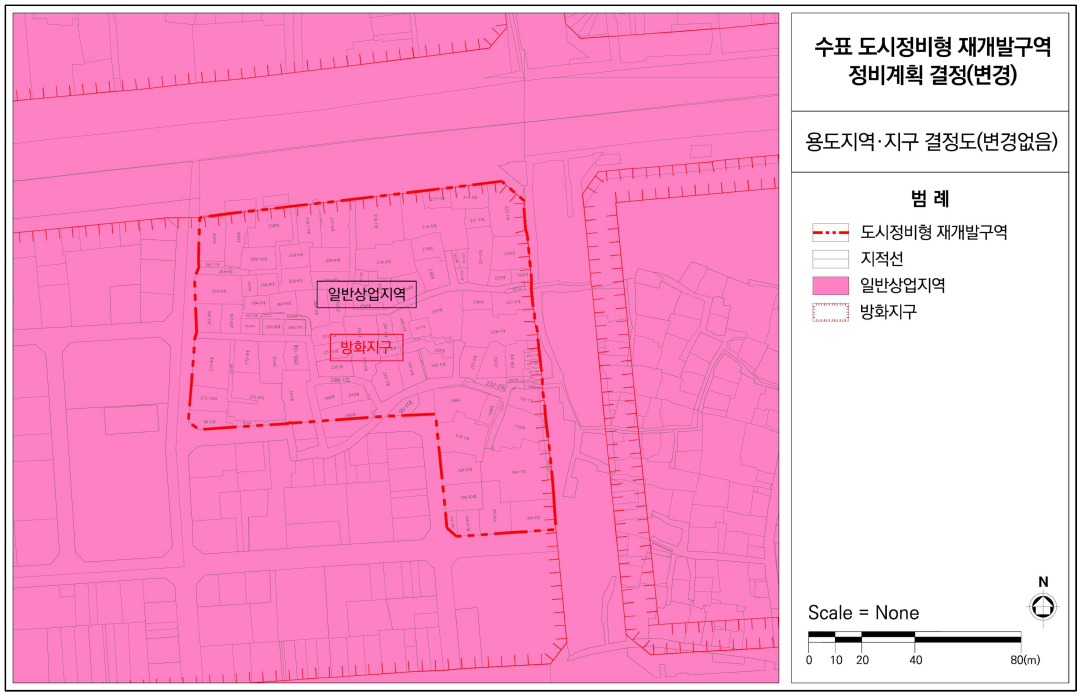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02-2133-4633) 및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72)에 관계 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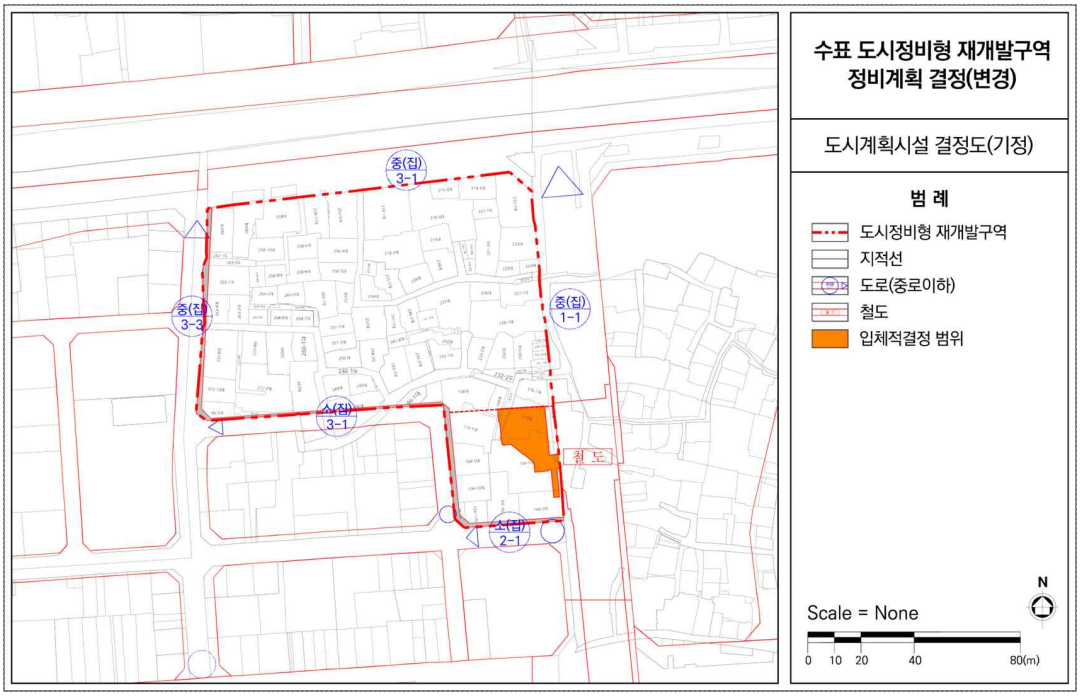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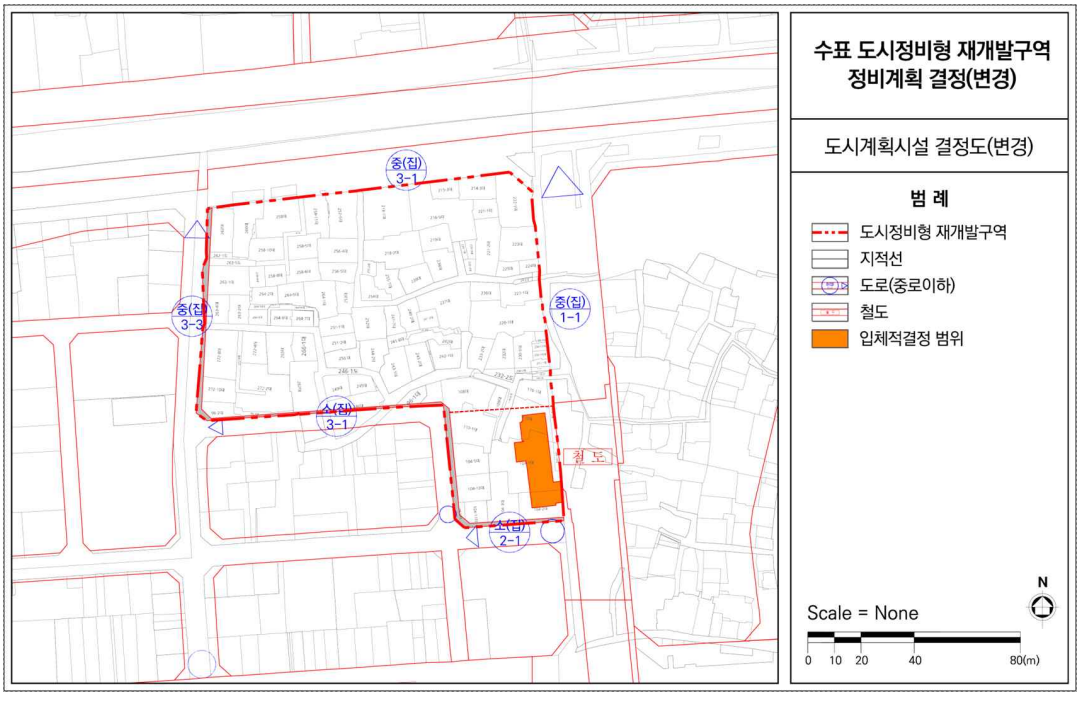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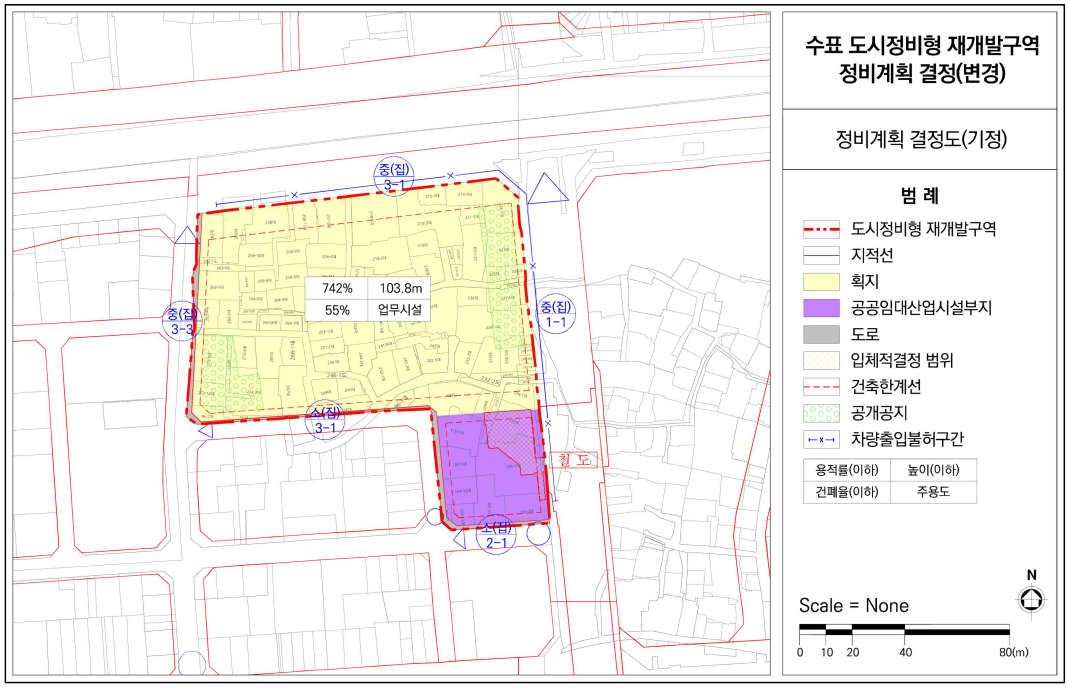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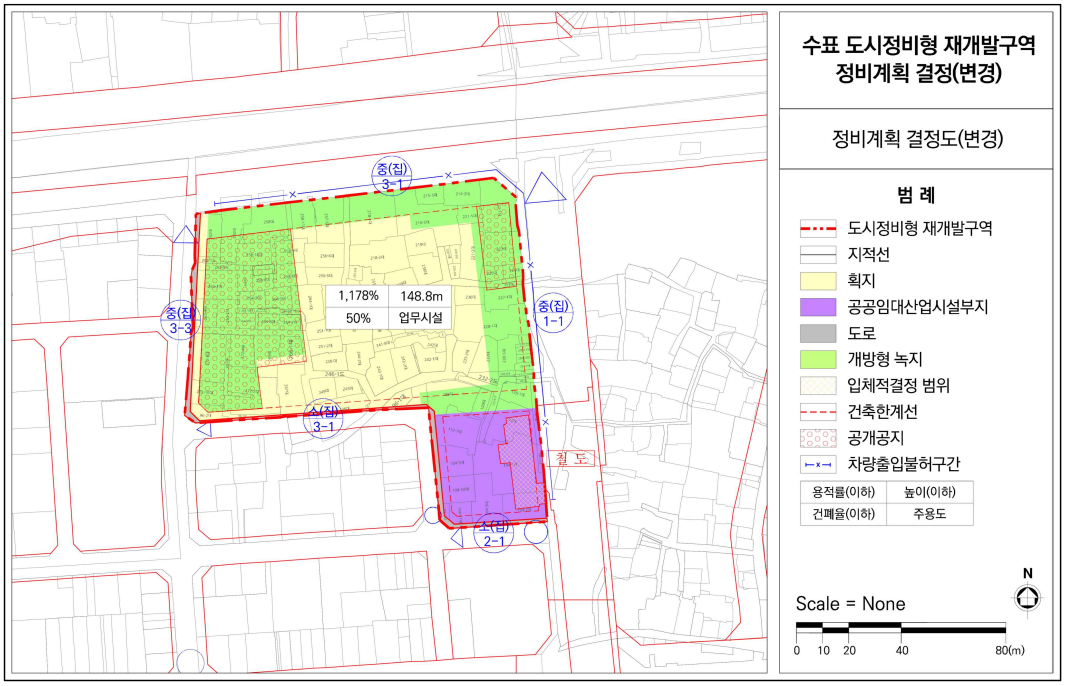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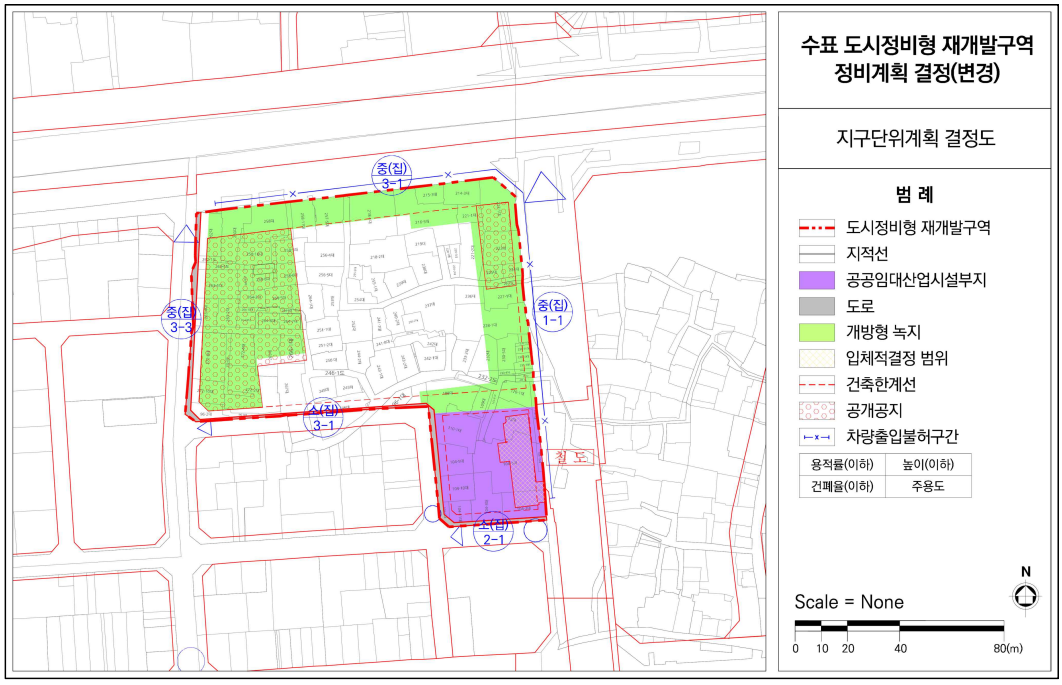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범 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적선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
도로
개방형 녹지
입체적결정 범위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차량출입불허구간
용적률(이하) 높이(이하)
건폐율(이하) 주용도
중(집) 3-1
중(집) 3-2
중(집) 1-1
소(집) 3-1
소(집) 2-1
철 도
N
Scale = None
0 10 20 40 8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5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호(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0호(2017.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2018.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6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1호(2019.10.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9호(2020.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1호(2021.1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74호(2022.4.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2호(2022.8.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1호(2022.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1호(2024.04.1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 정	변경	변경후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관악구 신림동 일원	491,163.6	-	491,163.6	•노후 ·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라.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토지이용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91,163.6	-	491,163.6	100.0	· 도로 · 하천 중복면적 338.1㎡
주택용지		308,641.9	증)129.3	308,771.2	62.9	-
상업업무용지		6,189.9	감)78.6	6,111.3	1.2	-
주거복합용지		6,436.0	증)188.0	6,624.0	1.3	-
종교용지		1,599.0	-	1,599.0	0.3	· 존치교회 2개소
기반시설용지	소계	168,634.9	감)238.7	168,396.2	34.3	· 공원면적 549㎡제외
	도로	77,355.9	감)698.2	76,657.7	15.6	· 공원면적 549㎡포함
	보행자전용도로	535.0	-	535.0	0.1	-
	공원	45,032.6	증)240.0	45,272.6	9.2	-
	녹지	1,140.7	-	1,140.7	0.2	-
	하천	23,779.9	증)210.5	23,990.4	4.8	· 도림천 제2지류, 도로338.1㎡포함
	공공청사	2,435.0	증)5.0	2,440.0	0.5	· 119안전센터
	공공공지	397.5	-	397.5	0.1	-
	학교	14,212.0	증)4.0	14,216.0	2.9	· 신우초교 1개소(학교점유지부지)
	복지시설	2,986.3	-	2,986.3	0.6	· 사회복지시설 2개소 · 성민종합복지관 존치 1개소
	주차장	1,309.0	-	1,309.0	0.3	-

2) 인구 · 주택수용계획 : 변경

○ 기정 : 21,829인/7,513호 → 변경 : 22,048인/7,594호

구 분		주 택 수(호)			인 구 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513	증)81	7,594	21,829	증)219	22,048	-
촉진구역	소 계	6,110	증)81	6,191	16,497	증)219	16,716	※세대(호)당 인구수 :2.7인/세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40㎡ 이하	433	증)221	654	1,169	증)597	1,766	
	40㎡~50㎡	146	감)104	42	394	감)281	113	
	50㎡~60㎡	2,073	감)10	2,063	5,597	감)27	5,570	
	60㎡~85㎡	2,605	감)3	2,602	7,034	감)8	7,026	
	85㎡ 초과	853	감)23	830	2,303	감)62	2,241	
존치관리구역		1,403	-	1,403	5,332	-	5,332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7	-	7	19,627.8	증)9.0	19,636.8	
초등학교	1	-	1	13,543.0	-	13,543.0	· 기설치 1개소(신우초교)
유치원	1	-	1	669.0	증)4.0	673.0	
공공청사	2	-	2	2,435.0	증)5.0	2,440.0	· 119안전센터 1개소
복지시설	2	-	2	2,583.3	-	2,583.3	· 사회복지시설 3개소 (기존 설치 1개소 존치)
공공공지	1	-	1	397.5	-	397.5	-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2	-	12	46,196.3	증)217.0	46,413.3	
공원	소계	10	-	10	45,055.6	증)217.0	45,272.6	
	근린공원	1	-	1	4,319.8	-	4,319.8	
	수변공원	3	-	3	31,702.5	증)328.0	32,030.5	
	소공원	5	-	5	6,841.6	감)111.0	6,730.6	
	어린이공원	1	-	1	2,191.7	-	2,191.7	
녹지	소계	2	-	2	1,140.7	-	1,140.7	
	경관녹지	2	-	2	1,140.7	-	1,140.7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8)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위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재정비촉진지구	-	491,163.6	-	491,163.6	-	
촉진구역(4개구역)	-	396,849.9	감)32.3	396,817.6	-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808 일대	223,201.0	감)32.3	223,168.7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24-25일대	95,797.5	-	95,797.5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16-55일대	35,136.4	-	35,136.4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신림동 306 일대	42,715.0	-	42,715.0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존치지역	-	94,313.7	증)32.3	94,346.0	-	
신림2존치관리구역	신림동 393-19일대	3,884.8	-	3,884.8	-	
신림3존치관리구역	신림동 395-43일대	5,230.7	-	5,230.7	-	
존치건축물	신림동 1726	4,879.1	-	4,879.1	-	
	신림동 1721	5,351.0	-	5,351.0	-	
	신림동 1698	2,986.0	-	2,986.0	-	
	신림동 1699, 1733	9,868.7	-	9,868.7	-	
	신림동 1724, 1729	6,180.0	-	6,180.0	-	
	신림동 300-1	400.0	-	400.0	-	
존치시설	신림동 403-11 외	1,547.0	-	1,547.0	-	
	신림동 300-6	950.0	-	950.0	-	
	신림동 289-3 외	39,493.4	증)32.3	39,525.7	-	
	신림동 315 외	13,543.0	-	13,543.0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 계획 : 변경

(1)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223,201.0	감)32.3	223,168.7	100.0	
주거지역	소계	211,487.0	감)189.8	211,297.2	94.7	
	1종	33,760.0	감)586.3	33,173.7	14.8	
	2종(7층)	2,078.0	감)36.4	2,041.6	0.9	
	2종	119,871.0	증)178.5	120,049.5	53.8	
	3종	42,407.0	증)120.1	42,527.1	19.1	
	준주거	13,371.0	증)134.3	13,505.3	6.1	
자연녹지		11,714.0	증)157.5	11,871.5	5.3	

(2)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3)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4) 신림4재정비촉진구역(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구역명	구분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평균층수/최고층수	비고
			기준	상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60%이하	60%이하	-/25층	2종
					50%이하	-/29층	3종
		주거복합			60%이하	-/18층	준주거
		상업·업무	300%	300%이하	60%이하	-	준주거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60%이하	60%이하	-/27층	2종
					50%이하	-/29층	3종
		주거복합			60%이하	-/22층	준주거
		상업·업무	300%	300%이하	60%이하	-	준주거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52%이하	60%이하	20층/28층	2종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0%	236%이하	60%이하	15층/17층	2종(7층)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시설 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비율(%)
기정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223,201.0	50,134.9	14,796.3	9,140.7	669.0	25,528.9	11.4%
변경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223,168.7	49,929.6	14,796.3	9,140.7	673.0	25,319.6	11.3%
기정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95,797.5	40,513.4	5,478.9	8,191.7	2,619.0	24,223.8	25.29%
기정	신림3재정비 촉진구역	35,136.4	12,673.1	2,921.0	3,886.0	-	5,866.1	16.7%

12)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 분		전체세대수	임 대 주 택				
			합계	40㎡이하	40~50㎡	50~60㎡	60~85㎡
합계	기정	6,610	897	512	42	333	10
	변경	6,691	912	512	42	348	10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4,104	616	413	-	193	10
	변경	4,185	631	413	-	208	10
신림2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435	183	57	-	126	-
신림3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571	98	42	42	14	-

※ 조합원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적용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1)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223,201.0	감)32.3	223,168.7	-

(나)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기정]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23,201.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8,988.1	21.9	-
	도 로	23,238.1	10.4	일부 하천 중복결정
	공 원	12,320.0	5.5	소공원 일부 하천 중복결정
	하 천	11,661.0	5.2	-
	공공청사	1,100.0	0.5	-
	유치원	669.0	0.3	-
택 지 (획 지)	소 계	174,212.9	78.1	-
	1-1	26,151.0	11.7	공동주택
	1-2	8,588.0	3.8	공동주택
	1-3	105,920.0	47.5	공동주택
	1-4	19,917.0	8.9	공동주택
	1-5	1,011.0	0.5	부대복리시설
	1-6	6,436.0	2.9	주거복합
	1-7	1,710.0	0.8	상업업무
	1-8	2,239.4	1.0	상업업무
	1-9	2,121.1	1.0	상업업무
	1-10	119.4	0.1	상업업무

※ 도로 및 공원의 하천 중복결정 면적은 시설 면적에서 제외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23,168.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8,717.1	21.8	-
	도 로	22,507.6	10.1	일부 하천 중복결정
	공 원	12,560.0	5.6	소공원 일부 하천 중복결정
	하 천	11,871.5	5.3	-
	공공청사	1,105.0	0.5	-
	유치원	673.0	0.3	-
택 지 (획 지)	소 계	174,451.6	78.2	-
	1-1	26,303.9	11.8	공동주택
	1-2	8,626.3	3.9	공동주택
	1-3	105,895.2	47.5	공동주택
	1-4	19,903.9	8.9	공동주택
	1-5	987.0	0.4	부대복리시설
	1-6	6,624.0	3.0	주거복합
	1-7	1,788.3	0.8	상업업무
	1-8	2,486.9	1.1	상업업무
	1-9	1,716.1	0.8	상업업무
	1-10	120.0	0.1	상업업무

※ 도로 및 공원의 하천 중복결정 면적은 시설 면적에서 제외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1)	26~32	보조 간선도로	203	신림동 298-4	신림동 345-2	-	·동서간도로
기정	중로	1	104	20~24	보조 간선도로	5,500 (588)	신림동	시흥동계	건고198호 ('71.4.17)	
기정	중로	2	372	15~27	보조 간선도로	2,590 (313)	신림1교	서울대앞 광장	서고시96-116호 ('96.5.6)	
기정	중로	3	453	12	집산도로	71	신림동 341-38	신림동 1704-10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중로	3	455	6~12	집산도로	206	신림동 300-5	신림동 841-3	서고시2008-121 ('08.4.10)	·일부구간 도로폭 확폭 ·하천일부 중복결정
변경	중로	3	455	6~12	집산도로	206	신림동 300-5	신림동 841-3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1	신림동 1527	신림동 1513-4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소로	2	(2)	9	국지도로	221	신림동 394-27	신림동 395-4	-	
기정	중로	2	(1)	10~16	집산도로	622	신림동 808-70	신림동 1726-1	-	·하천일부 중복결정 ·일부구간 도로폭 축소
변경	중로	2	(1)	10~16	집산도로	622	신림동 808-70	신림동 1726-1	-	
기정	중로	2	(2)	16	집산도로	37	신림동 1528	신림동 808-142	서고시2018-121 ('08.4.10)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35	신림동 394-21	신림동 394-19	-	
기정	소로	3	(1)	6~9	국지도로	129	신림동 1694-13	신림동 369-40	-	
기정	소로	3	27	6	집산도로	359 (0)	신림동 841-3	신림동 326-1	서고시207호 ('73.12.24)	
기정	소로	3	64	6	국지도로	38	신림동 404-13	신림동 827-5	서고시207호 ('73.12.24)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113	신림동 1721-5	신림동 832	서고시2018-121 ('08.4.10)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2)	4	국지도로	31	신림동 1726-1	신림동 산134-1	-	·양지공원 진입도로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⑤	-	소공원	신림동 1513-7일대	1,008.0	감)7.0	1,001.0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변경	⑤	-	수변공원	신림동 808-498	10,800.0	증)328.0	11,128.0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변경	⑥	-	소공원	신림동 299-17일대	535.0	감)92.0	443.0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일부구간 하천 중복결정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③	공공청사	-	신림동 296-11일대	1,100.0	증)5.0	1,105.0	50이하	250이하	-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119안전센터

▢ 학 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학교	유치원	신림동 299-23 일대	669.0	증)4.0	673.0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 하 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천 (도림천)	지방 2급 하천	신림동 303, 187-1,703	영등포구 문래동 안양천 합류점	-	14.55 (0.69)	65	서고시 제2008-121호 ('08.4.10)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림천 지류구간 추가결정 B: 15~18m L: 350m ·( )는 구역내 연장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634.00	증) 192.05	826.05	
	주민공동시설		6,510.00	감) 2,278.15	4,231.85	주민회의실 등
	문 고		1,650.00	증) 878.12	2,528.12	
	보육시설		1,310.00	증) 586.17	1,896.17	
	경로당		1,880.00	감) 796.95	1,083.05	
	어린이놀이터		5,347.12	감) 656.61	4,690.51	
	주민운동시설		4,800.00	증) 1,925.41	6,725.41	
	돌봄센터		870.00	감) 273.69	596.31	
근린생활시설			7,778.48	감) 138.73	7,639.75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223,201.0	-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1,693	-	-	1,693	-	-
변경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223,168.7	-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1,693	-	-	1,693	-	-

▢ 건축시설계획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신림1 재정비 촉진 구역	223,201.0	1-1	26,151.0	관악구 신림동 396-9번지 일대	공동주택	30% 이하	200% 이하	25층
			1-2	8,588.0	관악구 신림동 378-15번지 일대	공동주택	30% 이하	294% 이하	25층
			1-3	105,920.0	관악구 신림동 363-4번지 일대	공동주택	30% 이하	257% 이하	25층/29층
			1-4	19,917.0	관악구 신림동 295번지 일대	공동주택	40% 이하	300% 이하	29층
			1-5	1,011.0	관악구 신림동 395-28번지 일대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150% 이하	4층
			1-6	6,436.0	관악구 신림동 391-6번지 일대	주거복합	60% 이하	400% 이하	18층
			1-7	1,710.0	관악구 신림동 1526-8번지 일대	상업·업무	60% 이하	300% 이하	-
			1-8-①~④	2,239.4	관악구 신림동 1513-1번지 일대	상업·업무	60% 이하	300% 이하	-
			1-9-①~⑥	2,121.1	관악구 신림동 1526-3번지 일대	상업·업무	60% 이하	300% 이하	-
			1-10	119.4	관악구 신림동 395-18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
			1-11	1,100.0	관악구 신림동 296-11번지 일대	공공업무시설	50% 이하	250% 이하	-
			1-12	669.0	관악구 신림동 299-23번지 일대	유치원	60% 이하	150% 이하	4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40㎡이하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4,104세대 • 임대주택 : 전체세대수의 15%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림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기준용적률 20%상향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조정계획 (행정부시장 방침 제96호, 2010.3.9) - 기준용적률 상향 190% → 210% ※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						
	허용용적률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 허용용적률 적용 - 219% (9%완화 : 지능형건축물 3등급)						
	상한용적률		• 일반주거지역 : 260% 이하 - 획지 1-1 : 200% 이하 - 획지 1-2~4, 6 : 271.1% 이하						

※ 획지1-7, 1-8, 1-9의 주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계획, 주용도 비율 산정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

※ 획지1-7~10은 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추후 별도의 건축계획 등 계획 수립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블록별 최고층수 준수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변경	신림1 재정비 촉진 구역	223,168.7	1-1	26,303.9	관악구 신림동 396-9번지 일대	공동주택	30% 이하	200% 이하	25층
			1-2	8,626.3	관악구 신림동 378-15번지 일대	공동주택	30% 이하	294% 이하	25층
			1-3	105,895.2	관악구 신림동 363-4번지 일대	공동주택	30% 이하	259% 이하	27층/29층
			1-4	19,903.9	관악구 신림동 295번지 일대	공동주택	40% 이하	300% 이하	29층
			1-5	987.0	관악구 신림동 395-28번지 일대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150% 이하	4층
			1-6	6,624.0	관악구 신림동 391-6번지 일대	주거복합	60% 이하	400% 이하	22층
			1-7	1,788.3	관악구 신림동 1526-8번지 일대	상업 · 업무	60% 이하	300% 이하	-
			1-8-①~④	2,486.9	관악구 신림동 1513-1번지 일대	상업 · 업무	60% 이하	300% 이하	-
			1-9-①~⑤	1,716.1	관악구 신림동 1526-3번지 일대	상업 · 업무	60% 이하	300% 이하	-
			1-10	120.0	관악구 신림동 395-18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
			1-11	1,105.0	관악구 신림동 296-11번지 일대	공공업무시설	50% 이하	250% 이하	-
			1-12	673.0	관악구 신림동 299-23번지 일대	유치원	60% 이하	150% 이하	4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40㎡이하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4,185세대 • 임대주택 : 전체세대수의 15%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림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기준용적률 20%상향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조정계획 (행정부시장 방침 제96호, 2010.3.9) - 기준용적률 상향 190% → 210% ※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						
	허용용적률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 허용용적률 적용 - 219% (9%완화 : 지능형건축물 3등급)						
	상한용적률		• 일반주거지역 : 259.68% 이하 - 획지 1-1 : 200% 이하 - 획지 1-2~4, 6 : 271.5% 이하						

※ 획지1-7, 1-8, 1-9의 주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계획, 주용도 비율 산정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

※ 획지1-7~10은 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추후 별도의 건축계획 등 계획 수립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블록별 최고층수 준수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

구분	시설명	위치	층	면적(㎡)		관리청	비고
				대지면적 (토지지분)	연면적 (전용/공급)		
기정	공공임대상가	획지1-6	지하1층 지상1층	6,436.0 (318.6)	1,621.61/ 2,436.33	관악구 또는 서울특별시	
변경	공공임대상가	획지1-6	지하1층 지상1층	6,624.0 (384.3)	1,531.35/ 2,436.34	관악구 또는 서울특별시	
기정	공공청사	획지1-11	지하1층~ 지상4층	1,100	1,785.0	관악소방서	
변경	공공청사	획지1-11	지하1층~ 지상4층	1,105	1,785.0	관악소방서	

※ 공공임대상가의 관리청은 추후 서울시와 관악구가 협의하여 지정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① 건축한계선

구분		적용	계획내용	비고
기정	건축한계선 2m	획지1-10	신림로변	도면 참조
기정	건축한계선 3m	획지1-1, 1-2, 1-3, 1-4, 1-6	공공보행통로변, 도림천변, 수변공원변, 방천길변, 광신길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변경	건축한계선 3m	획지1-1, 1-2, 1-3, 1-4, 1-6, 1-8, 1-9	호암로변, 공공보행통로변, 도림천변, 수변공원변, 방천길변, 광신길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기정	건축한계선 6m	획지1-2, 1-3, 1-4, 1-6	호암로변, 양지길변	

② 공공보행통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공공보행통로①	획지1-1	• 신림로 이면부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의 등산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 6m 이상	공공에 24시간 개방된 형태로 조성 도면 참조
기정	공공보행통로②	획지1-3	• 호암로~양지길(중로2-(1)호선)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 6m 이상	
기정	공공보행통로③	획지1-3, 1-4	• 호암로~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의 등산로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 14m 이상	
기정	공공보행통로④	획지1-3, 1-4	• 호암로~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의 등산로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 6m 이상	
기정	공공보행통로⑤	획지1-3	• 공공보행통로③~우정아파트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 6m 이상	
변경	공공보행통로⑤	획지1-3	• 공공보행통로③~양지공원 진입도로(소로3-(2)호선)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 6m 이상	

③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보차혼용통로①	획지1-3	• 양지길(중로2-(1)호선)~중로2-(2)호선로 연결되는 보차혼용통로 조성 • 폭 10m	공공에 24시간 개방된 형태로 조성
보차혼용통로②	획지1-3	• 동서간연결도로(대로2-(1)호선)~양지길(중로2-(1)호선)로 연결되는 보차혼용통로 조성 • 폭 14m	
단지내 보행동선	획지1-3, 1-4	• 지역과 단지를 연결하는 하천변 공공가로 조성 •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순화도로를 따라 단지순환길 조성	
	획지1-2, 1-3	• 옛길(양지길, 중로2-(1)호선)의 흔적 및 관악산 연접부를 따라 단지 둘레길 조성	
	획지1-3	• 단지 내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단지안길 조성	
단지내 순환도로	획지1-3, 1-4	• 단지내·외부와의 접근성, 주변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형 차량동선을 계획	
보행자우선도로	소로2-(2)호선	• 단지로의 직접 진출입 불허	
차량출입 불허구간	획지1-4	• 호암로 변	도면 참조
	획지1-3, 1-4	• 동서연결도로변 일부 구간	도면 참조
	획지1-2, 1-6	• 양지길변 일부구간	도면 참조
	획지1-1	• 중로3-(1), 소로2-(2), 소로3-(1)호선변	도면 참조

5.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기정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후 4년 이내	재개발조합	현황 : 4,410 계획 : 4,104 감) 306	-	-
변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후 4년 이내	재개발조합	현황 : 4,410 계획 : 4,185 감) 225	-	-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1	175,981.9	1-1	관악구 신림동 396-9번지 일대	26,151.0	공동주택
			1-2	관악구 신림동 378-15번지 일대	8,588.0	공동주택
			1-3	관악구 신림동 363-4번지 일대	105,920.0	공동주택
			1-4	관악구 신림동 295번지 일대	19,917.0	공동주택
			1-5	관악구 신림동 395-28번지 일대	1,011.0	부대복리시설
			1-6	관악구 신림동 391-6번지 일대	6,436.0	주거복합
			1-7	관악구 신림동 1526-8번지 일대	1,710.0	상업업무
			1-8-①	관악구 신림동 1513-1번지 일대	849.9	상업업무
			1-8-②	관악구 신림동 1513-2번지 일대	666.7	상업업무
			1-8-③	관악구 신림동 1513-3번지 일대	425.5	상업업무
			1-8-④	관악구 신림동 1513-4번지 일대	297.3	상업업무
			1-9-①	관악구 신림동 1526-2번지 일대	378.1	상업업무
			1-9-②	관악구 신림동 1526-3번지 일대	522.8	상업업무
			1-9-③	관악구 신림동 1526-4번지 일대	227.4	상업업무
			1-9-④	관악구 신림동 1526-5번지 일대	227.0	상업업무
			1-9-⑤	관악구 신림동 1526-6번지 일대	360.8	상업업무
			1-9-⑥	관악구 신림동 290-2번지 일대	405	상업업무
			1-10	관악구 신림동 395-18번지 일대	119.4	상업업무
			1-11	관악구 신림동 296-11번지 일대	1,165.0	공공청사
			1-12	관악구 신림동 299-23번지 일대	669.0	유치원
변경	1	176,229.6	1-1	관악구 신림동 396-9번지 일대	26,303.9	공동주택
			1-2	관악구 신림동 378-15번지 일대	8,626.3	공동주택
			1-3	관악구 신림동 363-4번지 일대	105,895.2	공동주택
			1-4	관악구 신림동 295번지 일대	19,903.9	공동주택
			1-5	관악구 신림동 395-28번지 일대	987.0	부대복리시설
			1-6	관악구 신림동 391-6번지 일대	6,624.0	주거복합
			1-7	관악구 신림동 1526-8번지 일대	1,788.3	상업업무
			1-8-①	관악구 신림동 1513-1번지 일대	849.9	상업업무
			1-8-②	관악구 신림동 1513-2번지 일대	666.7	상업업무
			1-8-③	관악구 신림동 1513-3번지 일대	673.0	상업업무
			1-8-④	관악구 신림동 1513-4번지 일대	297.3	상업업무
			1-9-①	관악구 신림동 1526-2번지 일대	378.1	상업업무
			1-9-②	관악구 신림동 1526-3번지 일대	522.8	상업업무
			1-9-③	관악구 신림동 1526-4번지 일대	227.4	상업업무
			1-9-④	관악구 신림동 1526-5번지 일대	227.0	상업업무
			1-9-⑤	관악구 신림동 1526-6번지 일대	360.8	상업업무
			1-10	관악구 신림동 395-18번지 일대	120.0	상업업무
			1-11	관악구 신림동 296-11번지 일대	1,105.0	공공청사
			1-12	관악구 신림동 299-23번지 일대	673.0	유치원

7.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정	신림1 재정비 촉진구역내	161,706.4	-	37,181.44	413세대 (10.06%)	40㎡이하	
					193세대 (4.70%)	50~60㎡이하	
					10세대 (0.24%)	60~85㎡이하	
					전체:616세대 (15.01%)	-	
변경	신림1 재정비 촉진구역내	167,353.3	-	38,681.77	413세대 (9.87%)	40㎡이하	
					208세대 (4.97%)	50~60㎡이하	
					10세대 (0.24%)	60~85㎡이하	
					전체:631세대 (15.08%)	-	

주)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임대주택은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 · 호수 선정시 함께 추첨하도록 한다.

8. 지상권 설정 계획

구분	지상권 설정 범위			비고
	위치	시점	종점	
획지1-3	보차혼용통로①	중로2-(1) (신림동 386-17)	중로2-(2) (신림동 808-142)	보차혼용통로 유지관리 및 공공의 상시 사용
획지1-3	보차혼용통로②	대로2-(1) (신림동 344-25)	중로2-(1) (신림동 381-5)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도로 및 보차혼용통로 설계, 측량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상권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시행인가 결과를 고려하여 관악구청과 협의하여 결정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림1주택정비형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223,201.0	감)32.3	223,168.7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23,201.0	감)32.3	223,168.7	100.0
주거 지역	소 계		211,487.0	감)189.8	211,297.2	94.7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33,760.0	감)586.3	33,173.7	14.8
		2종(7층)	2,078.0	감)36.4	2,041.6	0.9
		2종	119,871.0	증)178.5	120,049.5	53.8
		3종일반	42,407.0	증)120.1	42,527.1	19.1
	준주거		13,371.0	증)134.3	13,505.3	6.1
자연녹지			11,714.0	증)157.5	11,871.5	5.3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1)	26~32	보조 간선도로	203	신림동 298-4	신림동 345-2	-	· 동서간도로
기정	중로	1	104	20~24	보조 간선도로	5,500 (588)	신림동	시흥동계	건고198호 ('71.4.17)	· 지구내 4m확폭 (완화차로 설치)
기정	중로	2	372	15~27	보조 간선도로	2,590 (313)	신림1교	서울대앞 광장	서고시96-116호 ('96.5.6)	

기정	중로	3	453	12	집산도로	71	신림동 341-38	신림동 1704-10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중로	3	455	6~12	집산도로	206	신림동 299-25	신림동 841-3	서고시2008-121 ('08.4.10)	
변경	중로	3	455	6~12	집산도로	206	신림동 300-5	신림동 841-3	서고시2008-121 ('08.4.10)	·일부구간 도로폭 확폭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1	신림동 1527	신림동 1513-4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소로	2	(2)	9	국지도로	221	신림동 394-27	신림동 395-4	-	
기정	중로	2	(1)	10~16	집산도로	622	신림동 808-70	신림동 1726-1	-	
변경	중로	2	(1)	10~16	집산도로	622	신림동 808-70	신림동 1726-1	-	·일부구간 도로폭 축소
기정	중로	2	(2)	16	집산도로	37	신림동 1528	신림동 808-142	서고시2018-121 ('08.4.10)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35	신림동 394-21	신림동 394-19	-	
기정	소로	3	(1)	6~9	국지도로	129	신림동 1694-13	신림동 369-40	-	
기정	소로	3	27	6	집산도로	359 (0)	신림동 841-3	신림동 326-1	서고시207호 ('73.12.24)	
기정	소로	3	64	6	국지도로	38	신림동 404-13	신림동 827-5	서고시207호 ('73.12.24)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113	신림동 1721-5	신림동 832	서고시2018-121 ('08.4.10)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2)	4	국지도로	31	신림동 1726-1	신림동 산134-1		·양지공원 진입도로

나) 공 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⑤	-	소공원	신림동 1513-7일대	1,008	감)7	1,001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변경	⑤	-	수변공원	신림동 808-498	10,800	증)328	11,128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변경	⑥	-	소공원	신림동 299-17일대	535	감)92	443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일부구간 하천 중복결정

※ ( )는 구역내 면적

다)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③	공공청사	-	신림동 296-11일대	1,100	증)5	1,105	50이하	250이하	-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119 안전 센터

라)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유치원	신림동 299-23 일대	669	증)4	673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마) 하 천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천 (도림천)	지방 2급 하천	신림동 303, 187-1,703	영등포구 문래동 안양천 합류점	-	14.55 (0.69)	65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림천 지류구간 추가결정 B: 15~18m L: 350m • ( )는 구역내 연장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1	175,981.9	1-1	관악구 신림동 396-9번지 일대	26,151.0	공동주택
			1-2	관악구 신림동 378-15번지 일대	8,588.0	공동주택
			1-3	관악구 신림동 363-4번지 일대	105,920.0	공동주택
			1-4	관악구 신림동 295번지 일대	19,917.0	공동주택
			1-5	관악구 신림동 395-28번지 일대	1,011.0	부대복리시설
			1-6	관악구 신림동 391-6번지 일대	6,436.0	주거복합
			1-7	관악구 신림동 1526-8번지 일대	1,710.0	상업업무
			1-8-①	관악구 신림동 1513-1번지 일대	849.9	상업업무
			1-8-②	관악구 신림동 1513-2번지 일대	666.7	상업업무
			1-8-③	관악구 신림동 1513-3번지 일대	425.5	상업업무
			1-8-④	관악구 신림동 1513-4번지 일대	297.3	상업업무
			1-9-①	관악구 신림동 1526-2번지 일대	378.1	상업업무
			1-9-②	관악구 신림동 1526-3번지 일대	522.8	상업업무
			1-9-③	관악구 신림동 1526-4번지 일대	227.4	상업업무
			1-9-④	관악구 신림동 1526-5번지 일대	227.0	상업업무
			1-9-⑤	관악구 신림동 1526-6번지 일대	360.8	상업업무
			1-9-⑥	관악구 신림동 290-2번지 일대	405.0	상업업무
			1-10	관악구 신림동 395-18번지 일대	119.4	상업업무
			1-11	관악구 신림동 296-11번지 일대	1,100.0	공공청사
			1-12	관악구 신림동 299-23번지 일대	669.0	유치원
변경	1	176,229.6	1-1	관악구 신림동 396-9번지 일대	26,303.9	공동주택
			1-2	관악구 신림동 378-15번지 일대	8,626.3	공동주택
			1-3	관악구 신림동 363-4번지 일대	105,895.2	공동주택
			1-4	관악구 신림동 295번지 일대	19,903.9	공동주택
			1-5	관악구 신림동 395-28번지 일대	987.0	부대복리시설
			1-6	관악구 신림동 391-6번지 일대	6,624.0	주거복합
			1-7	관악구 신림동 1526-8번지 일대	1,788.3	상업업무
			1-8-①	관악구 신림동 1513-1번지 일대	849.9	상업업무
			1-8-②	관악구 신림동 1513-2번지 일대	666.7	상업업무
			1-8-③	관악구 신림동 1513-3번지 일대	673.0	상업업무
			1-8-④	관악구 신림동 1513-4번지 일대	297.3	상업업무
			1-9-①	관악구 신림동 1526-2번지 일대	378.1	상업업무
			1-9-②	관악구 신림동 1526-3번지 일대	522.8	상업업무
			1-9-③	관악구 신림동 1526-4번지 일대	227.4	상업업무
			1-9-④	관악구 신림동 1526-5번지 일대	227.0	상업업무
			1-9-⑤	관악구 신림동 1526-6번지 일대	360.8	상업업무
			1-10	관악구 신림동 395-18번지 일대	120.0	상업업무
			1-11	관악구 신림동 296-11번지 일대	1,105.0	공공청사
			1-12	관악구 신림동 299-23번지 일대	673.0	유치원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주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획지	용도	비고
기정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기정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기정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기정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기정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기정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4호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주거복합
기정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4호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상업·업무
기정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4호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상업·업무
기정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4호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상업·업무
기정	1-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4호의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
기정	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기정	1-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유치원

※ 획지1-7, 1-8, 1-9의 주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주용도 비율 산정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외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기정	준주거지역	60%	

다) 용적률계획

구 분	획지	용도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1-1	210%	219%	200%	• 촉진계획 - 허용용적률 : 219% - 상한용적률 : (기정)260% (변경)259.68%
기정	1-2	210%	219%	294%	
기정	1-3	210%	219%	257%	
변경	1-3	210%	219%	259%	
기정	1-4	210%	219%	300%	
기정	1-5	150%	150%	150%	
기정	1-6	210%	219%	400%	• 촉진계획 - 허용용적률 : 219% - 상한용적률 : 260%
기정	1-7	300%	300%	300%	• 촉진계획 - 허용용적률 : 300% - 상한용적률 : 300%
기정	1-8	300%	300%	300%	
기정	1-9	300%	300%	300%	
기정	1-10	200%	200%	200%	
기정	1-11	250%	250%	250%	
기정	1-12	150%	150%	15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항목	적용		비고
기정	지능형건축물	3등급	9%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획지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기정	1-1~4, 1-6	40.7%	-	총 40.7%

라) 높이계획

구 분	획지	높이기준	비고
기정	1-1	25층이하	공동주택
기정	1-2	25층이하	공동주택
기정	1-3	25층이하(제2종) / 29층이하(제3종)	공동주택
변경	1-3	27층이하(제2종) / 29층이하(제3종)	공동주택
기정	1-4	29층이하	공동주택
기정	1-5	4층이하	부대복리시설
기정	1-6	18층이하	주거복합
변경	1-6	22층이하	주거복합
기정	1-7	관계법령에 따름	상업업무
기정	1-8	관계법령에 따름	상업업무
기정	1-9	관계법령에 따름	상업업무
기정	1-10	-	상업업무
기정	1-11	-	공공청사
기정	1-12	4층이하	유치원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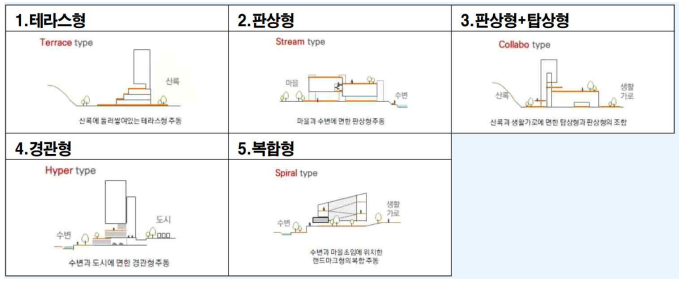
구분		적용	계획내용	비고
기정	건축한계선 2m	획지1-10	신림로변	도면 참조
기정	건축한계선 3m	획지1-1, 1-2, 1-3, 1-4, 1-6	공공보행통로변, 도림천변, 수변공원변, 방천길변, 광신길변, 양산길,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변경	건축한계선 3m	획지1-1, 1-2, 1-3, 1-4, 1-6, 1-8, 1-9	호암로변, 공공보행통로변, 도림천변, 수변공원변, 방천길변, 광신길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기정	건축한계선 6m	획지1-2, 1-3, 1-4, 1-6	호암로변, 양지길변	

▌경관계획

가)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커뮤니티 및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도림천제2지류와 수변공원 인접지역 (획지1-3, 1-4)	•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권장)	
	단지내 순환도로변 (획지1-3, 1-4)	•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배치(권장)	
	단지 진입부 복합용지 (획지1-6)	• 주거, 상업(공공임대상가 등), 업무용도 복합화, 지역단위 커뮤니티시설 배치(권장)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주동의 유형 및 형태	전구역	• 자연과 도시의 연계 및 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계획 • 주동의 다양한 층수변화, 배치, 교차 등 건축적 요소의 다양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특색있고 입체적인 주동형태 계획 	

다)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개방감	획지1-1, 1-3, 1-4	• 관악산 자연을 활용한 열린 녹지축 연결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의 흐름을 고려하여 열린 도시경관 조성	
특화거리	획지1-3, 1-4, 1-6	• 도림천 수변공간 활용을 토한 하천변 특화거리 조성 - 수변공원 및 하천변 보행네트워크를 활용한 상업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지역 거점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 단지내 주민 및 지역 주민들이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하여 활성화 유도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공공보행통로①	획지1-1	• 신림로 이면부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의 등산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 6m 이상	공공에 24시간 개방된 형태로 조성 도면 참조
기정	공공보행통로②	획지1-3	• 호암로~양지길(중로2-(1)호선)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 6m 이상	
기정	공공보행통로③	획지1-3, 1-4	• 호암로~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의 등산로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 14m 이상	
기정	공공보행통로④	획지1-3, 1-4	• 호암로~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의 등산로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 6m 이상	
기정	공공보행통로⑤	획지1-3	• 공공보행통로③~우정아파트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 6m 이상	
변경	공공보행통로⑤	획지1-3	• 공공보행통로③~양지공원 진입도로(소로3-(2)호선)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 6m 이상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보차혼용통로①	획지1-3	• 양지길(중로2-(1)호선)~중로2-(2)호선로 연결되는 보차혼용통로 조성 • 폭 10m	공공에 24시간 개방된 형태로 조성
보차혼용통로②	획지1-3	• 동서간연결도로(대로2-(1)호선)~양지길(중로2-(1)호선)로 연결되는 보차혼용통로 조성 • 폭 14m	
단지내 보행동선	획지1-3, 1-4	• 지역과 단지를 연결하는 하천변 공공가로 조성 •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순화도로를 따라 단지순환길 조성	
	획지1-2, 1-3	• 옛길(양지길, 중로2-(1)호선)의 흔적 및 관악산 연접부를 따라 단지 둘레길 조성	
	획지1-3	• 단지 내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단지안길 조성	
단지내 순환도로	획지1-3, 1-4	• 단지내·외부와의 접근성, 주변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형 차량동선을 계획	공공에 24시간 개방된 형태로 조성
보행자우선도로	소로2-(2)호선	• 단지로의 직접 진출입 불허	
차량출입 불허구간	획지1-4	• 호암로 변	도면 참조
	획지1-3, 1-4	• 동서연결도로변 일부 구간	도면 참조
	획지1-2, 1-6	• 양지길변 일부구간	도면 참조
	획지1-1	• 중로3-(1), 소로2-(2), 소로3-(1)호선변	도면 참조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생태환경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Ⅲ, 녹지모양Ⅲ, 내부연결성Ⅰ, 외부연결성Ⅲ	·조경 및 녹지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녹지와 연계강화 실시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대부분 5등급(일부 2, 3, 4등급), 개별비오톱은 대부분 평가제외지역 및 일부 2등급	·경관녹지, 공원 및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열섬화 방지 등 실시	
토지환경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지형변화 최소화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물환경	물순환(수리수질)	생태면적률 30%	○	·적용 생태면적률 30.06%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다양한 녹지를 반영하여 생태면적률을 높이도록 설계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토사유출량 변화 예상 ·생활오수 발생	·공사시 수질저감계획 수립 ·우·오수 처리계획 수립	
대기환경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변 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예상(풍하방향 풍속증가, 와류생성 등)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건물높이 계획 ·대상지 내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풍속의 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임.	
	대기질(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의한 영향 ·운영시 난방 및 전력사용에 의한 배출가스 발생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공사시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살수계획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운영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실시	
	소음·진동	소음 및 진동 최소화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 ·운영시 녹지공간조성으로 소음감소	
	경관	가로녹시율 35%	○	·조경녹지 및 가로녹지 조성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녹시율 상승계획	
		조망권 확보	○	·경관변화 발생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계획 수립	
		Skyline 보전	○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외부 건축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되도록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사업지구 내 휴식여가공간 부족하여 당해 조성필요	·경관녹지, 공원, 획지 등을 조성하고 인근 녹지를 활용하여 휴식공간 조성계획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계획수립	-	·기존 보행동선 유지 및 보행자를 위한 가로공간 조성	·휴식과 여가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지면적이 작아 자전거 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미고려	-	

▌공공주택(의무)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동주택(의무)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요오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기정]

구분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공공주택 (의무)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합계	4,104	100.0	616	616	-	15.0	100.0	-
40㎡이하	413	10.1	413	413	-	10.1	67.1	-
40~50㎡	-	-	-	-	-	-	-	-
50~60㎡	922	22.5	193	193	-	4.7	31.3	-
60~85㎡	2,000	48.7	10	10	-	0.2	1.6	-
85㎡초과	769	18.7	-	-	-	-	-	-

※ 공공주택은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 · 호수 선정시 함께 추첨하도록 한다.

[변경]

구분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공공주택 (의무)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합계	4,185	100.0	631	631	-	15.0	100.0	-
40㎡이하	530	12.7	413	413	-	9.8	65.5	-
40~50㎡	-	-	-	-	-	-	-	-
50~60㎡	912	21.8	208	208	-	5.0	32.9	-
60~85㎡	1,997	47.7	10	10	-	0.2	1.6	-
85㎡초과	746	17.8	-	-	-	-	-	-

※ 공공주택은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 · 호수 선정시 함께 추첨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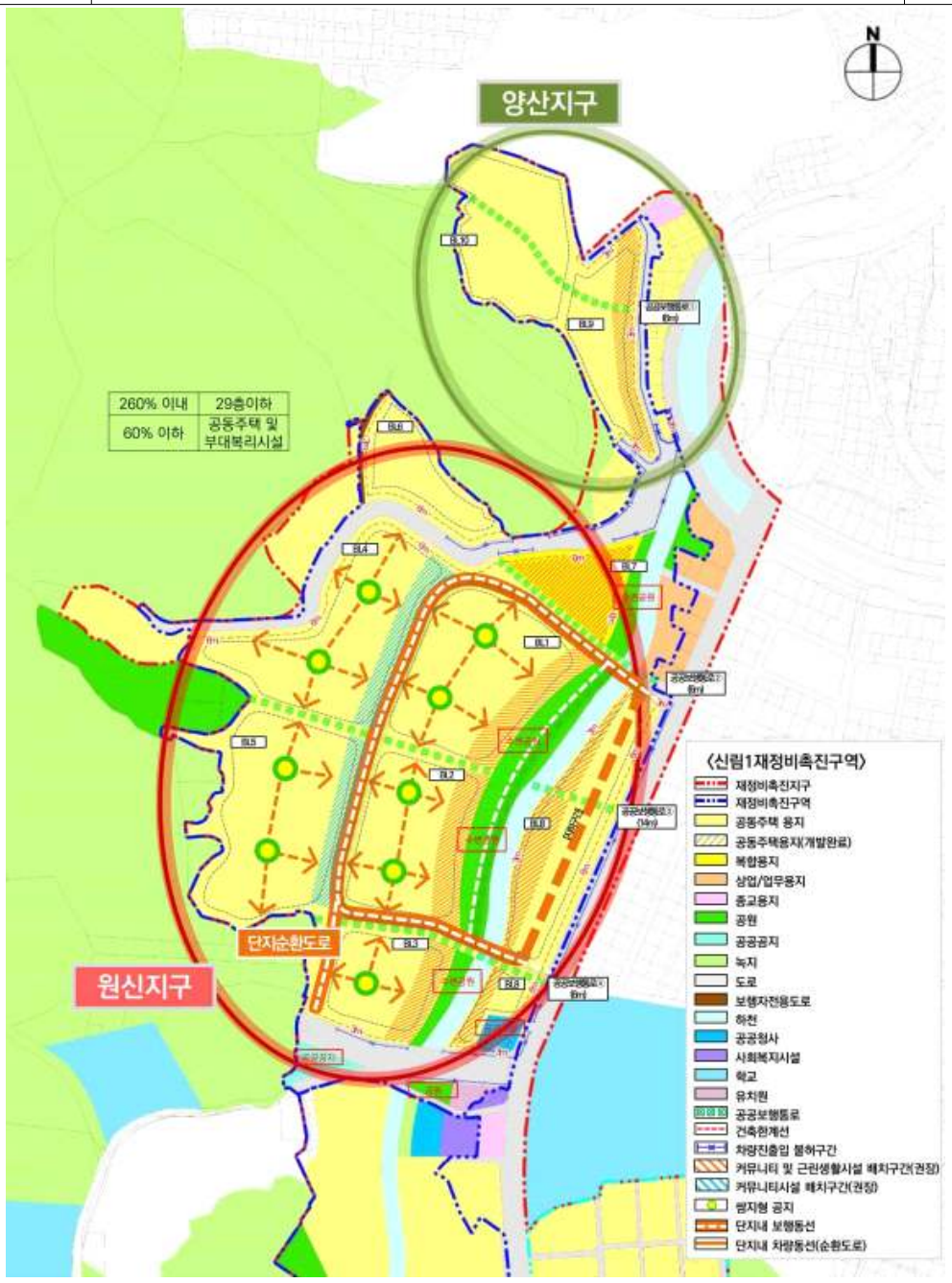
(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1.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라인	비고
용적률		○기준용적률: 210%, 상한용적률: 260%이내 ※양산지구 용적률 : 200%이하(양산지구는 공동정비 방식 권장)	
층수/높이		○최고층수 29층 이하로 계획(블록별 높이기준은 정비계획 기본구상도에 따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18년 기 결정된 용도지역으로 계획(공동주택부지)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고높이 기준 적용	
	원신	- BL1: 최고 29층 이하 - BL2,3,4: (기정) 최고 25층 이하 → (변경) 최고 27층 이하 - BL5: (기정) 최고 25층 이하(관악산 연접부 6층 이하) → (변경) 최고27층이하(관악산 연접부 10층 이하) - BL6: 최고 25층 이하 - BL7: (기정) 최고 18층 이하 → (변경) 최고 22층 이하 - BL8: 최고 29층 이하	
	양산	- BL9: 최고 25층 이하 - BL10: 최고 17층 이하 ※ 저층부 테라스하우스 적극 도입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결정도 참고)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18년 기 결정된 용도지역으로 계획(공동주택부지)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고높이 기준 적용	
	원신	- BL1: 제3종일반주거지역 - BL2,3,4,5,6: 제2종일반주거지역 - BL7: 준주거지역(※주거복합 및 공공임대상가) - BL8: 제3종일반주거지역	
	양산	- BL9: 제2종일반주거지역(※중저층 관리) - BL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순부담률		○10% 이상 ※ 공원·녹지 면적은 법정의무 면적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임대상가 등 추가 확보	
기반시설	하천	- 도림천 제2지류 하천 복원, 세부 계획은 「도림천 제2지류 하천조성계획」을 따름 ※ 조성비용 및 부담 주체는 기존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에 따름(신림뉴타운지구 개발계획, 2008년 4월)	
	수변공원	- 복원되는 도림천제2지류 노선을 따라 조성, 하천변 활성화를 통해 주변지역과 열린 도시 축 형성	
	공공임대상가	- 기존 전통시장 상인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복합용지 저층부에 공공임대상가 50호 내외 계획 ※ 공공임대상가는 관악구청에서 운영하며, 상가 세입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급호수 및 면적 결정	
	소방파출소	- 대상지 남측 호암로와 광신길 교차부 배치, 구체적 시설규모는 관악소방서와 협의하여 결정	
	공원	- 대상지 남측 광신길변에 배치하며, 주변지역과 효율적 이용 도모	
	도로	- 주변지역과 연결되는 광신길, 양지길, 방천길은 현황도로 선형을 유지하고, 보도조성 시 공공보행통로 등과 연계하여 보행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구분	가이드라인	비고
공공공지	- 동·서간 연결도로(금천~신림)와 광신길 교차부에 배치하여 완충공간 조성 ※ 공공공지는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획지로 변경 가능 단, 지상부 건축물 설치는 도로 개설 시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도로 경계선에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공공보행통로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녹지의 흐름을 고려하여 4개의 공공보행통로(경관축) 형성 ○공공보행통로①②④:폭6m이상, 공공보행통로③:폭14m이상 ※ 공공보행통로의 기종점은 유지하되, 선형은 세부 계획 시 보행 흐름 및 경관축 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6m (정비계획 기본구상도에 따름) - 신림로변 : 2m 이상 - 공공보행통로(①③④)변, 내부순환도로변 : 3m 이상 - 도림천변, 광신길변, 방천길변, 양산길변 : 3m 이상 - 양지길변, 호암로변 : 6m 이상	
커뮤니티 및 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	○도림천제2지류와 수변공원 인접지역(정비계획 기본구상도에 따름) -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권장) ○단지 내 순환도로변(정비계획 기본구상도에 따름) -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배치(권장) ○단지 진입부 복합용지 - 주거, 상업(공공임대상가 등), 업무용도 복합화, 지역단위 커뮤니티시설 배치(권장)	
단지 순환도로	○단지 내·외부와의 접근성,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형 차량동선을 계획 - 생활권 단절 최소화 및 보행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상부 차량동선 최소화	
단지내 보행동선	○지역과 단지를 연결하는 하천변 공공가로 조성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를 따라 단지순환길 조성 ○옛길(양지길)의 흔적 및 관악산 연접부를 따라 단지 둘레길 조성 ○단지 내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단지안길 조성	
마을마당	○단지 내 주요 보행동선 결절점 및 각 단지의 중심부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교통처리계획	○신림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 - 신림로 신림역~서울대학교 방향 1개차선 추가 확보(2차로 → 3차로) - 신림로 서울대학교~신림역 방향 1개차선 추가 확보(3차로 → 4차로) - 신림로 서울대학교~신림역 방향에서 단지로 진입시 신림3교 교각 상부 교차로 교통개선을 위해 좌회전 3차선 추가 확보(일방 1차로 → 양방 4차로) ○신림로에서 단지로 연결되는 진입부는 회전교차로를 도입하여 교통흐름 개선 - (기정) 단지 초입부와 순환도로 연결부에 회전교차로 2개소를 계획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 - (변경) 순환도로 연결부에 회전교차로 1개소를 계획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 ○호암로변 1개차선 추가확보하여 교통흐름 개선 - 미림여고 사거리~안양 방향에서 1개 차선 추가 확보(2차로 → 3차로) ○동·서간 연결도로(신림~금천) 개설을 고려한 장단기 교통처리계획 수립 ※교통처리계획 세부내용은 「신속통합기획서(신림1구역)」를 따르며, 향후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대지로의 차량출입은 허용되지 아니함 (정비계획 기본구상도에 따름) - 호암로변에서 단지로의 직접 진출입은 불허 - 방천길(양산)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계획하고, 단지로의 직접 진출입은 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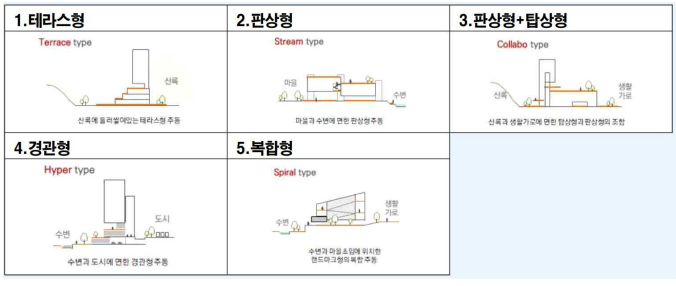
구분	가이드라인	비고



〈정비계획 가이드를 반영한 정비계획 기본구상도〉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이후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사업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통합기획과 및 관계부서 협의, 신속통합기획가(MP) 자문, 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계법령 및 기준 변경 시 변경된 법령 및 기준에 따름

2.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가이드라인</th><th>비고</th></tr>
<tr><td colspan="2">특별건축구역 지정</td><td>○창의적 건축물 디자인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전제로 계획
○특별건축구역의 완화기능 규정을 적용하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인동거리를 산정하고, 남향세대 및 일조만족 세대 최대화 등 주거성능이 저하 되지 않도록 계획</td><td></td></tr>
<tr><td rowspan="2">영역별
특화계획</td><td>원신</td><td>○산록변마을(BL4,5,6)
- 관악산 주변에는 ‘산지순응형’ 건축배치를 통해 관악산 녹지의 흐름을 담고, 자연 경관을 배려하는 스카이라인으로 계획, 탑상형+판상형이 조화되는 건축유형 도입
○커뮤니티마을(BL1,2,3,7)
- ‘클러스터형’ 건축배치를 통해 단지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형의 흐름을 따라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판상형 주동을 도입
- 수변공원에 면한 주동은 저층부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형성
- 마을 초입부 랜드마크 복합형 주동은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마을장터, 플리마켓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변마을(BL8)
- ‘수변 및 가로(호암로) 순응형’ 건축배치로 하천의 흐름을 따라 저층부 수변테라스 카페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호암로 및 하천으로 열린 경관형 주동을 도입</td><td></td></tr>
<tr><td>양산</td><td>○구릉지마을(BL9,10)
- ‘지형순응형’ 건축배치로 단지 내 옹벽 발생을 최소화하고, 경사지를 활용한 테라스형 또는 포디움형태의 주동을 도입하여 산록과 도시 사이에서 다양한 외부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td><td></td></tr>
<tr><td colspan="2">주동의 유형
및 형태</td><td>○자연과 도시의 연계 및 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계획
○주동의 다양한 층수변화, 배치, 교차 등 건축적 요소의 다양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특색있고 입체적인 주동형태 계획
 
</td><td></td></tr>
<tr><td colspan="2">주민공동시설</td><td>○주민공동시설은 4개 마을별로 특화커뮤니티를 계획
○커뮤니티시설은 주거동 진입레벨 및 저층부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 초입부 복합주동 및 수변축(도시축)과 면한 부분에는 개방형으로 설치를 권장</td><td></td></tr>
<tr><td colspan="2">수변공원</td><td>○수변공원은 상업, 커뮤니티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입체적 지형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수변공원 내 보행로는 하천변을 따라 계획하여 도림천지류의 풍경을 조망하는 산책로로 조성</td><td></td></tr>
<tr><td colspan="2">단지내 보행동선</td><td>○주거지역 내 교통정온화를 통한 보행안정성 제고 및 쾌적한 단지 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배치와 조화되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
※단지내 순환도로(하천변 육교)에 의해 단절되는 보행구간(하부)은 인접 수변공원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td><td></td></tr>
<tr><td colspan="4">※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이후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사업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통합기획과 및 관계부서 협의, 신속통합기획가(MP) 자문, 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계법령 및 기준 변경 시 변경된 법령 및 기준에 따름</td></tr>
</table>

(2)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3)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4) 신림4재정비촉진구역(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91,163.6	-	491,163.6	100.0
주거지역	소 계		444,296.5	감)177.5	444,119.0	90.4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7,749.8	감)554.0	87,195.8	17.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7,429.6	감)36.4	57,393.2	11.7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33,772.1	증)178.5	233,930.6	47.6
		제3종일반주거지역	42,407.0	증)120.1	42,527.1	8.6
	준주거지역		22,938.0	증)134.3	23,072.3	4.7
자연녹지지역			46,867.1	증)177.5	47,044.6	9.6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1)	26~32	보조 간선도로	203	신림동 298-4	신림동 345-2	-	·동서간도로
기정	중로	1	104	20~24	보조 간선도로	5,500 (588)	신림동	시흥동계	건고198호 ('71.4.17)	
기정	중로	2	372	15~27	보조 간선도로	2,590 (313)	신림1교	서울대앞 광장	서고시96-116호 ('96.5.6)	
기정	중로	2	373	15~23	보조 간선도로	2,590	신림1교	서울대 앞 광장	서고시96-116호 ('96.5.6)	·도림천 좌안
기정	중로	3	453	12	집산도로	71	신림동 341-38	신림동 1704-10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중로	3	455	6~12	집산도로	206	신림동 300-5	신림동 841-3	서고시2008-121 ('08.4.10)	·하천일부 중복결정 ·일부구간 도로폭 확폭
변경	중로	3	455	6~12	집산도로	206	신림동 300-5	신림동 841-3	서고시2008-121 ('08.4.10)	·하천일부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456	12	집산도로	112	신림동 1704-15	신림동 1704-14	서고시2008-121 ('08.4.10)	·하천일부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457	13	국지도로	85	신림동 36-8	신림동 315-10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중로	2	(2)	16	집산도로	37	신림동 1528	신림동 808-142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113	신림동 1721-5	신림동 832	서고시2008-121 ('08.4.10)	·도로폭 및 노선 축소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1	신림동 1527	신림동 1513-4	서고시2008-121 ('08.4.10)	·선형변경 및 노선 축소
기정	중로	2	(1)	10~16	집산도로	622	신림동 808-70	신림동 1726-1		·하천일부 중복결정 ·일부구간 도로폭 축소
변경	중로	2	(1)	10~16	집산도로	622	신림동 808-70	신림동 1726-1		·하천일부 중복결정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35	신림동 394-21	신림동 394-19		
기정	소로	2	29	8~12	국지도로	104	신림동 320-29	신림동 320-48	서고시 207호 ('73.12.24)	·하천일부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27	6	집산도로	359 (0)	신림동 841-3	신림동 326-1	서고시 207호 ('73.12.24)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108	신림동 300-9	신림동 299-25	서고시 207호 ('73.12.24)	
기정	소로	3	64	6	국지도로	38	신림동 404-13	신림동 827-5	서고시 207호 ('73.12.24)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65	신림동 306-63	신림동 310-14	관악구고시 제92-7호 ('92.4.15)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5	신림동 844-1	신림동 844-1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314	신림동 315-10	신림동 144	서고시2008-121 ('08.4.10)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2)	4	국지도로	31	신림동 1726-1	신림동 산134-1		·양지공원 진입도로

○ 주차장 : 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신림동 306-59일대	1,309	-	1,309	관악구고시제97-70호 ('97.9.25)	

(나) 공간시설

○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	공원	신림동 산85-25일대	1,880	-	1,880		신림2
기정	①	새싹공원	소공원	신림동 808-633일대	195	-	195	서고시 제2008-121 ('08.4.10)	신림2
기정	②	신우공원	어린이공원	신림동 316-3일대	2,191.7	-	2,191.7	서고시 제2008-121 ('08.4.10)	신림3
기정	③	율곡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138일대	1,191.7	-	1,191.7	서고시 제2008-121 ('08.4.10)	신림3
기정	④	약수공원	소공원	신림동 316-95일대	3,911.9	-	3,911.9	서고시 제2008-121 ('08.4.10)	신림3
기정	③	은하수공원	수변공원	신림동 304-1일대	1,516.1	-	1,516.1	서고시 제2008-121 ('08.4.10)	신림2
변경	⑤		소공원	신림동 1513-7일대	1,008	감)7	1,001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신림1
변경	⑤		수변공원	신림동 808-498	10,800	증)328	11,128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신림1
변경	⑥		소공원	신림동 299-17일대	535	감)92	443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신림1

○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	신림동1694-14	35	-	35	서공고93-235호 ('93.12.30)	신림3
기정	④	녹지	경관녹지	신림동1699일대	1,105.7	-	1,105.7	서고시2008-121 ('08.4.10)	신림2

○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공지	신림동302-8일대	397.5	-	397.5	서고시2024-191호 ('24.04.11)	신림2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②	공공청사	-	신림동 301-8일대	1,335	-	1,335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2008-121 ('08.4.10)	신림6, 10동 사무소(통합) 어린이집 복합화
변경	③	공공청사	-	신림동 296-11일대	1,100	증)5	1,105	50% 이하	250% 이하	-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119안전센터

○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초등학교	신림동 315	13,543	-	13,543	서고시 165호 ('79.7.15)	신우초교 점유 (사용) 부지
변경	②	학교	유치원	신림동 299-32 일대	669	증)4	673	서고시 제2022-352호 ('22.08.18.)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신림동 301-3일대	1,284	-	1,284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2008-121 ('08.4.10)	
기정	②	사회복지시설	신림동 산69-16일대	1,299.3	-	1,299.3	60% 이하	200% 이하	-	서고시2008-121 ('08.4.10)	

(라) 방재시설

○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k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천(도림천)	지방2급 하천	신림동 303, 187-1,703	영등포구 문래동 안양천 합류점	-	14.55 (0.534)	65	서고시 952호 (1966.4.13.)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림천 지류구간 추가결정 B : 15~18m L : 350m • ( )는 구역내 연장 ※ 중로3-456,소로2-29 중복결정

○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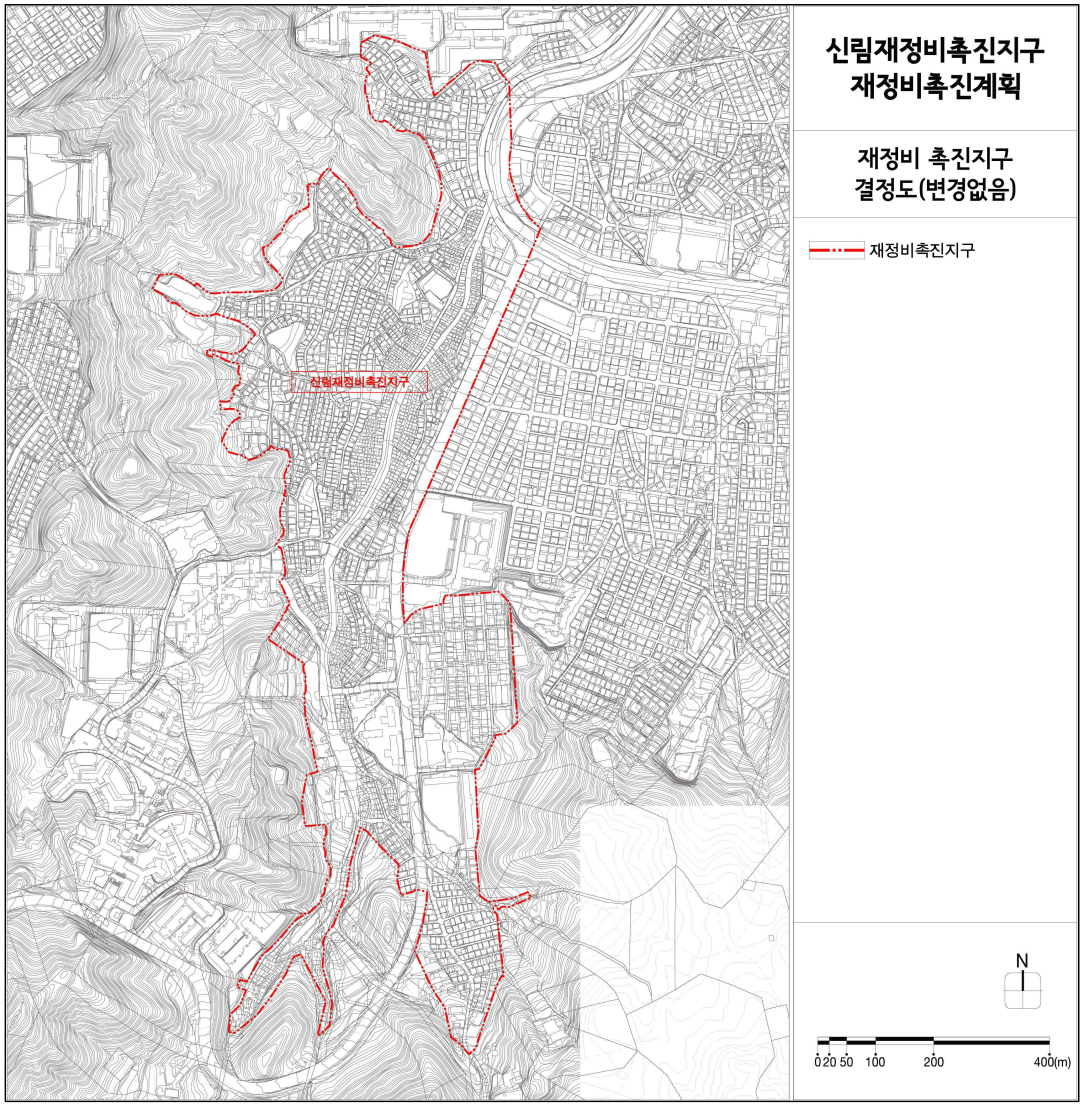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신림동 320일대	2,644.0	-	2,644.0	서고시2008-121 ('08.4.10)	수변공원 중복결정
기정	②	유수지	저류시설	신림동 산79-4일대	2,544.5	-	2,544.5	서고시2008-121 ('08.4.10)	수변공원 중복결정

마. 관계도서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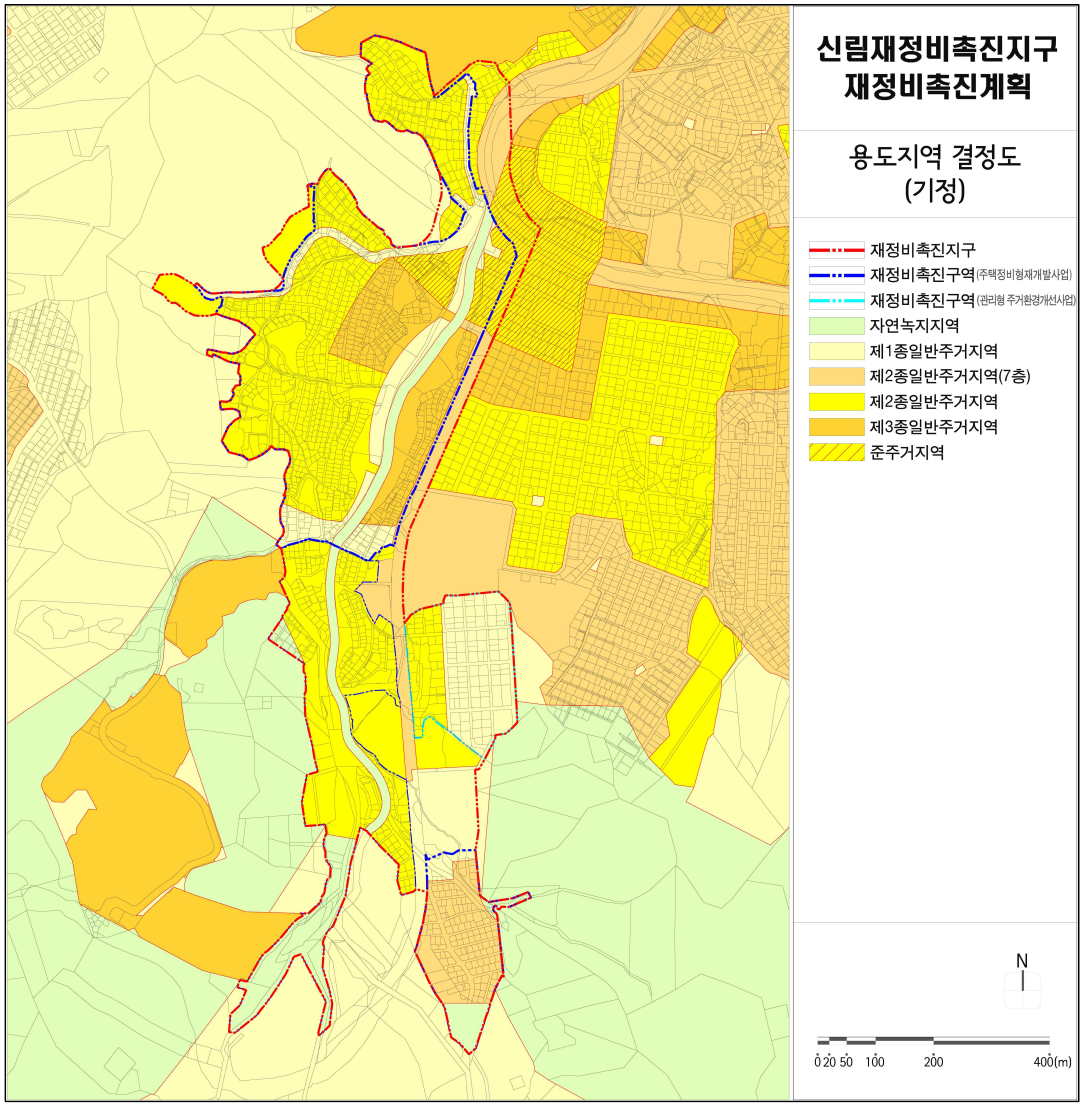
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2133-7227)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8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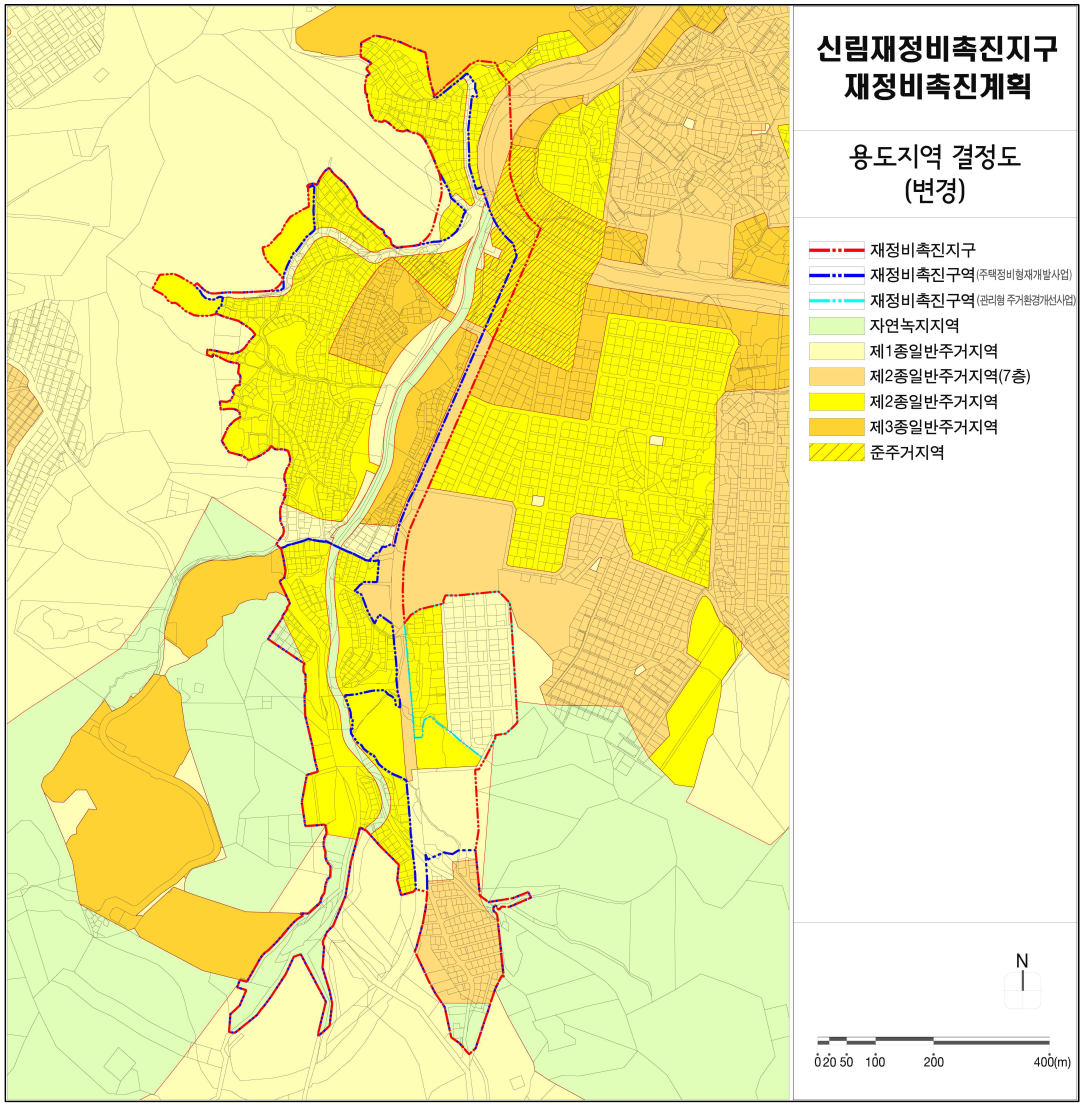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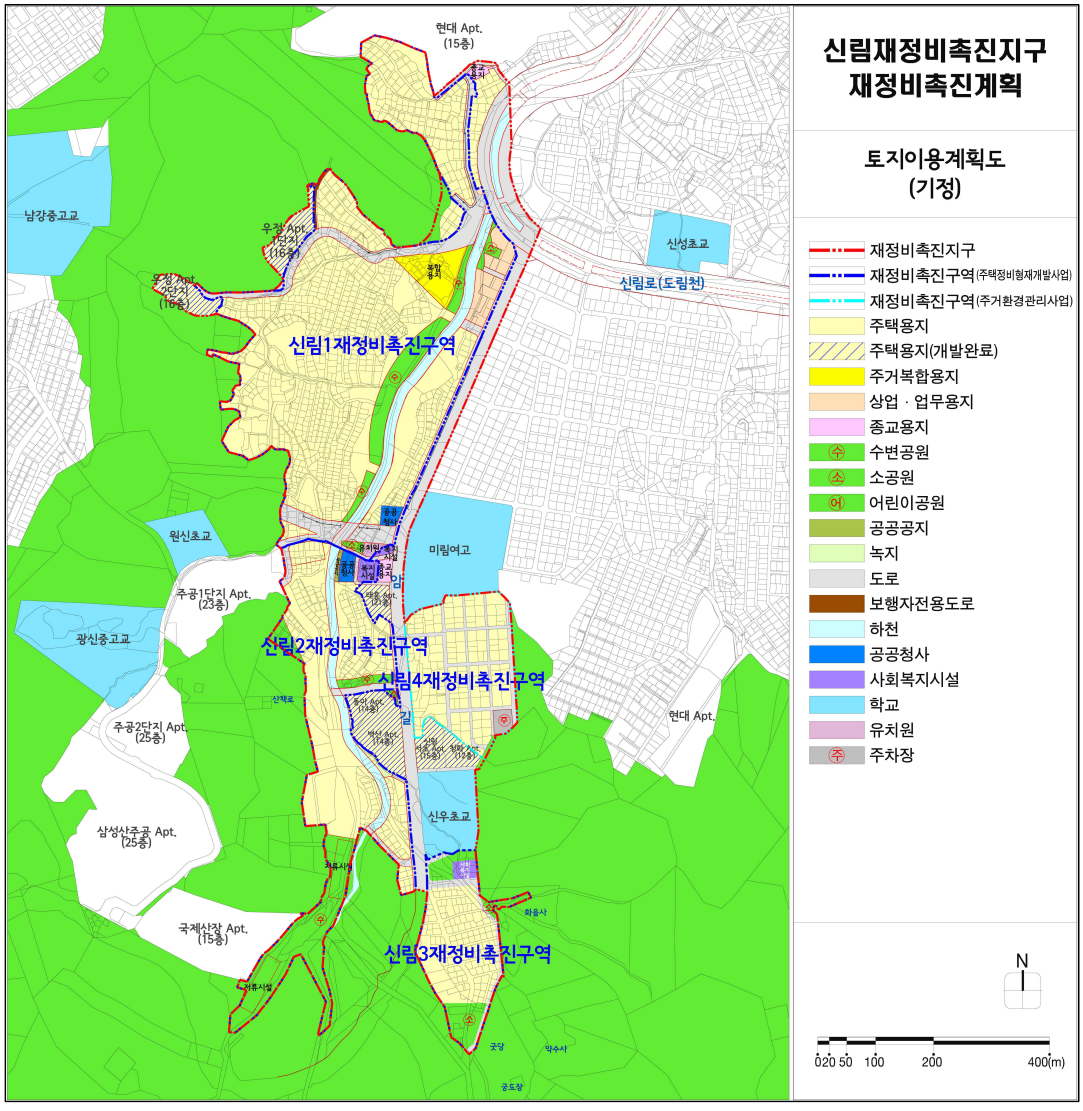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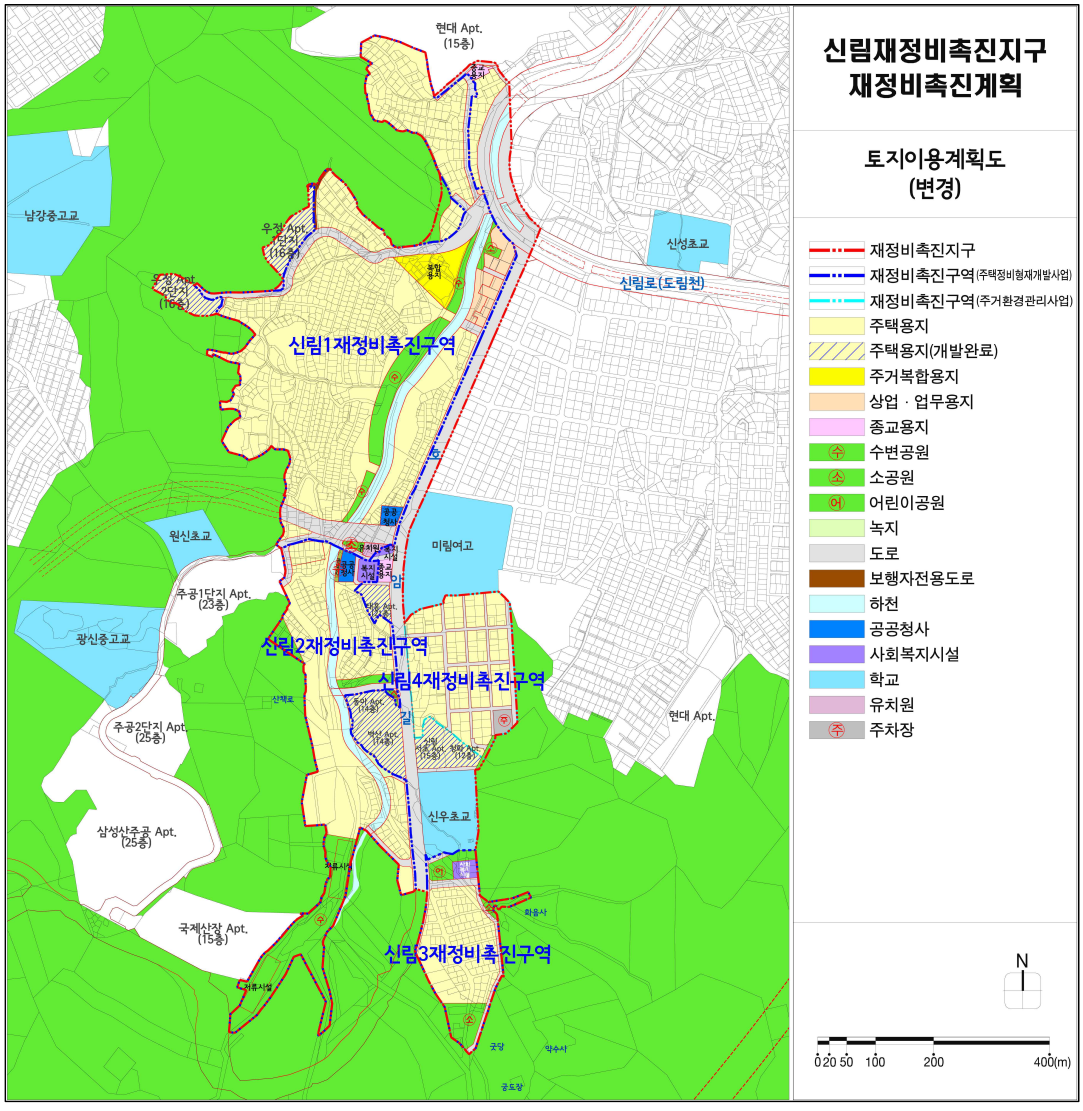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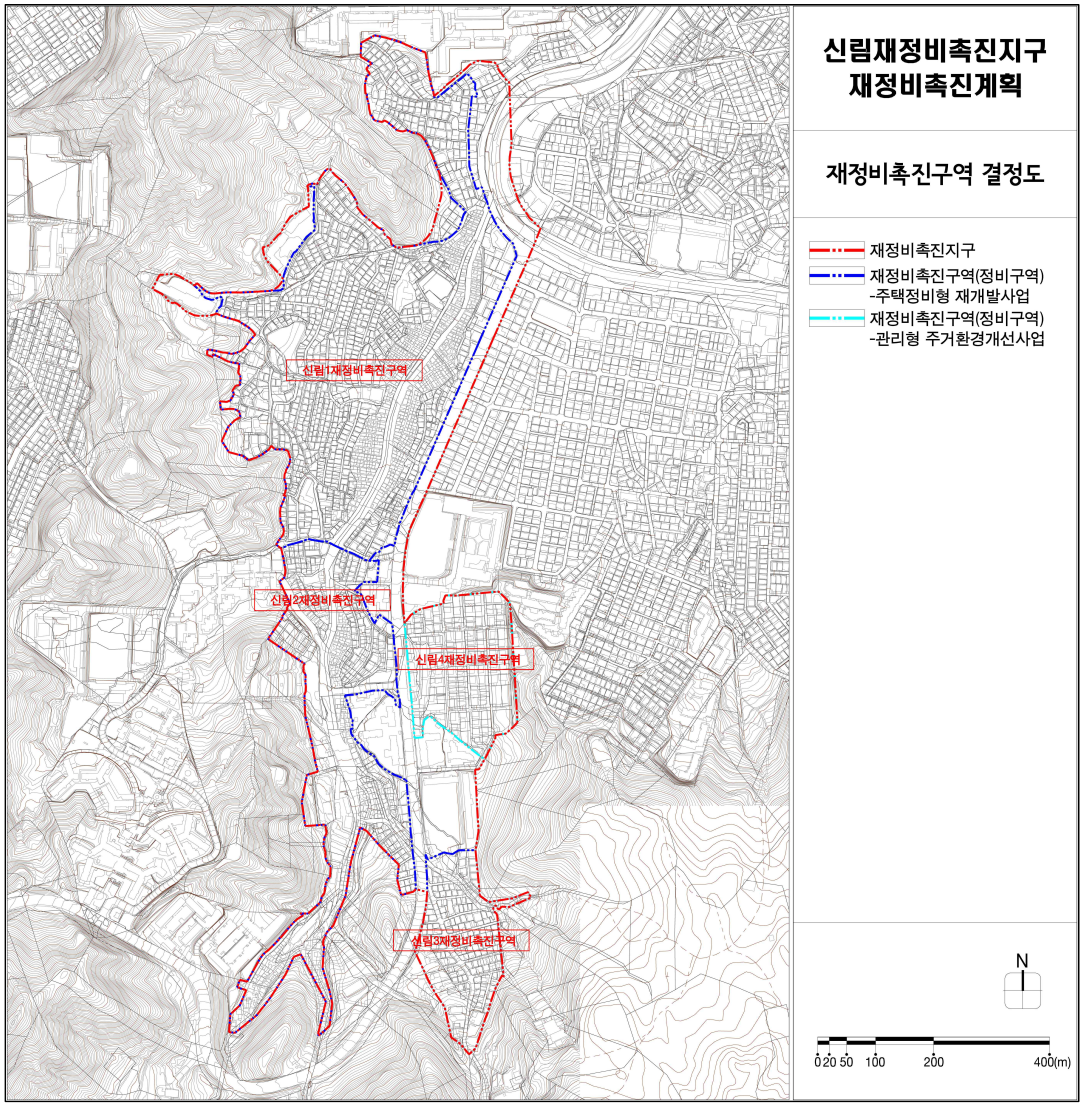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용지
주택용지(개발완료)
주거복합용지
상업 · 업무용지
종교용지
수변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공공공지
녹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주차장
N
0 20 50 100 200 400(m)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신림로(도림천)
현대 Apt. (15층)
남강중고교
우정 Apt. 1단지 (16층)
우정 Apt. 2단지 (16층)
신성초교
원신초교
미림여고
주공1단지 Apt. (23층)
광신중고교
주공2단지 Apt. (25층)
삼성산주공 Apt. (25층)
국제산장 Apt. (15층)
신우초교
현대 A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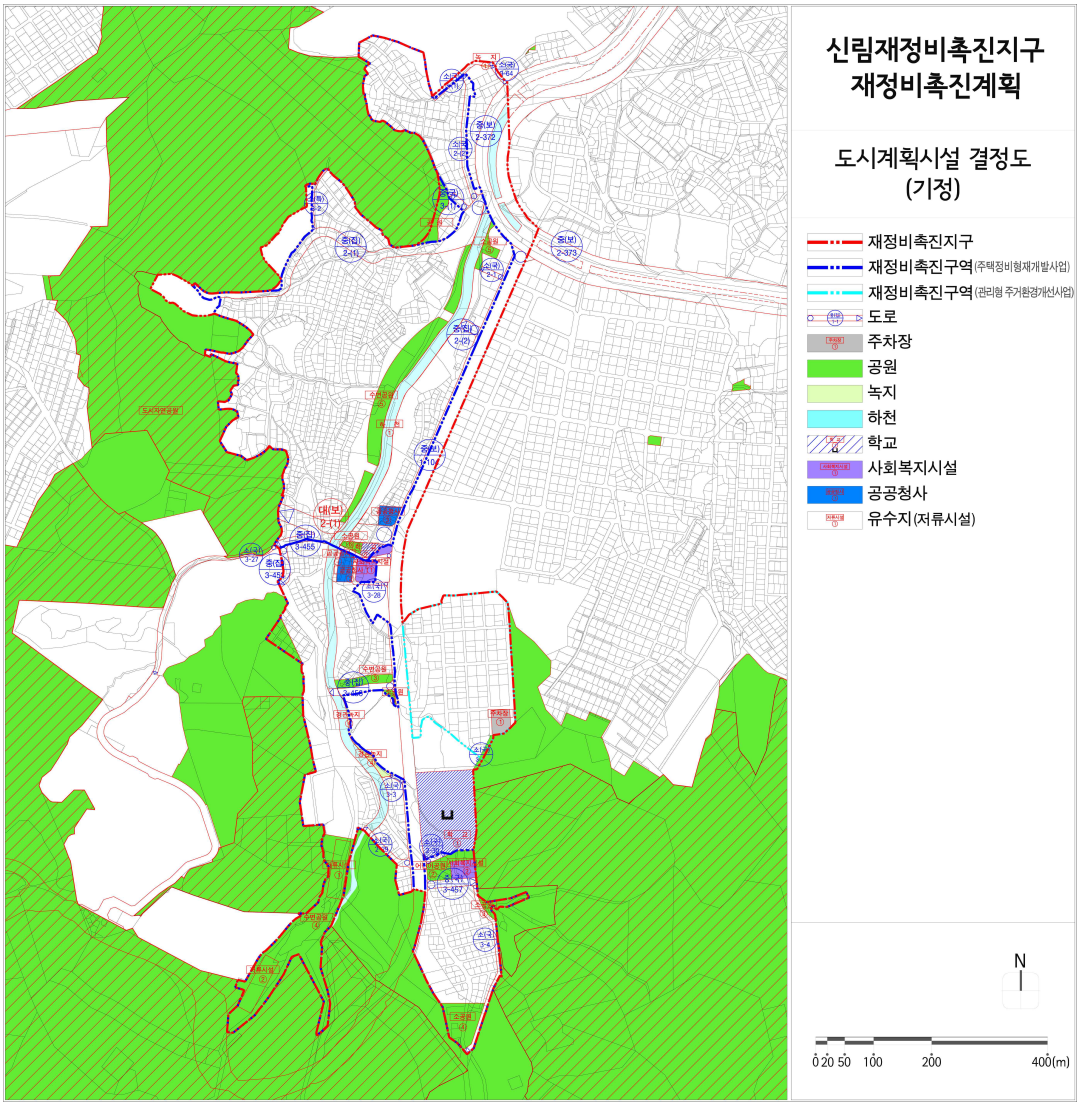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용지
주택용지(개발완료)
주거복합용지
상업 · 업무용지
종교용지
수변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하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주차장
N
0 20 50 100 200 400(m)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신림로(도림천)
현대 Apt. (15층)
남강중고교
우정 Apt. 단지 (16층)
신성초교
원신초교
미림여고
주공1단지 Apt. (23층)
광신중고교
주공2단지 Apt. (25층)
삼성산주공 Apt. (25층)
국제산장 Apt. (15층)
신우초교
현대 A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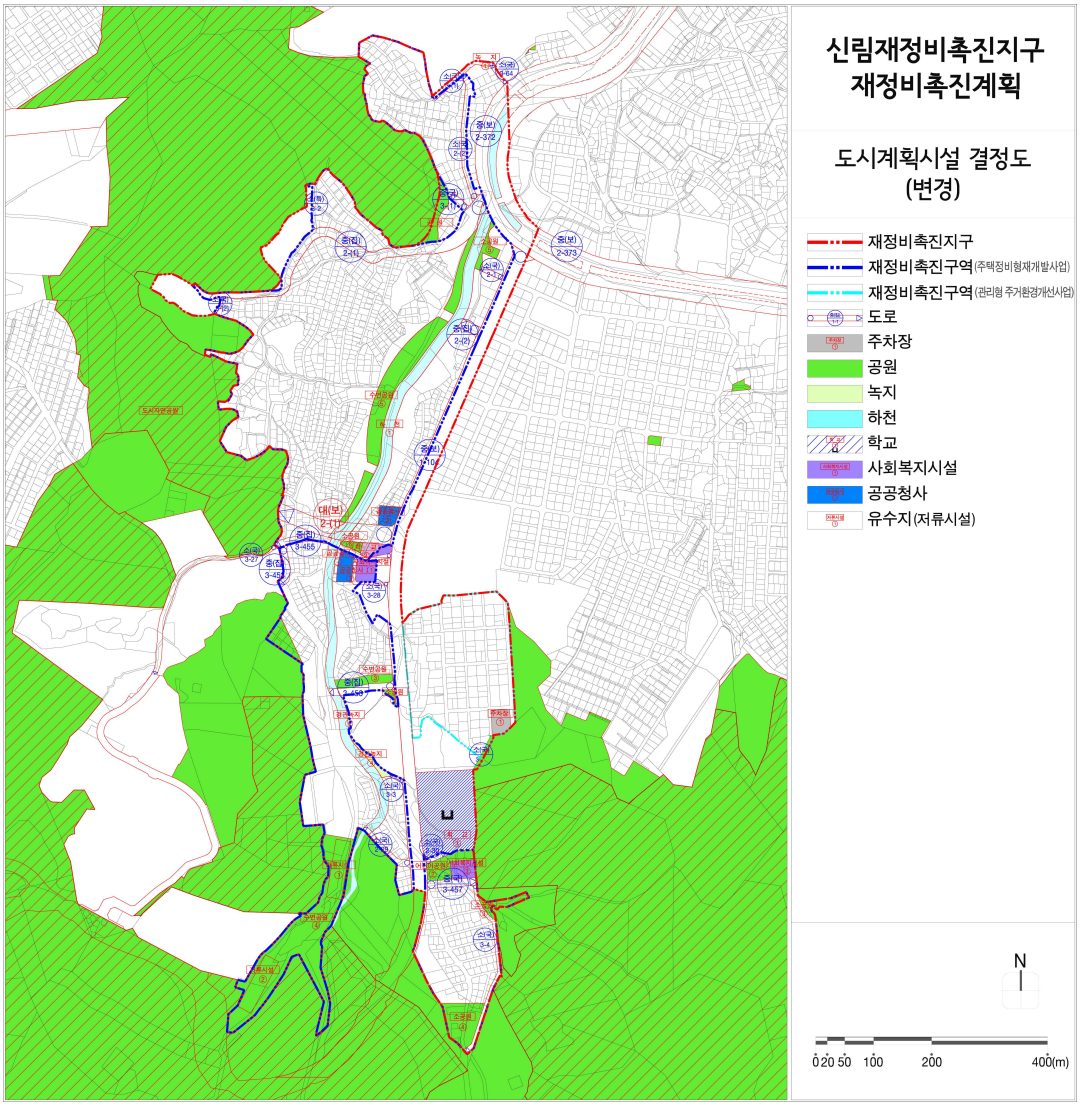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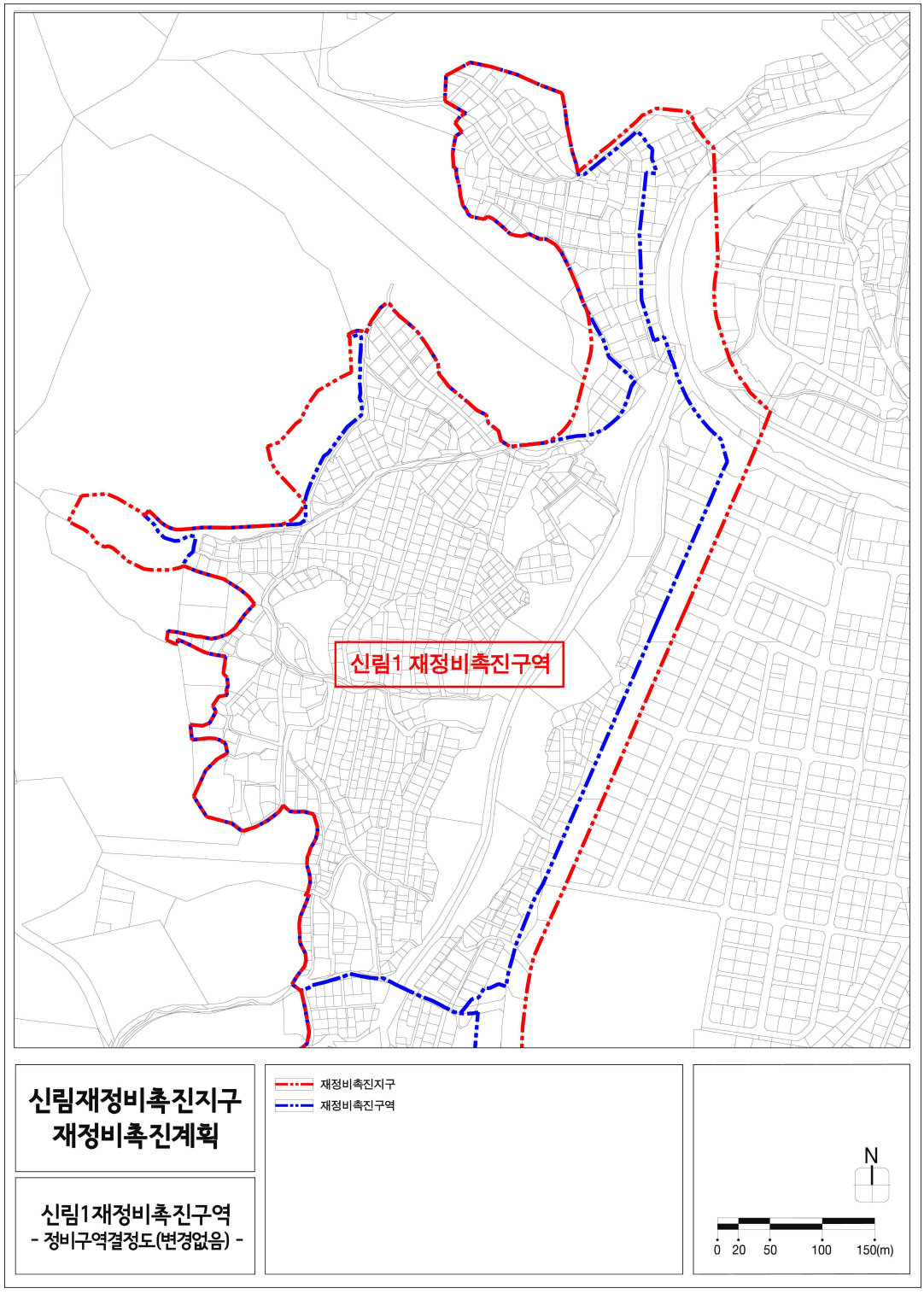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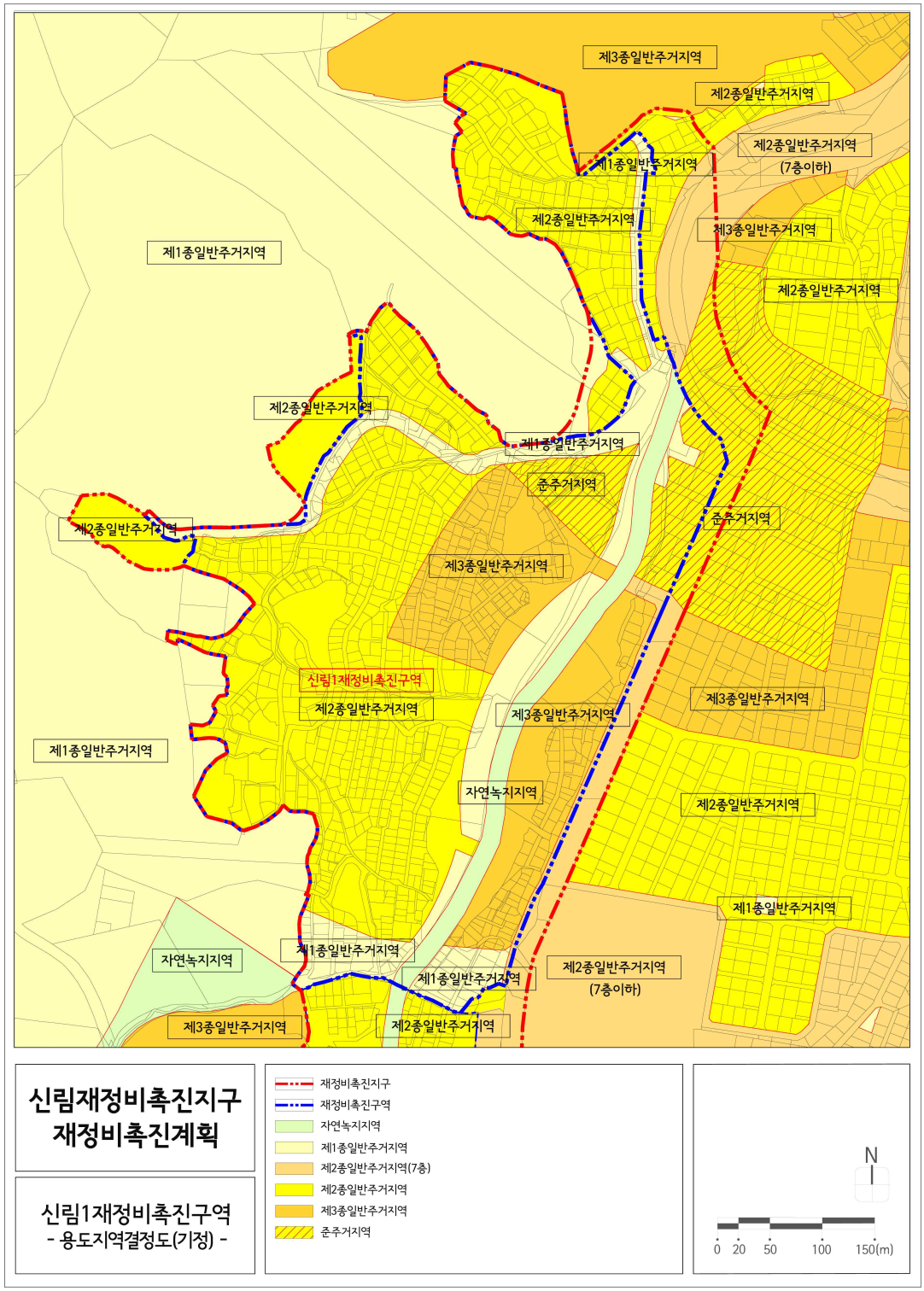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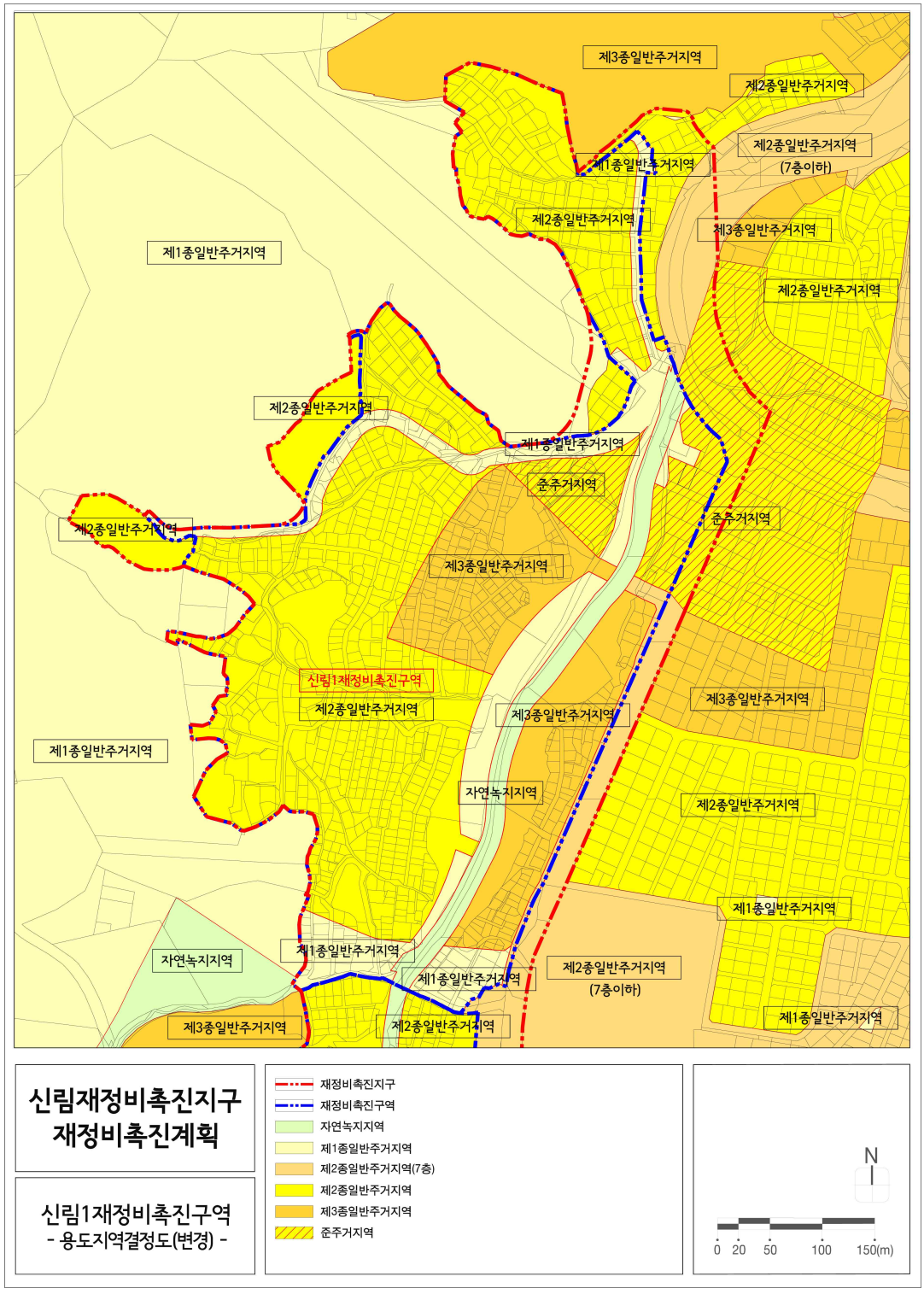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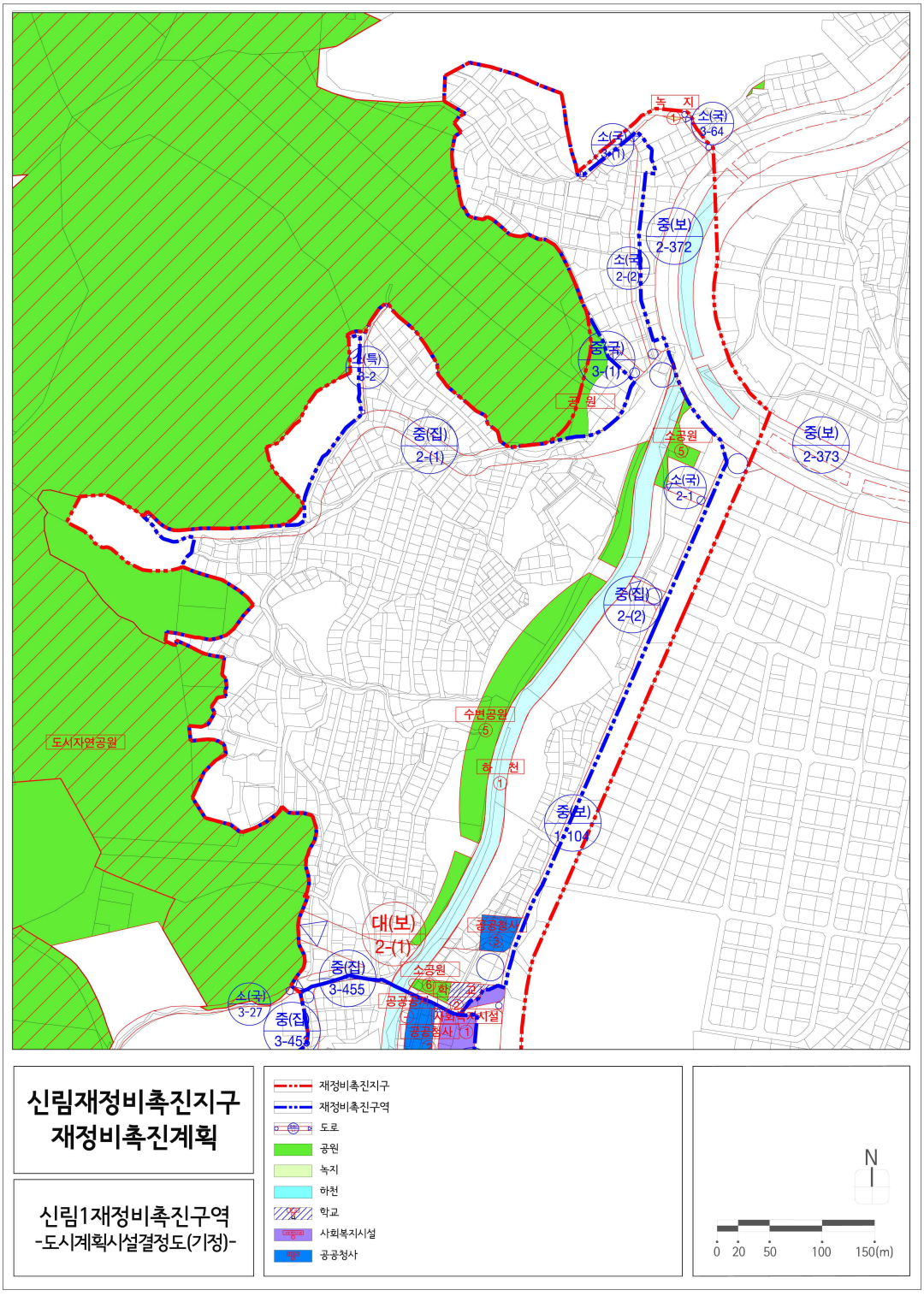
[신림1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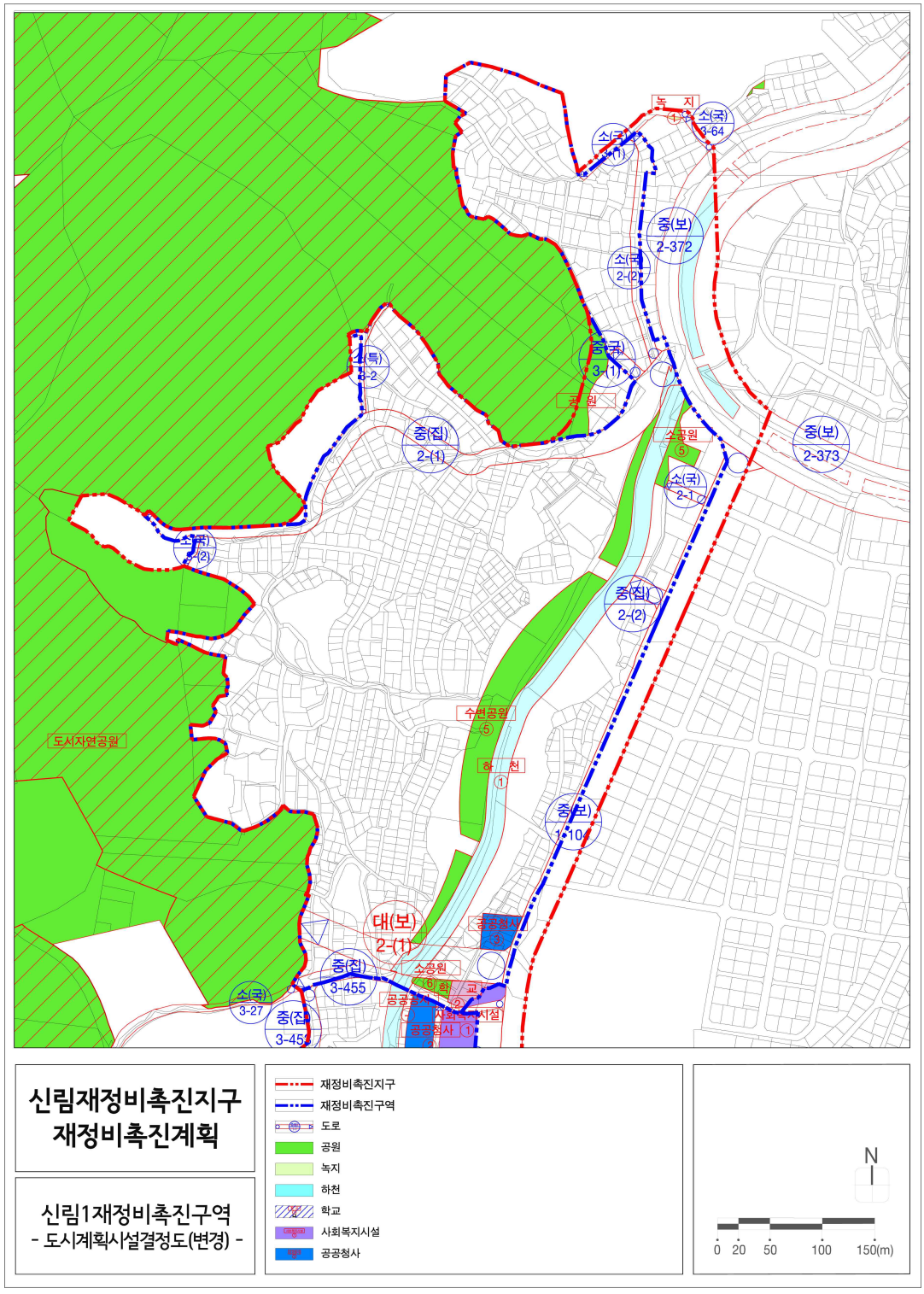
[신림1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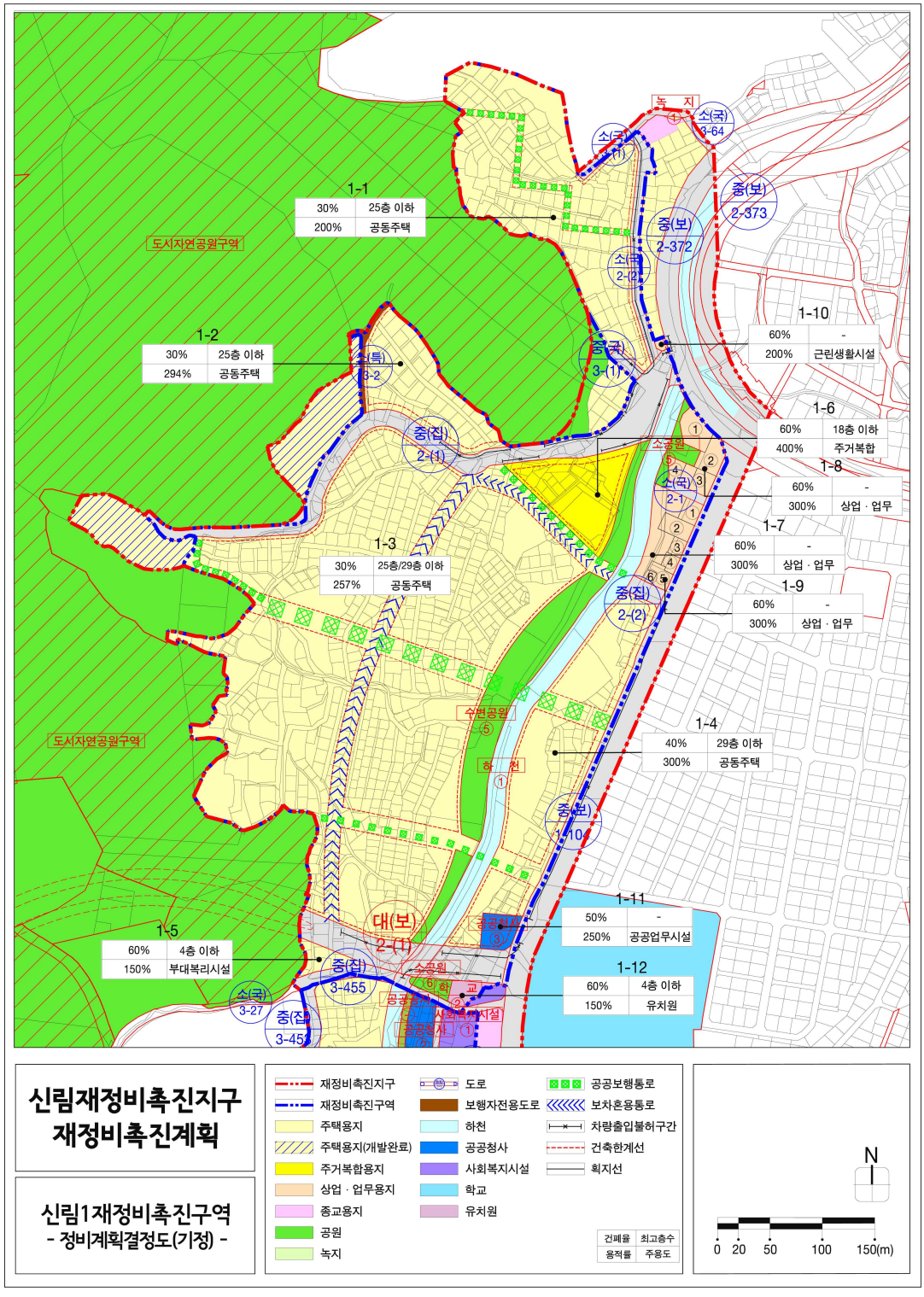
[신림1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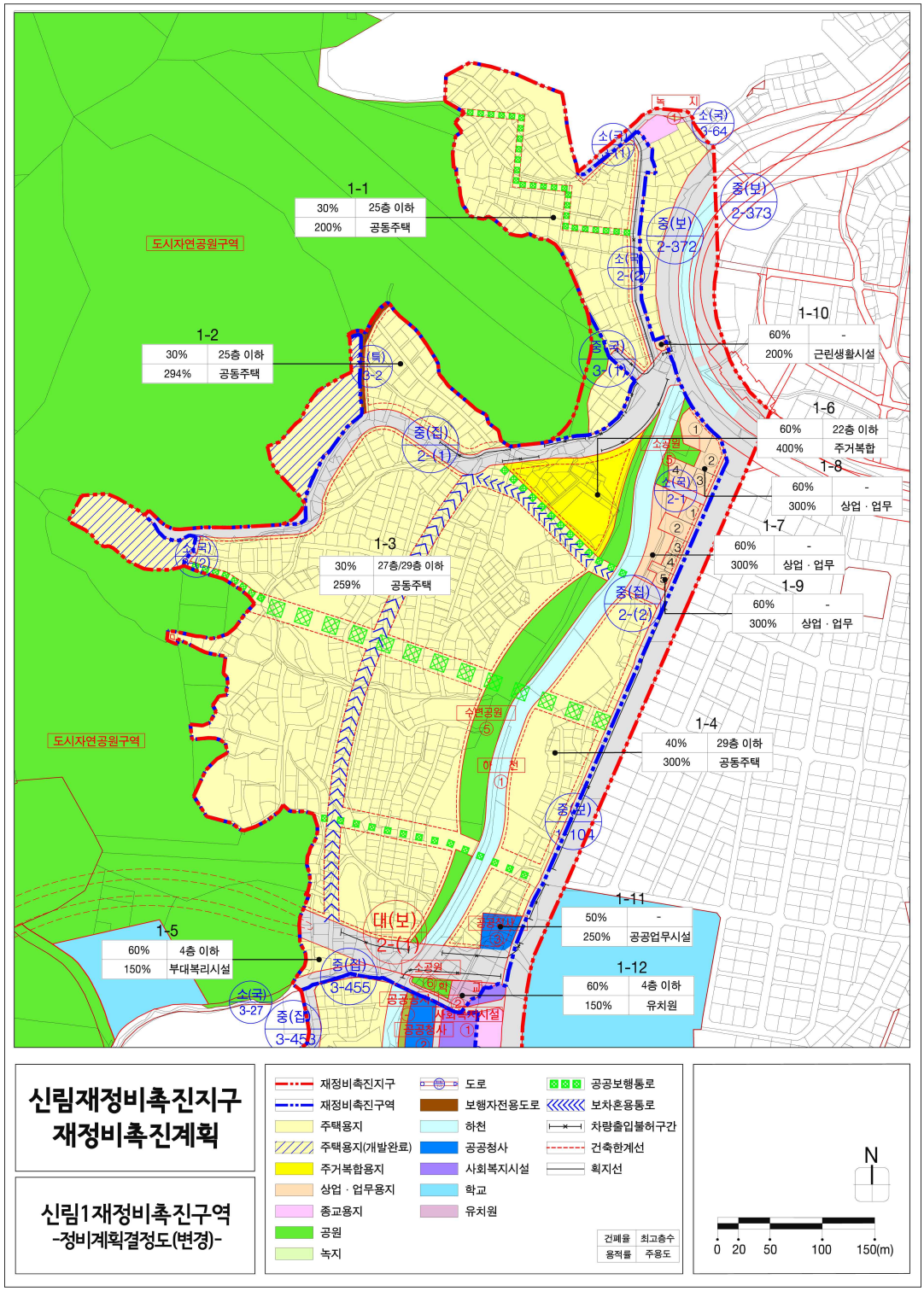
[신림1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신림1구역 정비계획 결정도] (기정)



[신림1구역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결정도(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48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6. 20. ~ 2024. 7. 4.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삼움건설㈜ (이경주)	건축공사업 01-474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98-3(녹번동)	2023.12.13.자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2024.2.25.)까지도 실태조사 자료 제출 이행요구 불이행	법 제82조 제1항 제5호	등록말소 (2024.7.5.)	법 제83조 제8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51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6. 20. ~ 2024. 7. 4.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파브이앤씨㈜ (대표 이현석)	건축공사업 01-44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8길 9, 202호(오금동)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 공 사 명: 충북 오송읍 공북리 394 메타스페이스 사옥 신축공사 · 하도급사: 인성건설(김O기) · 하도공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하도금액: 500,000,000원	법 제25조 제2항	영업정지 5개월 (2024.7.5.~2024.12.4.)	법 제83조 제2항 제3호
2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 공 사 명: 세종시 반곡동 242 단독주택 신축공사 · 하도급사: 인성건설(김O기) · 하도공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하도금액: 500,000,000원	법 제25조 제2항	영업정지 5개월 (2024.12.5.~2024.5.4.)	법 제83조 제2항 제3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53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공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현황

구분	업체명	수리업종 (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체 연락처	등록일
신규	조선건축사사무소	실측설계업 (02-01-0010)	630304-1001918	윤대길	서울시종로구 삼봉로 81, 1331호(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010-8621-8780	'24.6.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20) 또는 문화재관리과(☎ 02-2133-409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55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6.20. ~ 2024.7.4.(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이조건설 (이창훈)	토목건축 공사업 01-0496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로 영업정지 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보완 - 보증가능금액 실효(2023.1.3.)로 영업정지 후 영업정지 종료일(2024.2.28.)까지 보증가능금액 미보완	등록말소	2024.7.12.(금) 10:00 건설혁신과 청문실	변호사 조창흠	법 제83조 제3호의2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56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6.20. ~ 2024.7.4.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도건종합건설㈜ (임중빈)	건축공사업 03-0648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 - 담보권 실행으로 보증가능금액 실효(2024.01.11)	법 제10조	영업정지 6개월 (2024.7.12. ~ 2025.1.11.)	법 제83조 제3호
성안산업개발㈜ (이근동)	건축공사업 02-1391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 - 담보권 실행으로 보증가능금액 실효(2024.01.22)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4.7.12. ~ 2024.12.11.)	법 제83조 제3호

2.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58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6. 20. ~ 2024. 7. 4.(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우덕산업개발(주) (대표 김천보)	건축공사업 10-204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905호(번동, 가든타워빌딩)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요구 (지방세 체납)	지방세 징수법 제7조 제2항	영업정지 5개월 (2024.7.5.~2024.12.4.)	법 제83조 제11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4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64호

DDP패션몰 변상금 등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공영주차장 부대시설(DDP패션몰) 변상금 및 공유재산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지속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지방세 기본법」제 33조 및「행정절차법」제 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DDP패션몰 변상금 등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20. ~ 2024. 7. 4.(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내역 참조 (* 공시송달 내역)
4. 유의사항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붙임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이 지나면,「행정절차법」제 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한 내 체납금액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97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9조에 따른 체납처분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3405-4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내역 1부.

DDP패션몰 변상금 등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내역

연번	체납내역			송달대상		공시송달 사유	반송 일자	예정처분
	공유재산		체납금액(원)	성명	주소			
1	DDP 패션몰	1층 18호	62,467,940	천*석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길 25, ***호	미배달 (폐문부재)	2024-05-30	공고기간 경과 후 미납 지속시 재산압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
2	DDP 패션몰	1층 32호	106,915,020	정*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30, 612동 ****호	미배달 (폐문부재)	2024-05-13	
3	DDP 패션몰	1층 43호	3,628,210	권*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214번길 7-15, *층	미배달 (폐문부재)	2024-05-13	
4	DDP 패션몰	1층 91호	83,315,130	박*숙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69, ****호	미배달 (폐문부재)	2024-05-30	
5	DDP 패션몰	3층 2호	42,117,580	김*환	서울 은평구 통일로92다길7-*	미배달 (폐문부재)	2024-05-13	
6	DDP 패션몰	3층 19호	23,261,089	김*	인천시 부평구 시장로 67, ***호	미배달 (수취인불명)	2024-05-10	
7	DDP 패션몰	3층 32호	2,007,070	임*수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36, 306동 ****호	미배달 (폐문부재)	2024-05-10	
8	DDP 패션몰	2층 53호, 3층 33호	28,406,450	윤*영	경기 하남시 덕풍북로70, 107동 ****호	미배달 (폐문부재)	2024-05-13	
9	DDP 패션몰	3층 109호	10,603,090	박*진	서울 중구 왕십리로407, 102동 ***호	미배달 (폐문부재)	2024-05-13	
10	DDP 패션몰	3층 114호	24,541,400	김*진	부산광역시50, 202동 ***호	미배달 (폐문부재)	2024-05-14	
11	DDP 패션몰	3층 130호	16,968,000	김*희	서울 광진구 능동로81, 101동 ****호	미배달 (이사불명)	2024-05-10	

공시송달내역

(기준일자 : 2024. 06. 03.)

연번	대상		공시송달사유	반송일자	체납내역		
	체납자	주소			주차장명	호수명	체납금액(원)
1	천*석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길 25, ***호	미배달(폐문부재)	2024-05-30	DDP패션몰	1층 18호	62,467,940
2	정*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30, 612동 ****호	미배달(폐문부재)	2024-05-13	DDP패션몰	1층 32호	106,915,020
3	권*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214번길 7-15, *층	미배달(폐문부재)	2024-05-13	DDP패션몰	1층 43호	3,628,210
4	박*숙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69, ****호	미배달(폐문부재)	2024-05-30	DDP패션몰	1층 91호	83,315,130
5	김*환	서울 은평구 통일로92다길7-*	미배달(폐문부재)	2024-05-13	DDP패션몰	3층 2호	42,117,580
6	김*	인천시 부평구 시장로 67, ***호	미배달(수취인불명)	2024-05-10	DDP패션몰	3층 19호	23,261,089
7	임*수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36, 306동 ****호	미배달(폐문부재)	2024-05-10	DDP패션몰	3층 32호	2,007,070
8	윤*영	경기 하남시 덕풍북로70, 107동 ****호	미배달(폐문부재)	2024-05-13	DDP패션몰	2층 53호, 3층 33호	28,406,450
9	박*진	서울 중구 왕십리로407, 102동 ***호	미배달(폐문부재)	2024-05-13	DDP패션몰	3층 109호	10,603,090
10	김*진	부산광역시50, 202동 ***호	미배달(폐문부재)	2024-05-14	DDP패션몰	3층 114호	24,541,400
11	김*희	서울 광진구 능동로81, 101동 ****호	미배달(이사불명)	2024-05-10	DDP패션몰	3층 130호	16,968,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65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공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4. 처분대상 : 공유재산 1개소
   ※ 영업매장 방문하였으나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불가한 점포
   ※ 영업장 교부송달(2024.4.22. 미영업), 우편등기 발송(2024.4.24.,폐문부재), 내용증명 발송(2024.4.29., 수취인불명), 주소보정 및 우편등기 재발송(2024.5.9. 폐문부재)

연번	상호	소재지	대표자	입점일자
1	씨사이드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22 디디피패션몰 2층 1호	박*진	2022-07-01

5. 공고기간 : 2024. 6. 20. ~ 2024. 7. 4. (14일간)
6. 청문일시 : 2024. 6. 28.(금) 14:00 ~ 15:00
7. 청문장소 : 서울시 중구 마장로22 디디피패션몰 4층 서울시설공단 회의실
8. 청문주재자 : 서울시설공단 법무팀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02-3405-4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

(기준일자 : 2024. 06. 03.)

연번	공시송달 대상		공시송달사유	반송일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청문		체납내역	
	성명	주소			청문예정일시	허가취소 사유	사용허가 대상	체납금액(원)
1	박*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79, 310동***호	미배달(폐문부재)	2024-05-09	2024. 6. 28.(금) 14:00~15:00	사용료 등 체납	서울시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2층1호	89,047,37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6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미송달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6. 20. ~ 2024. 7. 4.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예정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8611206	은평구 불광로1길 4, 201호(대조동9-3)	수도 요금	2023. 6 등 납기	6회	496,430원	

압류구분	압류예정물건	물건소유자			압류예정 금액	압류 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은평구 불광로1길 4, 201호(대조동9-3)	서안주택	110111-1857634 (등기번호 1105002442679 폐문부재)	은평구 불광로 1길 6, 201호	496,430원	2024. 6.28.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8611215	은평구 불광로1길 4, 202호(대조동9-3)	수도 요금	2023. 6 등 납기	5회	346,450원	

압류구분	압류예정물건	물건소유자			압류예정 금액	압류 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은평구 불광로1길 4, 202호(대조동9-3)	서안주택	110111-1857634 (등기번호 1105002442680 폐문부재)	은평구 불광로 1길 6, 201호	346,450원	2024. 6.28.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8734633	은평구 불광로1길 4, 302호(대조동9-3)	수도 요금	2023. 6 등 납기	5회	338,470원	

압류구분	압류예정물건	물건소유자			압류예정 금액	압류 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은평구 불광로1길 4, 302호(대조동9-3)	서안주택	110111-1857634 (등기번호 1105002442681 폐문부재)	은평구 불광로 1길 6, 201호	338,470원	2024. 6.28.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8611242	은평구 불광로1길 4, 402호(대조동9-3)	수도 요금	2023. 6 등 납기	6회	612,270원	

압류구분	압류예정물건	물건소유자			압류예정 금액	압류 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은평구 불광로1길 4, 402호(대조동9-3)	서안주택	110111-1857634 (등기번호 1105002442682 폐문부재)	은평구 불광로 1길 6, 201호	612,270원	2024. 6.28.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전호철(☎02-3146-35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7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4000	24. 6. 12.	창희파워 주식회사 임창우 110111-77401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30, 9층(개봉동, 스타메디타워)
2	204001	24. 6. 12.	주식회사 조은엔지니어링컴퍼니 서동석 110111-8146808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33, 1206호(서교동, 서교타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7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4. 6. 20. ~ 2023. 7. 4.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금화히람 대표 이효운	건축공사업 01-21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1길 8, 301호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로 영업정지 후 미보완	법 제10조제4호	등록말소 (2024.7.15.)	법 제83조 제3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86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및 독촉고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법적근거
가. 사전통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 (변상금의 부과)
나. 연 체 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대상자	무단점유사실 및 사전통지 내역	송달주소	비고
강○순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4 - 점유기간 : 2023.01.01.~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3.0㎡, 2% - 사전통지 내역 : 357,840원	대전광역시 0구 둔0북로 160 (둔0동, 한00아파트) 100-700	폐문부재로 인한 고지서 미도달
최○원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4 - 점유기간 : 2023.01.01.~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10.0㎡, 2% - 사전통지 내역 : 1,192,800원	서울시 송0구 올00로 90 (잠0동, 잠0엘스) 120-400	
(주)태○○앤씨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16-35 - 점유기간 : 2023.01.01.~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3.8㎡, 5% - 사전통지 내역 : 1,557,010원	경기도 용0시 기0구 구0로 350 용인00노밸리 0동 700호	
박○진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87-4 - 점유기간 : 2023.01.01.~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1.0㎡, 5% - 사전통지 내역 : 210,060원	서울시 성○구 월○로30길 2○ (장○동, 꿈의○○○○첸아파트) 10○-80○	

대상자	무단점유사실 및 사전통지 내역	송달주소	비고
이○희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60-8 - 점유기간 : 2023.01.01.~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7.0㎡, 2% - 사전통지 내역 : 385,390원	서울시 성○구 보○○로2○길 4○-3○	주소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도달
김○호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0-14 - 점유기간 : 2023.01.01.~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26.0㎡, 5% - 사전통지 내역 : 8,007,480원	경기도 의○부시 태○로4○번길 1○(의○부동) 30○호	폐문부재로 인한 고지서 미도달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대 상 자	무단점유사실 및 독촉고지 내역	송달주소	비고
최○원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4 - 점유기간 : 2017.03.11. ~ 2022.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10.0㎡, 2% - 독촉내역 : 6,537,630원 (변상금 : 6,393,010원, 연체료 : 144,620원)	서울시 송○구 올○○로 90 (잠○동, 잠○엘스) 12○-40○	폐문부재로 인한 고지서 미도달
(주)태○○앤씨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16-35 - 점유기간 : 2022.01.01. ~ 2022.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3.8㎡, 5% - 독촉내역 : 1,566,820원 (변상금 : 1,532,160원, 연체료 : 34,660원)	경기도 용○시 기○구 구○로 350 용인○○노밸리 ○동 70○호	
이○희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60-8 - 점유기간 : 2015.10.29. ~ 2022.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7.0㎡, 2% - 독촉내역 : 2,979,390원 (변상금 : 2,413,180원, 연체료 : 566,210원)	서울시 성○구 보○○로2○길 4○-3○	주소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도달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시송달 기간 : 2024. 6. 20. ~ 2024. 7. 4. (게시일로부터 15일 간)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87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폐기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폐기직인(폐기사유 : ’24. 7. 1.字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폐기일자	비고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공공자산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X 1.8㎝		2024. 7.	
	공공자산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X 1.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9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인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6. 20. ~ 2024. 7. 3.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39932130	영등포구 디지털로56길 16(대림동)	상·하수도요금	2023-06 ~2024-04	6	551,730
023404841	영등포구 디지털로56길 16(대림동)	상·하수도요금	2023-06, 12 2024-02, 04	4	1,242,25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원)	압류예정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영등포구 디지털로56길 16(대림동)	우희철	영등포구 디지털로56길 16(대림동) ※ 거주지 불명	1,793,980	2024. 6. 6.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승렬(☎02-3146-44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94호

2024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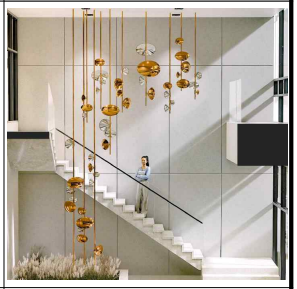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제6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심의일시: 2024. 6. 13.(목), 14:00
2. 심의장소: HJBC 세미나룸 A
3. 심의대상: 일반안건 7건(10작품)
4. 심의결과: 승인 6작품, 부결 4작품
5.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02-2133-2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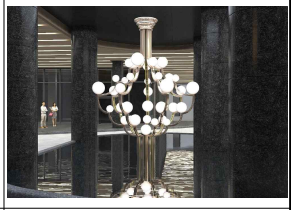
2024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1	용산구 한남동 90-4외 16필지	조각	Morning Dew	○		
2	관악구 신림동 316-55번지 일대	조각	바벨_BABEL		○	
3-1	강동구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	조각	교감의 기운		○	
3-2		조각	바람의 숲	○		
3-3		조각	Volume into Void		○	
3-4		조각	spherical square		○	

2024년 제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4	동대문구 장안동 366-7	조각	Star Blossom	○		
5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일대	조각	Stay	○		
6 작품 변경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조각	세포유희	○		
7 철거	성북구 화랑로 76 (하월곡동 46-73)	조각	과거, 현재, 미래의 꿈을 향하여	○ (조건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9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올라운더	서울 후 제2588호	이현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2길 61, 104동 2002호(길음동, 길음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소재지 ('24.5.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61, 1층 우측호(길음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2길 61, 104동 2002호(길음동, 길음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2	포마이카이 인셀덤 (Pomaika'I)	서울 후 제2851호	김금강 초롱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59, 203호 (방화동, 블루힐 마곡)	소재지 ('24.6.1)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33번길 73, 404동 1504호 (풍무동,풍무꿈에 그린더포레듀4단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59, 203호 (방화동, 블루힐 마곡)
3	더레디언트 (theradiant)	서울 후 제2852호	노향미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2길 28-11(능동)	소재지 ('24. 6. 3)	경기도 시흥시 장현능곡로 155, 2층 2054호(능곡동, 시흥 플랑드르)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2길 28-11(능동)
4	골드스타	서울 후 제2844호	김명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46, 102동 304호(응암동, 응암푸르지오)	연락처 ('24.6.12)	010-7752-7204	010-6586-7204
5	인셀덤 왕십리 대리점	서울 후 제1783호	윤명숙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18길 3(하왕십리동)	폐업 ('24.6.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98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승인일자: 2024. 6. 12.
2.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주요 내용

시설명 (사업시행자)	위 치	토지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연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육군 제1596부대 (국방부장관)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산 100-14 일대	123,608.34	123,608.34	-	171,610.10	170,574.66	감) 1,035.44	
육군 제1121부대 (국방부장관)	서울 강서구 오쇠동 14-2 일대	98,010.00	98,778.00	증) 768.00	22,709.10	23,437.49	증) 728.39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02 - 2133 - 2015)
   관악구 공원녹지과(02-879-6541)
   강서구 공원녹지과(02-2600-4177)
4. 열람기간: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99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6. 20. ~ 2024. 7. 4.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연번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1	정의종합건설㈜ (대표 이성준)	건축공사업 01-197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 에이동 723-1호(문정역 테라타워)	○ 보증가능금액 실효 - 2024.4.9. 담보권실행(출자좌수 일부 취득)	영업정지	2024.7.5.(금) 10:00 건설혁신과 청문실	주무관 박홍주	법 제83조 제3호
2	라움종합건설㈜ (대표 송제섭)	건축공사업 01-3482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씨동 1201호(문정동,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시티)	○ 보증가능금액 실효 - 2024.4.16. 담보권실행(출자좌수 일부 취득)	영업정지	2024.7.5.(금) 14:00 건설혁신과 청문실	주무관 박홍주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00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및 독촉고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법적근거
가. 사전통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 (변상금의 부과)
나. 연 체 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대상자	무단점유사실 및 사전통지 내역	송달주소	비고
윤○래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8-13 - 점유기간 : 2023.01.01.~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4.0㎡, 5% - 사전통지 내역 : 1,163,520원	서울 강○구 천○대로17○길 4○(성○동)	수취인불명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대 상 자	무단점유사실 및 독촉고지 내역	송달주소	비고
윤○래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8-13 - 점유기간 : 2018.07.01. ~ 2022.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4.0㎡, 5% - 독촉내역 : 6,077,160원 (변상금 : 4,847,390원, 연체료 : 1,229,770원)	서울 강○구 천○대로17○길 4○(성○동)	수취인불명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시송달 기간 : 2024. 6. 20. ~ 2024. 7. 4. (게시일로부터 15일 간)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05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6. 20.~2024. 7. 4.(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옳소종합건설 이현지	건축공사업 01-472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40 , 지층(구의동)	하도급 대금 미지급(건설기계대여)	법 제34조 제1항	영업정지 1개월 (2024. 7. 15. ~ 2024. 8. 14.)	법 제82조 제1항제8 호

3. 또한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06호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198호(2000.07.25)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7호(2015.07.16.)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01호(2002.05.29.)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26호(2022.08.04.)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월드컵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3. 면　　적 : 2,284,085㎡

4. 주요 변경개요(노을,난지천공원)
○ 파크골프장 조성, 클럽하우스, 신축 1동(지상1층) 및 체육공원 조성, 대기실 신축 1동(지상1층)

시 설 명			시설면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합계			770,520.23	781,113.33	증)10,593.1㎡, 증)147기
기반시설	도로		226,902.4	227,411.40	증)544.2㎡
	광장		62,111	62,146.20	
조경시설			254,918	240,610	감)14,308㎡ 증)23기
휴양시설			77,253	70,090.60	감)7,162.4㎡ 증)69기
유희시설			5,826	5,286	변경없음
운동시설			45,082	75,886	증)30,804㎡ 증)7기
교양시설			20,868	20,868	변경없음

시 설 명			시설면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편익시설			69,378.23	69,406.03	증) 27.8㎡ 증)7기
관리시설			5,681.6	6,369.10	증) 687.5㎡ 증)41기
녹지및기타	기타		2,500 (1,516,578.07)	2,500 (1,505,471.67)	녹지면적 감)10,593.1㎡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300-5535)

8.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조서

가. 총괄표(위치: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2,284,085	770,520.23	66	7,514.47	11,229.16	4,383	2,284,085	781,113.33	66	7,775.30	11,489.99	4,529	증 10,593.1㎡, 증 147기
기반시설	소계	289,013.4	289,013.4					289,557.6	289,557.6					증 544.2㎡
	도로	226,902.4	226,902.4					227,411.4	227,411.4					증 509㎡
	광장	62,111	62,111					62,146.2	62,146.2					증 35.2㎡
조경시설		254,918	254,918				371	240,610	240,610				394	감 14,308㎡, 증 23기
휴양시설		77,253	77,253				1,341	70,090.6	70,090.6				1,410	감 7,162.4㎡, 증 69기
유희시설		5,826	5,826				159	5,826	5,826				159	변동없음
운동시설		45,082	45,082				13	75,886	75,886				20	증 30,804㎡, 증 7기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교양시설	20,868	20,868	2	2,098	3,794	37	20,868	20,868	2	2,098	3,794	37	변동없음
편익시설	69,378.23	69,378.23	26	2,273.35	2,354.06	112	69,406.03	69,406.03	27	2,301.15	2,381.86	118	증 27.80㎡, 증 7기,감1기
관리시설	5,681.6	5,681.6	38	3,143.12	5,081.1	2,350	6,369.1	6,369.1	37	3,376.15	5,314.13	2,391	증 687.5㎡, 증 41기
녹지및기타	1,516,064.77	2,500					1,505,471.67	2,500					감10,593.1㎡
시설률 (법정 40%)	(770,520.23㎡/2,284,085㎡)x100=33.73%						(781,113.33㎡/2,284,085㎡)x100=34.19%						증 0.46%
건폐율 (법정 10%)	(7,514.47㎡/2,284,085㎡)x100=0.329%						(7,775.30㎡/2,284,085㎡)x100=0.34%						증 0.011%

○ 노을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8)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911,859	287,188.04	19	1,296.75	1,377.46	272	911,859	292,363.04	20	1,411.95	1,492.66	332	
기반시설	소계	67,205	67,205					67,205	67,205					
	도로	66,079	66,079					66,079	66,079					
	광장	1,126	1,126					1,126	1,126					
조경시설		156,942	156,942				83	143,367	143,367				90	증 8
휴양시설		30,300	30,300				25	22,700	22,700					감) 7,600㎡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8)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시설							7						7	
운동시설		30,500	30,500					56,475	56,475					증)25,975㎡
교양시설		32	32	1	32	32	3	32	32	1	32	32	3	
편익시설		1,579.04	1,579.04	8	661.75	742.46	11	1,579.04	1,579.04	8	661.75	742.46	10	
관리시설		630	630	10	603	603	143	1,005	1,005	11	718.2	718.2	143	증)1
녹지 및 기타	소계	624,670.96						619,495.96						감)5,175㎡
	녹지	624,670.96						619,495.96						

○ 하늘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478-72번지 일대)-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732,829.00	104,054.59	16	981.23	981.23	1,200	732,829.00	104,054.59	16	981.23	981.23	1,200	
기반시설	소계	94,813.40	94,813.40					94,813.40	94,813.40					
	도로	94,233.40	94,233.40					94,233.40	94,233.40					
	광장	580	580					580	580					
조경시설		614	614				188	614	614				188	
휴양시설		1,175	1,175				469	1,175	1,175				469	
유희시설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5,348.19	5,348.19	5	259.49	259.49	75	5,348.19	5,348.19	5	259.49	259.49	75	
관리시설	2,104	2,104	11	721.74	721.74	468	2,104	2,104	11	721.74	721.74	468	
녹지및기타	628,774.41						628,774.41						

○ 난지천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1538번지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270,887	130,654	14	609.63	609.63	812	270,887	136,072.1	13	755.26	755.26	898	증 5,418.10㎡, 증 86기
기반시설 소계	33,021	33,021					33,565.2	33,565.2					증 544.2㎡
기반시설 도로	30,359	30,359					30,868	30,868					증 509㎡
기반시설 광장	2,662	2,662					2,697.2	2,697.2					증 35.2㎡
조경시설	38,692	38,692				41	37,959	37,959				43	감 733㎡, 증 2기
휴양시설	14,800	14,800				286	15,237.6	15,237.6				301	증 437.6㎡, 증 15기
유희시설	2,606	2,606				15	2,606	2,606				15	변동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12,181	12,181				13	17,010	17,010				20	지0 4,829㎡, 지0 7기
교양시설		13,731	13,731				34	13,731	13,731				34	변동없음
편익시설		15,356	15,356	6	342.94	342.94	15	15,383.8	15,383.8	7	370.43	370.43	22	지0 27.8㎡, 지0 7기
관리시설		267	267	8	267	267	408	579.5	579.5	6	384.83	384.83	449	지0 312.5㎡, 지0 41기
녹지 및 기타	소계	140,233						134,814.9						감 5,418.1㎡
	녹지	129,965						124,546.9						감 5,418.1㎡
	하천	10,268						10,268						변동없음

○ 평화의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1535번지 일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368,510	248,623.6	17	4,626.86	8,260.84	2,099	368,510	248,623.6	17	4,626.86	8,260.84	2,099	
기반시설	소계	93,974	93,974					93,974	93,974					
	도로	36,231	36,231					36,231	36,231					
	광장	57,743	57,743					57,743	57,743					
조경시설		58,670	58,670				59	58,670	58,670				59	
휴양시설		30,978	30,978				561	30,978	30,978				561	
유희시설		3,220	3,220				137	3,220	3,220				137	
운동시설		2,401	2,401					2,401	2,40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7,105	7,105	1	2,066	3,762		7,105	7,105	1	2,066	3,762		
편익시설		47,095	47,095	7	1,009.48	1,009.48	11	47,095	47,095	7	1,009.48	1,009.48	11	
관리시설		2,680.6	2,680.6	9	1,551.38	3,489.36	1,331	2,680.6	2,680.6	9	1,551.38	3,489.36	1,331	
녹지 및 기타	소계	122,386.4	2,500					122,386.4	2,500					
	녹지	119,886.4						119,886.4						
	반려견놀이터	2,500	2,500					2,500	2,500					

○ 시설조서(노을공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911,859	287,188.04		19	1,296.75	1,377.46	272			911,859	292,363.04		20	1,411.95	1,492.66	332	증 60기
기반시설	소 계			67,205	67,205								67,205	67,205						
	도 로		전지역	66,079	66,079							전지역	66,079	66,079						
	광 장	가		1,126	1,126						가		1,126	1,126						
		가-1	상암478-1	237	237						가-1	상암478-1	237	237						
		가-2	상암478-1	678	678						가-2	상암478-1	678	678						
		가-3	상암481-36	211	211						가-3	상암481-36	211	211						
조경시설	소 계			156,942	156,942					83			143,367	143,367					90	증 7기
	초지공원	나	상암478-1	129,680	129,680						나	상암478-1	116,105	116,105						감 13,575㎡
	잔디밭	다	상암478-1	7,567	7,567						다	상암478-1	7,567	7,56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돌망태	라	상암478-1	520	520						라	상암478-1	520	520						
자연물놀이터	마	상암478-1	7,630	7,630						마	상암478-1	7,630	7,630						
도시농부정원	바	상암478-1	6,500	6,500						바	상암478-1	6,500	6,500						
자생화단	사	상암478-1	5,045	5,045						사	상암478-1	5,045	5,045						
파고라	①	전지역							(8)	①	전지역							(7)	감 1기
										1-1	전지역							8	증 8기
막구조파고라	②	전지역							(11)	②	전지역							(11)	
초 정	③	전지역							(47)	③	전지역							(47)	
목재데크	④	전지역							1	④	전지역							1	
조형물	⑤	전지역							16	⑤	전지역							1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계			30,300	30,300					25			22,700	22,700					79	증 54기
	노을캠핑장	아		30,300	30,300						아		22,700	22,700						
		아-1	상암478-1	7,300	7,300						아-1	상암478-1	7,300	7,300						
		아-2	상암478-1	14,100	14,100						아-2	상암478-1	8,800	8,800						감 5,300㎡
		아-3	상암478-1	8,900	8,900						아-3	상암478-1	6,600	6,600						감 2,300㎡
	등의자	⑥	전지역							25	⑥	전지역							25	
											6-1	전지역							54	증 54기
유희시설	소계									7									7	
	통나무평균대																			
	무당벌레 아지트	⑦	상암481-6							1	⑦	상암481-6							1	
	미로찾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통나무그물 놀이대	⑧	상암481-6							1	⑧	상암481-6							1	
	우드볼하우스	⑨	상암481-6							1	⑨	상암481-6							1	
	터널통과하기																			
	통나무건너기	⑩	상암481-6							1	⑩	상암481-6							1	
	통나무복합 놀이대	⑫	상암481-6							1	⑫	상암481-6							1	
	통나무오르기	⑳	상암481-6							1	⑳	상암481-6							1	
	인디언놀이집	㉑	상암481-6							1	㉑	상암481-6							1	
	소 계			30,500	30,500								56,475	56,475						증이 25,975㎡
	파크골프장	자	상암478-1	30,500	30,500						자	상암478-1	30,500	30,500						
											자-1	상암478-1	12,350	12,350						증이 12,350㎡
											자-2	상암478-1	13,625	13,625						증이 13,62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 계			32	32		1	32	32	3			32	32		1	32	32	3	
	누에생태체험관	1	상암478-1	32	32	목재	1	32	32		1	상암478-1	32	32	목재	1	32	32		
	책방	㉮	상암478-1																	
편의시설	소 계			1,579.04	1,579.04		8	661.75	742.46	11			1,579.04	1,579.04		8	661.75	742.46	10	감 1기
	전망대	차		645	645						차		645	645						
		차-1	상암478-1	(164)	(164)						차-1	상암478-1	(164)	(164)						
		차-2	상암478-1	(138)	(138)						차-2	상암478-1	(138)	(138)						
		차-3	상암478-1	(153)	(153)						차-3	상암478-1	(153)	(153)						
		차-4	상암478-1	(190)	(190)						차-4	상암478-1	(190)	(190)						
	화장실	2	전지역	504.32	504.32		7	504.32	504.32		2	전지역	504.32	504.32		7	504.32	504.32		
		2-1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1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2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2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2-3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3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4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4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5	전지역	16.8	16.8	목조	1	16.8	16.8		2-5	전지역	16.8	16.8	목조	1	16.8	16.8		
		2-6	전지역	40	40	목조	1	40	40		2-6	전지역	40	40	목조	1	40	40		
		2-7	전지역	110.28	110.28	목조	1	110.28	110.28		2-7	전지역	110.28	110.28	목조	1	110.28	110.28		
	매점	3	상암481-6	429.72	429.72	경량패널	1	157.43	238.14		3	상암481-6	429.72	429.72	경량패널	1	157.43	238.14		
	음수대	⑪	전지역							10	⑪	전지역							9	감 1기
	목재계단	⑫	전지역							1	⑫	전지역							1	
관리시설	소 계			630	630		10	603	603	143			1,005	1,005		10	718.20	718.20	143	
	파크골프장 관리소	4	전지역	59	59	목조	1	59	59		4	전지역	59	59	목조	1	59	59		
	클럽하우스	4-1	전지역								4-1	전지역	375	375		1	115.20	115.20		증 37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안내소	5	전지역	204	204		4	177	177		5	전지역	204	204		4	177	177		
	5-1	전지역	73	73	R.C.	1	73	73		5-1	전지역	73	73	R.C.	1	73	73		
	5-2	전지역	63	63	R.C.	1	36	36		5-2	전지역	63	63	R.C.	1	36	36		
	5-3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5-3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5-4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5-4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창고	6	전지역	325	325		4	325	325		6	전지역	325	325		4	325	325		
	6-1	전지역	30	30	경량 패널	1	30	30		6-1	전지역	30	30	경량패널	1	30	30		
	6-2	전지역	90	90	경량 패널	1	90	90		6-2	전지역	90	90	경량패널	1	90	90		
	6-3	전지역	108	108	경량 패널	1	108	108		6-3	전지역	108	108	경량패널	1	108	108		
	6-4	전지역	97	97	경량 패널	1	97	97		6-4	전지역	97	97	경량패널	1	97	97		
펌프실	7	전지역	42	42	R.C.	1	42	42		7	전지역	42	42	R.C.	1	42	42		
목책	⑬	전지역							1식	⑬	전지역							1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휴지통	⑭	전지역							10	⑭	전지역							10	
	공원등	⑮	전지역							115	⑮	전지역							115	
	안내판	⑯	전지역							5	⑯	전지역							5	
	cctv	⑰	전지역							13	⑰	전지역							13	
	소계			624,670.96									619,495.96							
	녹지		전지역	624,670.96								전지역	619,495.96							감 5,175㎡

○ 시설조서(하늘공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계			전지역	732,829	104,054.59		16	981.23	981.23	1.200		전지역	732,829	104,054.59		16	981.23	981.23	1,200	
기반시설	소계			94,813.4	94,813.4								94,813.4	94,813.4						
	도로		전지역	94,233.4	94,233.4							전지역	94,233.4	94,233.4						
	광장	가		580	580						가		580	580						
		가-1	상암481-72	201	201						가-1	상암481-72	201	201						
		가-2	상암481-81	153	153						가-2	상암481-81	153	153						
		가-3	상암481-72	113	113						가-3	상암481-72	113	113						
		가-4	상암482-242	113	113						가-4	상암482-242	113	113						
조경시설	소계			614	614					188			614	614					188	
	암석원	나	상암481-72	585	585						나	상암481-72	585	585						
	화단	다		29	29						다		29	29						
		다-1	상암481-72	23	23						다-1	상암481-72	23	23						
		다-2	상암481-72	6	6						다-2	상암481-72	6	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파고라	①	전지역							5	①	전지역							5	
	막구조 파고라	②	상암481-72							3	②	상암481-72							3	
	막구조 파고라(조형)	③	전지역							3	③	전지역							3	
	막구조 파고라(大)	④	상암481-72							1	④	상암481-72							1	
	초 정	⑤	상암481-72							11	⑤	상암481-72							11	
	나무포트	⑥	전지역							19	⑥	전지역							19	
	대지조형물	⑦	상암481-72							1	⑦	상암481-72							1	
	조 형 물	⑧	전지역							2	⑧	전지역							2	
	자연석놓기	⑨	암481-72							143	⑨	암481-72							143	
휴양시설	소 계			1,175	1,175					469			1,175	1,175					469	
	휴게소	라		1,175	1,175						라		1,175	1,175						
		라-1	상암481-72	545	545						라-1	상암481-72	545	545						
		라-2	상암481-72	571	571						라-2	상암481-72	571	57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3	상암481-81	59	59						라-3	상암481-81	59	59						
	평의자	⑩	전지역							4	⑩	전지역							4	
	등의자	㉝	전지역							33	㉝	전지역							33	
	원목의자	⑪	전지역							382	⑪	전지역							382	
	통돌의자	⑫	전지역							50	⑫	전지역							50	
편의시설	소계			5,348.19	5,348.19		5	259.49	259.49	75			5,348.19	5,348.19		5	259.49	259.49	75	
	전망대	마		5,089	5,089						마		5,089	5,089						
		마-1	상암481-81	721	721						마-1	상암481-81	721	721						
		마-2	상암481-81	132	132						마-2	상암481-81	132	132						
		마-3	상암481-81	212	212						마-3	상암481-81	212	212						
		마-4	상암482-242	372	372						마-4	상암482-242	372	372						
		마-5	상암481-72	351	351						마-5	상암481-72	351	35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전망대	마-6	상암482-242	165	165						마-6	상암482-242	165	165						
	마-7	상암482-49	166	166						마-7	상암482-49	166	166						
	마-8	상암482-49	173	173						마-8	상암482-49	173	173						
	마-9	암481-72	694	694						마-9	암481-72	694	694						
	마-10	암481-94	486	486						마-10	암481-94	486	486						
	마-11	암481-72	108	108						마-11	암481-72	108	108						
	마-12	상암482-49	359	359						마-12	상암482-49	359	359						
	마-13	상암481-72	37	37						마-13	상암481-72	37	37						
	마-14	상암481-72	166	166						마-14	상암481-72	166	166						
	마-15	상암481-81	73.7	73.7						마-15	상암481-81	73.7	73.7						
	마-1	상암481-81	182	182						마-1	상암481-81	182	18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6									6									
	마-17	상암1535-2	569	569						마-17	상암1535-2	569	569						
	마-18	상암487-3	42	42						마-18	상암487-3	42	42						
	마-19	상암487-3	80	80						마-19	상암487-3	80	80						
화장실	1		259.49	259.49		5	259.49	259.49		1		259.49	259.49		5	259.49	259.49		
	1-1	상암481-81	54.71	54.71	R.C	1	54.71	54.71		1-1	상암481-81	54.71	54.71	R.C	1	54.71	54.71		
	1-2	상암481-72	54.71	54.71	R.C	1	54.71	54.71		1-2	상암481-72	54.71	54.71	R.C	1	54.71	54.71		
	1-3	상암481-81	55.04	55.04	R.C	1	55.04	55.04		1-3	상암481-81	55.04	55.04	R.C	1	55.04	55.04		
	1-4	상암482-49	54.71	54.71	R.C	1	54.71	54.71		1-4	상암482-49	54.71	54.71	R.C	1	54.71	54.71		
	1-5	상암481-94	40.32	40.32	R.C	1	40.32	40.32		1-5	상암481-94	40.32	40.32	R.C	1	40.32	40.32		
음수대	⑬	전지역							9	⑬	전지역							9	
목 교	⑭	전지역							60	⑭	전지역							60	
콘크리트교	⑫	전지역							1	⑫	전지역							1	
목재계단	⑮	상암1535-2							2	⑮	상암1535-2							2	
자전거보관대	⑯	상암1535-2							3	⑯	상암1535-2							3	
소 계			2,104	2,104		11	721.74	721.74	468			2,104	2,104		11	721.74	721.74	46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탐방객 안내센터	바	상암481-72	922	922	목조	1	103.11	103.11		바	상암481-72	922	922	목조	1	103.11	103.11		
	펌프실	2	상암481-6	42	42	R.C.	1	42	42		2	상암481-6	42	42	R.C.	1	42	42		
	목책	⑰	전지역							1식	⑰	전지역							1식	
	휴지통	⑱	전지역							28	⑱	전지역							28	
	플랜터	⑲	전지역							62	⑲	전지역							62	
	종합안내판	⑳	전지역							5	⑳	전지역							5	
	해설판	㉑	전지역							83	㉑	전지역							83	
	수목명패	㉒	전지역							117	㉒	전지역							117	
	풍력발전기	㉓	전지역							5	㉓	전지역							5	
	전기실	3	상암487-31	21	21	목조	1	16.3	16.3		3	상암487-31	21	21	목조	1	16.3	16.3		
	공원등	㉔	전지역							109	㉔	전지역							109	
	수목잔디 조명등	㉕	전지역							28	㉕	전지역							28	
	분전반	㉖	전지역							3	㉖	전지역							3	
	피뢰침	㉗	전지역							7	㉗	전지역							7	
	볼라드	㉘	상암487-3							2	㉘	상암487-3							2	
	방향표지판	㉙	전지역							11	㉙	전지역							1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표 석	㉚	전지역							2	㉚	전지역							2	
c c t v	㉛	전지역							6	㉛	전지역							6	
안내소	4		98	98		5	86	86		4		98	98		5	86	86		
	4-1	상암1535-2	34	34	경량패널	1	34	34		4-1	상암1535-2	34	34	경량패널	1	34	34		
	4-2	상암487-3	10	10	경량패널	1	6	6		4-2	상암487-3	10	10	경량패널	1	6	6		
	4-3	상암481-94	10	10	경량패널	1	6	6		4-3	상암481-94	10	10	경량패널	1	6	6		
	4-4	상암481-94	34	34	목조	1	34	34		4-4	상암481-94	34	34	목조	1	34	34		
	4-5	상암481-72	10	10	목조	1	6	6		4-5	상암481-72	10	10	목조	1	6	6		
대기실																			
근로자 휴게시설	5	상암481-72	405	405	RC	1	319.56	319.56		5	상암481-72	405	405	RC	1	319.56	319.56		
창고	6	상암481-72	318	318	경량패널	1	148.77	148.77		6	상암481-72	318	318	경량패널	1	148.77	148.77		
집하장 및 야적장	사	상암481-72	292	292						사	상암481-72	292	292						

구분		변전								변경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주차관리실		7	상암481-94	6	6	경량 패널	1	6	6		7	상암481-94	6	6	경량 패널	1	6	6										
녹지 및 기타	소계			628,774.41									628,774.41									628,774.41						
	녹지		전지역	628,774.41								전지역	628,774.41								전지역	628,774.41						

○ 시설조서(난지천공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270,887	130,654		14	609.63	609.63	812			270,887	136,072.1		13	755.26	755.26	898	증)5,418.1㎡, 증)86기
기반시설	소계			33,021	33,021								33,565.2	33,565.2						증)544.2㎡
	도로			30,359	30,359								30,868	30,868						증)509㎡
	광장	가	상암1538	2,662	2,662						가-1	상암1538	2,662	2,662						
											가-2	상암478-1	35.2	35.2						증)35.2㎡
조경시설	소계			38,692	38,692					41			37,959	37,959					57	감)733㎡, 증)16기
	야생초화원	나	상암1542	2,012	2,012						나	상암478-1	1,279	1,279						감)733㎡
	잔디광장	다	상암1538-1	26,742	26,742						다	상암1538-1	26,742	26,742						
	오리연못	라	상암1538	7,173	7,173						라	상암1538	7,173	7,173						
	초화원	마	상암1538	2,765	2,765						마	상암1538	2,765	2,765						
	파고라	①								13	①								15	증)2기
	사각정자	②								2	②								2	
	막구조파고라	③								4	③								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앉음벽		④								14	④								14	
목재데크		⑤								2	⑤								2	
디딤돌		⑦								6	⑦								20	주)14㎡
소계				14,800	14,800					286			15,237.6	15,237.6					301	주)437.6㎡, 주)157
휴게광장		바	상암1538	7,794	7,794						바	상암1538	7,895.6	7,895.6						
피크닉장		사	상암1538	5,971	5,971						사	상암1538	5,971	5,971						
휴게소	휴양시설	아-1	상암478-1	808	808						아-1	상암478-1	808	808						
		아-2	상암478-1	188	188						아-2	상암478-1	188	188						
		아-3	상암1538	39	39						아-3	상암1538	39	39						
											아-4	상암478-1	306	306						주)306㎡
											아-5	상암478-1	30	30						주)30㎡
평의자		⑧	전지역							51	⑧	전지역							55	주)47
등의자		⑨	전지역							86	⑨	전지역							99	주)137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유희시설	⑱	전지역							28	⑱	전지역							26	감26기
사각의자	⑲	상암1538-1							1	⑲	상암1538-1							1	
원목의자	⑳	상암1538							6	⑳	상암1538							6	
평상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대피소내부의자	㉒	상암1538							5	㉒	상암1538							5	
통나무테이블	㉓	상암1538							1	㉓	상암1538							1	
학습테이블	㉔	상암1538							60	㉔	상암1538							60	
통나무의자A	㉕	상암1538							47	㉕	상암1538							47	
통나무의자B			2,606	2,606					15			2,606	2,606					15	
소계	자	상암1538-1	1,220	1,220						자	상암1538-1	1,220	1,220						
중앙놀이터	차	상암1538	1,386	1,386						차	상암1538	1,386	1,386						
유아놀이터	㉘	상암1538							2	㉘	상암1538							2	
조합놀이대	㉙	상암1538							1	㉙	상암1538							1	
케이블카	㉚	상암1538							1	㉚	상암1538							1	
오름벽조합놀이대	㉛	상암1538							1	㉛	상암1538							1	
역마차놀이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교육시설	자동차놀이대	㉯	상암1538							1	㉯	상암1538							1	
	그네	㉰	상암1538							1	㉰	상암1538							1	
	숫자놀이펜넬	㉱	상암1538							1	㉱	상암1538							1	
	OX놀이펜넬	㉲	상암1538							1	㉲	상암1538							1	
	물놀이대	㉳	상암1538							1	㉳	상암1538							1	
	지네시소	㉴	상암1538-1							1	㉴	상암1538-1							1	
	개미집오르기	㉵	상암1538-1							1	㉵	상암1538-1							1	
	하늘과바람의소리	㉶	상암1538-1							1	㉶	상암1538-1							1	
	회전하는소리구체	㉷	상암1538-1							1	㉷	상암1538-1							1	
	쇠똥구리원판	㉸	상암1538-1							1	㉸	상암1538-1							1	
	소계			13,731	13,731					34			13,731	13,731					34	
교양시설	유아숲체험장	카	상암1538	9,013	9,013						카	상암1538	9,013	9,013						
	야외공연장	타	상암1538-1	4,718	4,718						타	상암1538-1	4,718	4,718						
	나무위의집A	㉹	상암1538							1	㉹	상암1538							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나무위의집B	㉝	상암1538							1	㉝	상암1538							1	
토끼집	㉞	상암1538							1	㉞	상암1538							1	
유아쉘터	㉟	상암1538							1	㉟	상암1538							1	
숲천막A	㊱	상암1538							1	㊱	상암1538							1	
숲천막B	㊲	상암1538							1	㊲	상암1538							1	
숲속요새	㊳	상암1538							1	㊳	상암1538							1	
숲속침대	㊴	상암1538							1	㊴	상암1538							1	
숲속그네	㊵	상암1538							1	㊵	상암1538							1	
출렁다리	㊶	상암1538							1	㊶	상암1538							1	
밧줄다리	㊷	상암1538							1	㊷	상암1538							1	
나무가지집A	㊸	상암1538							1	㊸	상암1538							1	
나무가지집B	㊹	상암1538							1	㊹	상암1538							1	
통나무기어오르기	㊺	상암1538							1	㊺	상암1538							1	
통나무 건너기	㊻	상암1538							2	㊻	상암1538							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거미줄놀이	㊼	상암1538							1	㊼	상암1538							1	
	잠자리쉼터	㊽	상암1538							6	㊽	상암1538							6	
	가방걸이	㊾	상암1538							2	㊾	상암1538							2	
	통나무오르기	㊿	상암1538							1	㊿	상암1538							1	
	밧줄오르기	(75)	상암1538							5	(75)	상암1538							5	
	모래놀이대	(76)	상암1538							1	(76)	상암1538							1	
	그물놀이대	(77)	상암1538							1	(77)	상암1538							1	
	그물건너기	(78)	상암1538							1	(78)	상암1538							1	
운동시설	소 계			12,181	12,181					13			17,010	17,010					20	집)4,829㎡, 집)7기
	다목적구장	파-1	상암478-1	1,796	1,796						파-1	상암478-1	1,796	1,796						
		파-2	상암478-1	662	662						파-2	상암478-1	662	662						
											파-3	상암478-1	565	565						집)565㎡
	파크골프 체험장										러	상암478-1	4,185	4,185						집)4,18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풋살장	파-3	상암478-1	1,146	1,146						너	상암478-1	1,146	1,146						
	축구장	하	상암1538-1	8,577	8,577						하	상암1538-1	8,577	8,577						
	체력단련장										더	상암478-1	79	79						증)79㎡
	농구대	㊾	상암478-1							5	㊾	상암478-1							5	
	운동기구	㊿	전지역							8	㊿	전지역							15	증)7기
편의시설	소 계			15,356	15,356		6	342.63	342.63	15			15,383.8	15,383.8		6	370.43	370.43	22	증)27.8㎡, 증)7기
	주차장	거-1	상암1538	2,686	2,686						거-1	상암1538	2,686	2,686						
		거-2	상암1538	6,084	6,084						거-2	상암1538	6,084	6,084						
		거-3	상암1538	6,068	6,068						거-3	상암1538	6,068	6,068						
	화장실	1-1	상암1538	62	62	R.C.	(1)	43.2	43.2		1-1	상암1538	62	62	R.C.	(1)	43.2	43.2		
		1-2	상암1538	128	128	R.C.	(1)	84.9	84.9		1-2	상암1538	128	128	R.C.	(1)	84.9	84.9		
		1-3	상암1538	50.31	50.31	R.C.	(1)	50.31	50.31		1-3	상암1538	50	50	R.C.	(1)	50	50		
		1-4	상암1538	128	128	R.C.	(1)	84.9	84.9		1-4	상암1538	128	128	R.C.	(1)	84.9	84.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게점	2-1	상암동538	75	75	경량패널	(1)	39.54	39.54		1-5	상암478-1	27.8	27.8		(1)	27.8	27.8		
	2-2	상암동538	75	75	경량패널	(1)	40.09	40.09		2-1	상암1538	75	75	경량패널	(1)	39.54	39.54		
목교	⑤	상암1538							2	2-2	상암1538	75	75	경량패널	(1)	40.09	40.09		
징검다리	⑧	상암1538							1	⑤	상암1538							2	
자전거보관대	⑥	전지역							4	⑧	상암1538							2	증)1기
음수대	⑦	전지역							7	⑥	전지역							4	
대피소	⑨	상암1538							1	⑦	전지역							8	증)1기
목재계단										⑨	상암1538							1	
석재계단										⑧	상암478-1							3	증)3기
소계			267	267		8	267	267	408	⑧	상암478-1							2	증)2기
관리시설 안내소	3-1	상암1538	34	34	경량패널	1	34	34				579.5	579.5		6	384.83	384.83	449	증)41기 증)312.5㎡
	3-2	상암1538	6	6	경량패널	1	6	6		3-1	상암1538	34	34	경량패널	1	34	34		
										3-2	상암1538	6	6	경량패널	1	6	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3-3	상암1538	10	10	경량 패널	1	10	10		3-3	상암1538	10	10	경량 패널	1	10	10		
	3-4	상암1538	6	6	경량 패널	1	6	6		3-4	상암1538	6	6	경량 패널	1	6	6		
	3-5	상암1538							1	3-5	상암1538							1	
목재휀스	㉤								1식	㉤								1식	95m
주차관리소	㉥	상암1538							4	㉥	상암1538							4	
무인정산기	㉦	상암1538							1	㉦	상암1538							1	
휴지통	㉧	전지역							32	㉧	전지역							32	
분전함	㉨	전지역							3	㉨	전지역							3	
일반안내판	㉩	전지역							13	㉩	전지역							13	
교통표지판	㉪	전지역							3	㉪	전지역							3	
방향표시판	㉫	전지역							15	㉫	전지역							15	
입구안내판(문주)	㉬	전지역							1	㉬	전지역							1	
입구안내판(걸이)	㉭	전지역							1	㉭	전지역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종합안내판	㉥	전지역							2	㉥	전지역							2	
시설안내판	㉥	전지역							8	㉥	전지역							8	
놀이터이용수칙안내판	㉥	전지역							2	㉥	전지역							2	
공 원 등	㉥	전지역							227	㉥	전지역							254	증)27기
표 석	㉥	전지역							5	㉥	전지역							5	
볼 라 드	㉦	전지역							77	㉦	전지역							77	
수목보호대	㉦	전지역							5	㉦	전지역							5	
c c t v	㉦	전지역							6	㉦	전지역							14	증)8기
조명타워	㉥	상암538							2	㉥	전지역							6	증)4기
휀 스										㉧	상암478-1							1	증)1기
그물망휀스										㉧	상암478-1							1	증)1기
창 고	4-1	상암538	110	110	경량패널	1	110	110											감)11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4-2	상암1538	40	40	경량패널	1	40	40											감)40㎡
		4-3	상암1538	40	40	경량패널	1	40	40											감)40㎡
		4-4	상암1538	21	21	경량패널	1	21	21		4-4	상암1538	21	21	경량패널	1	21	21		
	근로자 휴게시설										5	상암1538	502.5	502.5		1	307.83	307.83		증)502.5㎡
녹지 및 기타	소 계			140,233									134,814.9							감)5,418.1㎡
	녹 지			129,965									124,546.9							감)5,418.1㎡
	하 천			10,268									10,268							

○ 시설조서(평화의공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368,510	248,623.6		17	4,626.86	8,260.84	2,099			368,510	248,623.6		17	4,626.86	8,260.84	2,099	
기반시설	소계			93,974	93,974								93,974	93,974						
	도로			36,231	36,231								36,231	36,231						
	광장	가		57,743	57,743						가		57,743	57,743						
		가-1	성산 531	32,615	32,615						가-1	성산 531	32,615	32,615						
		가-2	상암1535	12,293	12,293						가-2	상암1535	12,293	12,293						
		가-3	성산 531	7,054	7,054						가-3	성산 531	7,054	7,054						
		가-4	상암1568	3,561	3,561						가-4	상암1568	3,561	3,561						
		가-5	상암1569	2,220	2,220						가-5	상암1569	2,220	2,220						
조경시설	소계			58,670	58,670					59			58,670	58,670					59	
	생태연못	나	성산 531	29,511	29,511						나	성산 531	29,511	29,511						
	평화의정원	다	상암1536	11,959	11,959						다	상암1536	11,959	11,959						
	잔디마당	라	상암1536	15,000	15,000						라	상암1536	15,000	15,0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정원	마	상암1536	2,200	2,200						마	상암1536	2,200	2,200						
	파고라A	①	전지역			철재				10	①	전지역			철재				10	
	파고라B	②	상암1569			목재				2	②	상암1569			목재				2	
	파고라C	③	성산390-1			철재				6	③	성산390-1			철재				6	
	팔각정자	④	상암1535			목재				1	④	상암1535			목재				1	
	목재데크	⑤	전지역			목재				4	⑤	전지역			목재				4	
	천상열차 분야지도각석	⑥	전지역			석재				12	⑥	전지역			석재				12	
	앉음벽	⑦	전지역			석재				4	⑦	전지역			석재				4	
	장승	⑧	성산390-1			목재				20	⑧	성산390-1			목재				20	
휴양시설	소계			30,978	30,978					561			30,978	30,978					561	
	휴게소	바		4,126	4,126						바		4,126	4,126						
		바-1	상암1535	2,738	2,738						바-1	상암1535	2,738	2,738						
		바-2	상암531	1,388	1,388						바-2	상암531	1,388	1,388						
휴양	피크닉장	사	상암1563	26,852	26,852						사	상암1563	26,852	26,85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	평의자	⑨	전지역			목재				26	⑨	전지역			목재				26	
	등의자	⑩	전지역			목재				222	⑩	전지역			목재				222	
	통돌의자	⑪	전지역			석재				165	⑪	전지역			석재				165	
	단식의자	⑫	전지역			석재				130	⑫	전지역			석재				130	
	평 상	⑬	전지역			목재				18	⑬	전지역			목재				18	
유희시설	소 계			3,220	3,220					137			3,220	3,220					137	
	놀이터	아	성산565-6	3,220	3,220						아	성산565-6	3,220	3,220						
	스카이데크	⑭	성산565-6							1	⑭	성산565-6							1	
	사면놀이대	⑮	성산565-6							1	⑮	성산565-6							1	
	목재계단	⑯	성산565-6							1	⑯	성산565-6							1	
	거울놀이벽	⑰	성산565-6							1	⑰	성산565-6							1	
	네트놀이대	⑱	성산565-6							1	⑱	성산565-6							1	
	미끄럼틀A	⑲	성산565-6							1	⑲	성산565-6							1	
	미끄럼틀B	⑳	성산565-6							2	⑳	성산565-6							2	
	그 네	㉑	성산565-6							2	㉑	성산565-6							2	
	공중활주로	㉒	성산565-6							1	㉒	성산565-6							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둥발고건너기	㉓	성산565-6							1	㉓	성산565-6							1	
	네트건너기	㉔	성산565-6							1	㉔	성산565-6							1	
	두줄건너기	㉕	성산565-6							1	㉕	성산565-6							1	
	세줄건너기	㉖	성산565-6							1	㉖	성산565-6							1	
	숨바꼭질	㉗	성산565-6							70	㉗	성산565-6							70	
	징검다리	㉘	성산565-6							1	㉘	성산565-6							1	
	통나무모험놀이대	㉙	성산565-6							1	㉙	성산565-6							1	
	통나무발고건너기	㉚	성산565-6							1	㉚	성산565-6							1	
	흔들놀이	㉛	성산565-6							2	㉛	성산565-6							2	
	로프사면놀이대	㉜	성산565-6							4	㉜	성산565-6							4	
	홀더사면놀이대	㉝	성산565-6							30	㉝	성산565-6							30	
	폴 사면놀이대	㉞	성산565-6							10	㉞	성산565-6							10	
	모래놀이대	㉟	성산565-6							3	㉟	성산565-6							3	
운동	소 계			2,401	2,401								2,401	2,40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	테니스장	자	산390-1	2,401	2,401						자	산390-1	2,401	2,401						
교양시설	소 계			7,105	7,105		1	2,066	3,762				7,105	7,105		1	2,066	3,762		
	에너지드림센터	차	상암1536	7,105	7,105	R.C.	1	2,066	3,762		차	상암1536	7,105	7,105	R.C.	1	2,066	3,762		
편의시설	소 계			47,095	47,095		7	1,009.48	1,009.48	11			47,095	47,095		7	1,009.48	1,009.48	11	
	주차장	카		45,324	45,324						카		45,324	45,324						
		카-1	상암1569	11,153	11,153						카-1	상암1569	11,153	11,153						
		카-2	성산 531	18,107	18,107						카-2	성산 531	18,107	18,107						
		카-3	성산 531	9,825	9,825						카-3	성산 531	9,825	9,825						
		카-4	성산 531	5,721	5,721						카-4	성산 531	5,721	5,721						
		카-5	성산390-1	518	518						카-5	성산390-1	518	518						
	매 점	1		675	675		2	579.74	579.74		1		675	675		2	579.74	579.74		
		1-1	상암1569	215	215	R.C.	(1)	143.66	143.66		1-1	상암1569	215	215	R.C.	(1)	143.66	143.66		
		1-2	성산390-1	460	460	R.C.	(1)	436.08	436.08		1-2	성산390-1	460	460	R.C.	(1)	436.08	436.08		
	화장실	2		1,096	1,096		5	429.74	429.74		2		1,096	1,096		5	429.74	429.74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2-1	상암1535	279	279	R.C.	(1)	57.6	57.6		2-1	상암1535	279	279	R.C.	(1)	57.6	57.6		
	화장실	2-2	성산565-6	171	171	R.C.	1	43.2	43.2		2-2	성산565-6	171	171	R.C.	1	43.2	43.2		
		2-3	성산390-1	391	391	R.C.	1	73.94	73.94		2-3	성산390-1	391	391	R.C.	1	73.94	73.94		
		2-4	상암1535	85	85	R.C.	1	85	85		2-4	상암1535	85	85	R.C.	1	85	85		
		2-5	상암1569	170	170	R.C.	1	170	170		2-5	상암1569	170	170	R.C.	1	170	170		
	음수대	㉟	전지역							6	㉟	전지역							6	
	자전거보관대	㊲	전지역							4	㊲	전지역							4	
	보행육교	㊳	상암1531-1							1	㊳	상암1531-1							1	
관리시설	소계			2,680.6	2,680.6		9	1,551.38	3,489.36	1,331			2,680.6	2,680.6		9	1,551.38	3,489.36	1,331	
	공원관리사업소	3	성산390-1	2,074	2,074	R.C.	1	1,181	2,871		3	성산390-1	2,074	2,074	R.C.	1	1,181	2,871		
	안내소	4		66	66		4	58	58		4		66	66		4	58	58		
		4-1	성산531	10	10	경량패널	1	6	6		4-1	성산531	10	10	경량패널	1	6	6		
		4-2	성산531	10	10	경량패	1	6	6		4-2	성산531	10	10	경량	1	6	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널									패널					
	4-3	상암1535	34	34	경량패널	1	34	34		4-3	상암1535	34	34	경량패널	1	34	34		
	4-4	상암1535	12	12	경량패널	1	12	12		4-4	상암1535	12	12	경량패널	1	12	12		
목 책	㊴	성산390-1			목재				1식	㊴	성산390-1			목재				1식	
주차관리소	㊵	전지역							4	㊵	전지역							4	
분리수거장	6	상암1563	30	30	목조	1	30	30		6	상암1563	30	30	목조	1	30	30		
매립가스소각장	7	성산390-1	24	24	경량패널	1	24	24		7	성산390-1	24	24	경량패널	1	24	24		
태양열전기실	8	상암1563	8	8		1	8	8		8	상암1563	8	8		1	8	8		
종합안내판	㊶	전지역							5	㊶	전지역							5	
근로자 휴게시설	9	성산390-1	478.6	478.6	R.C	1	250.38	498.36		9	성산390-1	478.6	478.6	R.C	1	250.38	498.36		
일반안내판	㊷	전지역							24	㊷	전지역							24	
공원유도사인	㊸	전지역							23	㊸	전지역							23	
놀이터안내수칙 표지판	㊹	전지역							1	㊹	전지역							1	
입구표석	㊺	전지역							2	㊺	전지역							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지통	㊻	전지역							12	㊻	전지역							12	
	볼라드	㊼	전지역							123	㊼	전지역							123	
관리시설	공원등	㊽	전지역							1,040	㊽	전지역							1,040	
	수목잔디조명등	㊾	전지역							73	㊾	전지역							73	
	CCTV	㊿	전지역							24	㊿	전지역							24	
	태양열발전설비	⑤	전지역							1식	⑤	전지역							1식	
녹지 및 기타	소 계		전지역	122,386.4	2,500							전지역	122,386.4	2,500						
	녹 지		전지역	119,886.4								전지역	119,886.4							
	반려견놀이터	타	성산531	2,500	2,500						타	성산531	2,500	2,500						

○ 도로조서(노을공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1,111	66,079				
당초	소 로	소 계			7,717	56,855				
당초		1	1	11	1,830	20,14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1	7	643	4,501	내부도	소로 1-1	경기도경계	
당초			2	7	829	5,803	내부도	경기도경계	공원동측경계	
당초			3	7	1,419	9,933	내부도	공원동측경계	소로 1-1	
당초			4	5.5	1,834	10,087	내부도	소로 1-1	공원경계	
당초			5	5.5	1,162	6,391	내부도	소로 1-1	공원경계	
당초	산책로	소 계			3,394	9,224				
당초			1	3	1,358	4,074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1	황토포장
당초			3	3	252	75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황토포장
당초			4	2	48	9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2	황토포장
당초			7	2	120	24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9	황토포장
당초			8	2	21	42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0	황토포장
당초			9	2	154	308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1	황토포장
당초			10	2	92	184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9	황토포장
당초			11	2	147	294	산책로	운동장	운동장	황토포장
당초			12	2	306	612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13	황토포장
당초			13	3	211	633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2	황토포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2	3	572	1,716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황토포장
당초			5	2	29	58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3	황토포장
당초			6	2	41	82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3	황토포장
당초			14	3	43	129	산책로	산책로2	방공진지	황토포장

○ 도로조서(하늘공원)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5,656.4	94,233.4				
당초	중로	소 계			804	14,472				
당초		2	1	18.0	804	14,472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공원남측경계	
당초	소로	소 계			4,070	34,360				
당초		2	1	9.0	1,534	13,806	내부도	중로 2-1	소로 2-3	
당초			2	8.5	532	4,522	내부도	소로 2-1	소로 2-1	
당초			3	8.0	2,004	16,032	내부도	중로 2-1	공원 북측경계	
당초	소로	소 계			3,898	30,859				
당초		3	1	8	1,582	12,656	내부도	소로 3-4	소로 3-4	폐기물시설 관리도로
당초			2	8	100	800	내부도	소로 3-3	소로 3-1	폐기물시설 관리도로
당초			3	8	550	4,400	내부도	소로 3-1	소로 3-1	폐기물시설 관리도로
당초			4	8	235	1,880	관리도로	중로 2-1	소로 3-3	폐기물시설 관리도로
당초			5	8	1,366	10,928	내부도	소로 2-1	소로 2-1	
당초			6	3	65	195	관리도로	소로 3-1	산책로 22	투수콘
당초	산책로	소 계			6,884.4	14,542.9				
당초			1	3	148	444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3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3	3	168	504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3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5	3	171	513	산책로	소로 3-4	광장 가-2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7	3	141	423	산책로	광장 가-2	소로 3-3	쇄석,마사토포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9	3	151	453	산책로	소로 3-3	광장 가-3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11	3	144	432	산책로	광장 가-3	소로 3-3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14	3	113	339	산책로	광장 가-4	소로 3-3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15	3	111	333	산책로	광장 가-4	소로 3-3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산책로		46	1.5	143.9	215.9	산책로	전망대마-1	소로3-1	
당초			48	3	6	15	산책로	산책로46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49	2	14	28	산책로	전망대 마-1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50	2	92	184	산책로	전망대 마-1	전망대 마-16	마사토포장
당초			52	2	48	96	산책로	전망대 마-16	전망대 마-15	마사토포장
당초			53	2	78	156	산책로	전망대 마-15	전망대 마-13	마사토포장
당초			54	2	13	26	산책로	산책로53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55	2	45	90	산책로	전망대 마-7	전망대 마-6	마사토포장
당초			56	2	48	96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57	마사토포장
당초			22	1.8	135.5	244	산책로	산책로 66	소로 3-3	
당초			31	1.8	255	459	산책로	소로 3-3	소로 3-1	침목깔기
당초			34	2	152	304	산책로	소로 3-3	소로 3-2	침목깔기
당초			41	1.8	45	81	산책로	소로 3-2	소로 3-3	침목깔기
당초			21	1.5	285	427.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마사토포장
당초			20	1.5	236	354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마사토포장
당초			19	1.5	195	292.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마사토포장
당초			18	1.5	91	136.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마사토포장
당초			17	1.5	51	76.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마사토포장
당초			30	1.5	223	335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마사토포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29	1.5	184	276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28	1.5	156	234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27	1.5	123	184.5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26	1.5	89	133.5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35	1.5	283	424.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마사토포장
당초			36	1.5	204	306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마사토포장
당초			37	1.5	95	142.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마사토포장
당초			38	1.5	48	72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마사토포장
당초			42	1.5	194	291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43	1.5	150	225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44	1.5	61	91.5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산책로		45	1.5	29	43.5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32	0.9	155	139.5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31	침목깔기
당초			33	0.9	25	22.5	산책로	산책로32	산책로31	침목깔기
당초			39	0.9	40	36	산책로	산책로34	산책로10	침목깔기
당초			40	0.9	20	18	산책로	산책로34	산책로39	침목깔기
당초			2	3	12	36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4	3	46	138	산책로	산책로3	소로 3-4	
당초			6	3	57	171	산책로	광장 가-2	소로 3-3	
당초			8	2.5	74	185	산책로	산책로7	소로 3-4	
당초			10	2.5	84	210	산책로	광장 가-3	소로 3-1	
당초			12	3	54	162	산책로	산책로11	소로 3-2	
당초			13	2.5	74	185	산책로	소로 3-1	광장 가-4	
당초			16	2.5	85	212.5	산책로	산책로15	소로 3-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23	2.5	184	460	산책로	산책로19	산책로21	
당초			24	3	43	129	산책로	광장 가-1	암석원 나	
당초			25	3	73	219	산책로	휴게소 라-2	산책로5	
당초			47	2.5	222	555	산책로	산책로46	전망대 마-2	
당초			51	3.5	332	1,162	산책로	산책로50	소로 3-1	
당초			57	2.5	85	212.5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58	
당초			58	2.5	184	460	산책로	소로 3-1	휴게소 라-3	
당초			59	3	43	129	산책로	전망대 마-17	전망대 마-18	
당초			60	3	73	219	산책로	전망대 마-18	전망대 마-20	

○ 도로조서(난지천공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5,632	30,359				
변경					5,767	30,868				증)509㎡
당초	중 로	소 계			526	7,890				
당초		2	1	15.0	526	7,890	주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공원남측경계	
당초	소 로	소 계			2,044	13,693				
변경					2,362	14,667				증)974㎡
당초		1	1	10.0	172	1,720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소로 2-1	
당초		2	1	8.0	46	368	내부로	산책로25	소로 3-1	
당초		3	1	6.5	1,170	7,605	내부로	중로 2-1	공원동측경계	
당초			2	6.0	158	948	내부로	소로 3-1	휴게광장 바	
당초			3	6.0	159	954	내부로	휴게광장 바	소로 3-1	
당초			4	6.0	169	1,014	내부로	소로 3-1	소로 1-1	
당초			5	6.0	42	252	내부로	소로 1-1	소로 3-1	
당초			6	6.5	128	832	내부로	소로 1-1	소로 3-1	
신설			7	3	318	974	내부로	산책로1	광장 가-3	
당초	산책로	소 계			3,062	8,776				
변경					2,879	8,311				감)465㎡
당초			3	3.0	609	1,827	산책로	중로 2-1	소로 3-2	
당초			1	2.5	447	1,118	진입로	공원서측경계	중로 2-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1	2	352	714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공원남측경계	
당초			2	1.5	198	297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변경			2	2	71	165	내부로	소로 3-7	소로 3-7	
당초			4	3~5	153	563	산책로	산책로3	중로 2-1	
당초			5	3.0	23	69	산책로	산책로3	농구장 타	
당초			6	3.0	11	33	산책로	산책로3	축구장 하	
당초			7	3.0	22	66	산책로	산책로3	놀이터 자	
당초			8	3.0	88	264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1	
당초			9	3.0	98	294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당초			10	3.0	12	36	산책로	놀이터 자	소로 3-2	
당초			11	3.0	46	138	산책로	놀이터 자	휴게광장 바	
당초			12	3.0	43	130	산책로	휴게광장 바	공원북측경계	
당초			13	2.5	74	185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2	
당초			14	3.0	40	120	산책로	휴게광장 바	공원북측경계	
당초			15	2.5	74	185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당초			16	2.5	30	75	산책로	산책로15	공원북측경계	
당초			17	2.5	184	460	산책로	휴게광장 바	소로 3-1	
당초			18	3.0	43	129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18	
당초			19	3.0	73	219	산책로	소로 3-3	소로 3-1	
당초			20	2.5	210	555	산책로	산책로17	소로 3-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21	3.5	332	1,162	산책로	산책로21	산책로24	
당초			22	3.0	172	516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22	
당초			23	4.0	80	320	산책로	소로 3-1	소로 2-1	
당초			24	3.0	5	15	산책로	산책로3	풋살장	
신설			25	2	20	43	진입로	소로 3-7	소로 3-7	
신설			26	2	14	28	진입로	중로 2-1	산책로1	

○ 도로조서(평화의공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6,037	36,231				
당초	중로	소 계			877	12,110				
당초		2	1	15.0	668	10,020	진입로	공원동측경계	광로2류(24)	
당초		3	1	10.0	209	2,090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중로2-1	
당초	소로	소 계			2,712	17,174				
당초		1	1	10.0	163	1,630	보도	진입광장라-1	진입광장 라-2	
당초		2	1	8.0	47	376	진입로	광로2-24 (증산로)	주차장 타-1	
당초		2	2	8.0	308	2,772	진입로	광로2-24 (증산로)	공원남동측경계	
당초		2	3	8.0	150	1,200	보도	유니세프 광장 가	소로 3-14	
당초		3	1	7.0	113	788	진입로	공원동측경계	유니세프광장 가	
당초		3	2	3.0	57	171	보도	진입광장 라-1	주차장 타-2	
당초		3	3	6.0	365	2,190	보도	중로 2-1	소로 2-2	
당초		3	4	5.0	18	90	보도	소로 3-3	소로3-7	
당초		3	5	6.0	145	870	보도	소로3-6	소로 2-2	
당초		3	6	5.0	106	530	보도	소로3-3	염원의장 나	
당초		3	7	7.5	150	1,125	보도	소로 3-6	소로 2-2	
당초		3	8	5.0	24	120	보도	산책로1	휴게소 1-1	
당초		3	9	3.0	111	333	보도	휴게소 1-1	소로 3-3	
당초		3	10	4.0	110	440	보도	소로 3-3	브릿지	
당초		3	11	5.0	44	220	보도	염원의 장 나	소로 2-3	
당초		3	12	6.0	85	510	보도	펌프장	소로 2-2	
당초		3	13	6.0	66	396	보도	소로 2-2	펌프장	
당초		3	14	5.0	532	2,660	보도	소로 2-2	유니세프 광장 가	
당초		3	15	6.0	88	528	보도	소로 3-1	휴게소 1-2	
당초		3	16	7.5	30	225	보도	주차장 타-6	소로 3-1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소 계			2,448	6,947				
당초			1	3.5	180	630	산책로	중로 2-1	소로 3-9	
당초			2	3.0	32	96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3	3.0	85	510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당초			4	1.5	100	150	산책로	산책로 3	소로 3-9	
당초			5	1.5	57	85	산책로	소로 3-9	소로 3-6	
당초			6	3.0	152	456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당초			7	2.5	342	852	산책로	소로 2-2	소로 2-2	
당초			8	2.0	415	871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당초			9	3.0	43	129	산책로	소로 3-14	산책로 11	
당초			10	3.0	34	102	산책로	소로 3-14	산책로 11	
당초			11	3.0	336	1,008	산책로	공원동측경계	소로3-14	
당초			12	1.5	35	52	산책로	화장실 2-2	산책로 16	
당초			13	3.0	38	114	산책로	소로 3-14	산책로 11	
당초			14	3.5	41	180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6	
당초			15	3.0	23	69	산책로	소로 1-2	소로 3-1	
당초			16	2.5	271	878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1	
당초			17	3.5	66	231	산책로	유니세프 광장 가	소로 3-15	
당초			18	3.0	33	99	산책로	유니세프 광장 가	소로 1-2	
당초			19	3.0	36	108	산책로	주차장 타-6	산책로 17	
당초			20	1.5	50	75	산책로	주차장 타-1	중로 2-1	
당초			21	3	49	147	산책로	유니세프 광장 가	피크닉장 아	
당초			22	3.5	30	105	산책로	산책로 7	공원남서측경계	

월드컵공원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5,000

월드컵공원



월드컵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5,000

월드컵공원




노을공원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2,000
월드컵공원
KEY MAP
폐기물 처리시설
난지물재생센터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노을공원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난지캠핑장
난지천
난지한강공원
난지천공원
노을공원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난지캠핑장
난지천
범 례

노을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월드컵공원

SCALE=1/2,000

■ 범 례



하늘공원 조성계획도(변경없음)

SCALE=1/2,000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건)	비고
합계			732,829	104,054.59	1,290	
기반시설	소계		94,813.4	94,813.4	-	
	도로	가-① ~ ⑤	94,233.4	94,233.4		
	광장	가-1	201	201		
		가-2	153	153		
		가-3	113	113		
		가-4	113	113		
도입시설	소계		614	614	188	
	합석론	나	586	586		
	잘안	다-1	23	23		
		다-2	6	6		
	화고라	①			5	
	억구조파고라	②			3	
	억구조파고라(조형)	③			3	
	억구조파고라(대)	④			1	
	초정	⑤			11	
	나무모드	⑥			19	
	대지조형물	⑦			141	
	조형물	⑧			2	
	자전거놀이	⑨			143	
휴양시설	소계		1,175	1,175	469	
	휴게소	라-1	545	545		
		라-2	571	571		
		라-3	59	59		
	정의자	㉑			4	
	통의자	㉒			33	
	원목의자	㉓			332	
	통돌의자	㉔			50	
편익시설	소계		5,348.19	5,348.19	75	
	관망대	마-1	721	721		
		마-2	132	132		
		마-3	212	212		
		마-4	372	372		
		마-5	351	351		
		마-6	165	165		
		마-7	166	166		
		마-8	173	173		
		마-9	894	894		
		마-10	426	426		
		마-11	108	108		
		마-12	359	359		
		마-13	37	37		
		마-14	166	166		
		마-15	73.7	73.7		
		마-16	182	182		
		마-17	569	569		
		마-18	42	42		
		마-19	80	80		
	휴정실	1-1	54.71	54.71		
		1-2	54.71	54.71		
		1-3	55.04	55.04		
		1-4	54.71	54.71		
		1-5	40.32	40.32		
	음수대	⑩			9	
	퍽 교	⑪			60	
	콘크리트교	⑫			1	
	퍽재계단	⑬			2	
	자전거보관대	⑭			3	
관리시설	소계		2,104	2,104	468	
	황방격 안내센터	㉮	922	922		
	원드실	㉯	42	42		
	목책	⑮			141	L=1,609M
	휴지통	⑯			28	
	볼라드	⑰			62	
	종합안내판	⑱			5	
	화살표	㉑			80	
	수목명표	㉒			117	
	음악발전기	㉓			5	
	전기실	㉰	21	21		
	공중화장실	㉔			109	
	수목관리조합원	㉕			28	
	본관판	㉖			3	
	표말판	㉗			7	
	방향표지판	㉘			11	
	표찰	㉙			2	
	CCTV	㉚			6	
	현내소	4-1	34	34		
		4-2	10	10		
		4-3	10	10		
		4-4	34	34		
		4-5	10	10		
	근로자 휴게시설	5	405	405		
	야작장 및 집합장	㉛	252	252		
	화고	6	318	318		
	주차관리실	7	6	6		
녹지및기타	소계		628,774.41			
	녹지		628,774.41	628,774.41		

난지천공원 조성계획도(변경전)

월드컵공원

SCALE=1/3,000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270,887	130,554	812	
기반시설	소 계		33,021	33,021		
	도 로		30,359	30,359		
	광 장	가	2,662	2,662		
조경시설	소 계		38,692	38,692	41	
	야생초원원	나	2,012	2,012		
	잔디광장	다	26,742	26,742		
	오리연못	라	7,173	7,173		
	초 화 원	마	2,765	2,765		
	마 고 라	①			13	
	시 각 정 자	②			2	
	막구조파고라	③			4	
	암 릉 벽	④			14	L = 120m
	목 재 데 크	⑤			2	
	디 딤 돌	⑦			6	
휴양시설	소 계		14,800	14,800	286	
	휴 게 광 장	바	7,794	7,794		
	피 크 닉 장	사	5,971	5,971		
	휴 게 소	아-1	806	806		
		아-2	188	188		
		아-3	39	39		
	벤 치 자	⑥			51	
	등 의 자	⑨			86	
	사 각 의 자	⑩			28	
	음 적 의 자	⑪			1	
	평 상	⑫			5	
	머미소녀부 의자	⑬			1	
	몽나무테이블	⑭			5	
	목습미이블	⑮			1	
	몽나무의자A	⑯			60	
	몽나무의자B	⑰			47	
유희시설	소 계		2,505	2,505	15	
	종합놀이터	자	1,220	1,220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유희시설	유아놀이터	차	1,386	1,386		
	조합놀이대	㉮			2	
	케이블카	㉯			1	
	오름벽조합놀이대	㉰			1	
	엔이차놀이대	㉱			1	
	자동차놀이대	㉲			1	
	그 네	㉳			1	
	숫자놀이관설	㉴			1	
	OX놀이관설	㉵			1	
	물놀이대	㉶			1	
	지네시소	㉷			1	
	개미잠오르기	㉸			1	
	하늘과바람의소리	㉹			1	
	회전하는소리구멍	㉺			1	
	쇠동구리원판	㉻			1	
교양시설	소 계	카	13,731	13,731	34	
	유아숲체험장		9,013	9,013		
					2	
	야외공연장	타	4,718	4,718		
	나무위의 집A	㉼			1	
	나무위의 집B	㉽			1	
	도피처	㉾			1	
	유아풀터	㉿			1	
	숲관역A	㊀			1	
	숲관역B	㊁			1	
	숲속오서	㊂			1	
	숲속동아	㊃			1	
	숲속그네	㊄			1	
	출현다리	㊅			1	
	빗물다리	㊆			1	
	나무가지집A	㊇			1	
	나무가지집B	㊈			1	
	통나무기어오르기	㊉			1	
	통나무건너기	㊊			2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교양시설	거미줄놀이	㊋			1	
	정자리원터	㊌			6	
	가정경이	㊍			2	
	통나무오르기	㊎			1	
	맛돌오르기	㊏			5	
	모래놀이대	㊐			1	
	그물놀이대	㊑			1	
	그물건너기	㊒			1	
운동시설	소 계		12,181	12,181	13	
	다목적구장	파-1	1,795	1,795		
		파-2	662	662		
	풋 살 장	파-3	1,146	1,146		
	축 구 장	하	8,577	8,577		
	농 구 대	㊓			5	
	운 동 기 구	㊔			8	
편의시설	소 계		15,355	15,355	15	
	주 차 장	거-1	2,695	2,695		
		거-2	6,084	6,084		
		거-3	6,066	6,066		
	화 장 실	1-1	62	62		
		1-2	128	128		
		1-3	50	50		
		1-4	128	128		
	매 점	2-1	75	75		
		2-2	75	75		
	목 고	㊕			2	
	청 정 다 리	㊖			1	
	자전거보관대	㊗			4	
	음 수 대	㊘			7	
	대피소	㊙			1	
관리시설	소 계		267	267	109	
	안 내 소	3-1	34	34		
		3-2	6	6		
		3-3	10	10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관리시설	안 내 소	3-4	6	6		
		3-5			1	
	피 뢰 침 스	㊚				95m
	주차관리소	㊛			4	
	무인정산기	㊜			1	
	휴 지 통	㊝			32	
	분 리 함	㊞			3	
	일반안내판	㊟			13	
	금연표지판	㊠			3	
	방향표지판	㊡			15	
	음구안내판(문주)	㊢			1	
	음구안내판(광미)	㊣			1	
	통합안내판	㊤			2	
	시설안내판	㊥			8	
	놀이터이용수칙안내판	㊦			2	
	공 원 등	㊧			227	
	표 석	㊨			5	
	볼 라 드	㊩			77	
	수목보호대	㊪			5	
	c c t v	㊫			6	
	조 명 타 워	㊬			2	
	광 고	4-1	110	110		
		4-2	40	40		
		4-3	40	40		
		4-4	21	21		
녹지및기타	소 계		140,233			
	녹 지		129,065			
	하 천		10,268			

난지천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월드컵공원

SCALE=1/3,000



■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270,887.0	136,072.1	898	
기반시설	소계		33,666.2	33,666.2		
	도로		30,868.0	30,868.0		
	광장	가-1	2,662.0	2,662.0		
		가-2	36.2	36.2		
조경시설	소계		37,959.0	37,959.0	57	
	야생초화원	나	1,270.0	1,270.0		
	잔디광장	다	26,742.0	26,742.0		
	오리연못	라	7,173.0	7,173.0		
	초화원	마	2,765.0	2,765.0		
	파고라	①			15	중2기
	시계탑	②			2	
	팍구조피크라	③			4	
	앙부벽	④			14	
	목재데크	⑤			2	
	디딤돌	⑦			20	중14기
유양시설	소계		15,237.6	15,237.6	301	
	휴게광장	바	7,895.6	7,895.6		
	피크닉장	사	5,971.0	5,971.0		
	휴게소	아-1	808.0	808.0		
		아-2	186.0	186.0		
		아-3	39.0	39.0		
		아-4	306.0	306.0		
		아-5	30.0	30.0		
	벤치의자	⑥			55	중4기
	등의자	⑨			99	중13기
	사각의자	⑩			26	감2기
	음악의자	⑪			1	
	퍼걸	⑫			5	
	미피소내부의자	⑬			1	
	돔나무테이블	⑭			5	
	목습미이블	⑮			1	
	돔나무의자A	⑯			60	
	돔나무의자B	⑰			47	
유희시설	소계		2,606.0	2,606.0	15	
	종합놀이터	자	1,220.0	1,220.0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유희시설	유아놀이터	차	1,386.0	1,386.0		
	조합놀이대	⑱			2	
	워터볼카	⑲			1	
	오름벽조합놀이대	⑳			1	
	역미차놀이대	㉑			1	
	자동차놀이대	㉒			1	
	그 네	㉓			1	
	순자놀이판넬	㉔			1	
	OX놀이판넬	㉕			1	
	물놀이대	㉖			1	
	지네시소	㉗			1	
	계미림오르기	㉘			1	
	하늘과바람의소리	㉙			1	
	회전하는소리구체	㉚			1	
	시계구리판판	㉛			1	
교양시설	소계		13,731.0	13,731.0	34	
	유아숲체험장	카	9,013.0	9,013.0		
	야외공연장	타	4,718.0	4,718.0		
	나무위의 집A	㉜			1	
	나무위의 집B	㉝			1	
	둥지형	㉞			1	
	무어놀터	㉟			1	
	숲전막A	㊱			1	
	숲전막B	㊲			1	
	숲속집A	㊳			1	
	숲속집B	㊴			1	
	숲속그네	㊵			1	
	줄타다리	㊶			1	
	빗줄다리	㊷			1	
	나무가지집A	㊸			1	
	나무가지집B	㊹			1	
	돔나무아닌의자	㊺			1	
	돔나무관너기	㊻			2	
	거미줄놀이	㊼			1	
	장자리쉼터	㊽			6	
	가방걸이	㊾			2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교양시설	돔나무오르기	㊿			1	
	빗줄오르기	㊿			5	
	모래놀이대	㊿			1	
	그물놀이대	㊿			1	
	그물건너기	㊿			1	
운동시설	소계		17,010.0	17,010.0	20	
	다목적구장	파-1	1,795.0	1,795.0		
		파-2	662.0	662.0		
		파-3	565.0	565.0		
	파크골프장	라	4,186.0	4,186.0		
	풋살장	너	1,146.0	1,146.0		
	축구장	하	8,677.0	8,677.0		
	체력단련장	더	79.0	79.0		
	농구대	㊿			5	
	론볼기구	㊿			15	중1기
관리시설	소계		15,383.8	15,383.8	22	
	주차장	거-1	2,686.0	2,686.0		
		거-2	6,084.0	6,084.0		
		거-3	6,068.0	6,068.0		
	화장실	1-1	62.0	62.0		
		1-2	126.0	128.0		
		1-3	50.0	50.0		
		1-4	128.0	128.0		
		1-5	27.8	27.8		
	매점	2-1	75.0	75.0		
		2-2	75.0	75.0		
	목고	㊿			2	
	철책다리	㊿			2	중1기
	자전거보관대	㊿			4	
	통수대	㊿			8	중1기
	대피소	㊿			1	
	목재계단	㊿			3	중1기
	석재계단	㊿			2	중2기
관리시설	소계		579.5	579.5	449	
	안내소	3-1	34.0	34.0		
		3-2	6.0	6.0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관리시설	안내소	3-3	10.0	10.0		
		3-4	6.0	6.0		
		3-5			1	
	목재통스	㊿				95m
	주차관리소	㊿			4	
	무인정산기	㊿			1	
	휴지통	㊿			32	
	분전함	㊿			3	
	입판안내판	㊿			13	
	교통표지판	㊿			3	
	방향표지판	㊿			15	
	입구안내판(우측)	㊿			1	
	입구안내판(걸이)	㊿			1	
	종합안내판	㊿			2	
	시설안내판	㊿			8	
	놀이터이용수칙안내판	㊿			2	
	공원등	㊿			254	중27기
	표석	㊿			5	
	볼라드	㊿			77	
	수목보호대	㊿			5	
	cctv	㊿			14	중3기
	조명타워	㊿			6	중1기
	펜스	㊿			1	404m
	그물망펜스	㊿			1	100m
	창고	4-4	21	21		
	대기실	5	502.5	502.5		
녹지및기타	소계		134,814.9			
	녹지		124,546.9			
	하천		10,268.0			

평화의공원 조성계획도(변경없음)

SCALE=1/2,000



월드컵공원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휴양시설	소계		30,978	30,978	561	
	휴게소	바-1	2,738	2,738		
		바-2	1,388	1,388		
	피크닉장	사	26,852	26,852		
	평의자	⑨			26	
	등의자	⑩			222	
	통돌의자	⑪			165	
	단식의자	⑫			130	
	원심	⑬			18	
유희시설	소계		3,220	3,220	137	
	놀이터	아	3,220	3,220		
	스카이미크	⑭			1	
	사면놀이대	⑮			1	
	목재계단	⑯			1	
	거울놀이벽	⑰			1	
	네트놀이장	⑱			1	
	미끄럼틀A	⑲			1	
	미끄럼틀B	⑳			2	
	그네	㉑			2	
	곤충광수로	㉒			1	
	기둥빔고건너기	㉓			1	
	네트건너기	㉔			1	
	두줄건너기	㉕			1	
	세줄건너기	㉖			1	
	슬바회장	㉗			70	
	징검다리	㉘			1	
	통나무모험놀이대	㉙			1	
	통나무빔고건너기	㉚			1	
	흔들놀이	㉛			2	
	로프사면놀이대	㉜			4	
	트다사면놀이대	㉝			30	
	볼사면놀이대	㉞			10	
	모래놀이대	㉟			3	
운동시설	소계		2,401	2,401		
	테니스장	자	2,401	2,401		
교양시설	소계		7,105	7,105		
	에너지드림센터	차	7,105	7,105		
관리시설	소계		47,095	47,095	11	
	주차장	카-1	11,153	11,153		
		카-2	18,107	18,107		
		카-3	9,825	9,825		
		카-4	5,721	5,721		
		카-5	519	519		
	매점	1-1	215	215		
		1-2	460	460		
	화장실	2-1	279	279		
		2-2	171	171		
		2-3	391	391		
		2-4	85	85		
		2-5	170	170		
	음수대	㊱			6	
	자전거보관대	㊲			4	
	보행육교	㊳			1	
관리시설	소계		2,680.6	2,680.6	1,331	
	공원관리사업소	3	2,074	2,074		
	안내소	4-1	10	10		
		4-2	10	10		
		4-3	34	34		
		4-4	12	12		
	복책	㊴			1식	L=29M
	주차관리소	㊵			4	
		5-1	–	–		
		5-2	–	–		
		5-3	–	–		
		5-4	–	–		
	분리수거장	6	30	30		
	대합가스 소각장	7	24	24		
	태양열전기실	8	8	8		
	근로자 휴게시설	9	478.6	478.6		
	음향안내판	㊶			5	
	일반안내판	㊷			24	
	공원관도사인	㊸			23	
	올이타운사수직표지판	㊹			1	
	탄구표석	㊺			2	
	휴지통	㊻			12	
	볼라드	㊼			123	
	굴절등	㊽			1,040	
	수목전디조명	㊾			73	
	CCTV	㊿			24	
	태양광발전설비	㋀			142	
녹지및기타	소계		122,386.4	2,500		
	녹지		119,886.4			
	반려견놀이터	타	2,500	2,500		

■ 범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368,510	248,624	2,099	
기반시설	소계		93,974	93,974		
	도로	㐂 - 㐂	36,231	36,231		
	광장	가-1	32,615	32,615		
		가-2	12,293	12,293		
		가-3	7,054	7,054		
		가-4	3,561	3,561		
		가-5	2,220	2,220		
조경시설	소계		58,670	58,670	59	
	생태연못	나	29,511	29,511		
	원형의 정원	다	11,959	11,959		
	잔디마당	라	15,000	15,000		
	시정원	마	2,200	2,200		
	파고라A	①			10	
	파고라B	②			2	
	파고라C	③			6	
	팔각정자	④			1	
	보행데크	⑤			4	
	선상일자벤치도라쉬	⑥			12	
	앞음벽	⑦			4	L=75M
	장승	⑧			2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07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이*혜 포함 4명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405, ***동 ****호(기산동, 신동탄푸르지오) 외
○ 서류의 명칭: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서류의 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한 납부최고

※ 상세 내역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02-2133-3477, 347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4년 5월 13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7월 4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최고 공시송달[2024년 6월]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성명/법인명	우편 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담당자
1	650-140004-202304-2-651-100069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이*혜	2024.05.13.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405, ***동 ****호(기산동, 신동탄푸르지오)	폐문부재	2024.06.20.	767,360	박하나
2	650-140003-202306-2-651-100094	법인지방소득세	이*혜	2024.05.13.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405, ***동 ****호(기산동, 신동탄푸르지오)	폐문부재	2024.06.20.	81,447,830	박하나
3	680-140004-202304-2-655-10012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이*섭	2024.05.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62 ***동 ****호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폐문부재	2024.06.20.	51,241,220	박하나
4	110-140003-202307-2-615-500008	주식회사 포에버링	이*우	2024.05.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121, ***동 ****호 (신대방동, 보라매자이 더 포레스트)	폐문부재	2024.06.20.	46,786,750	임지현
5	680-140003-202309-2-640-500012	비아트리스 주식회사	김*수	2024.05.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23, ****호 (구월동)	폐문부재	2024.06.20.	72,034,570	임지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08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김*환
○ 서류의 송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48, **동 ***호(이촌동, 한강맨션)
○ 서류의 명칭: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
○ 서류의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 상세 내역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02-2133-349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4년 6월 5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7월 4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공시송달[2024년 6월]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성명/법인명	우편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담당자
1	680-140003-202306-2-565-100159	법인지방소득세	김*환	2024.06.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48 **동 ***호(이촌동, 한강맨션)	폐문부재	2024.06.20	23,364,680	박종천
2	680-104102-202310-2-565-001414	주민세(사업소분)	김*환	2024.06.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48 **동 ***호(이촌동, 한강맨션)	폐문부재	2024.06.20	64,370	박종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1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취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정지 처분(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96호)에 대해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행정처분 취소 대상 업체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비고
1	(주)진우씨엠씨 (2004-30)	박재우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2023.1.20.~7.19.)	

- 취소사유 :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판결 선고에 따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18호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표석 신설 및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계획을 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계획
가. 표석 설치 개요 : 신설 1건, 정비 3건

연번	구분	표석명	표석 설치 위치	토 지 소유자	형태 및 규격(cm)
1	신규 설치	3·17민주의거 터	○ 설치지 :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6-1 ○ 유적지 :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6 (옛 영보극장, 현재 영보주차장)	시유	형태 : 바닥형 규격 : 60×60×10 재질 : 화강석
2	명칭 및 문안 수정	3·1독립운동기념터: 중앙학림	○ 설치지 : 종로구 명륜동 1가 2-12	시유	형태 : 판석형 규격 : 95×88×75 재질 : 화강석
3	형태 변경 문안 수정	의령원 터	○ 설치지 : 북아현동 190-1	학교 법인	형태 : 벽부형 규격 : 70×15×6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4	이전 설치 문안 수정	삼전 나루터	○ 현위치 : 송파구 잠실동 48(석촌호수 인근) ○ 이전 설치지 : 송파구 잠실동 289 (삼전역 4번 출구 인근)	시유	형태 : 판석형 규격 : 95×88×75 재질 : 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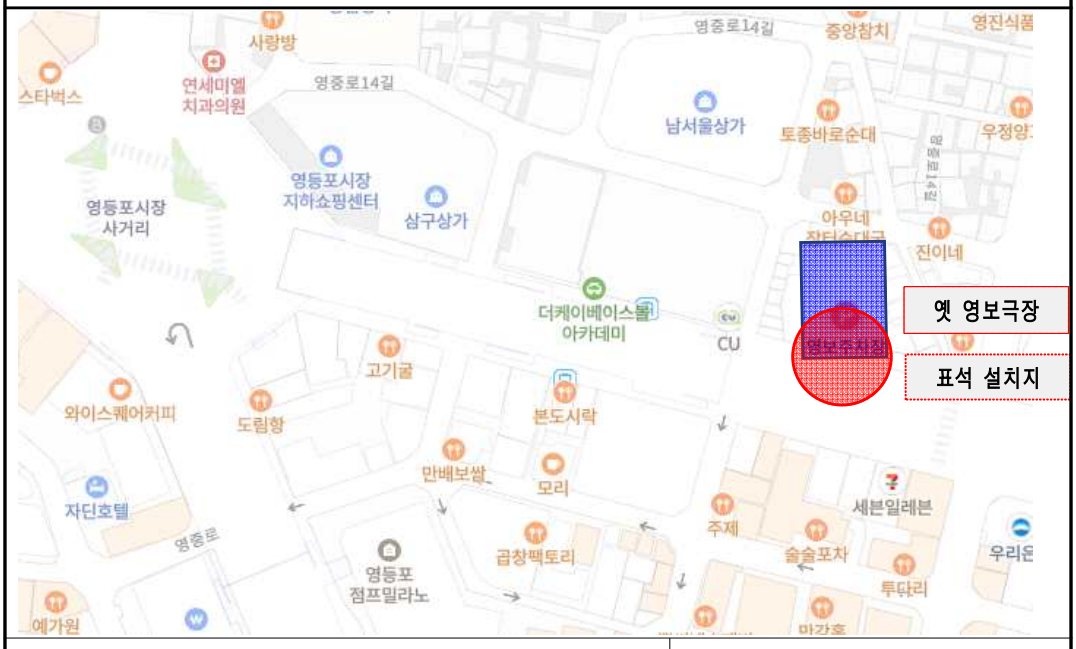
나. 설치 사유
○ (신설) 3 · 17민주의거는 3 · 15부정선거 관련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학생시위의 첫 사례로 서울 학생시위를 고양시키고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를 제정(2021.7.20.)함.
○ (이설 및 문안 수정) 시민들에게 유적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해당 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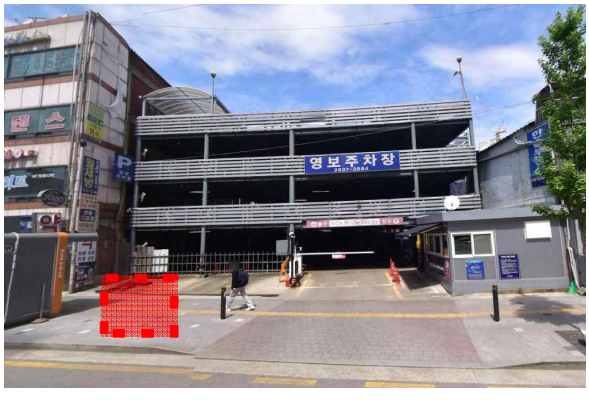
다. 세부 설치 계획

1 [신설] 〈3 · 17민주의거 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3·17민주의거 터 3·17民主義擧址 March 17 Democratic Movement Site
문 안	1960년 3월 17일 3.15부정선거 직후 서울에서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 학생민주운동으로 4.19혁명이 발생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곳은 시위 당시 성명서가 낭독된 영보극장 자리이다.

설치 위치 및 형태







○ 설치지 :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6-1 (옛 영보극장 앞 보도)
○ 유적지 :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6(옛 영보극장, 현재 영보주차장)

○ 형태 : 바닥형
○ 규격 : 60(W)×60(H)×10(D)cm
○ 재질 : 씨블랙(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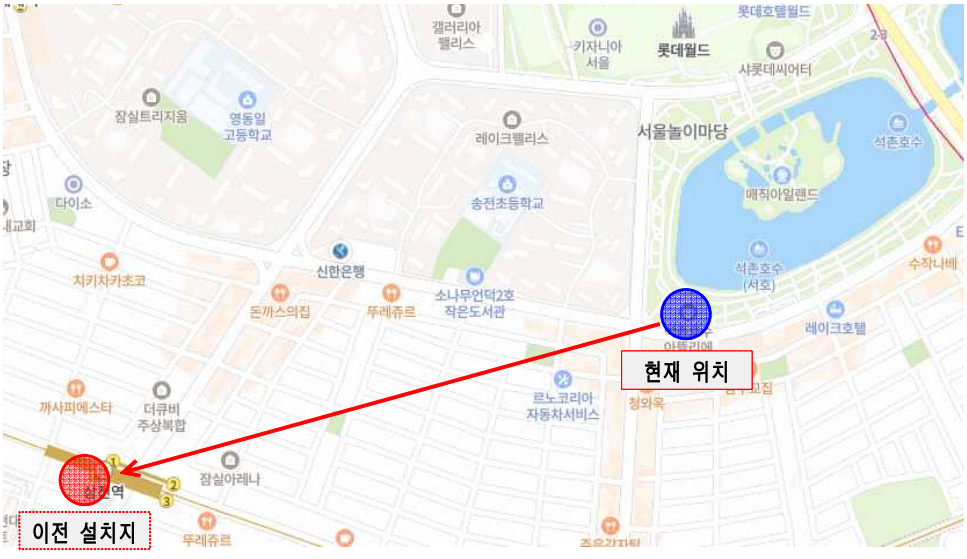
2 [명칭 · 문안 수정] 〈3 · 1독립운동기념터: 중앙학림〉 표석

구 분		내 용
명칭	수정 전	3·1독립운동기념터: 중앙학림 (獨立運動紀念址)(中央學林) ※ 영문 제목 없음
	수정 후	3·1독립운동기념터: 불교중앙학림 獨立運動紀念址: 佛敎中央學林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Site: Central Buddhist School
문안	수정 전	1919년 3 · 1독립운동 거사를 위해 한용운(韓龍雲) 선생이 중앙학림 학생들과 전국 불교인들의 시위 계획을 논의하던 곳
	수정 후	1919년 3 · 1독립운동 거사를 위해 한용운(韓龍雲)이 불교중앙학림 학생들과 전국 불교인들의 시위 계획을 논의한 곳이다. 불교중앙학림은 1946년 필동으로 옮겨서, 지금의 동국대학교가 되었다.

3 [형태 변경 · 문안 수정] 〈의령원 터〉 표석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r>
<tr><td rowspan="2">문안</td><td>수정 전</td><td colspan="2">의령원은 영조의 세손 의소(懿昭)의 묘원(墓園)이다. 의소는 영조 26년(1750) 사도세자의 장자로 태어나 세손으로 책봉되고 다음 해 죽어 이곳에 장사되었다. 세손이었기에 장례 절차며 치장에 격식을 갖추어 속칭 '애기능'이라 불렀으며 1948년 서삼릉으로 옮겨갔다.</td></tr>
<tr><td>수정 후</td><td colspan="2">사도세자의 장자인 의소세손(懿昭世孫)의 묘원이 있던 자리이다. 영조 26년(1750)에 태어나 이듬해에 세손으로 책봉되었으나 2년 후에 창경궁 통명전에서 숨졌다. 처음에는 의소묘(懿昭墓)라 부르다가 고종 7년(1870)에 왕세자와 왕세손의 묘호를 일괄하여 원(園)으로 승격하면서 의령원으로 고쳤다. 1949년 6월에 서삼릉으로 옮겼다.</td></tr>
<tr><td rowspan="2">형태</td><td>변경 전</td><td>변경 후</td></tr>
<tr><td>  </td><td>  </td></tr>
<tr><td colspan="2">형태 : 벽돌형
규격 : 1100(W)×1400(H)cm
재질 : 벽돌, 동판</td><td>형태 : 벽부형
규격 : 70(W)×15(H)×6(D)cm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td></tr>
</table>

④ [이설 · 문안 수정] 〈삼전 나루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칭	수정 전	삼전 나루터 三田渡址 ※ 영문 제목 없음
	수정 후	삼전 나루터 三田渡址 Samjeon Quay Site
문안	수정 전	경기도 광주, 여주 일대와 서울을 이어주던 유명한 나루터
	수정 후	서울(漢陽)과 경기도 광주, 이천 일대를 이어주던 나루로, 옛 잠실도(蠶室島)와 부리도(浮里島), 삼전동 사이를 건너는 곳이었다. 조선 시대에 임금이 헌릉(獻陵)에 행차할 때 이용했으며 군사적으로도 중요시되었다. 1971년 잠실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한강의 유로가 변경되면서 나루가 없어졌다.
설치 위치		 현재 위치 : 송파구 잠실동 48(석촌호수 인근) 이전 설치지 : 송파구 잠실동 289(삼전역 4번 출구 인근)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가. 제출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① 전화 : (02) 2133-2621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한국프레스센터) 4층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라.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표석 설치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대 상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견제출 내용				

「표석 신설 및 정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19호

도시관리계획(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1번지 일대 동서울터미널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기획담당관(☎02-2133-8358)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5층 도시계획과(☎02-450-7687)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546-1 일원	-	증)100,261.3㎡	100,261.3㎡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822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4. 6. 20. ~ 2024. 7. 4.(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4건																
1	20223509	195허4608	모닝	0000473392142 0120240425003 538	도봉산역	0000:37	2024-03-02	13:26	2024-03-02	14:03	600	0	600	(주) *카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삼호로63	수취인불명	2024-06-28
2	20223838	76버9349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0000473392142 0120240425003 086	수서역	0001:44	2024-03-16	15:16	2024-03-16	17:00	6,700	0	6,700	김*기	경기도안산시상록구건건8길10	폐문부재	2024-06-28
3	20223874	340구7008	K5	0000473392142 0120240425002 734	세종로	0002:45	2024-03-24	15:52	2024-03-24	18:37	14,100	0	14,100	김*우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송화로166번길40-11	이사불명	2024-06-28
4	20223941	24오0325	SM6	0000473392142 0120240425002 176	영등포구청역	0001:12	2024-03-16	11:46	2024-03-16	12:58	3,900	0	3,900	이*웅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8길36-1	이사불명	2024-06-2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총괄담당관”을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유보통합추진단) ①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유보통합 업무 총괄
2. 서울시 및 자치구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 추진
3.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통합모델 운영에 관한 사항
5.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6. 유보통합 현장 자문단 운영
7.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 대비 협의체 운영
8. 유보통합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9. 유보통합 정책 홍보
10. 그 밖의 유보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 및 학교도서관시스템(DLS)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호 중 “교육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학생정보통신기술 활용 경진대회”를 “디지털 활용 연구대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를 “안전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를 “안전환경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안전환경부) ① 안전환경부에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 및 환경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환경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7. 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4.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지원 및 통계관리
5.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실시
6.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⑤ 환경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환경위생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 환경위생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실내 공기질 표본 및 특별 점검
4. 대기오염 대응 및 교육·홍보
5. 학교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 지원 사업
6. 학교 먹는 물 표본 및 특별점검
7.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지원 사업
8. 학교 교실 청소용역 지원 사업
9. 학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보건지원과, 환경지원과”를 “보건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을 “보건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4항제6호 중 “시설 민간위탁용역”을 “시설관리 용역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교 수영장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제51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학교시설보수반 지원 예약 시스템 운영

규칙 제105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2024.7.1.자 유보통합추진단 신설 등을 위한 분장사무 명시
 나. 보건안전진흥원 기능 강화(보건, 급식, 환경, 산업안전 등)에 따른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다. 부서 간 분장사무 조정, 신규업무 반영,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및 중복표현 정리 등을 위한 사무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가. 부교육감 직속「유보통합추진단」신설(제3조)
 나.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에 따른 단장 직급 및 분장사무 신설(제7조의2)
 다. 교육연구정보원의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사무정비 추진(제14조제3항, 제17조 및 제18조)
 라. 보건안전진흥원 내 「안전환경부」및 부장 직급 신설(제41조)
 마. 안전환경부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조정
  - 행정지원과(제42조), 산업안전보건지원과(제43조), 보건급식부 내 환경지원과(제44조) 분장사무를 신설된 안전환경부로 이관(제41조의 2)
 바. 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장사무 신설 및 현행화(제50조 및 제51조)
 사. 법률의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8692호 부칙 제2조와 중복 조항인 규칙 제1059호 제2조 삭제(한시기구인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 관련)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5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6	1,826	1,366	4,524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25	6	1,544	1,051	4,524
	2 · 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 · 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4	–	33	11	–
		서기관	39	–	29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	4	1	–
	4 · 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38	1	151	55	131
		교육행정	248	1	89	41	117
		행정	6	–	6	–	–
		사서	30	–	30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 · 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1,958	5	519	286	1,148
		교육행정	1,252	5	222	162	863
		전산	51	–	29	22	–
		사서	131	–	120	11	–
		공업	12	–	10	–	2
		녹지	1	–	1	–	–
		보건	19	–	9	10	–
		식품위생	6	–	4	–	2
		간호	5	–	5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시설	41	-	18	23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287	-	43	11	233
		운전	5	-	2	-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10	-	4	-	6
일반직	6급	열관리운영	22	-	12	-	10
		사무운영	61	-	24	12	25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 · 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7급	소계	2,684	-	581	466	1,637
		교육행정	1,638	-	255	322	1,061
		전산	58	-	47	11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녹지	1	-	1	-	-
		보건	31	-	17	14	-
		간호	5	-	5	-	-
		시설	49	-	20	29	-
		시설관리	522	-	20	15	487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140	-	21	33	86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8급	소계	2,060	-	230	222	1,608
		교육행정	1,289	-	67	118	1,104
		전산	24	-	13	11	-
		사서	85	-	85	-	-
		공업	14	-	2	12	-
		보건	21	-	4	17	-
		시설	50	-	8	42	-
		시설관리	547	-	43	6	498
		운전	12	-	1	5	6
		전기운영	-	-	-	-	-
일반직	8급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정직	별정직 계		8	-	8	-	-
	4급 상당(비서)		1	-	1	-	-
	5급 상당(비서)		4	-	4	-	-
	6급 상당(비서)		3	-	3	-	-
특정직	특정직 계		588	-	273	315	-
	장학관·교육연구관	소계	124	-	68	56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3	-	39	34	-
	장학사·교육연구사		464	-	205	259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2024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나. 일반직공무원 정·현원 불일치 해소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 4급 (증)2명, 5급 (감)2명, 6급 (증)16명, 7급 (증)1명, 8급 (감)5명, 계 (증)12명

○ 교육지원청
: 6급 (증)2명, 7급 (증)7명, 8급 (증)2명, 계 (증)11명

○ 각급학교
: 6급 (증)24명, 7급 (감)19명, 8급 (감)28명, 계 (감)23명

나. 일반직공무원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 4급: 서기관 (증)2명, 계 (증)2명

○ 5급: 교육행정 5급 (감)2명, 계 (감)2명

○ 6급: 교육행정 6급 (증)18명, 시설관리 6급 (감)1명, 전기운영 6급 (증)7명, 열관리운영 6급 (증)12명, 사무운영 6급 (증)6명, 계 (증)42명

○ 7급: 교육행정 7급 (증)8명, 시설 7급 (증)1명, 전기운영 7급 (감)5명, 열관리운영 7급 (감)12명, 사무운영 7급 (감)3명, 계 (감)11명

○ 8급: 교육행정 8급 (감)21명, 시설관리 8급 (감)4명, 전기운영 8급 (감)3명, 사무운영 8급 (감)3명, 계 (감)31명

다. 특정직공무원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장학관 · 교육연구관 (증)1명, 장학사 · 교육연구사 (감)1명

구 고 시

◈ 중랑구고시 제2024-61호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6호(2016.07.07.)로 결정된 중랑구 면목동 612-14번지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중 랑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면목동 612-14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필지분할 가능선 신설로 대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함

2.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획지에 관한 사항)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대지에 관한 결정 조서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D6	면목동 612-14	91.6	면목동 612-14(A)	66.6	· 필지분할 가능선 지정 · 필지분할 가능선을 중심으로 양쪽 1m 범위내에서 필지를 분할하여야 함
			면목동 612-14(B)	25	

※ 기타 지구단위계획은 변경 없으며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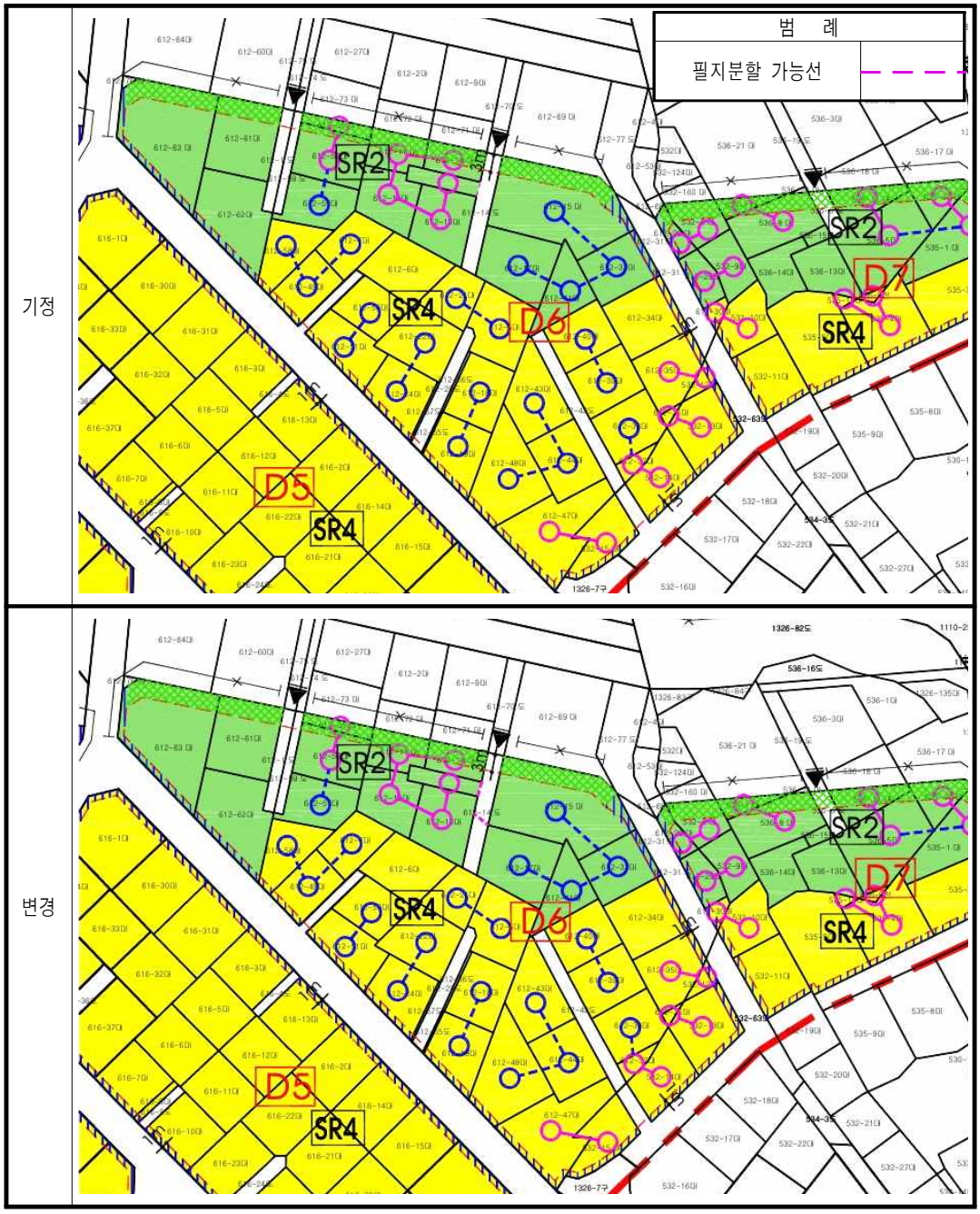
3. 관계도서 :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붙임)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4.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과(☎ 2094-218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위치: 중랑구 면목동 612-14, 축척: 1/1,000)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



※ 상기 필지분할가능선 외 변경사항 없음

◈ 노원구고시 제2024-38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연구시설, 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최초)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639호(1987.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호(1996.1.9.)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제2010-462호(2010.12.16.)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연구시설, 도서관)변경 결정, 노원구고시 제2021-166호(2021.1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4-3호 일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연구시설,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932호(2024.5.23.)로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 된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연구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최초)인가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문화도시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02-2116-7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4-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공·문화체육시설(문화시설,연구시설,공공청사)
   나. 사업명칭 :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별동 증축)
3. 사업면적 및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높이(m)	비 고
6,541.40	계	2,402.16	계	15,715.35	140.88	36.72	19.5	
	기존	1,842.89	기존	13,167.48				
	별동 증축	559.27	별동 증축	2,547.8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4년 10월
   나. 준공예정일 : 2026년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중계동 364-3	대지	6,541.40	6,541.40	노원구	-	노원구 노해로 437	-	-	-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해당없음

8. 참고사항(위치도)



◈ 서초구고시 제2024-119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2020.09.24.)로 결정 고시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 획지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지 번	면적 (㎡)	계획내용	
				기 정	변 경
SR4	획지의 규모 및 조성	방배동 951-19,23	689	방배동 951-19,23 단독개발	방배동 951-19,23 공동개발 지정

4. 관계도면 : 붙임 도면(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도) 참조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9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방배동 951-19,23

기 정	변 경
	

◈ 송파구고시 제2024-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국토교통부 고시 제198호(1971.4.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9-10호(2019.1.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0-133호(2020.12.3.)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15호(2021.6.17.), 송파구 고시 제2023-136호(2023.11.2.)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24년 6월 20일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37-16번지 일원 [변경없음]
(송파구 방이동 437-16번지 외 1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노선명	구분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대로 3-69	결정	25~36	5,973	150,148	송파구오금동(대2-67)	강동구 암사동(중2-134)	일반도로	-	건고198(1971.4.7)	-
	인가	2.5~8.4	170	820	송파구 방이동 437-16	송파구 방이동 436-56	-	-	-	-
중로 1-A	결정	23.5	36.4	1,024	서울시계 방이동 443-28	방이동 437-16	일반도로	-	송파구고시 제2019-10호(2019.1.17)	-
	인가	23.5	36.4	1,024	서울시계 방이동 443-28	방이동 437-16	-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 2020.12.3. ~ 2024.6.30.
○ 변경 : 2020.12.3. ~ 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생략(토지조서 변동 없음)

7) 공공시설(도로)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 구간에 대하여는 시설물 준공 후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송파구)에 무상귀속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도로과(신관 7층)(☎02-2147-3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고시 제2024-103호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2호(2020. 12. 31.)로 결정(변경)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강 동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2호(2020. 12. 31.)로 결정(변경)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대지 내 전면공지 조성에 대해 변경(경미한 사항)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8	6~15	국지도로	93	천호동 551-7	천호동 541-2	1994.10.5. (강동구고시 제47호)	
변경	소로	3	8	6~15	국지도로	93	천호동 551-7	천호동 541-2	1994.10.5. (강동구고시 제47호)	면적 감소

• 도로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8	소로 3-8	• B=6~15m (면적 감6㎡) • L=93m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동측 인접건축물 저촉구간의 원활한 도로 조성을 위해 면적 6㎡(5%이내)감소

나.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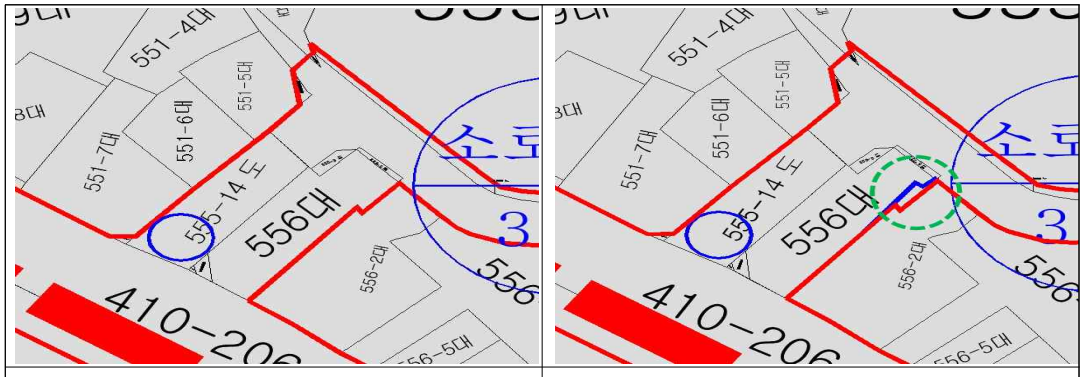
• 전면공지 조성(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비 고
대지 내 전면공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자 '보도부속형' 으로 변경 • '천호3동 복합청사' 단지 주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대지 내 우수유입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방지를 위해 변경	• 교통사고 예방을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요청(강동경찰서)

※ 조서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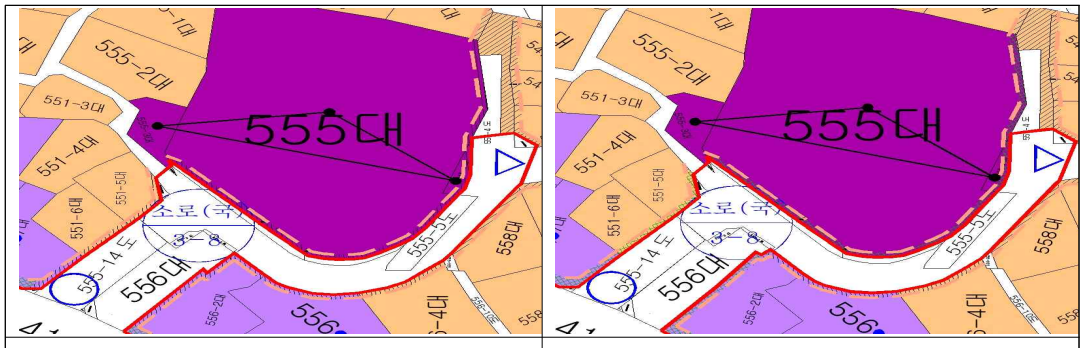
다.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 도시계획시설(도로)



기 정	변 경

2) 대지 내 공지



기 정	변 경

Ⅲ. 관계도서: 생략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공 고

◈ 중랑구공고 제2024-88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능말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93호(2007.07.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17-319호(2017.05.3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었으며, 건설교통부고시 제2016-778호(2016.11.28.)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능말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중 랑 구 청 장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817-5 일대
나. 공원면적 : 19,098.6㎡
다. 변경내용 : 능말근린공원 내 문화·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겸비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원조성 계획(변경)
라.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마. 열람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02-2094-2356)
바. 관계도서 : 조성계획도, 결정조서 등 일체 서류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능말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중랑구 신내동 817-5번지 일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9,101.0	3,173.20				75	19,098.60	4,399.37				77	
기반시설	소 계	2,793.40	2,793.40					3,208.30	3,208.30					
	도 로	1,133.90	1,133.90					1,150.30	1,150.30					도로 변경 16.4㎡ 증가
	광 장	1,659.50	1,659.50					2,058.00	2,058.00				1	광장 신설 356.0㎡ 증가 도로->광장 42.5㎡ 증가
조경시설							8						8	
유희시설														
휴양시설		270.80	270.80				47	270.80	270.80				47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811.27	811.27		532.58	2536.86		공공도서관 신설 811.27㎡ 증가
운동시설	102.00	102.00				15	102.00	102.00				15	
편익시설						3						3	
관리시설	7	7				2	7	7				3	
녹지 및 기타	15,927.80	-					14,699.23	-					녹지면적 1,228.57㎡ 감소
시설율 (법정 40%)	(3,173.20 / 19,101.00) × 100 = 16.60%						(4,399.37 / 19,098.60) × 100 = 23.04%						
건폐율 (법정 20%)							(532.58 / 19,098.60) × 100 = 2.79%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9,101.0	3,173.20					75			19,098.60	4,399.37					77	
기반시설	소 계			2,793.40	2,793.40								3,208.30	3,208.30					1	
	도 로			1,133.90	1,133.90								1,150.30	1,150.30						
	광 장			1,659.50	1,659.50								2,058.00	2,058.00						
		1		(417.45)	(417.45)						1		459.95	459.95						
		2		(1,242.05)	(1,242.05)						2		1,242.05	1,242.05						
											3		356.00	356.00						
											A								1	
조경시설	소 계									8									8	
	배조형물	A								4	B								4	
	첨경물	B								4	C								4	

구분		변전정								변전정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도시안전시설	소계			270.80	270.80					47			270.80	270.80					47	
	휴게소	C		258.00	258.00					2	1		258.00	258.00						
		D		12.80	12.80					1	2		12.80	12.80						
		E								44	C								2	
											D								1	
											E								44	
도시안전시설	소계			102.0	102.0					15			102.0	102.0					15	
	체험단련장	①		26.3	26.3						①		26.3	26.3						
		②		25.7	25.7						②		25.7	25.7						
		③		27.3	27.3						③		27.3	27.3						
		④		22.7	22.7						④		22.7	22.7						
		F								15	G								1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 계												811.27	811.27			532.58	2,536.86		
	도서관												532.58	532.58			532.58	2,536.86		
	부설 주차장												278.69	278.69						
편의시설	소 계									3									3	
	안내판	G								3	H								3	
관리시설	소 계			7	7					2			7	7					3	
	돌담	H		7	7						I		7	7						
	자전거 보관대	I								2	J								2	
	안전펜스										K								1	26.43m
녹지 및 기타	소 계			15,927.80									14,699.23							
	녹지			8,427.80									6,723.93							
	유수지	①		(7,500)	(7,500)						①		(7,975.30)	(7,975.3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85.30	1,133.90				
변경					382.00	1,150.30				
당초	소로	소 계			385.30	1,133.90				
변경					382.00	1,150.30				
당초		3류	1	3.0	30.0	90.00	진입로	2BL	광장2	
당초		3류	2	5.0	98.0	513.00	진입로	2BL	도로	
당초		3류	3	2.0	124.0	248.00	진입로	도로	소류3류-2	
변경		3류	4	6.0	9.8	58.90	진입로	도로	주차장	
당초		3류	1	2.0	14.5	29.00	연결로	소로3류-3	소로3류-2	
당초		3류	2	2.0	24.0	48.00	연결로	소로3류-3	소로3류-2	
당초		3류	3	2.0	81.7	163.40	연결로	광장2	광장2	

능말근린공원 조성계획도

조 성 계 획 도 (변경전)

능말근린공원



■시설 범례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총 계		공원	19,101.0	-	-	-	75	
		시설부지	3,173.2	-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2,793.40	-	-	-	-	
		도 로	1,133.90	-	-	-	-	
	1	광장1	417.45	-	-	-	-	
	2	광장2	1,242.05	-	-	-	-	
교양시설		소 계	-	-	-	-	8	
	A	배조정물	-	-	-	-	(4)	
	B	정경물	-	-	-	-	(4)	
휴양시설		소 계	270.80	-	-	-	47	
	①	휴게소 1	(258.00)	-	-	-	-	
	②	휴게소 2	(12.80)	-	-	-	-	
	C	조형파고라	-	-	-	-	(2)	
	D	연석파고라	-	-	-	-	(1)	
	E	벤치	-	-	-	-	(44)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운동시설		소 계	102.0	-	-	-	15	
	①	체력단련장 1	(26.3)	-	-	-	-	
	②	체력단련장 2	(25.7)	-	-	-	-	
	③	체력단련장 3	(27.3)	-	-	-	-	
	④	체력단련장 4	(22.7)	-	-	-	-	
	F	체력단련시설	-	-	-	-	(15)	
편익시설		소 계	-	-	-	-	3	
	G	안내판	-	-	-	-	(3)	
공원관리시설		소 계	7.00	-	-	-	2	
	H	동담	7.00	-	-	-	-	17.0m
	I	자전거보관대	-	-	-	-	(2)	
녹지 및 기타		소 계	15,927.80	-	-	-	-	
		녹지	8,427.80	-	-	-	-	
	①	유수지	(7,500.00)	-	-	-	-	

■동선 계획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385.30	1133.90				
소로	3류	1	3.0	30.0	90.00	진입로	2BL	광장2	
소로	3류	2	5.0	111.1	555.50	진입로	2BL	도로	
소로	3류	3	2.0	124.0	248.00	진입로	도로	소로3류-2	
소로	3류	1	2.0	14.5	29.00	연결로	소로3류-3	소로3류-2	
소로	3류	2	2.0	24.0	48.00	연결로	소로3류-3	소로3류-2	
소로	3류	3	2.0	81.7	163.40	연결로	광장2	광장2	

조 성 계 획 도 (변경후)

능말근린공원



■시설 범례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총 계		공 원	19,098.6	1	532.58	2,536.86	77	
		시설부지	4,399.37	-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3,208.3	-	-	-	1	
		도 로	1,150.3	-	-	-	-	
	1	광장1	459.95	-	-	-	-	
	2	광장2	1,242.05	-	-	-	-	
	3	광장3	356.00	-	-	-	-	
	A	클럽터		-	-	-	(1)	
교양시설		소 계	-	-	-	-	8	
	B	배조형물	-	-	-	-	(4)	
	C	정경물	-	-	-	-	(4)	
휴양시설		소 계	270.8	-	-	-	47	
	①	휴게소 1	(258.0)	-	-	-	-	
	②	휴게소 2	(12.8)	-	-	-	-	
	D	조형파고라	-	-	-	-	(2)	
	E	연석파고라	-	-	-	-	(1)	
	F	벤치	-	-	-	-	(44)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운동시설		소 계	102.0	-	-	-	15	
	①	체력단련장 1	(26.3)	-	-	-	-	
	②	체력단련장 2	(25.7)	-	-	-	-	
	③	체력단련장 3	(27.3)	-	-	-	-	
	④	체력단련장 4	(22.7)	-	-	-	-	
	G	체력단련시설	-	-	-	-	(15)	
교양시설		소 계	811.27	1	532.58	2,536.86	-	
	①	도서관	811.27	(1)	(532.58)	(2,536.86)	-	
편익시설		소 계	-	-	-	-	-	
	H	안내판	-	-	-	-	(3)	
공원관리시설		소 계	7.0	-	-	-	3	
	I	동담	7.0	-	-	-	-	
	J	자전거보관대	-	-	-	-	(2)	
	K	안전펜스	-	-	-	-	(1)	26.43m
녹지 및 기타		소 계	14,699.23	-	-	-	-	
		녹지	6,723.93	-	-	-	-	
	①	유수지	(7,975.3)	-	-	-	-	중복지정

■동선 계획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382.0	1,150.3				
소로	3류	1	3.0	30.0	90.0	진입로	2BL	광장2	
소로	3류	2	5.0	98.0	513.0	진입로	2BL	도로	
소로	3류	3	2.0	124.0	248.0	진입로	도로	소로3류-2	
소로	3류	4	6.0	9.8	58.9	진입로	도로	주차장	
소로	3류	1	2.0	14.5	29.0	연결로	소로3류-3	소로3류-2	
소로	3류	2	2.0	24.0	48.0	연결로	소로3류-3	소로3류-2	
소로	3류	3	2.0	81.7	163.4	연결로	광장2	광장2	

◈ 강북구공고 제2024-837호

2019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1982.9.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서울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되고, 강북구고시 제2019-36호(2019.3.14.)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강북구고시 제2019-156호(2019.10.31.), 강북구고시 제2019-174호(2019.12.12.) 및 강북구고시 제2022-56호(2022.4.14.)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한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오동근린공원(강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사업기간 연장)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강북구 번동 미아동 산1-4번지 등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2019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1) 사업의 규모: 48필지 49,810㎡
  2) 사업의 내용: 공원조성(토지보상)
라. 변경사유: 사업기간(준공예정일) 변경
마. 사업기간(변경)
  1) 당 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2019. 3. 14. ~ 2024. 3. 13.)
  2)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5.12.31.까지(2019. 3. 14. ~ 2025. 12. 31.)
바.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사.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변경없음
자. 열람기간: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02-901-692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2019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용할 토지 (당초, 분할 전)			사용할 토지 (분할에 따른 일부 지번변경)		지목	지적면적 (㎡)	사용면적 (㎡)	토지소유주			이해관계인			비고
구분	연번	소재지지번	연번	소재지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총 계						49,810	49,810							
강북구 고시 2019-156호 / 강북구 고시 2022-56호	1	미아동 산1-4	1	미아동 산1-4	임야	3,441.00	3,441.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	미아동 산34-2	2	미아동 산34-10	임야	863.00	863.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3	미아동 산25-1	3	미아동 산25-74	묘지	1,722.00	1,722.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4	미아동 산25-58	4	미아동 산25-75	묘지	371.00	371.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5	미아동 산25-60	5	미아동 산25-76	묘지	1,113.00	1,113.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6	미아동 산25-62	6	미아동 산25-78	묘지	22.00	22.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7	미아동 산25-64	7	미아동 산25-79	묘지	799.00	799.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8	번동 산8	8	번동 산8	임야	1,388.00	1,388.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9	번동 산7-3	9	번동 산7-3	임야	1,974.00	1,974.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0	번동 산9-3	10	번동 산9-8	임야	1,625.00	1,625.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1	번동 522	11	번동 522-1	전	231.00	231.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2	번동 산12	12	번동 산12	임야	1,091.00	1,091.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3	번동 산13	13	번동 산13	임야	694.00	694.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4	번동 산15	14	번동 산15	임야	1,884.00	1,884.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5	번동 507	15	번동 507	임야	50.00	5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6	번동 508	16	번동 508	임야	162.00	162.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7	번동 508-1	17	번동 508-1	임야	16.00	16.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사용할 토지 (당초, 분할 전)			사용할 토지 (분할에 따른 일부 지번변경)		지목	지적면적 (㎡)	사용면적 (㎡)	토지소유주			이해관계인			비고
구분	연번	소재지지번	연번	소재지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18	번동 508-2	18	번동 508-2	임야	199.00	199.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9	번동 산19	19	번동 산19-11	임야	6,613.00	6,613.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0	번동 산19-2	20	번동 산19-2	임야	8.00	8.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1	번동 산19-3	21	번동 산19-3	임야	93.00	93.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2	번동 산19-5	22	번동 산19-5	임야	300.00	30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3	번동 산19-8	23	번동 산19-12	임야	1,992.00	1,992.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4	번동 산20-1	24	번동 산20-6	임야	7,979.00	7,979.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5	번동 산22-1	25	번동 산22-4	임야	189.00	189.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6	번동 산22-2	26	번동 산22-5	임야	804.00	804.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7	번동 산23	27-1	번동 산23-31	임야	1,136.00	1,136.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7-2	번동 산23-32	임야	2,669.00	2,669.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8	번동 산23-30	28	번동 산23-30	임야	175.00	175.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9	번동 산27-8	29	번동 산27-122	임야	2,947.00	2,947.00	양주**대종회	서울 강북구 번동 ***-*					부지사용계약 (강북구공고 2023-896호)
	30	번동 산27-38	30	번동 산27-123	임야	174.00	174.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31	번동 산27-40	31	번동 산27-124	임야	243.00	243.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32	번동 산27-92	32	번동 산27-92	공원	451.00	451.00	양주**대종회	서울 강북구 번동 ***-*					부지사용계약 (강북구공고 2023-896호)
	33	번동 122-55	33	번동 122-59	임야	197.00	197.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34	번동 122-56	34	번동 122-60	임야	118.00	118.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35	번동 122-57	35	번동 122-61	임야	192.00	192.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강북구 고시 2019-174호 / 강북구	1-1	미아동 산25-80	36	미아동 산25-80	묘지	300.00	30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1	번동 산23-33	37	번동 산23-33	임야	665.00	665.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3-1	번동 산23-35	38	번동 산23-35	임야	393.00	393.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사용할 토지 (당초, 분할 전)			사용할 토지 (분할에 따른 일부 지번변경)		지목	지적면적 (㎡)	사용면적 (㎡)	토지소유주			이해관계인			비고
구분	연번	소재지지번	연번	소재지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고시 2022-56호	4-1	번동 산27-125	39	번동 산27-125	임야	476.00	476.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4-2	번동 산27-126	40	번동 산27-126	임야	379.00	379.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5-1	번동 산27-127	41	번동 산27-127	임야	350.00	35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5-2	번동 산27-128	42	번동 산27-128	임야	455.00	455.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6-1	번동 산27-129	43	번동 산27-129	임야	400.00	40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7-1	번동 산27-130	44	번동 산27-130	임야	310.00	31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8-2	번동 산27-132	45	번동 산27-132	임야	450.00	45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강북구 고시 2019-36호 / 강북구 고시 2022-56호	9	미아동 산25-69	46	미아동 산25-69	묘지	707.00	707.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0	미아동 산25-70	47	미아동 산25-70	묘지	225.00	225.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1	미아동 산25-71	48	미아동 산25-71	묘지	275.00	275.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12	미아동 산25-73	49	미아동 산25-73	묘지	500.00	50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 도봉구공고 제2024-100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58호(2023.08.2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도 봉 구 청 장

1. 공 원 명 : 초안산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77번지 일대
3. 면 적 : 897,270.8㎡
4. 주요 변경내용
   - 광장 : 8,610.01㎡ → 8,704.11㎡ (증 94.1㎡)
   - 운동시설 : 43,200.55㎡ → 42,211.25㎡ (감 220㎡)
   - 교양시설 : 13,265.76㎡ → 13,634.76㎡ (증 369㎡)
   - 편익시설 : 10,066.19㎡ → 10,044.99㎡ (감 21.2㎡)
   - 녹지 및 기타 : 719,410.65㎡ → 716,773.95㎡ (감 2,636.7㎡)
5.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 : 00~18 : 00)
6.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02-2091-3753/도봉구 마들로 656)
7.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노원구 월계동 산1번지 일대) (도봉구 + 노원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897,270.8	149,722.1	29동	7,816.75	13,470.47	767	893,866.80	148,954.80	30동	8,088.34	13,736.08	767	감) 3,404.0
시설면적	기반시설	소계	73,943.01	51,574.01					74,037.11	51,668.11					증) 94.1
		도로	65,333.0	42,964.0 (22,369.0)					65,333.0	42,964.0 (22,369.0)					
		광장	8,610.01	8,610.01					8,704.11	8,704.11					증) 94.1
	조경시설		21,448.3	18,553.09				56	21,228.30	18,333.09				56	감) 220.0
	휴양시설		13,640.52	13,640.52	6동	157.14	157.14	358	13,640.52	13,640.52	6동	157.14	157.14	358	
	유희시설		1,270.08	1,270.08				3	1,270.08	1,270.08				3	
	운동시설		43,200.45	42,264.45	5동	4,514.25	7,849.72	21	42,211.25	41,275.25	5동	4,514.25	7,849.72	21	감) 989.2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13,265.76	10,990.06	7동	2,274.85	4,528.90	1	13,634.76	11,359.06	8동	2,567.64	4,476.5	1	증) 369.0
	편익시설	10,066.19	9,796.19	5동	400.22	400.22	22	10,044.99	9,774.99	5동	379.02	379.02	22	감) 21.2
	관리시설	1,025.84	833.70	6동	470.29	534.49	306	1,025.84	833.70	6동	470.29	534.49	306	
녹지·기타	녹지	718,610.65						715,973.95						감) 2,636.7
	동물놀이터	800	800					800	800					
공원시설률 (법정40%)		(149,722.1㎡/ 897,270.8㎡) x 100% = 16.68%						(148,954.8㎡/ 893,866.8㎡) x 100% = 16.66%						
공원건폐율 (법정 20%)		(7,816.75㎡/ 897,270.8㎡) x 100% = 0.87%						(8,088.34㎡/ 893,866.8㎡) x 100% = 0.90%						

※총괄표(구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계	897,270.8	149,722.1	29동	7,816.75	13,470.47	767	893,866.8	148,954.80	30동	8,088.34	13,736.08	767	
도봉구	408,034.5	88,027.43	12동	4,165.46	8,310.38	312	404,630.5	87,416.13	13동	4,437.05	8,575.99	312	
노원구	489,236.3	61,694.67	17동	3,651.29	5,160.09	455	489,236.3	60,738.67	17동	3,651.29	5,160.09	455	

나. 시설조서(총괄)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계				897,270.80	149,722.1		29동	7,816.75	13,470.47	767			893,866.80	148,204.80		30동	8,088.34	13,736.08	767	
기반시설	소계			73,943.01	51,574.01								74,037.11	51,668.11						증)94.1
	도로			65,333.0	42,964.0								65,333.0	42,964.0						
					(22,369)	( ) 도시계획도로								(22,369)	( ) 도시계획도로					
	진입광장	가	16개소	4,400.08	4,400.08						가	16개소	4,400.08	4,400.08						
		가-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75.25	175.25					(1)	가-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75.25	175.25					(1)	
		가-2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22.0	122.0						가-2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22.0	122.0						
		가-3	도봉구 창동 677공	859.4	859.4					(14)	가-3	도봉구 창동 677공	859.4	859.4					(14)	
		가-5	도봉구 창동 산194-2공	374.6	374.6					(1)	가-5	도봉구 창동 산194-2공	374.6	374.6					(1)	

구분	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기반	진입광장	가-6	도봉구 창동 677공	174.0	174.0						가-6	도봉구 창동 677공	174.0	174.0						
		가-7	노원구 월계동 749-2전	358.76	358.76						가-7	노원구 월계동 749-2전	358.76	358.76						
		가-8	노원구 월계동 916-4전	486.67	486.67						가-8	노원구 월계동 916-4전	486.67	486.67						
		가-10	도봉구 창동 677공	628.7	628.7					(기)	가-10	도봉구 창동 677공	628.7	628.7					(기)	
		가-11	도봉구 창동 산137-1임	435.0	435.0						가-11	도봉구 창동 산137-1임	435.0	435.0						
		가-1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87.83	187.83						가-1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87.83	187.83						
		가-1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06.69	206.69						가-1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06.69	206.69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시설	휴게광장	가-14	도봉구 창동 산159-6과	49.61	49.61						가-14	도봉구 창동 산159-6과	49.61	49.61						
		가-15	도봉구 창동 산159-2과	31.32	31.32						가-15	도봉구 창동 산159-2과	31.32	31.32						
		가-16	도봉구 창동 산157임	30.25	30.25						가-16	도봉구 창동 산157임	30.25	30.25						
		가-18	도봉구 창동 산163-5임	122	122						가-18	도봉구 창동 산163-5임	122	122						
		가-19	도봉구 창동 357-1공	158	158						가-19	도봉구 창동 357-1공	158	158						
		나	14개소	3,572.96	3,572.96						나	13개소	3,667.06	3,667.06						증)94.1
		나-4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30.25	130.25						나-4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30.25	130.25					(1)	
		나-6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67.25	67.25						나-6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67.25	67.25					(1)	
		나-7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366.5	366.5						나-7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366.5	366.5					(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기반시설	휴게광장	나-10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220.0	220.0						나-10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220.0	220.0						
		나-12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10.0	110.0						나-12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10.0	110.0						
		나-13	도봉구 창동 428공	979.0	979.0						나-13	도봉구 창동 428공	979.0	979.0						
		나-16	도봉구 창동 산157임	188.0	188.0						나-16	도봉구 창동 산157임	188.0	188.0						
		나-17	도봉구 창동 산157임	24.18	24.18						나-17	도봉구 창동 산157임	24.18	24.18						
		나-18	도봉구 창동 산157임	137.0	137.0						나-18	도봉구 창동 산157임	137.0	137.0						
		나-19	도봉구 창동 산157임	93.73	93.73						나-19	도봉구 창동 산157임	93.73	93.73						
		나-20	도봉구 창동 산183임	93.9	93.9						나-20	도봉구 창동 산183임	188.0	188.0						증)94.1
		나-21	도봉구 창동 산183임	44.3	44.3						나-21	도봉구 창동 산183임	44.3	44.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건축면적	건축 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건축면적	건축 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나-2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812.32	812.32						나-2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812.32	812.32						
		나-23	도봉구 창동 산156-1임	306.53	306.53						나-23	도봉구 창동 산156-1임	306.53	306.53						
	열린광장	녀	도봉구 창동 산177임	505.0	505.0						녀	도봉구 창동 산177임	505.0	505.0						
	작은광장	캬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131.97	131.97						캬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131.97	131.97						
	소계			21,448.3	18,553.09					56			21,228.30	18,333.09					56	감1220.0
	잔디광장	다	노원구 월계동 916전	436.96	436.96						다	노원구 월계동 916전	436.96	436.96						
	연못	러	도봉구 창동 677공	1,818.5	769.4					(1)	러	도봉구 창동 677공	1,818.5	769.4					(1)	
	파고라장	머	도봉구 창동 677공	1,846.11	0						머	도봉구 창동 677공	1,846.11	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화계	지압보도	버	도봉구 창동 677공	278.57	278.57						버	도봉구 창동 677공	278.57	278.57						
		서	2개소	632.8	632.8						서	2개소	632.8	632.8						
		서-1	도봉구 창동 677공	448.00	448.00						서-1	도봉구 창동 677공	448.00	448.00						
		서-2	도봉구 창동 산157임	184.8	184.8						서-2	도봉구 창동 산157임	184.8	184.8						
조경시설	야생초화원	까	4개소	2,945.8	2,945.8						까	4개소	2,945.8	2,945.8						
		까-1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584.88	584.88					(1)	까-1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584.88	584.88					(1)	
		까-5	노원구 월계동 912-9구	640.92	640.92						까-5	노원구 월계동 912-9구	640.92	640.92						
		까-6	도봉구 창동 산165공	259	259						까-6	도봉구 창동 산165공	259	259						
		까-7	도봉구 창동 산144임	1,461	1,461						까-7	도봉구 창동 산144임	1,461	1,46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억새원	꺄	노원구 월계동 산24-1임	470.16	470.16						꺄	노원구 월계동 산24-1임	470.16	470.16						
	생태육교	⑪	도봉구 창동 산136도							1	⑪	도봉구 창동 산136도							1	
	생태계류	라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320.60	320.60						라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320.60	320.60						
	생태습지	바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285.29	285.29					(1)	바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285.29	285.29					(1)	
	생태연못	커	2개소	128.93	128.93						커	2개소	128.93	128.93						
		커-1	도봉구 창동 산157임	100.53	100.53						커-1	도봉구 창동 산157임	100.53	100.53						
		커-3	도봉구 창동 산183임	28.4	28.4						커-3	도봉구 창동 산183임	28.4	28.4						
	상지	쿄	도봉구 창동 산183임	128.1	128.1						쿄	도봉구 창동 산183임	128.1	128.1						
	하지	쿠	도봉구 창동 440임	56.3	56.3						쿠	도봉구 창동 440임	56.3	56.3						
	연결수로	큐	도봉구 창동 산183임	53.2	53.2						큐	도봉구 창동 산183임	53.2	53.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계류	터	2개소	598.61	598.61						터	2개소	598.61	598.61						
		터-1	도봉구 창동 산157임	519.71	519.71					(2)	터-1	도봉구 창동 산157임	519.71	519.71					(2)	
		터-3	도봉구 창동 440임	78.9	78.9						터-3	도봉구 창동 440임	78.9	78.9						
	파고라									34									34	
	파고라A	①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테니스장(자-3) 내)	(72)	(72)	탄소강				1	①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테니스장(자-3) 내)	(72)	(72)	탄소강				1	
	파고라B	②	9개소			목재				9	②	9개소			목재				9	
		②-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테니스장(자-3) 내)	(20.25)	(20.25)					1	②-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테니스장(자-3) 내)	(20.25)	(20.25)					1	
		②-2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에생초원(까-1) 내)	(20.25)	(20.25)					1	②-2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에생초원(까-1) 내)	(20.25)	(20.25)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파고라B	②-4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7) 내)	(20.25)	(20.25)					1	②-4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7) 내)	(20.25)	(20.25)					1	
		②-5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7) 내)	(20.25)	(20.25)					1	②-5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7) 내)	(20.25)	(20.25)					1	
		②-6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6) 내)	(20.25)	(20.25)					1	②-6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6) 내)	(20.25)	(20.25)					1	
		②-7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휴게광장(나-4) 내)	(20.25)	(20.25)					1	②-7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휴게광장(나-4) 내)	(20.25)	(20.25)					1	
		②-8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전입광장(가-1) 내)	(20.25)	(20.25)					1	②-8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전입광장(가-1) 내)	(20.25)	(20.25)					1	
		②-9	도봉구 창동 산137-1임 (휴게소(가-6) 내)	(20.25)	(20.25)					1	②-9	도봉구 창동 산137-1임 (휴게소(가-6) 내)	(20.25)	(20.25)					1	
		②-10	도봉구 창동 428공 (휴게소(가-8) 내)	(25)	(25)					1	②-10	도봉구 창동 428공 (휴게소(가-8) 내)	(25)	(25)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파고라C		㉫	8개소							8		8개소							8	
		㉫-28	도봉구 창동 산194-2공 (잔입광장가-5) 내)	(25)	(25)					1	㉫-28	도봉구 창동 산194-2공 (잔입광장가-5) 내)	(25)	(25)					1	
		㉫-29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29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0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0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1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1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2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2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파고라 C	㉮-33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3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4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4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5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35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가-1) 내)	(25)	(25)					1	
	파고라 E	㉯	9개소							9	㉯	9개소							9	
		㉯-1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21)	(21)					1	㉯-1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21)	(21)					1	
		㉯-2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21)	(21)					1	㉯-2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21)	(21)					1	
		㉯-3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21)	(21)					1	㉯-3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21)	(21)					1	
		㉯-4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21)	(21)					1	㉯-4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21)	(21)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파고라 F		⑯-5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5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6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21)	(21)					1	⑯-6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21)	(21)					1	
		⑯-7	도봉구 창동 677공 (풋살경기장아) 내)	(21)	(21)					1	⑯-7	도봉구 창동 677공 (풋살경기장아) 내)	(21)	(21)					1	
		⑯-8	도봉구 창동 677공 (풋살경기장아) 내)	(21)	(21)					1	⑯-8	도봉구 창동 677공 (풋살경기장아) 내)	(21)	(21)					1	
		⑯-9	도봉구 창동 677공 (연못(러) 내)	(21)	(21)					1	⑯-9	도봉구 창동 677공 (연못(러) 내)	(21)	(21)					1	
		⑰	4개소							4	⑰	4개소							4	
		⑯-1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4)	(14)					1	⑯-1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4)	(14)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건축면적	건축 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건축면적	건축 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파고라F	⑰-2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2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3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3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4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4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4)	(14)					1	
	막구조파고라	⑱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08)	(108)					1	⑱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08)	(108)					1	
	조형파고라	㉔	도봉구 창동 산156-4임 (휴게소(가-23) 내)	(152)	(152)					1	㉔	도봉구 창동 산156-4임 (휴게소(가-23) 내)	(152)	(152)					1	
	수목보호홀덮개	⑲	10개소							10	⑲	10개소							10	
		⑲-1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1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10) 내)	(1)	(1)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수목보호홀 덮개	⑲-2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2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3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3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4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4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5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5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6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6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10 내)	(1)	(1)					1	
		⑲-7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⑲-7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⑲-8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⑲-8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건축면적	건축 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건축면적	건축 물 연면적	공작물(기)	
		⑲-9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⑲-9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⑲-10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⑲-10	도봉구 창동 677공 (전입광장가-3 내)	(1)	(1)					1	
	초정	㉚	2개소	29.02	29.02					2	㉚	2개소	29.02	29.02					2	
		㉚-1	도봉구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	㉚-1	도봉구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	
		㉚-2	도봉구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	㉚-2	도봉구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	
	관찰데크 A	어-7	도봉구 창동 산157임	39.18	39.18						어-7	도봉구 창동 산157임	39.18	39.18						
	관찰데크 B	어-8	도봉구 창동 산157임	57.74	57.74						어-8	도봉구 창동 산157임	57.74	57.74						
	전망데크 A	어-9	도봉구 창동 산157임	70.0	70.0						어-9	도봉구 창동 산157임	70.0	70.0						
	전망데크 B	어-10	도봉구 창동 산157임	19.32	19.32						어-10	도봉구 창동 산157임	19.32	19.3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목교	㉚	3개소							3	㉚	3개소							3	
		㉚-1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4.4)	(4.4)					1	㉚-1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4.4)	(4.4)					1	
		㉚-2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5.4)	(5.4)					1	㉚-2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5.4)	(5.4)					1	
		㉚-3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생태습지(바) 내)	(6)	(6)					1	㉚-3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생태습지(바) 내)	(6)	(6)					1	
	휴게데크A	어-14	도봉구 창동 산183임	148.5	148.5						어-14	도봉구 창동 산183임	98.5	98.5						감)50.0
	휴게데크B	어-15	도봉구 창동 산137-62	170.0	170.0						어-15	도봉구 창동 산137-62	0 (현황반영)	0 (현황반영)						감)170.0
	몰레방아	㉜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㉜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옹벽A	㉝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㉝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옹벽B	㉞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㉞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옹벽C	㉤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옹벽D	㉥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옹벽E	㉦	도봉구 창동 산157임							1	㉦	도봉구 창동 산157임							1	
	야생화정원	우-1	도봉구 창동 67-1전	914.61	914.61						우-1	도봉구 창동 67-1전	914.61	914.61						
	플랜터	㉧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화단	하	도봉구 창동 산192-7	10,000	10,000						하	도봉구 창동 산192-7	10,000	10,000						
	소계			13,640.52	13,640.52		6동	157.14	157.14	358			13,640.52	13,640.52		6동	157.14	157.14	358	
	휴게소	가	19개소	4,784.26	4,784.26		3동	108.00	108.00		가	19개소	4,784.26	4,784.26		3동	108.00	108.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삭제		가-1	도봉구 창동 677공	1,045.00	1,045.00					(기)	가-1	도봉구 창동 677공	1,045.00	1,045.00					(기)	
		가-6	도봉구 창동 산135-1도	83.0	83.0					(1)	가-6	도봉구 창동 산135-1도	83.0	83.0					(1)	
		가-8	도봉구 창동 428-1공	54.0	54.0					(1)	가-8	도봉구 창동 428-1공	54.0	54.0					(1)	
		가-9	도봉구 창동 산194-2공	66.5	66.5						가-9	도봉구 창동 산194-2공	66.5	66.5						
		가-13	도봉구 창동 산157임	372.16	372.16						가-13	도봉구 창동 산157임	372.16	372.16						
		가-16	도봉구 창동 산183임	14.6	14.6						가-16	도봉구 창동 산183임	14.6	14.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휴게소	가-17	도봉구 창동 산183임	6.0	6.0						가-17	도봉구 창동 산183임	6.0	6.0						
		가-18	도봉구 창동 산183임	21.0	21.0						가-18	도봉구 창동 산183임	21.0	21.0						
		가-19	도봉구 창동 산183임	11.0	11.0						가-19	도봉구 창동 산183임	11.0	11.0						
		가-21	노원구 월계동 산8-9임	148.0	148.0						가-21	노원구 월계동 산8-9임	148.0	148.0						
		가-23	도봉구 창동 산156-3임	1,185.0	1,185.0					(1)	가-23	도봉구 창동 산156-3임	1,185.0	1,185.0					(1)	
		가-24	도봉구 창동 산163-5임	284.0	284.0						가-24	도봉구 창동 산163-5임	284.0	284.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가-25	도봉구 창동 산137-1임	214.0	214.0						가-25	도봉구 창동 산137-1임	214.0	214.0						
		가-26	도봉구 창동 산157임	16.0	16.0						가-26	도봉구 창동 산157임	16.0	16.0						
		가-27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3.0	13.0						가-27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3.0	13.0						
		가-30	노원구 월계동 산6임	196.0	196.0	목조	1동	36.00	36.00		가-30	노원구 월계동 산6임	196.0	196.0	목조	1동	36.00	36.00		
		가-31	노원구 월계동 산8-2임	385.0	385.0	목조	1동	36.00	36.00		가-31	노원구 월계동 산8-2임	385.0	385.0	목조	1동	36.00	36.00		
		가-33	노원구 월계동 산66-3임	173.0	173.0	목조	1동	36.00	36.00		가-33	노원구 월계동 산66-3임	173.0	173.0	목조	1동	36.00	36.00		
		가-35	도봉구 창동 산126-1임	497.0	497.0						가-35	도봉구 창동 산126-1임	497.0	497.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시설 유형	야외탁자		잔디광장 전지역			목재				64		잔디광장 전지역			목재				64	
	장의자		전지역			목재				145		전지역			목재				145	
	등의자	③	전지역			목재				76	③	전지역			목재				76	
	사각의자	⑤	전지역			목재				14	⑤	전지역			목재				14	
	앉음벽	⑬	전지역							27	⑬	전지역							27	
	평의자	⑭	전지역			목재				29	⑭	전지역			목재				29	
시설 유형	연석의자A	㉮-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연석의자B	㉮-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연석의자C	㉮-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야영장	여	4개소	8,655.40	8,655.40						여	4개소	8,655.40	8,655.40						
	야영장1	여-1	노원구 월계동 749전	4,484.52	4,484.52						여-1	노원구 월계동 749전	4,484.52	4,484.52						
	야영장2	여-2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167.86	1,167.86						여-2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167.86	1,167.86						
	야영장3	여-3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2,710.56	2,710.56						여-3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2,710.56	2,710.56						
		여-4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292.46	292.46						여-4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292.46	292.46						
	부속동	16	3개소	200.86	200.86		3동	49.14	49.14		16	3개소	200.86	200.86		3동	49.14	49.14		
	부속4동	16-1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83.60	83.60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16-1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83.60	83.60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부속5동	16-2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71.74	71.74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16-2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71.74	71.74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부속6동	16-3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45.52	45.52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16-3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45.52	45.52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유희시	소계			1,270.08	1,270.08					3			1,270.08	1,270.08					3	
	조합놀이대	⑭-1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⑭-1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트리하우스	⑭-2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⑭-2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사면슬라이드	⑭-3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⑭-3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생태놀이터	냐	2개소	492.08	492.08						냐	2개소	492.08	492.08						
	생태놀이터1	나-1	노원구 월계동 산17-8임	292.44	292.44						냐-1	노원구 월계동 산17-8임	292.44	292.44						
유희시설	생태놀이터2	나-2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199.64	199.64						냐-2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199.64	199.64						
	놀이터	댜	도봉구 창동 산177-1임	778.0	778.0						댜	도봉구 창동 산177-1임	778.0	778.0						
운동시설	소계			43,200.45	42,264.45		5동	4,514.25	7,849.72	21			42,211.25	41,275.25		5동	4,514.25	7,849.72	21	감)989.2
	풋살경기장	아	도봉구 창동 677공	1,192	1,192					(2)	아	도봉구 창동 677공	1,192	1,192					(2)	
	테니스장	자	2개소	4,221.45	4,221.45		1동	72	72		자	1개소	2,497.25	2,497.25		1동	72	7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자-3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2,497.25	2,497.25					(2)	자-3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2,497.25	2,497.25					(2)	
		자-4	도봉구 창동 산48-3임	1,724.2	1,724.2						자-4	도봉구 창동 산48-3임	0 (공원구역 해제)	0 (공원구역 해제)						감)1,724.2
	농구장	랴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703	703						랴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703	703						
	축구장	거	2개소	17,523	16,781					21	거	2개소	17,523	16,781					21	
		거-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7,020	6,278						거-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7,020	6,278						
		거-2	도봉구 창동 677공	10,503	10,503					21	거-2	도봉구 창동 677공	10,503	10,503					21	
	골프연습장	6	2개소	13,870	13,676		2동	1,898.14	4,978.11		6	2개소	13,870	13,676		2동	1,898.14	4,978.11		
		6-2	도봉구 창동 산126-1임	5,920	5,726	R.C	1동	732.50	2,303.67		6-2	도봉구 창동 산126-1임	5,920	5,726	R.C	1동	732.50	2,303.67		
		6-3	노원구 월계동 산65-4임	7,950	7,950	R.C	1동	1,165.64	2,674.44		6-3	노원구 월계동 산65-4임	7,950	7,950	R.C	1동	1,165.64	2,674.4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타	노원구 월계동 산69임	348.0	348.0						타	노원구 월계동 산69임	348.0	348.0						
	체력단련장	파	4개소	1,617	1,617						파	4개소	1,617	1,617						
		파-9	도봉구 창동 677공	899	899						파-9	도봉구 창동 677공	899	899						
		파-10	도봉구 창동 산51-1임	139	139						파-10	도봉구 창동 산51-1임	139	139						
		파-14	도봉구 창동 677공	310	310						파-14	도봉구 창동 677공	310	310						
		파-16	노원구 월계동 산8-9임	215	215						파-16	노원구 월계동 산8-9임	215	215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파-17	노원구 월계동 912-9구	54	54						파-17	노원구 월계동 912-9구	54	54						
운동시설	족구장	펴	노원구 월계동 산183임	956.0	956.0						펴	도봉구 창동 산183임(현황반영)	1,691.0 (현황반영)	1,691.0 (현황반영)						증)735.0
	실내배드민턴장	허	2개소	2,770.0	2,770.0		2동	2,544.11	2,799.61		허	2개소	2,770.0	2,770.0		2동	2,544.11	2,799.61		
		허-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748.0	1,748.0		1동	1,522.11	1,522.11		허-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748.0	1,748.0		1동	1,522.11	1,522.11		
		허-2	도봉구 창동 산131공	1,022.0	1,022.0		1동	1,022.00	1,277.5		허-2	도봉구 창동 산131공	1,022.0	1,022.0		1동	1,022.00	1,277.5		
교양시설	소계			13,265.76	10,990.06		7동	2,274.85	4,189.69	1			13,634.76	11,359.06		8동	2,567.64	4,476.5	1	증)369.0
	도서관	7	2개소	4,977.5	3,357.5		1동	1,134.58	3,111.46	1	7	2개소	4,977.5	3,357.5		1동	1,134.58	3,111.46	1	
		7-1	도봉구 창동 418대	4,950.0	3,330.0		1동	1,134.58	3,111.46		7-1	도봉구 창동 418대	4,950.0	3,330.0		1동	1,134.58	3,111.46		
		7-2	도봉구 창동 428-1공	27.50	27.50					1	7-2	도봉구 창동 428-1공	27.50	27.50					1	
	책쉼터										차	도봉구 창동 산183임	369.0	369.0		1동	292.79	286.81		증)369.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도자기체험장	8	노원구 월계동 산17-7임	278.54	278.54		1동	278.54	278.54		8	노원구 월계동 산17-7임	278.54	278.54		1동	278.54	278.54		
	야외교실	저	도봉구 창동 산137-1임	252.5	252.5						저	도봉구 창동 산137-1임	252.5	252.5						
	야외무대	처	도봉구 창동 산194-2공	463.5	463.5						처	도봉구 창동 산194-2공	463.5	463.5						
	참여형 텃밭	퍼	3개소	3,737.38	3,737.38						퍼	3개소	3,737.38	3,737.38						
		퍼-1	도봉구 창동 산154-1임	339.24	339.24						퍼-1	도봉구 창동 산154-1임	339.24	339.24						
		퍼-2	도봉구 창동 산154-1임	2,756.85	2,756.85						퍼-2	도봉구 창동 산154-1임	2,756.85	2,756.85						
		퍼-3	도봉구 창동 산154-1임	641.29	641.29						퍼-3	도봉구 창동 산154-1임	641.29	641.29						
끝	생태학습원	표	3개소	1,801.6	1,801.6						표	3개소	1,801.6	1,801.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양시설		표-1	도봉구 창동 432전	1,137.6	1,137.6						표-1	도봉구 창동 432전	1,137.6	1,137.6						
		표-2	도봉구 창동 산137-1임	408.0	408.0						표-2	도봉구 창동 산137-1임	408.0	408.0						
		표-3	도봉구 창동 산183임	256.0	256.0						표-3	도봉구 창동 산183임	256.0	256.0						
	목재문화체험장	17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17.11	217.11		1동	217.11	253.11		17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17.11	217.11		1동	217.11	253.11		
	가상센터및옷실	18	도봉구 창동 산159-6과	392.28	392.28		1동	392.28	435.45		18	도봉구 창동 산159-6과	392.28	392.28		1동	392.28	435.45		
	예술공방	19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11.13	111.13		1동	111.13	111.13		19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11.13	111.13		1동	111.13	111.13		
	정원	야	3개소	124.52	124.52						야	3개소	124.52	124.52						
		야-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46.57	46.57						야-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46.57	46.57						
		야-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60.45	60.45						야-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60.45	60.45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야-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7.50	17.50						야-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7.50	17.50						
	어린이집	2	도봉구 창동 산194-2임	781.70	126.00	조적조	1동	126	324		2	도봉구 창동 산194-2임	781.70	126.00	조적조	1동	126	324		
	승극철부부묘	24	노원구 월계동 산68-2임	128	128	목조	1동	15.21	15.21		24	노원구 월계동 산68-2임	128	128	목조	1동	15.21	15.21		
편의시설	소계			10,066.19	9,796.19		5동	400.22	400.22	22			10,044.99	9,774.99		5동	379.02	379.02	22	감)21.2
	주차장	하	7개소	9,375.71	9,105.71						하	7개소	9,375.71	9,105.71						
		하-2	도봉구 창동 산126-1임	1,313	1,119						하-2	도봉구 창동 산126-1임	1,313	1,119						
		하-4	노원구 월계동 산65-1임	3,006.0	3,006.0						하-4	노원구 월계동 산65-1임	3,006.0	3,006.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편	화장실	9	4개소	282.2	282.2		3동	210.2	210.2		9	3개소	261.0	261.0		3동	189.0	189.0		감21.2
	장애인주차장	노-2	노원구 월계동 749-2전	34.76	34.76						노-2	노원구 월계동 749-2전	34.76	34.76						
		하-8	도봉구 창동 677공	2,536.8	2,460.8						하-8	도봉구 창동 677공	2,536.8	2,460.8						
		하-9	노원구 월계동 749-2전	546.88	546.88						하-9	노원구 월계동 749-2전	546.88	546.88						
		하-10	노원구 월계동 912-9구	296.79	296.79						하-10	노원구 월계동 912-9구	296.79	296.79						
		하-1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19.29	219.29						하-1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19.29	219.29						
		하-12	노원구 월계동 산4-9임	1,456.95	1,456.95						하-12	노원구 월계동 산4-9임	1,456.95	1,456.95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건축면적	건축 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건축면적	건축 물 연면적	공작물(기)	
이시설	화장실										9-3	도봉구 창동 677공	30.0 (현황반영)	30.0 (현황반영)		1동	30.0 (현황반영)	30.0 (현황반영)		증)30.0
		9-4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15.5	115.5		1동	79.5	79.5		9-4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15.5	115.5		1동	79.5	79.5		
		9-5	도봉구 창동 산173공	115.5	115.5		1동	79.5	79.5		9-5	도봉구 창동 산173공	115.5	115.5		1동	79.5	79.5		
		9-6	도봉구 창동 산183임	51.2	51.2		1동	51.2	51.2		9-6	도봉구 창동 산183임	0.0	0.0			0.0	0.0		감)51.2
	스탠드	⑯	도봉구 창동 677공							1	⑯	도봉구 창동 677공							1	
	음수전A	⑰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스테이덱스				1	⑰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스테이덱스				1	
	세족대	⑱	도봉구 창동 677공							1	⑱	도봉구 창동 677공							1	
	석교	⑲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4.8	4.8					1	⑲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4.8	4.8					1	
	계단1	⑳	도봉구 창동 산157임	7.4	7.4					1	⑳	도봉구 창동 산157임	7.4	7.4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편의시설	계단 2	⑯	도봉구 창동 산157임 (화계(서-2) 내)	13.86	13.86					1	⑯	도봉구 창동 산157임 (화계(서-2) 내)	13.86	13.86					1	
	계단 6	⑳	도봉구 창동 677공 (연못(러) 내)	1.4	1.4					1	⑳	도봉구 창동 677공 (연못(러) 내)	1.4	1.4					1	
	계단 7	㉘	도봉구 창동 677공	2.2	2.2					1	㉘	도봉구 창동 677공	2.2	2.2					1	
	계단 8	㉟	도봉구 창동 산159-5과	33	33					1	㉟	도봉구 창동 산159-5과	33	33					1	
	화장실 및 세면장	타	2개소	310.86	310.86		2동	190.02	190.02		타	2개소	310.86	310.86		2동	190.02	190.02		
		타-1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178.62	178.62	조적조	1동	95.01	95.01	(2)	타-1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178.62	178.62	조적조	1동	95.01	95.01	(2)	
		타-2	노원구 월계동 750대	132.24	132.24	조적조	1동	95.01	95.01		타-2	노원구 월계동 750대	132.24	132.24	조적조	1동	95.01	95.0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야외스파	㉓-1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illegible]	(8)	(8)	반고정용				2	㉓-1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illegible]	(8)	(8)	반고정용				2	
	야외테이블A	㉓-2	노원구 월계동 749-7전			반고정용				1	㉓-2	노원구 월계동 749-7전			반고정용				1	
	야외테이블B	㉓-3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반고정용				10	㉓-3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반고정용				10	
관리시설	소계			1,025.84	833.70		6동	470.29	534.49	306			1,025.84	833.70		6동	470.29	534.49	306	
	관리사무소	10	3개소	581.4	389.26		3동	310.02	374.22		10	3개소	581.4	389.26		3동	310.02	374.22		
		10-2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120.36	120.36	조적	1동	120.36	120.36		10-2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120.36	120.36	조적	1동	120.36	120.36		
		10-3	도봉구 창동 677공	440.00	247.86	R.C	1동	183.66	247.86		10-3	도봉구 창동 677공	440.00	247.86	R.C	1동	183.66	247.86		
	관리사무소	10-5	노원구 월계동 749-7전	21.04	21.04	목구조	1동	6	6		10-5	노원구 월계동 749-7전	21.04	21.04	목구조	1동	6	6		
	방문자센터	20	노원구 월계동 749-7전	302.03	302.03	목구조	1동	75.85	75.85		20	노원구 월계동 749-7전	302.03	302.03	목구조	1동	75.85	75.85		
	용품점	21	노원구 월계동 749-7전	80.68	80.68	조적조	1동	48.42	48.42		21	노원구 월계동 749-7전	80.68	80.68	조적조	1동	48.42	48.4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공작물(기)	
관리시설	창고	2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36.00	36.00	목구조	1동	36.00	36.00		2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36.00	36.00	목구조	1동	36.00	36.00		
	안내판		잔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23		잔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23	
	방향안내판		전지역			목재				4		전지역			목재				4	
	종합안내판	⑧	잔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6	⑧	잔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6	
		⑧-4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목재				2	⑧-4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목재				2	
			도봉구 창동 산183임			목재				1		도봉구 창동 산183임			목재				1	
		⑧-1	노원구 월계동 749-2전			목재				1	⑧-1	노원구 월계동 749-2전			목재				1	
	종합안내판	⑧-2	노원구 월계동 692임			목재				1	⑧-2	노원구 월계동 692임			목재				1	
		⑧-3	노원구 월계동 675전			목재				1	⑧-3	노원구 월계동 675전			목재				1	
	휴지통	⑨	전지역			목재				26	⑨	전지역			목재				26	
		⑨-2	전지역			목재				24	⑨-2	전지역			목재				24	
		⑨-1	노원구 월계동 748-7답			목재				2	⑨-1	노원구 월계동 748-7답			목재				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분리수거장	23	노원구 월계동 748-7답	25.73	25.73	목재					23	노원구 월계동 748-7답	25.73	25.73	목재					
	조명등		전지역							218		전지역							218	
										(184)									(184)	
										(34)									(34)	
	CCTV		전지역							22		전지역							22	
										(22)									(22)	
	휀스	㉒	노원구 월계동 산 5-5 임			철재,목재				1	㉒	노원구 월계동 산 5-5 임			철재,목재				1	
	게이트	㊶	노원구 월계동 산 5-5 임			목재				4	㊶	노원구 월계동 산 5-5 임			목재				4	
	주차 차단기	㊷	노원구 월계동 749-2전			-				2	㊷	노원구 월계동 749-2전			-				2	
녹지 및 기타	소계			719,410.65									716,773.95							감)2,636.7
	녹지			718,610.65									715,973.95							감)2,636.7
	동물놀이터	퍄	도봉구 창동 677공	800	800						퍄	도봉구 창동 677공	800	800						

다. 도로조서(총괄)

- 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계				1,314	22,369				
	대로	계			1,088	18,776				
	대로	3	38	15	458	6,877	도시계획도로	청동 산192-1 임	창동 산184-3 임	
	대로	2	74	20	116	2,327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379-1	도봉구 창동 379-1	
	대로	3	61	20	309	6,180	도시계획도로	노원구 월계동 산69-3	노원구 월계동 산65-21	
	대로	3	1	11~20	205	3,392	도시계획도로	노원구 월계동 산67-2	노원구 월계동 산64-4	
	중로	계			226	3,593				
	중로	1	78	15	159	2,384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418-4	대로 3-38 (분기점)	
	중로	1	79	18	67	1,209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산107-223	도봉구 창동 산107-223	

- 공원시설 계획도로(총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계				16,965	42,964				
	소로	계			4,746	17,794				
	소로	3	4	10	334	3,343	진입로	도봉구 창동 452-3	도봉구 창동 산206-6	
	소로	3	7	3	70	211	부진입로	진입광장 (가-3)	지압보도(버)	
	소로	3	8	3~8	70	369	연결로	지압보도 (버)	진입광장 (가-10)	
	소로	3	9	7	119	719	부진입로	중로 1-79 (분기점)	골프연습장 6-2	소형주차 20대포함
	소로	3	10	6.5	220	1,427	연결로	대로 3-61	소로 3-11 (기점)	
	소로	3	11	6.5	230	1,493	연결로	소로 3-10 (종점)	산책로 4-69 (분기점)	
	소로	3	12	6	242	1,452	연결로	대 3-61	창동177-1	
	소로	3	14	9.5	88	837	연결로	소로 3-10 (분기점)	주차장 (하-4)	
	소로	3	15	2	123	246	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29-3	도봉구 창동 산126-1	
	소로	3	16	3	14	52	연결로	대로 3-1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64-5	
	소로	3	17	2.5	120	301	연결로	산책로 4-222 (기점)	휴게광장 (나-10)	
	소로	3	18	4	131	524	연결로	소로 3-9 (분기점)	소로 3-15 (분기점)	소형주차 3대포함
	소로	3	19	2	159	317	연결로	연못 (러)	진입광장 (가-3)	
	소로	3	20	2	21	41	연결로	풋살경기장 (아)	소로 3-19 (분기점)	
	소로	3	21	2.5	14	35	연결로	소로 3-22 (기점)	연못 (러)	
	소로	3	22	3	41	124	연결로	소로 3-21 (기점)	소로 3-23 (분기점)	
	소로	3	23	3	126	378	부진입로	진입광장 (가-6)	진입광장 (가-10)	
	소로	3	24	1.5	20	30	연결로	소로 3-23 (분기점)	연못 (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	3	25	2	26	53	부진입로	도봉구 창동 677	관리사무소 (10-3)	
	소로	3	26	2	24	47	부진입로	주차장 (하-8)	소로 3-23 (분기점)	
	소로	3	27	6.5	120	284	부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62	산책로 4-116 (기점)	
	소로	3	28	5	103	516	연결로	진입광장 (가-11)	휴게소 (갸-25)	
	소로	3	29	2	28	56	부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57-1	휴게광장 (나-18)	
	소로	3	30	2	56	111	연결로	휴게광장 (나-18)	전망데크B (어-10)	
	소로	3	31	2	73	146	연결로	휴게광장 (나-18)	전망데크A (어-9)	
	소로	3	32	1.5	55	82	연결로	소로 3-33 (분기점)	휴게광장 (나-19)	
	소로	3	33	1.5	69	104	연결로	도봉구 창동 산157	소로 3-36 (분기점)	
	소로	3	34	2	41	82	연결로	소로 3-36 (분기점)	소로 3-33 (분기점)	
	소로	3	36	4	69	277	연결로	도봉구 창동 산157	휴게광장 (나-16)	
	소로	3	37	3.5	19	68	연결로	휴게광장 (나-16)	휴게광장 (나-18)	
	소로	3	38	2	54	108	연결로	소로 3-36 (분기점)	소로 3-51 (기점)	
	소로	3	39	2	13	25	연결로	목교 (㉛-1)	휴게광장 (나-17)	
	소로	3	40	2	49	97	연결로	휴게광장 (나-17)	휴게광장 (나-18)	
	소로	3	41	1.5	106	159	연결로	소로 3-51 (종점)	전망데크A (어-9)	
	소로	3	42	1.5	31	46	연결로	소로 3-31 (분기점)	목교 (㉛-2)	
	소로	3	43	2.5	84	211	연결로	참여형텃밭 (펴-3)	참여형텃밭 (펴-1)	
	소로	3	44	2	106	212	연결로	소로 3-49 (분기점)	소로 3-43 (분기점)	
	소로	3	45	1.5	26	38	연결로	소로 3-48	소로 3-49	
	소로	3	46	2	19	38	연결로	소로 3-48	소로 3-49	
	소로	3	47	2	12	24	연결로	대지경계	소로 3-49	
	소로	3	48	2	104	207	연결로	소로 3-49	참여형텃밭 (펴-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	3	49	2	134	268	연결로	대지경계	소로 3-43	
	소로	3	50	1.5	40	60	연결로	소로 3-36 (종점)	소로 3-32 (분기점)	
	소로	3	51	2	9	19	연결로	소로3-38	목교 (㉚-1)	
	소로	3	52	2	38	76	연결로	휴게광장 (나-23)	휴게소 (갸-23)	
	소로	3	196	4	136	595	연결로	진입광 (가-7)	작은광장 (캬)	
	소로	3	197	3	125	375	연결로	진입광장 (가-7)	소로 3-196 (분기점)	
	소로	3	198	4	118	529	연결로	주차장 (하-9/노-2)	작은광장 (캬)	
	소로	3	199	4	68	343	연결로	작은광장 (캬)	소로 3-200 (기점)	
	소로	3	200	3.5	42	147	연결로	소로 3-199 (종점)	부속 6동 (16-3)	
	소로	3	201	1.5	151	226	연결로	산책로 4-109 (분기점)	소로 3-200 (기점)	
	소로	3	202	2	109	218	산책로	소로 3-200 (종점)	노원구 월계동 산5-2	
	소로	3	205	5	144	688	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59-6과	휴게광장 (나-23)	
	소로	3	206	1.5	20	30	진입로	주차장 (하-11)	소로 3-205 (기점)	
	소로	3	207	3.5	1	5	연결로	진입광장 (가-12)	진입광장 (가-13)	
	소로	3	208	2	5	9	진입로	대로 3-1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67	
	소로	3	209	2	218	435	진입로	노원구 월계동 779	산책로 4-51 (분기점)	
	소로	3	210	1.2	45	54	진입로	노원구 월계동 914-1	산책로 4-221 (분기점)	
	소로	3	211	1.5	62	93	진입로	도봉구 창동 164	산책로 4-209 (분기점)	
	소로	3	212	2	87	173	진입로	도봉구 창동 379-1	진입광장 (가-13)	
	소로	3	213	2	7	13	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63-5	산책로 4-210 (분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계			12,219	25,170				
	산책로	4	1	1.2	350	420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소로 3-19 (분기점)	
	산책로	4	2	1.2	78	94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산책로 4-1 (분기점)	
	산책로	4	3	1.2	121	145	산책로	산책로 4-2 (분기점)	산책로 4-4 (분기점)	
	산책로	4	4	1.2	44	53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소로 3-19 (분기점)	
	산책로	4	6	1.2	56	67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소로 3-19 (분기점)	
	산책로	4	7	1.2	49	59	산책로	산책로 4-3 (분기점)	산책로 4-1 (분기점)	
	산책로	4	8	1.2	94	113	산책로	산책로 4-6 (분기점)	산책로 4-4 (분기점)	
	산책로	4	9	1.2	38	45	산책로	산책로 4-10 (분기점)	소로 3-9 (분기점)	
	산책로	4	10	1.2	203	243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26-1	중로 1-79 (분기점)	
	산책로	4	11	2	72	144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37-9	산책로 4-13 (분기점)	
	산책로	4	13	2	38	75	산책로	소로 3-15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31	
	산책로	4	14	2	123	245	산책로	진입광장 (가-14)	도봉구 창동 산137-6	
	산책로	4	15	2	43	85	산책로	야생초화원 (까-7)	도봉구 창동 산144	
	산책로	4	28	1.5	119	178	산책로	산책로 4-181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78	
	산책로	4	31	1.5	441	502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94-2	도봉구 창동 산193-4	
	산책로	4	32	1.5	238	357	산책로	산책로 4-33 (분기점)	대로 3-38 (기점)	
	산책로	4	33	1.5	235	353	산책로	산책로 4-192 (종점)	도봉구 창동 산189-3	
	산책로	4	36	1.5	197	296	산책로	산책로 4-106 (분기점)	소로 3-4 (분기점)	
	산책로	4	39	2	123	246	산책로	휴게광장 (나-10)	노원구 월계동 산12	
	산책로	4	40	1.5	121	181	산책로	산책로 4-106 (분기점)	휴게소 (가-28,도자구역)	
	산책로	4	43	2	38	76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5-2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	50	1.5	35	52	산책로	산책로 4-75 (종점)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	51	2	511	1,022	산책로	산책로 4-214 (분기점)	산책로 4-53 (분기점)	
	산책로	4	53	2	153	305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799-4	노원구 월계동 77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54	2	225	449	산책로	산책로 4-55 (종점)	산책로 4-99 (분기점)	
	산책로	4	55	2	80	160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265-2	산책로 4-54 (기점)	
	산책로	4	57	2	61	121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82	산책로 4-55 (종점)	
	산책로	4	61	2	94	187	산책로	대로 3-61 (분기점)	배드민턴장 (타)	
	산책로	4	66	2	473	945	산책로	산책로 4-54 (분기점)	산책로 4-54 (분기점)	
	산책로	4	68	1.2	61	121	산책로	산책로 4-108 (종점)	열린광장 (녀)	
	산책로	4	69	3.5~15	151	1,425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63-1	진입광장 (가-1)	
	산책로	4	70	10	207	2,065	산책로	진입광장 (가-2)	휴게광장 (나-4)	
	산책로	4	71	3	111	332	산책로	산책로 4-70 (분기점)	산책로 4-75 (기점)	
	산책로	4	72	3.5~8	170	1,105	산책로	휴게광장 (나-4)	산책로 4-73 (종점)	
	산책로	4	73	4.5	280	1,122	산책로	테니스장 (자-3)	산책로 4-72 (종점)	
	산책로	4	75	1.7	117	199	산책로	휴게광장 (나-4)	산책로 4-50 (기점)	
	산책로	4	80	2	241	481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26-3	소로 3-15 (분기점)	
	산책로	4	85	1.5	235	353	산책로	산책로 4-31 (기점)	산책로 4-31 (분기점)	
	산책로	4	86	1.5	45	68	산책로	산책로 4-212 (분기점)	산책로 4-87 (분기점)	
	산책로	4	87	1.5	309	464	산책로	소로 3-4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201	
	산책로	4	90	2	25	50	산책로	산책로 4-95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37-6	
	산책로	4	93	1.2	149	169	산책로	산책로 4-1 (분기점)	산책로 4-1 (분기점)	
	산책로	4	95	2	44	88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 137-6	생태육교 (ⓗ)	
	산책로	4	97	1.2	74	89	산책로	휴게소 갸-1	산책로 4-1 (분기점)	
	산책로	4	98	1.2	16	19	산책로	산책로 4-2 (분기점)	휴게소 갸-1	
	산책로	4	99	2	150	300	산책로	소로 3-10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64-5	
	산책로	4	100	2	18	36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64-5	노원구 월계동 산60-1	
	산책로	4	102	2	133	265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37-1	산책로 4-51 (분기점	
	산책로	4	106	1.5	441	662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207-1	도봉구 창동 산189-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107	1.5	90	135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89-1	산책로 4-108 (기점)	
	산책로	4	108	2	17	34	산책로	산책로 4-107 (종점)	산책로 4-109 (기점)	
	산책로	4	109	2	60	120	산책로	산책로 4-108 (종점)	도봉구 창동 산167-4	
	산책로	4	113	2	82	164	산책로	진입광장 (가-11)	휴게광장 (나-12)	
	산책로	4	114	2	78	155	산책로	소로 3-28 (분기점)	생태학습원 (표-2)	
	산책로	4	115	2	60	120	산책로	야외교실 (저)	생태학습원 (표-2)	
	산책로	4	116	2	198	395	산책로	소로 3-27 (종점)	소로 3-27 (분기점)	
	산책로	4	117	2	39	77	산책로	휴게소 (갸-9)	도봉구 창동 462-2	
	산책로	4	118	2	105	209	산책로	휴게소 (갸-9)	산책로 4-87 (분기점)	
	산책로	4	119	1.8	50	90	산책로	산책로 4-116 (기점)	도봉구 창동 산176-11	
	산책로	4	120	1.8	137	274	산책로	산책로 4-116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67-4	
	산책로	4	121	1.8	87	156	산책로	휴게소 (갸-6)	소로 3-28 (분기점)	
	산책로	4	122	1.8	12	22	산책로	산책로 4-121 (분기점)	소로 3-28 (분기점)	
	산책로	4	123	1.3	46	60	산책로	도봉구 창동 462-2	야외무대 (처)	
	산책로	4	124	1.5	77	115	산책로	산책로 4-36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204-1	
	산책로	4	162	1.5	15	22	산책로	산 4-165 (분기점)	산 4-164 (분기점)	
	산책로	4	163	1.5	29	44	산책로	산책로 4-168 (분기점)	전망데크A (어-9)	
	산책로	4	164	1.5	115	173	산책로	도봉구 창동 368	진입광장 (가-16)	
	산책로	4	165	1.5	39	58	산책로	도봉구 창동 368	도봉구 창동 369-2	
	산책로	4	166	2.8~5	26	86	산책로	열린광장 (녀)	생태학습원 (표-1)	
	산책로	4	167	1.5	2	3	산책로	열린광장 (녀)	산책로 4-166 (종점)	
	산책로	4	168	1.5	189	283	산책로	진입광장 (가-16)	소로 3-51 (기점)	
	산책로	4	169	3.0	9	26	산책로	산책로 4-168 (분기점)	휴게소 (갸-23)	
	산책로	4	170	1.2	33	40	산책로	산책로 4-168 (분기점)	소로 3-205 (분기점)	
	산책로	4	171	1.2	192	237	산책로	소로 3-205 (분기점)	휴게소 (갸-2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172	5~7.5	61	364	산책로	연결수로 (큐)	도봉구 창동 산189-1	
	산책로	4	173	1.5	15	22	산책로	산책로 4-172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89-1	
	산책로	4	181	1.5	155	232	산책로	상지 (교)	산책로 4-181 (분기점)	
	산책로	4	182	1.2	73	87	산책로	산책로 4-181 (분기점)	산책로 4-181 (분기점)	
	산책로	4	184	1.5	160	240	산책로	산책로 4-172 (분기점)	산책로 4-188 (분기점)	
	산책로	4	188	2	87	174	산책로	대로 3-38 (분기점)	족구장 (펴)	
	산책로	4	189	2	116	231	산책로	산책로 4-188 (분기점)	산책로 4-32 (기점)	
	산책로	4	191	1.5	35	52	산책로	산책로 4-189 (분기점)	족구장 (펴)	
	산책로	4	192	1.2	48	58	산책로	생태육교 (㉱)	산책로 4-33 (기점)	
	산책로	4	194	1.5	75	113	산책로	산책로 4-40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8-9	
	산책로	4	195	1.5	30	45	산책로	체력단련장 (파-16)	휴게소 (갸-21)	
	산책로	4	203	1.2	82	98	산책로	소로 3-198 (분기점)	소로 3-199 (분기점)	
	산책로	4	204	1.2	45	54	산책로	소로 3-198 (분기점)	산책로 4-203 (분기점)	
	산책로	4	205	1.5	141	211	산책로	진입광장 (가-8)	산책로 4-206 (분기점)	
	산책로	4	206	2.5	58	146	산책로	소로 3-17 (분기점)	휴게광장 (나-10)	
	산책로	4	207	2	94	187	산책로	산책로 4-68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78	
	산책로	4	208	1.5	73	110	산책로	산책로 4-207 (분기점)	산책로 4-28 (분기점)	
	산책로	4	209	1.5	73	146	산책로	산책로 4-120 (분기점)	산책로 4-120 (분기점)	
	산책로	4	210	2	45	90	연결로	소로 3-206 (분기점)	소로 3-206 (분기점)	
	산책로	4	211	2	13	25	산책로	소로 3-202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	212	1.5	104	156	산책로	산책로 4-33 (분기점)	산책로 4-85 (분기점)	
	산책로	4	213	2	107	214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214 (분기점)	
	산책로	4	214	2	119	338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8-2	노원구 월계동 산8-6	
	산책로	4	215	2	27	54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5	노원구 월계동 산62	
	산책로	4	216	2	30	60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64-5	진입광장 (가-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217	2	22	44	산책로	산책로 4-66 (분기점)	배드민턴장 (타)	
	산책로	4	218	2	28	57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73	산책로 4-66 (분기점)	
	산책로	4	219	2	44	88	산책로	산책로 4-99 (분기점)	대로 3-1 (분기점)	
	산책로	4	220	1.5	14	28	산책로	산책로 4-221 (분기점)	소로 3-210 (분기점)	
	산책로	4	221	2.5	45	113	산책로	진입광장 (가-8)	산책로 4-205 (분기점)	
	산책로	4	222	2	84	170	산책로	산책로 4-13 (분기점)	산책로 4-13 (분기점)	
	산책로	4	223	1.5	41	61	산책로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4-224 (분기점)	
	산책로	4	224	1.5	75	112	산책로	산책로 4-227 (분기점)	산책로 4-226 (분기점)	
	산책로	4	225	1.5	56	84	산책로	산책로 4-227 (분기점)	산책로 4-226 (분기점)	
	산책로	4	226	1.5	70	105	산책로	산책로 4-227 (분기점)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4	227	1.5	205	307	산책로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3	205	1.5	140	168	산책로	진입광장 (가-13)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	206	3	14	44	산책로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	207	1.5	9	14	산책로	진입광장 (가-16)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	208	1.5	73	88	산책로	진입광장 가-15	산책로 3-208 (기점)	
	산책로	3	209	1.5	129	171	산책로	진입광장 (가-16)	소로 3-205 (분기점)	
	산책로	3	210	1.5	30	41	산책로	산책로 3-211 (분기점)	휴게광장 (나-23)	
	산책로	3	21 1	1.5	14	44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56-3	휴게광장 (나-23)	
	산책로	3	212	1.5	53	77	산책로	휴게광장 (나-23)	소로 3-44 (분기점)	
	산책로	3	213	1.5	41	68	산책로	산책로 3-212 (분기점)	산책로 3-214 (분기점	
	산책로	3	214	1.5	33	50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54-1	소로 3-44 (분기점)	

라. 총괄표(도봉구)

구 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404,630.50	87,416.13	13동	4,437.05	8,575.99	312	
시설면적	기반시설	소 계	43,117.46	30,320.46					
		도 로	36,472.0	23,675.0 (12,797.0)					( ) 도시계획도로
		광 장	6,645.46	6,645.46					
	조경시설		18,489.49	15,594.28				46	
	휴양시설		3,882.26	3,882.26				90	
	유희시설		778.0	778.0					
	운동시설		21,676.0	21,482.0	2동	1,754.50	3,581.17	21	
	교양시설		13,228.22	10,952.52	6동	2,273.89	4,521.96	1	

구 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편익시설	4,392.75	4,122.75	3동	189.0	189.0	8	
	관리시설	476.00	283.86	2동	219.66	283.86	146	
녹지 · 기타	녹지	297,790.32						
	동물놀이터	800	800					
공원시설율 (법정40%)		(87,416.13㎡ / 404,630.5㎡) x 100% = 21.60%						
공원건폐율 (법정 20%)		(4,437.05㎡ / 404,630.5㎡) x 100% = 1.09%						

마. 시설조서(도봉구)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계				404,630.5	87,416.13		13동	4,437.05	8,575.99	312	감)3,404.0
기반시설	소계			43,117.46	30,320.46						증)94.1
	도로			36,472.0	23,675.0						
					(12,797.0)	( ) 도시계획도로					
	진입광장	가	12개소	3,257.4	3,257.4						
		가-3	도봉구 창동 677공	859.4	859.4					(14)	
		가-5	도봉구 창동 산194-2공	374.6	374.6					(1)	
		가-6	도봉구 창동 677공	174.0	174.0						
		가-10	도봉구 창동 677공	628.7	628.7					(7)	
		가-11	도봉구 창동 산137-1임	435.0	435.0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가-1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87.83	187.83						
		가-1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06.69	206.69						
		가-14	도봉구 창동 산159-6과	49.61	49.61						
		가-15	도봉구 창동 산159-2과	31.32	31.32						
		가-16	도봉구 창동 산157임	30.25	30.25						
		가-18	도봉구 창동 산163-5임	122	122						
		가-19	도봉구 창동 357-1공	158	158						
기반시	휴게광장	나	10개소	2,883.06	2,883.06						증)94.1
		나-12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10	110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변		나-13	도봉구 창동 428공	979	979						
		나-16	도봉구 창동 산157임	188.0	188.0						
		나-17	도봉구 창동 산157임	24.18	24.18						
		나-18	도봉구 창동 산157임	137.0	137.0						
		나-19	도봉구 창동 산157임	93.73	93.73						
		나-20	도봉구 창동 산183임	188.0	188.0						증)94.1
		나-21	도봉구 창동 산183임	44.3	44.3						
		나-2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812.32	812.32						
		나-23	도봉구 창동 산156-1임	306.53	306.53						
	열린광장	녀	도봉구 창동 산177임	505.0	505.0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소계			18,489.49	15,594.28					46	감)220.0
	연못	러	도봉구 창동 677공	1,818.5	769.4					(1)	
	피크닉장	머	도봉구 창동 677공	1,846.11	0						
	지압보도	버	도봉구 창동 677공	278.57	278.57						
	화계	서	2개소	632.8	632.8						
		서-1	도봉구 창동 677공	448.00	448.00						
		서-2	도봉구 창동 산157임	184.80	184.80						
조경시설	야생초화원	까	2개소	1,720	1,720						
		까-6	도봉구 창동 산165공	259	259						
		까-7	도봉구 창동 산144임	1,461	1,461						
	생태육교	⑪	도봉구 창동 산136도							1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생태연못	커	2개소	128.93	128.93						
		커-1	도봉구 창동 산157임	100.53	100.53						
		커-3	도봉구 창동 산183임	28.4	28.4						
	상지	쿄	도봉구 창동 산183임	128.1	128.1						
	하지	쿠	도봉구 창동 440임	56.3	56.3						
	연결수로	큐	도봉구 창동 산183임	53.2	53.2						
	계 류	터	2개소	598.61	598.61						
		터-1	도봉구 창동 산157임	519.71	519.71					(2)	
		터-3	도봉구 창동 440임	78.9	78.9						
	파 고 라 B	②	2개소							2	
		②-9	도봉구 창동 산137-1임 (휴게소(갸-6) 내)	(20.25)	(20.25)					1	
		②-10	도봉구 창동 428공 (휴게소(갸-8) 내)	(20.25)	(20.25)					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파고라C	⑫	8개소							8	
		⑫-28	도봉구 창동 산194-2공 (진입광장(가-5) 내)	(25)	(25)					1	
		⑫-29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⑫-30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⑫-31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⑫-32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조경시설	파고라C	⑫-33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⑫-34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⑫-35	도봉구 창동 산681-1전 (휴게소(갸-1) 내)	(25)	(25)					1	
	파고라E	⑯	9개소							9	
		⑯-1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21)	(21)					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⑯-2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3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4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5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21)	(21)					1	
		⑯-6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10) 내)	(21)	(21)					1	
		⑯-7	도봉구 창동 677공(풋살경기장(아) 내)	(21)	(21)					1	
		⑯-8	도봉구 창동 677공(풋살경기장(아) 내)	(21)	(21)					1	
		⑯-9	도봉구 창동 677공(연못(러) 내)	(21)	(21)					1	
	파고라F	⑰	4개소							4	
		⑰-1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2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4)	(14)					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⑰-3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4)	(14)					1	
		⑰-4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4)	(14)					1	
	막구조파고라	⑱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3) 내)	(108)	(108)					1	
	조형파고라	㉔	도봉구 창동 산156-4임(휴게소(가-23) 내)	(152)	(152)					1	
조경시설	수목보호홀 덮개	⑲	10개소							10	
		⑲-1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2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3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4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5	도봉구 창동 677공(진입광장(가-10) 내)	(1)	(1)					1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⑲-6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10) 내)	(1)	(1)					1	
		⑲-7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	(1)					1	
		⑲-8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	(1)					1	
		⑲-9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	(1)					1	
		⑲-10	도봉구 창동 677공 (진입광장(가-3) 내)	(1)	(1)					1	
	초정	㉚	2개소	29.02	29.02					2	
		㉚-1	도봉구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	
		㉚-2	도봉구 창동 산154-1임	14.51	14.51					1	
	관찰데크 A	어-7	도봉구 창동 산157임	39.18	39.18						
	관찰데크 B	어-8	도봉구 창동 산157임	57.74	57.74						
	전망데크 A	어-9	도봉구 창동 산157임	70.0	70.0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전망데크 B	어-10	도봉구 창동 산157임	19.32	19.32						
	목교	㉛	2개소							2	
		㉛-1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4.4)	(4.4)					1	
		㉛-2	도봉구 창동 산157임 (계류(터-1) 내)	(5.4)	(5.4)					1	
조경시설	휴게데크A	어-14	도봉구 창동 산183임	98.5	98.5						감)50.0
	휴게데크B	어-15	도봉구 창동 산137-62	0 (현황반영)	0 (현황반영)						감)170.0
	옹벽A	㉝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옹벽B	㉞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옹벽C	㉟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옹벽D	㊱	도봉구 창동 산159-1과							1	
	옹벽E	㊲	도봉구 창동 산157임							1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야생화정원	우-1	도봉구 창동 67-1전	914.61	914.61						
	플랜터	㉮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화단	하	도봉구 창동 산192-7	10,000	10,000						
휴양시설	소 계			3,882.26	3,882.26					90	
	휴게소	갸	15개소	3,882.26	3,882.26						
		갸-1	도봉구 창동 677공	1,045.00	1,045.00					(7)	
		갸-6	도봉구 창동 산135-1도	83.0	83.0					(1)	
		갸-8	도봉구 창동 428-1공	54.0	54.0					(1)	
		갸-9	도봉구 창동 산194-2공	66.5	66.5						
		갸-13	도봉구 창동 산157임	372.16	372.16						
		갸-16	도봉구 창동 산183임	14.6	14.6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가-17	도봉구 창동 산183임	6.0	6.0						
		가-18	도봉구 창동 산183임	21.0	21.0						
		가-19	도봉구 창동 산183임	11.0	11.0						
휴양시설	휴게소	가-23	도봉구 창동 산156-3임	1,185.0	1,185.0					(1)	
		가-24	도봉구 창동 산163-5임	284.0	284.0						
		가-25	도봉구 창동 산137-1임	214.0	214.0						
		가-26	도봉구 창동 산157임	16.0	16.0						
		가-27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3.0	13.0						
		가-35	도봉구 창동 산126-1임	497.0	497.0						
	야외탁자		잔디광장 전지역			목재				16	
	장의자		전지역			목재				36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등의자	③	전지역			목재				19	
	사각의자	⑤	전지역			목재				3	
	앉음벽	⑬	전지역							6	
	평의자	⑱	전지역			목재				7	
	연식의자A	㊷-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연식의자B	㊷-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연식의자C	㊷-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	
유희시설	소 계			778.0	778.0						
	놀이터	다	도봉구 창동 산177-1임	778.0	778.0						
운동시설	소 계			21,676.0	21,482.0		2동	1,754.50	3,581.17	21	증)989.2
	풋살경기장	아	도봉구 창동 677공	1,192	1,192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테니스장	자-4	도봉구 창동 산48-3임	0 (공원구역 해제)	0 (공원구역 해제)						감)1,724.2
	축구장	거-2	도봉구 창동 677공	10,503	10,503					21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6-2	도봉구 창동 산126-1임	5,920	5,726	R.C	1동	732.50	2,303.67		
	체력단련장	파	3개소	1,348	1,348						
		파-9	도봉구 창동 677공	899	899						
		파-10	도봉구 창동 산51-1임	139	139						
		파-14	도봉구 창동 677공	310	310						
	족구장	펴	도봉구 창동 산183임 (현황반영)	1,691.0 (현황반영)	1,691.0 (현황반영)						증)735.0
	실내배드민턴장	허-2	도봉구 창동 산131공	1,022.0	1,022.0		1동	1,022.00	1,277.5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계			13,228.22	10,952.52		6동	2,273.89	4,521.96	1	즙)369.0
	도서관	7	2개소	4,977.5	3,357.5		1동	1,134.58	3,111.46	1	
		7-1	도봉구 창동 418대	4,950.0	3,330.0		1동	1,134.58	3,111.46		
		7-2	도봉구 창동 428-1공	27.5	27.5					1	
	책쉼터	차	도봉구 창동 산183임	369.0	369.0		1동	292.79	286.81		즙)369.0
	야외교실	저	도봉구 창동 산137-1임	252.5	252.5						
	야외무대	처	도봉구 창동 산194-2공	463.5	463.5						
	참여형 텃밭	퍼	3개소	3,737.38	3,737.38						
		퍼-1	도봉구 창동 산154-1임	339.24	339.24						
		퍼-2	도봉구 창동 산154-1임	2,756.85	2,756.85						
		퍼-3	도봉구 창동 산154-1임	641.29	641.29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생태학습원	표	3개소	1,801.6	1,801.6						
		표-1	도봉구 창동 432전	1,137.6	1,137.6						
		표-2	도봉구 창동 산137-1임	408.0	408.0						
		표-3	도봉구 창동 산183임	256.0	256.0						
	목재문화체험장	17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17.11	217.11		1동	217.11	253.11		
	가드닝센터 및 온실	18	도봉구 창동 산159-6과	392.28	392.28		1동	392.28	435.45		
	예술공방	19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11.13	111.13		1동	111.13	111.13		
	정원	야	3개소	124.52	124.52						
		야-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46.57	46.57						
		야-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60.45	60.45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야-3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7.50	17.50						
	어린이집	2	도봉구 창동 산194-2임	781.70	126.00	조적조	1동	126	324		
편익시설	소 계			4,392.75	4,122.75		3동	189.0	189.0	8	감)21.2
	주차장	하	3개소	4,069.09	3,799.09						
		하-2	도봉구 창동 산126-1임	1,313	1,119						
		하-8	도봉구 창동 677공	2,536.8	2,460.8						
		하-11	도봉구 창동 산159-6과	219.29	219.29						
	화장실	9	도봉구 창동 산173공	261.0	261.0		3동	189.0	189.0		
		9-3	도봉구 창동 677공	30.0	30.0		1동	30.0	30.0		증)30.0
		9-4	도봉구 창동 산137-1임	115.5	115.5		1동	79.5	79.5		
		9-5	도봉구 창동 산173공	115.5	115.5		1동	79.5	79.5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9-6	도봉구 창동 산183임	0.0	0.0			0.0	0.0		감)51.2
	스탠드	⑮	도봉구 창동 677공							1	
	세족대	㉑	도봉구 창동 677공							1	
	석교	㉖	도봉구 창동 산157임	4.8	4.8					1	
	계단 1	㉗	도봉구 창동 산157임	7.4	7.4					1	
편익시설	계단 2	⑩	도봉구 창동 산157임	13.86	13.86					1	
	계단 6	㉑	도봉구 창동 산159-6과	1.4	1.4					1	
	계단 7	㉘	도봉구 창동 677공	2.2	2.2					1	
	계단 8	㉕	도봉구 창동 산159-5과	33	33					1	

구분	시설명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476.00	283.86		2동	219.66	283.86	146	
	관리사무소	10-3	도봉구 창동 677공	440.00	247.86	R.C	1동	183.66	247.86		
	창고	22	도봉구 창동 산159-6과	36.00	36.00	목구조	1동	36.00	36.00		
	안내판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11	
	방향안내판		전지역			목재				2	
	종합안내판	⑧-4	도봉구 창동 산183임			목재				1	
	휴지통	⑨-2	전지역			목재				12	
	조명등		전지역							109	
	CCTV		전지역							11	
녹지 및 기타	소계			298,590.32							
	녹지			297,790.32							
	동물놀이터	퍄	도봉구 창동 677공	800	800						

바. 도로조서(도봉구)

– 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800	12,797				
	대로	계			574	9,204				
	대로	3	38	15	458	6,877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산192-1	도봉구 창동 산184-3	
	대로	2	74	20	116	2,327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379-1	도봉구 창동 379-1	
	대로	3	1	11~20	205	3,392	도시계획도로	노원구 월계동 산67-2	노원구 월계동 산64-4	
	중로	계			226	3,593				
	중로	1	78	15	159	2,384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418-4	대로 3-38 (분기점)	
	중로	1	79	18	67	1,209	도시계획도로	도봉구 창동 산107-223	도봉구 창동 산107-223	

– 공원시설 계획도로(도봉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계				11,167	23,675				
	소로	계			3,079	10,786				
	소로	3	4	10	334	3,343	진입로	도봉구 창동 452-3	도봉구 창동 산206-6	
	소로	3	7	3	70	211	부진입로	진입광장 (가-3)	지압보도(버)	
	소로	3	8	3~8	70	369	연결로	지압보도 (버)	진입광장 (가-10)	
	소로	3	9	7	119	719	부진입로	중로 1-79 (분기점)	골프연습장 6-2	소형주차 20대포함
	소로	3	15	2	123	246	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29-3	도봉구 창동 산126-1	
	소로	3	18	4	131	524	연결로	소로 3-9 (분기점)	소로 3-15 (분기점)	소형주차 3대포함
	소로	3	19	2	159	317	연결로	연못 (러)	진입광장 (가-3)	
	소로	3	20	2	21	41	연결로	풋살경기장 (아)	소로 3-19 (분기점)	
	소로	3	21	2.5	14	35	연결로	소로 3-22 (기점)	연못 (러)	
	소로	3	22	3	41	124	연결로	소로 3-21 (기점)	소로 3-23 (분기점)	
	소로	3	23	3	126	378	부진입로	진입광장 (가-6)	진입광장 (가-10)	
	소로	3	24	1.5	20	30	연결로	소로 3-23 (분기점)	연못 (러)	
	소로	3	25	2	26	53	부진입로	도봉구 창동 677	관리사무소 (10-3)	
	소로	3	26	2	24	47	부진입로	주차장 (하-8)	소로 3-23 (분기점)	
	소로	3	27	6.5	120	284	부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62	산책로 4-116 (기점)	
	소로	3	28	5	103	516	연결로	진입광장 (가-11)	휴게소 (갸-25)	
	소로	3	29	2	28	56	부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57-1	휴게광장 (나-18)	
	소로	3	30	2	56	111	연결로	휴게광장 (나-18)	전망데크B (어-10)	
	소로	3	31	2	73	146	연결로	휴게광장 (나-18)	전망데크A (어-9)	
	소로	3	32	1.5	55	82	연결로	소로 3-33 (분기점)	휴게광장 (나-1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	3	33	1.5	69	104	연결로	도봉구 창동 산157	소로 3-36 (분기점)	
	소로	3	34	2	41	82	연결로	소로 3-36 (분기점)	소로 3-33 (분기점)	
	소로	3	36	4	69	277	연결로	도봉구 창동 산157	휴게광장 (나-16)	
	소로	3	37	3.5	19	68	연결로	휴게광장 (나-16)	휴게광장 (나-18)	
	소로	3	38	2	54	108	연결로	소로 3-36 (분기점)	소로 3-51 (기점)	
	소로	3	39	2	13	25	연결로	목교 (㉛-1)	휴게광장 (나-17)	
	소로	3	40	2	49	97	연결로	휴게광장 (나-17)	휴게광장 (나-18)	
	소로	3	41	1.5	106	159	연결로	소로 3-51 (종점)	전망데크A (어-9)	
	소로	3	42	1.5	31	46	연결로	소로 3-31 (분기점)	목교 (㉛-2)	
	소로	3	43	2.5	84	211	연결로	참여형텃밭 (퍼-3)	참여형텃밭 (퍼-1)	
	소로	3	44	2	106	212	연결로	소로 3-49 (분기점)	소로 3-43 (분기점)	
	소로	3	44	2	106	212	연결로	소로 3-49 (분기점)	소로 3-43 (분기점)	
	소로	3	46	2	19	38	연결로	소로 3-48	소로 3-49	
	소로	3	47	2	12	24	연결로	대지경계	소로 3-49	
	소로	3	48	2	104	207	연결로	소로 3-49	참여형텃밭 (퍼-3)	
	소로	3	49	2	134	268	연결로	대지경계	소로 3-43	
	소로	3	50	1.5	40	60	연결로	소로 3-36 (종점)	소로 3-32 (분기점)	
	소로	3	51	2	9	19	연결로	소로3-38	목교 (㉛-1)	
	소로	3	52	2	38	76	연결로	휴게광장 (나-23)	휴게소 (갸-23)	
	소로	3	201	1.5	22	33	연결로	산책로 4-109 (분기점)	소로 3-200 (기점)	
	소로	3	205	5	144	688	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59-6과	휴게광장 (나-23)	
	소로	3	206	1.5	20	30	진입로	주차장 (하-11)	소로 3-205 (기점)	
	소로	3	207	3.5	1	5	연결로	진입광장 (가-12)	진입광장 (가-1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	3	211	1.5	62	93	진입로	도봉구 창동 164	산책로 4-209 (분기점)	
	소로	3	212	2	87	173	진입로	도봉구 창동 379-1	진입광장 (가-13)	
	소로	3	213	2	7	13	진입로	도봉구 창동 산163-5	산책로 4-210 (분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계			8,088	12,889				
	산책로	4	1	1.2	350	420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산책로 4-2	
	산책로	4	2	1.2	78	94	산책로	산책로 4-4	산책로 4-4	
	산책로	4	3	1.2	121	145	산책로	산책로 4-98	산책로 4-2	
	산책로	4	4	1.2	44	53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소로 3-19	
	산책로	4	6	1.2	56	67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소로 3-19	
	산책로	4	7	1.2	49	59	산책로	산책로 4-2	소로 3-19	
	산책로	4	8	1.2	94	113	산책로	산책로 4-6	산책로 4-4	
	산책로	4	9	1.2	38	45	산책로	산책로 4-10 (분기점)	소로 3-9 (분기점)	
	산책로	4	10	1.2	203	243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26-1	중로 1-79 (분기점)	
	산책로	4	11	2	72	144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37-9	산책로 4-13 (분기점)	
	산책로	4	13	2	38	75	산책로	소로 3-15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31	
	산책로	4	14	2	123	245	산책로	진입광장 (가-14)	도봉구 창동 산137-6	
	산책로	4	15	2	43	85	산책로	야생초화원 (까-7)	도봉구 창동 산144	
	산책로	4	28	1.5	119	178	산책로	산책로 4-181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78	
	산책로	4	31	1.5	441	502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94-2	도봉구 창동 산193-4	
	산책로	4	32	1.5	238	357	산책로	산책로 4-33 (분기점)	대로 3-38 (기점)	
	산책로	4	33	1.5	235	353	산책로	산책로 4-192 (종점)	도봉구 창동 산189-3	
	산책로	4	36	1.5	197	296	산책로	산책로 4-106 (분기점)	소로 3-4 (분기점)	
	산책로	4	68	1.2	61	121	산책로	산책로 4-108 (종점)	열린광장 (녀)	
	산책로	4	80	2	241	481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26-3	소로 3-15 (분기점)	
	산책로	4	85	1.5	235	353	산책로	산책로 4-31 (기점)	산책로 4-31 (분기점)	
	산책로	4	86	1.5	45	68	산책로	산책로 4-212 (분기점)	산책로 4-87 (분기점)	
	산책로	4	87	1.5	309	464	산책로	소로 3-4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201	
	산책로	4	90	2	25	50	산책로	산책로 4-95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37-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93	1.2	149	169	산책로	산책로 4-7 (분기점)	산책로 4-2 (분기점)	
	산책로	4	95	2	44	88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 137-6	생태육교 (㉮)	
	산책로	4	97	2.5	74	89	산책로	산책로 4-1 (분기점)	산책로 4-98 (기점)	
	산책로	4	98	1.2	16	19	산책로	도봉구 창동 677	도봉구 창동 677	
	산책로	4	106	1.5	441	662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207-1	도봉구 창동 산189-3	
	산책로	4	107	1.5	90	135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89-1	산책로 4-108 (기점)	
	산책로	4	108	2	17	34	산책로	산책로 4-107 (종점)	산책로 4-109 (기점)	
	산책로	4	109	2	60	120	산책로	산책로 4-108 (종점)	도봉구 창동 산167-4	
	산책로	4	113	2	82	164	산책로	진입광장 (가-11)	휴게광장 (나-12)	
	산책로	4	114	2	78	155	산책로	소로 3-28 (분기점)	생태학습원 (표-2)	
	산책로	4	115	2	60	120	산책로	야외교실 (저)	생태학습원 (표-2)	
	산책로	4	116	2	198	395	산책로	소로 3-27 (종점)	소로 3-27 (분기점)	
	산책로	4	117	2	39	77	산책로	휴게소 (갸-9)	도봉구 창동 462-2	
	산책로	4	118	2	105	209	산책로	휴게소 (갸-9)	산책로 4-87 (분기점)	
	산책로	4	119	1.8	50	90	산책로	산책로 4-116 (기점)	도봉구 창동 산176-11	
	산책로	4	120	1.8	137	274	산책로	산책로 4-116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67-4	
	산책로	4	121	1.8	87	156	산책로	휴게소 (갸-6)	소로 3-28 (분기점)	
	산책로	4	122	1.8	12	22	산책로	산책로 4-121 (분기점)	소로 3-28 (분기점)	
	산책로	4	123	1.3	46	60	산책로	도봉구 창동 462-2	야외무대 (처)	
	산책로	4	124	1.5	77	115	산책로	산책로 4-36 (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204-1	
	산책로	4	162	1.5	15	22	산책로	산 4-165 (분기점)	산 4-164 (분기점)	
	산책로	4	163	1.5	29	44	산책로	산책로 4-168 (분기점)	전망데크A (어-9)	
	산책로	4	164	1.5	115	173	산책로	도봉구 창동 368	진입광장 (가-16)	
	산책로	4	165	1.5	39	58	산책로	도봉구 창동 368	도봉구 창동 369-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166	2.8~5	26	86	산책로	열린광장(녀)	생태학습원(표-1)	
	산책로	4	167	1.5	2	3	산책로	열린광장(녀)	산책로 4-166(종점)	
	산책로	4	168	1.5	189	283	산책로	진입광장(가-16)	소로 3-51(기점)	
	산책로	4	169	3.0	9	26	산책로	산책로 4-168(분기점)	휴게소(갸-23)	
	산책로	4	170	1.2	33	40	산책로	산책로 4-168(분기점)	소로 3-205(분기점)	
	산책로	4	171	1.2	192	237	산책로	소로 3-205(분기점)	휴게소(갸-25)	
	산책로	4	172	5~7.5	61	364	산책로	연결수로 (큐)	도봉구 창동 산189-1	
	산책로	4	173	1.5	15	22	산책로	산책로 4-172(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89-1	
	산책로	4	181	1.5	155	232	산책로	상지 (쿄)	산책로 4-181(분기점)	
	산책로	4	182	1.2	73	87	산책로	산책로 4-181(분기점)	산책로 4-181(분기점)	
	산책로	4	184	1.5	160	240	산책로	산책로 4-172(분기점)	산책로 4-188(분기점)	
	산책로	4	188	2	87	174	산책로	대로 3-38(분기점)	족구장(펴)	
	산책로	4	189	2	116	231	산책로	산책로 4-188(분기점)	산책로 4-32(기점)	
	산책로	4	191	1.5	35	52	산책로	산책로 4-189(분기점)	족구장(펴)	
	산책로	4	192	1.2	48	58	산책로	생태육교(ⓗ)	산책로 4-33(기점)	
	산책로	4	207	2	94	187	산책로	산책로 4-68(분기점)	도봉구 창동 산178	
	산책로	4	208	1.5	73	110	산책로	산책로 4-207(분기점)	산책로 4-28(분기점)	
	산책로	4	209	1.5	73	146	산책로	산책로 4-120(분기점)	산책로 4-120(분기점)	
	산책로	4	210	2	45	90	연결로	소로 3-206(분기점)	소로 3-206(분기점)	
	산책로	4	212	1.5	104	156	산책로	산책로 4-33(분기점)	산책로 4-85(분기점)	
	산책로	4	222	2	84	170	산책로	산책로 4-13(분기점)	산책로 4-13(분기점)	
	산책로	4	223	1.5	41	61	산책로	산책로 4-32(분기점)	산책로 4-224(분기점)	
	산책로	4	224	1.5	75	112	산책로	산책로 4-227(분기점)	산책로 4-226(분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225	1.5	56	84	산책로	산책로 4-227 (분기점)	산책로 4-226 (분기점)	
	산책로	4	226	1.5	70	105	산책로	산책로 4-227 (분기점)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4	227	1.5	205	307	산책로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4-32 (분기점)	
	산책로	3	205	1.5	140	168	산책로	진입광장 (가-13)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	206	3	14	44	산책로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	207	1.5	9	14	산책로	진입광장 (가-16)	산책로 3-208 (분기점)	
	산책로	3	208	1.5	73	88	산책로	진입광장 가-15	산책로 3-208 (기점)	
	산책로	3	209	1.5	129	171	산책로	진입광장 (가-16)	소로 3-205 (분기점)	
	산책로	3	210	1.5	30	41	산책로	산책로 3-211 (분기점)	휴게광장 (나-23)	
	산책로	3	211	1.5	14	44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56-3	휴게광장 (나-23)	
	산책로	3	212	1.5	53	77	산책로	휴게광장 (나-23)	소로 3-44 (분기점)	
	산책로	3	213	1.5	41	68	산책로	산책로 3-212 (분기점)	산책로 3-214 (분기점)	
	산책로	3	214	1.5	33	50	산책로	도봉구 창동 산154-1	소로 3-44 (분기점)	

사. 총괄표(노원구)

구 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489,236.3	60,738.67	17동	3,651.29	5,160.09	455	
시설면적	기반시설	소 계	30,919.65	21,347.65					
		도 로	28,861	19,289 (9,572)					( ) 도시계획도로
		광 장	2,058.65	2,058.65					
	조경시설		2,738.81	2,738.81				10	
	휴양시설		9,758.26	9,758.26	6동	157.14	157.14	268	
	유희시설		492.08	492.08				3	
	운동시설		20,535.25	19,793.25	3동	2,759.75	4,268.55		감)956.0

구 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406.54	406.54	2동	293.75	293.75		
	편익시설	5,652.24	5,652.24	2동	190.02	190.02	14	
	관리시설	549.84	549.84	4동	250.63	250.63	160	
녹지 · 기타	녹지	418,183.63						
공원시설율 (법정40%)		(60,738.67㎡ / 489,236.3㎡) x 100% = 12.41%						
공원건폐율 (법정 20%)		(3,389㎡ / 489,236.3㎡) x 100% = 0.83%						

아. 시설조서(노원구)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계				489,236.3	60,738.67		17동	3,651.29	5,160.09	455	
기반시설	소계			30,919.65	21,347.65						
	도로			28,861	19,289						
					(9,572)	( ) 도시계획도로					
	진입광장	가	4개소	1,142.68	1,142.68						
		가-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75.25	175.25						
		가-2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22.0	122.0						
		가-7	노원구 월계동 749-2전	358.76	358.76						
		가-8	노원구 월계동 916-4전	486.67	486.67						
	휴게광장	나	4개소	784.0	784.0						
		나-4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30.25	130.25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나-6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67.25	67.25						
		나-7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366.5	366.5						
		나-10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220.0	220.0						
	작은광장	카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131.97	131.97						
조경시설	소계			2,738.81	2,738.81					10	
	잔디광장	다	노원구 월계동 916전	436.96	436.96						
	야생초화원	까	2개소	1,225.8	1,225.8						
		까-1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584.88	584.88					(1)	
		까-5	노원구 월계동 912-9구	640.92	640.92						
조경시	억새원	꺄	노원구 월계동 산24-1임	470.16	470.16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설	생태계류	라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320.60	320.60						
	생태습지	바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285.29	285.29					(1)	
	파 고 라 A	①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72)	(72)	탄소강				1	
	파 고 라 B	②	7개소			목재				7	
		②-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테니스장(자-3) 내)	(20.25)	(20.25)					1	
		②-2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야생초화원(까-1) 내)	(20.25)	(20.25)					1	
		②-4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7) 내)	(20.25)	(20.25)					1	
		②-5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7) 내)	(20.25)	(20.25)					1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②-6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휴게광장(나-6) 내)	(20.25)	(20.25)					1	
		②-7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휴게광장(나-4) 내)	(20.25)	(20.25)					1	
		②-8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진입광장(가-1) 내	(20.25)	(20.25)					1	
	목교	㉛-3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생태습지(바) 내)	(6)	(6)					1	
	물레방아	㉜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휴양시설	소 계			9,758.26	9,758.26		6동	157.14	157.14	268	
	휴게소	가	4개소	902.0	902.0		3동	108	108		
		가-21	노원구 월계동 산8-9임	148.0	148.0						
		가-30	노원구 월계동 산6임	196.0	196.0	목조	1동	36	36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갸-31	노원구 월계동 산8-2임	385.0	385.0	목조	1동	36	36		
		갸-33	노원구 월계동 산66-3임	173.0	173.0	목조	1동	36	36		
	야외탁자		잔디광장 전지역			목재				48	
	장의자		전지역			목재				109	
	등의자	③	전지역			목재				57	
	사각의자	⑤	전지역			목재				11	
	앉음벽	⑬	전지역							21	
	평의자	㉙								22	
	야영장	여	4개소	8,655.40	8,655.40						
	야영장1	여-1	노원구 월계동 749전	4,484.52	4,484.52						
	야영장2	여-2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167.86	1,167.86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야영장3	여-3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2,710.56	2,710.56						
		여-4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292.46	292.46						
	부속동	16	3개소	200.86	200.86		3동	49.14	49.14		
	부속4동	16-1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83.60	83.60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부속5동	16-2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71.74	71.74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부속6동	16-3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45.52	45.52	경량철골조	1동	16.38	16.38		
유희시설	소 계			492.08	492.08					3	
	조합놀이대	⑭-1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트리하우스	⑭-2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사면슬라이드	⑭-3	노원구 월계동 산3-1임							1	
	생태놀이터	나	2개소	492.08	492.08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생태놀이터1	나-1	노원구 월계동 산17-8임	292.44	292.44						
	생태놀이터2	나-2	노원구 월계동 산17-1임	199.64	199.64						
운동시설	소 계			20,535.25	19,793.25		3동	2,759.75	4,268.55		감)956.0
	테니스장	자-3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2,497.25	2,497.25		1동	72	72	(2)	
	농구장	라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703	703						
	축구장	거-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7,020	6,278						
	골프연습장	6-3	노원구 월계동 산65-4임	7,950	7,950	R.C	1동	1,165.64	2,674.44		
	배드민턴장	타	노원구 월계동 산69임	348.0	348.0						
	체력단련장	파	2개소	269	269						
		파-16	노원구 월계동 산8-9임	215	215						
		파-17	노원구 월계동 912-9구	54	54						
	실내배드민턴장	허-1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1,748.0	1,748.0		1동	1,522.11	1,522.11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계			406.54	406.54		2동	293.75	293.75		
	도자기체험장	8	노원구 월계동 산17-7임	278.54	278.54		1동	278.54	278.54		
	승극철부부묘	24	노원구 월계동 산68-2임	128	128	목조	1동	15.21	15.21		
편익시설	소계			5,652.24	5,652.24		2동	190.02	190.02	14	
	주차장	하	4개소	5,306.62	5,306.62						
		하-4	노원구 월계동 산65-1임	3,006.0	3,006.0						
		하-9	노원구 월계동 749-2전	546.88	546.88						
		하-10	노원구 월계동 912-9구	296.79	296.79						
		하-12	노원구 월계동 산4-9임	1,456.95	1,456.95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장애인주차장	노-2	노원구 월계동 749-2전	34.76	34.76						
	음 수 전 A	⑦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스테인레스				1	
	화장실 및 세면장	탸	2개소	310.86	310.86		2동	190.02	190.02		
		탸-1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178.62	178.62	조적조	1동	95.01	95.01	(2)	
		탸-2	노원구 월계동 750대	132.24	132.24	조적조	1동	95.01	95.01		
	야외스파	㉓-1	노원구 월계동 산5-5임			반고정용		(8)	(8)	2	
	야외테이블A	㉓-2	노원구 월계동 749-7전			반고정용				1	
	야외테이블B	㉓-3	노원구 월계동 산 5-5임			반고정용				10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549.84	549.84		4동	250.63	250.63	160	
	관리사무소	10	2개소	141.40	141.40		2동	126.36	126.36		
		10-2	노원구 월계동 산63-4임	120.36	120.36	조적	1동	120.36	120.36		
		10-5	노원구 월계동 749-7전	21.04	21.04	목구조	1동	6	6		
	방문자센터	20	노원구 월계동 749-7전	302.03	302.03	목구조	1동	75.85	75.85		
	용품점	21	노원구 월계동 749-7전	80.68	80.68	조적조	1동	48.42	48.42		
	안내판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12	
	방향안내판		전지역			목재				2	
	종합안내판		진입광장 등 전지역			목재				5	
		⑧	노원구 월계동 산63-1수			목재				2	
		⑧-1	노원구 월계동 749-2전			목재				1	
		⑧-2	노원구 월계동 692임			목재				1	

구분	시설명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⑧-3	노원구 월계동 675전			목재				1	
	휴지통		전지역			목재				14	
		⑨	전지역			목재				12	
		⑨-1	노원구 월계동 748-7답			목재				2	
	분리수거장	23	노원구 월계동 748-7답	25.73	25.73	목재					
	조명등		전지역							109	
	CCTV		전지역							11	
	휀스	㉒	노원구 월계동 산 5-5 임			철재,목재				1	
	게이트	㉓	노원구 월계동 산 5-5 임			목재				4	
	주차 차단기	㊵	노원구 월계동 749-2전			-				2	
녹지 및 기타	소계			418,183.63							잔)956.0
	녹지			418,183.63							잔)956.0

자. 도로조서(노원구)

– 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514	9,572				
	대로	계			514	9,572				
	대로	3	61	20	309	6,180	도시계획도로	노원구 월계동 산69-3	노원구 월계동 산65-21	
	대로	3	1	11~20	205	3,392	도시계획도로	노원구 월계동 산67-2	노원구 월계동 산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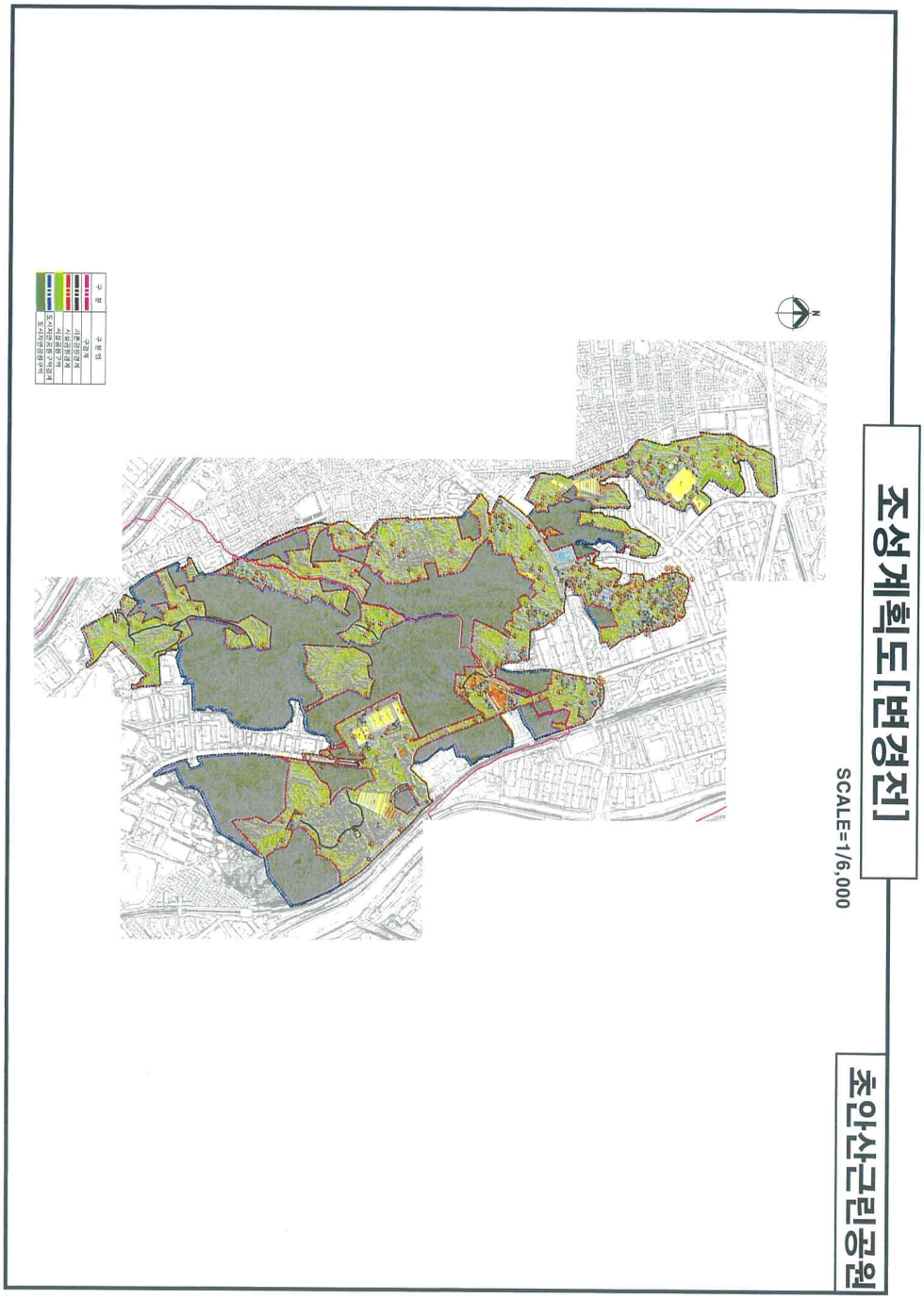
– 공원시설 계획도로(노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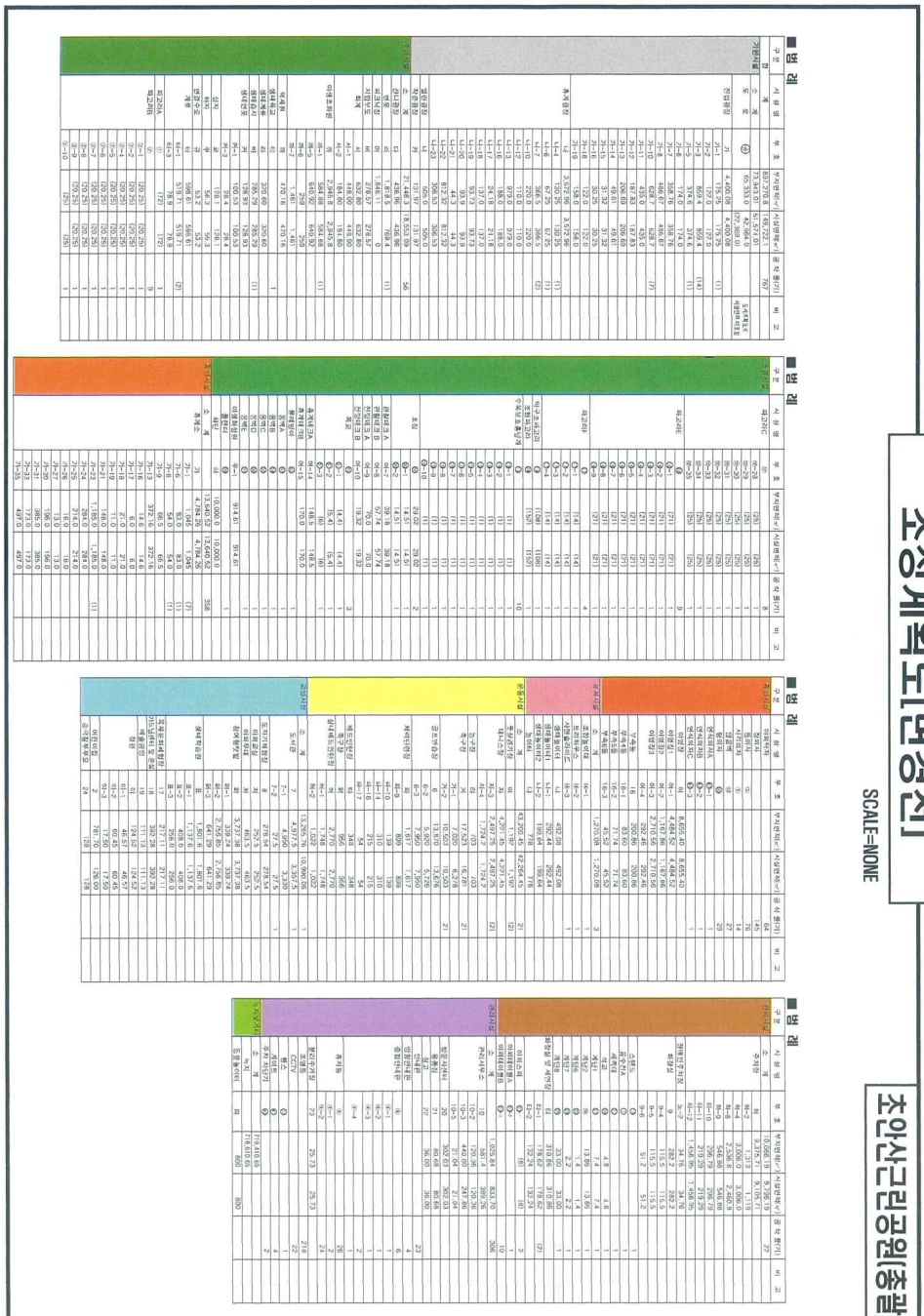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계				5,798	19,289				
	소로	계			1,667	7,008				
	소로	3	10	6.5	220	1,427	연결로	대로 3-61	소로 3-11 (기점)	
	소로	3	11	6.5	230	1,493	연결로	소로 3-10 (종점)	산책로 4-69 (분기점)	
	소로	3	14	9.5	88	837	연결로	소로 3-10 (분기점)	주차장 (하-4)	
	소로	3	16	3	14	52	연결로	대로 3-1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64-5	
	소로	3	17	2.5	120	301	연결로	산책로 4-222 (기점)	휴게광장 (나-10)	
	소로	3	196	4	136	595	연결로	진입광 (가-7)	휴게광장 (나-24)	
	소로	3	197	3	125	375	연결로	진입광장 (가-7)	소로 3-196 (분기점)	
	소로	3	198	4	118	529	연결로	주차장 (하-9/노-2)	휴게광장 (나-24)	
	소로	3	199	4	68	343	연결로	휴게광장 (나-24)	소로 3-200 (기점)	
	소로	3	200	3.5	42	147	연결로	소로 3-199 (종점)	부속 6동 (16-3)	
	소로	3	201	1.5	129	193	연결로	산책로 4-109 (분기점)	소로 3-200 (기점)	
	소로	3	202	2	109	218	산책로	소로 3-200 (종점)	노원구 월계동 산5-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소로	3	208	2	5	9	진입로	대로 3-1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67	
	소로	3	209	2	218	435	진입로	노원구 월계동 779	산책로 4-51 (분기점)	
	소로	3	210	1.2	45	54	진입로	노원구 월계동 914-1	산책로 4-221 (분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계			4,131	12,281				
	산책로	4	39	2	123	246	산책로	휴게광장 (나-10)	노원구 월계동 산12	
	산책로	4	40	1.5	121	181	산책로	산책로 4-106 (분기점)	휴게소 (갸-28)	
	산책로	4	43	2	38	76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5-2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	50	1.5	35	52	산책로	산책로 4-75 (종점)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	51	2	511	1,022	산책로	산책로 4-214 (분기점)	산책로 4-53 (분기점)	
	산책로	4	53	2	153	305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799-4	노원구 월계동 779	
	산책로	4	54	2	225	449	산책로	산책로 4-55 (종점)	산책로 4-99 (분기점)	
	산책로	4	55	2	80	160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265-2	산책로 4-54 (기점)	
	산책로	4	57	2	61	121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82	산책로 4-55 (종점)	
	산책로	4	61	2	94	187	산책로	대로 3-61 (분기점)	배드민턴장 (타)	
	산책로	4	66	2	473	945	산책로	산책로 4-54 (분기점)	산책로 4-54 (분기점)	
	산책로	4	69	3.5~15	151	1,425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63-1	진입광장 (가-1)	
	산책로	4	70	10	207	2,065	산책로	진입광장 (가-2)	휴게광장 (나-4)	
	산책로	4	71	3	111	332	산책로	산책로 4-70 (분기점)	산책로 4-75 (기점)	
	산책로	4	72	3.5~8	170	1,105	산책로	휴게광장 (나-4)	산책로 4-73 (종점)	
	산책로	4	73	4.5	280	1,122	산책로	테니스장 (자-3)	산책로 4-72 (종점)	
	산책로	4	75	1.7	117	199	산책로	휴게광장 (나-4)	산책로 4-50 (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4	99	2	150	300	산책로	소로 3-10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64-5	
	산책로	4	100	2	18	36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64-5	노원구 월계동 산60-1	
	산책로	4	102	2	133	265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37-1	산책로 4-51 (분기점	
	산책로	4	194	1.5	75	113	산책로	산책로 4-40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8-9	
	산책로	4	195	1.5	30	45	산책로	체력단련장 (파-16)	휴게소 (갸-21)	
	산책로	4	203	1.2	82	98	산책로	소로 3-198 (분기점)	소로 3-199 (분기점)	
	산책로	4	204	1.2	45	54	산책로	소로 3-198 (분기점)	산책로 4-203 (분기점)	
	산책로	4	205	1.5	141	211	산책로	진입광장 (가-8)	산책로 4-206 (분기점)	
	산책로	4	206	2.5	58	146	산책로	소로 3-17 (분기점)	휴게광장 (나-10)	
	산책로	4	211	2	13	25	산책로	소로 3-202 (분기점)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	213	2	107	214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5	산책로 4-214 (분기점)	
	산책로	4	214	2	119	338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8-2	노원구 월계동 산8-6	
	산책로	4	215	2	27	54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5	노원구 월계동 산62	
	산책로	4	216	2	30	60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64-5	진입광장 (가-2)	
	산책로	4	217	2	22	44	산책로	산책로 4-66 (분기점)	배드민턴장 (타)	
	산책로	4	218	2	28	57	산책로	노원구 월계동 산73	산책로 4-66 (분기점)	
	산책로	4	219	2	44	88	산책로	산책로 4-99 (분기점)	대로 3-1 (분기점)	
	산책로	4	220	1.5	14	28	산책로	산책로 4-221 (분기점)	소로 3-210 (분기점)	
	산책로	4	221	2.5	45	113	산책로	진입광장 (가-8)	산책로 4-205 (분기점)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6,000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NONE
초안산근린공원(총괄)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NONE

초안산근린공원(도봉구)

■ 범 례

■ 범 례

■ 범 례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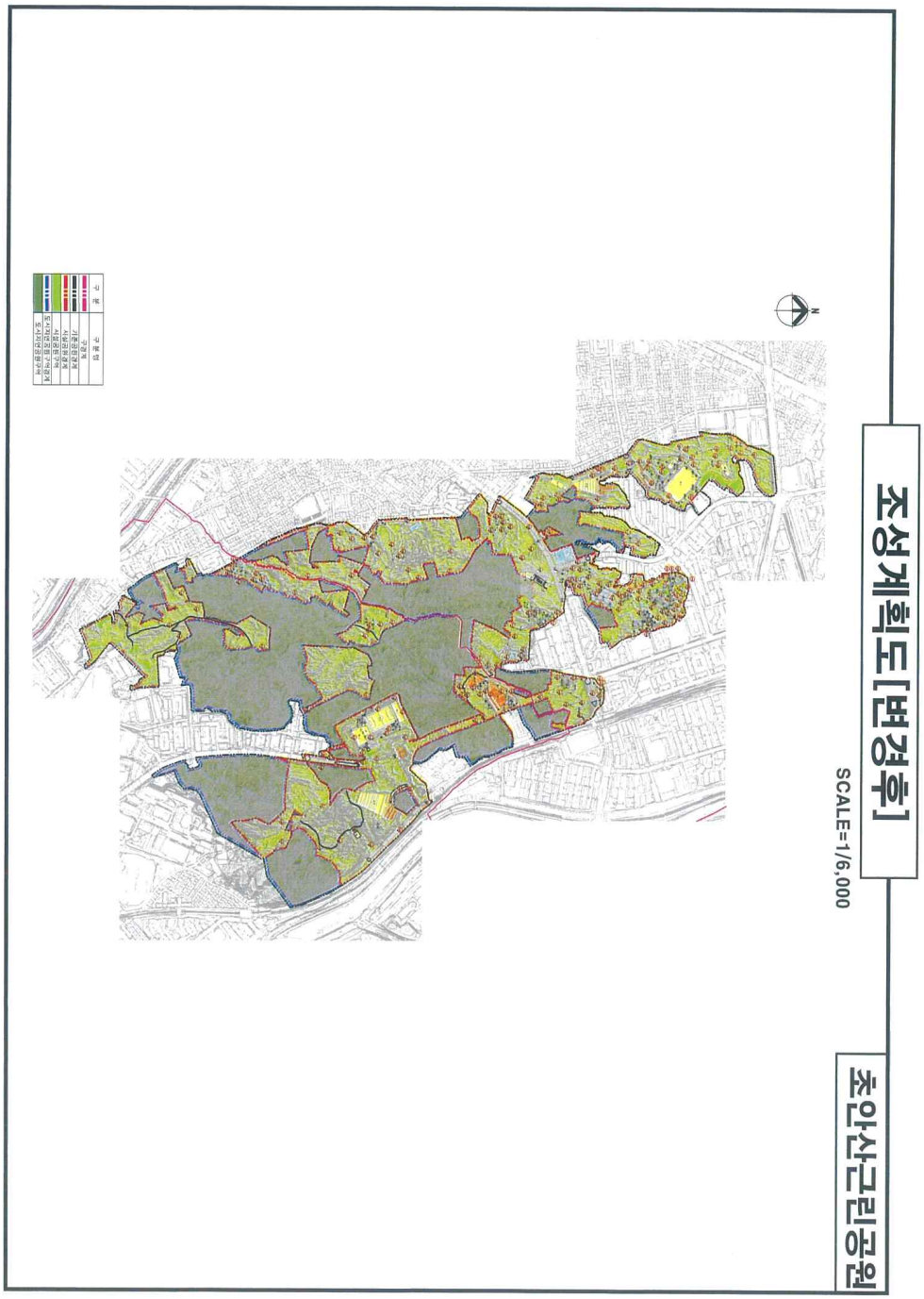
초안산근린공원(노원구)

■ 범 례

구분	시설명	호수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층수	주차대수(대)	비고
기반시설	도로	소계	㉮	30,819.50	27,347.69	455		
		소계	㉯	20,661	19,121			도시계획도로 세분류 도로
자연녹지	자연경관	전망대	가-1	1,147.68	1,147.68			
		전망대	가-2	1,155.76	1,155.76			
		전망대	가-3	1,123.0	1,123.0			
		전망대	가-4	936.74	936.74			
	휴게공원	녹지	나-1	784.0	784.0			
		녹지	나-2	1,380.75	100.75			
		녹지	나-3	867.5	867.5			
		녹지	나-4	1,380.75	100.75			
		녹지	나-5	867.5	867.5			
		녹지	나-6	867.5	867.5			
		녹지	나-7	867.5	867.5			
		녹지	나-8	867.5	867.5			
		녹지	나-9	867.5	867.5			
		녹지	나-10	228.0	228.0			
	자연생태	전망대	가	2,738.81	2,738.81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다	436.96	436.96		10	
	어울마당	어울마당	라	1,225.8	1,225.8			
	역사체험	역사체험	마	640.82	640.82		(1)	
	문화광장	문화광장	바	4,70.16	4,70.16			
	휴게쉼터	휴게쉼터	사	380.59	380.59		(1)	
	휴게쉼터	휴게쉼터	아	122	122			
	녹지마당	녹지마당	자-1	100.75	100.75		7	
			자-2	100.75	100.75		1	
			자-3	100.75	100.75		1	
			자-4	100.75	100.75		1	
			자-5	100.75	100.75		1	
			자-6	100.75	100.75		1	
			자-7	100.75	100.75		1	
	녹지	녹지	차-1	100.75	100.75		1	
	문화광장	문화광장	차-2	100.75	100.75		1	
	녹지	녹지	차-3	9,756.56	9,756.56		268	
	휴게공원	휴게공원	카	3802	3802			
			자-7	148	148			
			자-8	3851	3851			
			자-9	173	173		48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타				107	
	생태공원	생태공원	파				11	
	녹지	녹지	하				27	
	휴게공원	휴게공원	거	8,655.49	8,655.49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너	1,147.88	1,147.88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더	500.46	500.46			
	보육원	보육원	러	8,369	8,369			
	보육원	보육원	머	71.74	71.74			
	보육원	보육원	버	492.08	492.08		3	
	주차장	주차장	서					
	도로	도로	어					
	시설녹지	시설녹지	저	492.08	492.08			
	생태녹지	생태녹지	처					
	생태녹지	생태녹지	커					
	생태녹지	생태녹지	터					
	생태녹지	생태녹지	퍼	1,190.64	1,190.64			

■ 범 례

구분	시설명	호수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층수	주차대수(대)	비고
공동주택	도로	소계	㉮	21,101.25	20,719.25		(2)	
	대나무숲	소계	㉯	2,497.25	2,497.25			
	수리장	수리장	나-3	7,600	6,378			
	휴게쉼터	휴게쉼터	가-1	7,600	7,600			
	물레방아동산	물레방아동산	다-3	7,600	7,600			
	체육단련장	체육단련장	다-5	2,13	215			
	체육단련장	체육단련장	다-7	948	948			
	체육단련장	체육단련장	다-8	948	948			
	산책로단련장	산책로단련장	다-1	1,748	1,748			
	체육단련장	체육단련장	다-9	948	948			
	도시텃밭	도시텃밭	나	456.54	456.54			
	도시텃밭	도시텃밭	다	718.128	718.128			
	유희놀이공원	유희놀이공원	라	24	5,632.24	5,632.24	14	
	숲	숲	마	5,632.24	5,632.24			
	수리장	수리장	바	5,500.07	5,500.07	3,000		
			바-1	3,000	3,000			
			바-9	946.68	946.68	516.68		
			바-11	1,456.95	1,456.95		1	
	장애인수상대	장애인수상대	다-2	34.76	34.76			
	체험형 숲 체험마당	체험형 숲 체험마당	아	318.96	318.96			
			다-11	178.628	178.628		(2)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다-12	132.24	132.24		2	
	어린이놀이터A	어린이놀이터A	아-	180	180		1	
	어린이놀이터B	어린이놀이터B	아-	5,499.34	5,499.34		10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나	141.40	141.40		160	
			다-2	120.36	120.36		1	
	보육시설	보육시설	다-15	1,818.67	1,818.67		2	
	보육시설	보육시설	다	3203.03	3203.03		1	
	생활체육	생활체육	가	80.68	80.68		17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나				2	
	유희놀이터	유희놀이터	다				5	
			다-1				1	
			다-4				1	
			다-3				1	
	휴식쉼	휴식쉼	나				2	
			다-1				1	
	휴게쉼	휴게쉼	다-2	25.73	25.73		17	
	생태연못A형	생태연못A형	다				(19)	
	생태연못B형	생태연못B형	다				11	
	CCTV	CCTV	다-1				4	
	폐쇄회로	폐쇄회로	다-2				7	
	주차장	주차장	㉯	417,227.63				
	녹지	녹지	㉰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6,000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NONE

초안산근린공원(종합)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NONE

초안산근린공원(도봉구)

■ 범 례

■ 범 례

■ 범 례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NONE

초안산근린공원(노원구)

■ 범 례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기)	비 고
기반시설	소 계		430,238.3	60,398.49	495	
	도 로	㉮	30,619.80	21,147.69		도시계획도로
	소 계		28,861	190.21		
진입광장	진입광장	가	1,142.68	1,142.68		
	근린광장	나	1,122.0	1,122.0		
	근린광장	다	1,155.76	1,155.76		
주제공원	근린광장	라	784.0	784.0		
	근린광장	마	1,305.25	1,305.25		
	근린광장	바	226.0	226.0		
	근린광장	사	2,731.87	2,731.87	10	
	근린광장	아	2,306.96	2,306.96		
	어울마당	자	1,225.8	1,225.8		
	어울마당	차	640.82	640.82	(1)	
	어울마당	카	470.14	470.14		
	어울마당	타	385.25	385.25	(1)	
	휴게공간	(가)	(72)	(72)		
	휴게공간	(나)	(130.25)	(130.25)	1	
	휴게공간	(다)	(130.25)	(130.25)	1	
	휴게공간	(라)	(130.25)	(130.25)	1	
	휴게공간	(마)	(130.25)	(130.25)	1	
	휴게공간	(바)	(130.25)	(130.25)	1	
	휴게공간	(사)	(130.25)	(130.25)	1	
	휴게공간	(아)	(130.25)	(130.25)	1	
	휴게공간	(자)	(130.25)	(130.25)	1	
	휴게공간	(차)	(130.25)	(130.25)	1	
	휴게공간	(카)	(130.25)	(130.25)	1	
	휴게공간	(타)	(130.25)	(130.25)	1	
	옥외행사장	㉯	9,358.36	9,358.36	288	
	주차장	㉰	9,582.0	582.0		
	주차장	가	148	148		
	주차장	2-20	168	168		
	주차장	2-10	135	135		
	주차장	2-13	173	173		
	어린이집	㉱			48	
	도서관	㉲			107	
	사회복지	㉳			11	
	체육시설	㉴			27	
	야외공연장	㉵	8,655.42	8,655.42		
	야외무대	㉶	1,187.86	1,187.86		
	야외음악당	㉷	2,716.96	2,716.96		
	정자	4-1	300.96	300.96		
	정자	4-2	76.74	76.74		
	정자	4-3	63.60	63.60		
	정자	4-4	76.74	76.74		
	소 계		492.08	492.08	3	
공원시설	경계펜스	4-1			1	
	보행통로데크	4-2			1	
	서문주차장펜스	4-3			1	
	보행통로데크	4-4	492.08	492.08		
	화장실(남녀공용)	나-1	196.64	196.64		
	화장실(남녀공용)2	나-2				

■ 범 례

구분	시 설 명	부 호	보호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기)	비 고
공원조성	소 계		95,535.25	19,793.53	(2)	
	녹지시설	가-3	2,497.53	2,497.53	(2)	
	녹수공	가-1	7,920	6,278		
	물고기보호실	가-2	7,920	7,920		
	체육시설장	나-16	215	215		
	화장실	나-17	54	54		
	관리사무소(주차장)	나-1	1,748	1,748		
	관리사무소	나	406.54	406.54		
	주차장(화물차)	가	278.125	278.125		
	주차장	나	5,692.24	5,692.24	14	
	주차장	나-4	5,306.0	5,306.0		
	주차장	나-9	346.88	346.88		
	주차장	나-10	1,256.76	1,256.76	1	
	자연생태숲	나-2	34.76	34.76		
	자연생태숲	다	318.96	318.96	(2)	
	자연생태숲	다-1	178.62	178.62		
	자연생태숲	다-2	124.24	124.24	2	
	야외조각공원	라	180	180	1	
	야외음악당	마	2,716.96	2,716.96	10	
	정자	4-1	300.96	300.96	(10)	
	정자	4-2	141.40	141.40		
	정자	4-3	126.36	126.36		
	정자	4-4	141.40	141.40		
	휴게쉼터	나-1	303.03	303.03	2	
	휴게쉼터	나-2	80.69	80.69	12	
	화장실(남녀공용)	23	25.73	25.73	109	
	CCTV	㉮			11	
	주차장	㉯			4	
	주차장	㉰			2	
	휴게쉼터	㉱			1	
	휴게쉼터	4-1			1	
	휴게쉼터	4-2			1	
	휴게쉼터	4-3			2	
	휴게쉼터	4-4			1	
	휴게쉼터	나-1			2	
	휴게쉼터	나-2			12	
	화장실(남녀공용)	23	25.73	25.73	109	
	CCTV	㉮			11	
	주차장	㉯			4	
	주차장	㉰			2	
	휴게쉼터	㉱			1	
	휴게쉼터	4-1			1	
	휴게쉼터	4-2			1	
	휴게쉼터	4-3			2	
	휴게쉼터	4-4			1	
	휴게쉼터	나-1			2	
	휴게쉼터	나-2			12	
	화장실(남녀공용)	23	25.73	25.73	109	
	CCTV	㉮			11	
	주차장	㉯			4	
	주차장	㉰			2	
	휴게쉼터	㉱			1	
체크리스트	소 계		418,183.63			
	조경	㉮	418,183.63			

◈ 도봉구공고 제2024-1012호

도시관리계획(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6호(2007.8.23.)로 결정 고시된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봉동 631번지 외 4필지에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도 봉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도시관리계획(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 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계획 : 변경

■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고
기정	S3	3,602.6	
변경	S3	3,668.3	증) 65.7㎡

■ 가구 및 획지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S3	· 가구 면적 증가 - 증) 65.7㎡	· 실효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면적 포함

(2) 획지계획 : 변경

■ 획지 및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지번	면적 (㎡)	계획내용	비고
기정	S3	631대 일부	1,935.8	획지	간선변 적정규모 유도
		631-1대			
		631-3대			
		631-7대			
		631-29대 일부			
변경	S3	631대	1,823.1	획지	간선변 적정규모 유도
		631-3대			
		631-7대			
		631-29대			
		631-1대	178.4	-	-

■ 획지 및 공동개발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S3	· 획지계획 조정 - 기존 획지 면적감소 (감 112.7㎡)	· 획지 내 개발사업 추진 관련 면적 변경(감 178.4㎡) · 실효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면적 포함 (증 65.7㎡)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배치·형태 : 변경

- 건축물의 배치 : 변경

적용대상	적용기준	비고
S3	건축한계선 1m, 2m	

※ 도봉동 631, 631-29번지의 기정 획지선을 건축한계선으로 신설 결정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 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공지 및 통로 : 변경

■ 대지내공지 및 통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대상	적용기준	비고
공개공지	S3	1개소	
쌈지형공지	S3	4개소	

※ S3 획지변경에 따른 공개공지 위치 조정(도면참고)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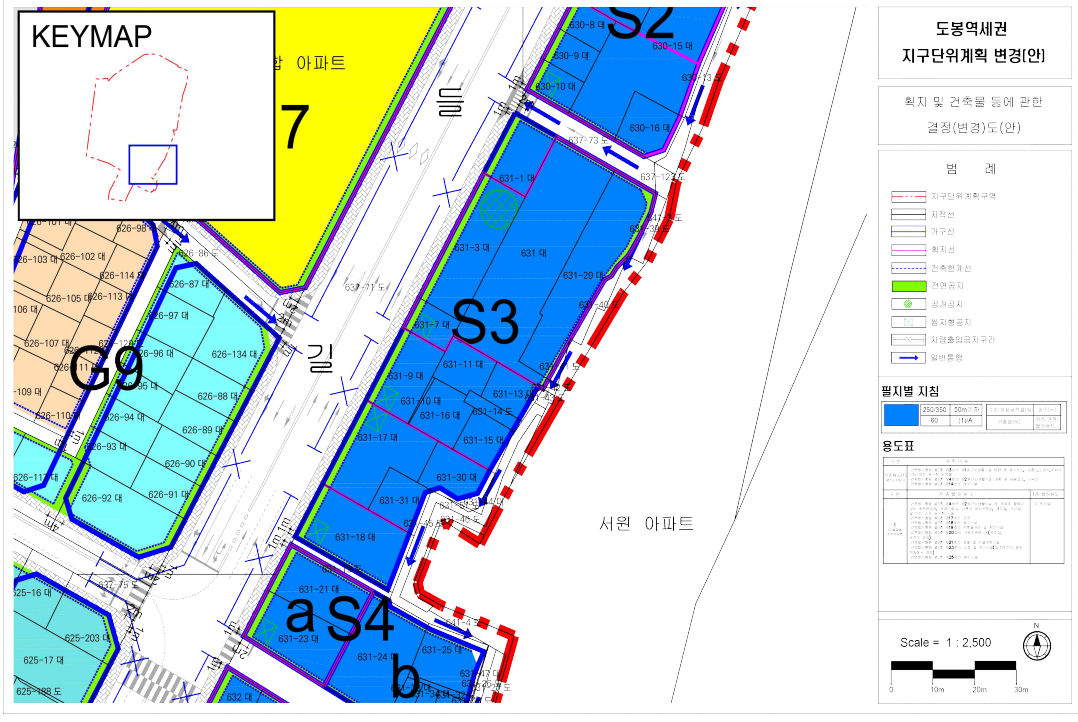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02-2091-3563)

<도시관리계획(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안)



◈ 은평구공고 제2024-1186호

도시계획시설[증산문화공원(가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73(2008.05.22.)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61호(2021.12.09.)호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변경 결정된 증산문화공원(가칭)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은 평 구 청 장

1. 공 원 명: 증산문화공원(가칭)
2. 위　　치: 은평구 증산동 263
3. 면　　적: 4,445.3㎡
4.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가. 운동시설 : 60.70㎡ → 1,055.70㎡(증 995.00㎡)
      ·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881.34㎡
   나. 유희시설 : 524.50㎡ → 00.00㎡(감 524.50㎡)
   다. 기반시설 : 1,057.50㎡ → 1,197.50㎡(증 140.00㎡)
   라. 조경시설 : 116.00㎡ → 00.00㎡(감 116.00㎡)
   마. 휴양시설 : 136.10㎡ → 95.50㎡(감 40.60㎡)
   바. 녹지 및 기타 : 8,951.36㎡ → 8,350.77㎡(감 612.33㎡)
5.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02-351-8009)
8.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산문화공원(가칭)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은평구 증산동 263번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4,595.50	1,894.80				24	4,445.30	2,348.70	1	881.34	3,381.66	19	감 150.20㎡ (감 5기)
기반시설	소 계	1,057.50	1,057.50					1,197.50	1,197.50					증 140.00㎡
	도 로	557.80	557.80					982.70	728.70					증 170.90㎡
	광 장	499.70	499.70					964.98	468.80					감 30.90㎡
조경시설		116.00	116.00					-	-				7	감 116.00㎡ (증 7기)
휴양시설		136.10	136.10				11	95.50	95.50				5	감 40.60㎡ (감 6기)
유희시설		524.50	524.50				7	-	-					감 524.50㎡ (감 7기)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60.70	60.70				6	1,055.7	1,055.7	1	881.34	3,381.66	7	증 995.00㎡ (증 1기)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2,700.70						2,096.60						감 604.10㎡
시설율 (법정 40%)	1,894.80 / 4,595.50 x 100 = 41.23%						2,348.70 / 4,445.30 x 100 = 52.84%						
건폐율 (법정 10%)	0 / 4,595.50 x 100 = 0.00%						881.34 / 4,445.30 x 100 = 19.83%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증산동 263	4,595.50	1,894.80					24		증산동 263	4,445.30	3,667.43	철골콘크리트	1동	881.34	3,381.66	19	
기반시설	소계		증산동 263	1,057.50	1,057.50							증산동 263	1,197.50	1,197.50						증 140.00㎡
	도로			557.80	557.80								728.70	728.70						증 170.90㎡
	광장	가		499.70	499.70						가		468.80	468.80						감 30.90㎡
		가-1		(93.20)	(93.20)															폐지
											가-1		(121.40)	(121.40)						신설
		가-2		(158.60)	(158.60)															폐지
											가-2		(73.70)	(73.70)						신설
		가-3		(146.70)	(146.70)															폐지
											가-3		(13.70)	(13.70)						신설
		가-4		(101.20)	(101.20)															폐지
											가-4		(260.00)	(260.00)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소계		증산동 263	116.00	116.00							증산동 263								감 116.00㎡ (증 7기)
	바닥분수	다		116.00	116.00															
휴양시설	소계		증산동 263	136.10	136.10					11		증산동 263	95.50	95.50					5	감 40.60㎡ (감 6기)
	휴게쉼터	나		136.10	136.10						나		95.50	95.50						
		나-1		(69.20)	(69.20)															폐지
											나-1		(26.60)	(26.60)						신설
		나-2		(66.90)	(66.90)															폐지
											나-2		(31.10)	(31.10)						신설
											나-3		(37.80)	(37.80)						신설
	파고라	④								9									2	(감 7기)
	연식의자	⑤								2									3	(증 1기)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유희시설	소계		증산동 263	524.50	524.50					7		증산동 263	-	-					-	감 524.50㎡ (감 7기)
	어린이놀이터	라		524.50	524.50															
	조합놀이대	①								1										
	회전놀이대	②								2										
	흔들놀이대	③								4										
운동시설	소계		증산동 263	60.70	60.70					6		증산동 263	1,055.70	1,055.70	철근콘크리트	1동	881.34	3,381.66	7	증 995.00㎡ (증 17기)
	야외운동공간	마		60.70	60.70								174.36	174.36						증 113.66㎡
	체력단련시설	⑥								6	⑥								7	(증 1기)
	복합문화체육센터										다		881.34	881.34	철근콘크리트	1동	881.34	3,381.66		신설
녹지 및 기타	소계		증산동 263	2,700.70								증산동 263	2,096.60							감 604.10㎡
	녹지			2,700.70									2,096.60							감 604.10㎡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239.4	557.8				
변경					394.3	728.7				
당초	소로	소 계			0.0	0.0				
변경					95.3	237.8				
신설		3	1	6.0	71.6	200.5	진입로	부지경계	복합문화체육센터	증 200.5㎡
신설		3	2	6.0	23.7	37.3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증 37.3㎡
당초	산책로	소 계			239.4	557.8				
변경					299.0	490.9				
폐지		3	1	3.0	49.9	117.8	진입로	부지경계	광장-1	감 117.8㎡
신설		3	1	3.0	19.1	63.1	연결로	광장-1	복합문화체육센터	증 6.44㎡
폐지		3	2	3.0	99.3	212.7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1	감 212.7㎡
신설		3	2	3.0	19.9	65.9	연결로	복합문화체육센터	광장-2	증 65.9㎡
폐지		3	3	1.5	33.9	107.0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감 107.0㎡
신설		3	3	1.5	19.0	34.2	연결로	부지경계	산책로-1	증 34.2㎡
폐지		3	4	1.5	49.7	99.9	연결로	광장-3	산책로-3	감 99.9㎡
신설		3	4	1.5	59.0	32.8	연결로	산책로-2	산책로-2	증 32.8㎡
폐지		3	5	1.5	6.6	20.4	연결로	광장-4	산책로-4	감 20.4㎡
신설		3	5	1.5	6.6	11.8	연결로	산책로-2	복합문화체육센터	증 11.8㎡
신설		3	6	1.5	19.4	10.8	연결로	복합문화체육센터	산책로-2	증 10.8㎡
신설		3	7	1.5	35.6	63.9	연결로	산책로-2	광장-2	증 63.9㎡
신설		3	8	1.5	37.9	68.3	연결로	광장-4	광장-3	증 68.3㎡
신설		3	9	1~2	60.7	97.2	연결로	부지경계	소로-1	증 97.2㎡
신설		3	10	2.0	21.8	42.9	연결로	부지경계	소로-1	증 42.9㎡

◈ 마포구공고 제2024-94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267-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마 포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4. 6. 20. ~ 2024. 7. 4. (14 일간)

나. 열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7)

다. 입안취지 : 교육과정의 변화 및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학교환경 개선의 필요성 증대로 다양한 교육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높이) 변경결정

라.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초중고	마포구 아현동 267-1	28,569.3	-	28,569.3	서울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5호 (1987.2.17.)	

○ 건축물의 범위 변경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이하	30%이하	120%이하	120%이하	5층 이하	7층 이하	제2종 일반 주저지역(7층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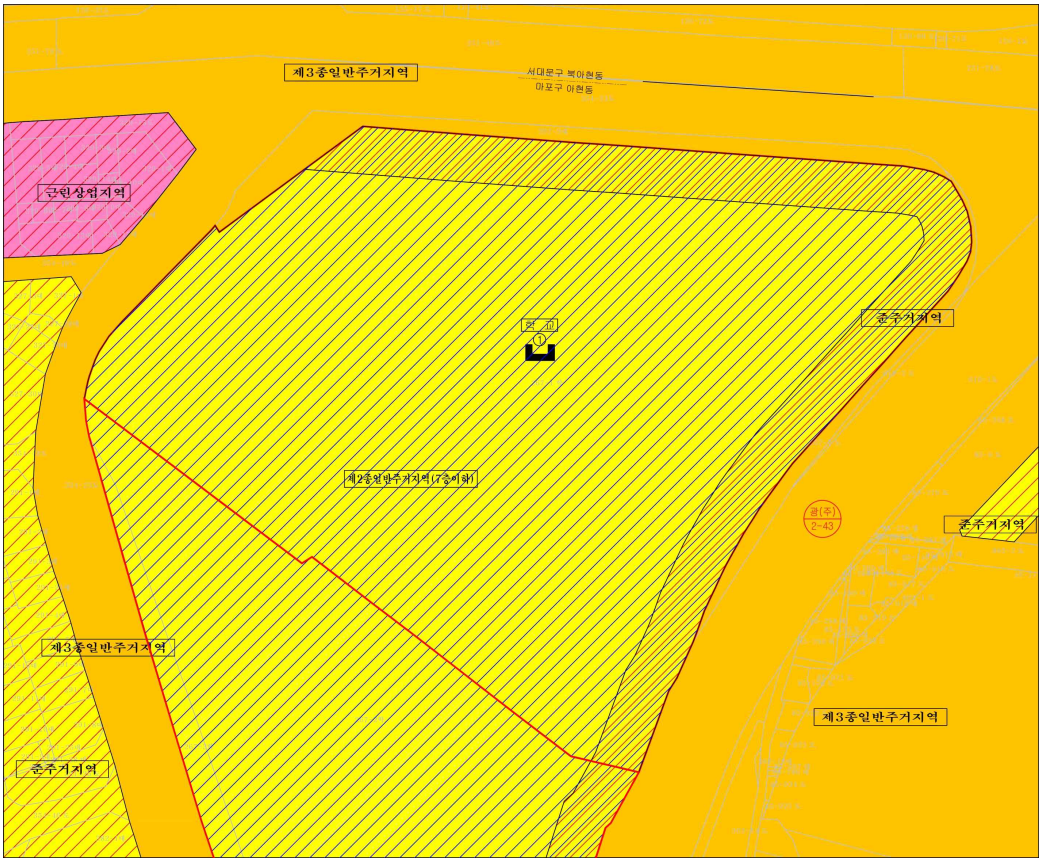
○ 건축물의 범위 변경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건축물의 높이(층) 변경 [5층→7층]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교육공간 확보 및 주민 활용 공간 확보를 위하여 증축을 계획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범위(높이) 변경.	

마.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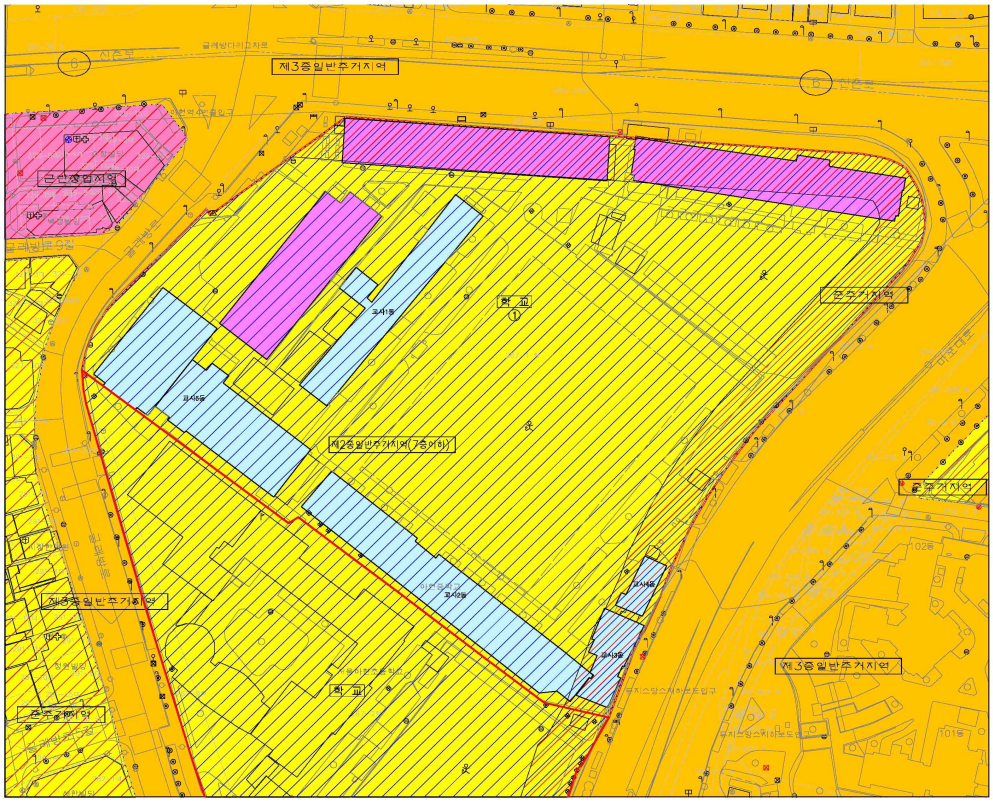
바.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도(변경없음)



아현중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범 례 지 적 선 결정 고시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축척 = 1 : 1,000 10 20 30 40 50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높이) 변경결정(안)도



아현중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도

범 례

- 지 적 선
- 결정 고시선
- 건축물(기존)
- 건축물(금회)
- 제2종일반주거지역(7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축척 = 1 : 1,000

10 20 30 40 50

◈ 구로구공고 제2024-119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71-2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136(1997.5.6.)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0(2001.2.7.)호, 제2012-256(2012.9.27.)호, 제2020-601(2020.12.31.)호, 구로구 고시 제2023-181(2023.10.26.)호, 제2023-217(2023.12.14.)호로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구로구 고시 제2024-66(2024.4.1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구로구 개봉동 171-2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71-24 ~ 171-18 도시계획도로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2) 명 칭 : 도시계획시설(소로 3-18-1) 사업
다. 사업의 규모 : 소로 3-18-1 (B=6m, L=67m, 397㎡)
라. 사업시행자의 법인명 및 주소
  1) 법인명 : ㈜ 무궁화신탁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마. 관련서류 : 게재생략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건축과(☎ 860-29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4-1176호

상도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상도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부지사용계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계약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57-44
나. 계약면적 : 7,703㎡
다. 계약목적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 붙임 참조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및 문의처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4)

붙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1. 4. 6.>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라 정하고, **동작구청장**을 "공원관리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57-44	임야	7,703
계	-	-	7,703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4년 6월 ○○일부터 2027년 6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4. “토지소유자”가 부지사용계약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6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공원관리청 동작구청장 (인)

◈ 송파구공고 제2024-1118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14호(2017.11.16.)에서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최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143호(2022.08.18.)로 결정(변경)된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최초)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송 파 구 청 장

1.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176 일원)
2. 공원면적 : 3,303.17㎡
3. 조성계획(안) :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관리시설, 녹지
   - 주요시설 : 광장, 휴게쉼터, 체력단련장, 녹지 등
4. 관련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송파구청 공원녹지과(☏2147-3387)
7. 본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환가락아파트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32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303.17	618.99	-	-	-	48	
기반 시설	소 계	541.62	541.62	-	-	-		
	도 로	412.62	412.62	-	-	-		
	광 장	129.00	129.00	-	-	-		
조 경 시 설		-	-	-	-	-	12	
휴 양 시 설		39.56	39.56	-	-	-	13	
운 동 시 설		37.81	37.81	-	-	-	5	
관 리 시 설		-	-	-	-	-	18	
녹지 및 기타		2,684.18	2,684.18	-	-	-		
시 설 율 (법정 20%이내)		618.99/3,303.17x100=18.74%						
건 폐 율 (법정 5%이내)		-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3,303.17	618.99					48	
기반 시설	소 계			541.62	541.62						
	도 로			412.62	412.62						
	광 장	가		129.00	129.00						
		가-1		4.01	4.01						
		가-2		8.20	8.20						
		가-3		28.23	28.23						
		가-4		61.12	61.12						
		가-5		27.44	27.44						
조경시설	소계			-	-					12	
	조경석	①		-	-					12	
휴양 시설	소 계			39.56	39.56					13	
	등의자	②		-	-					11	
	파고라A	③		16.00	16.00					1	
	파고라B	④		23.56	23.56					1	
운동시설	소계			37.81	37.81					5	
	체력단련장	나		37.81	37.81						
	운동시설	⑤								5	
관리시설	소계									18	
	공원등	⑥								13	
	CCTV	⑦								5	
녹지 및 기타	소계			2,684.18							
	녹지 및 기타			2,684.18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201.78	412.62				
신설		계			201.78	412.62				
신설		3류	1	1.5	32.05	48.59	시설연결로	광장 가-1	소로3-3	
신설	산책로	〃	2	2.0	13.89	42.28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신설		〃	3	2.0	138.47	276.99	시설연결로	광장 가-4	광장 가-4	
신설		〃	4	2.0	17.37	44.76	진입로	광장 가-5	소로3-3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6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더스텔라 (대표 김천환)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05번기 48, 5층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36	수상 2,052㎡ 둔치 450㎡	대체건조를 위한 상부구조물 작업	2024.06.24. ~ 2024.12.23.	2024.6.14.

기 타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24-2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영등포소방서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에스엠이엔지(주)	제서울(영등포)-2024 -0002호 (2024.6.14.)	이관휴 조정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905호	02-597-91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관리업담당(☎02-6981-70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25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잠실동 1-1번지

 - 면 적 : 일시 1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반조사

5. 점용기간 : 2024.6.17.~2024.6.30.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31 문의 : ☎120